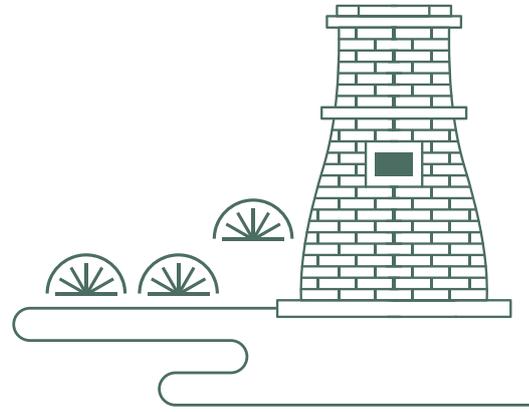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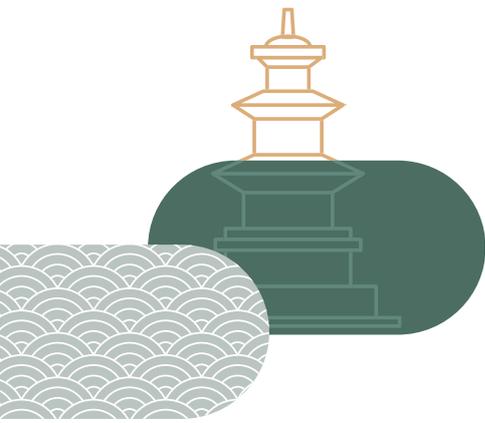


최종보고서

# 웃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전략 수립 기본연구

2025. 9.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 제출문

본 보고서를 「웃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전략 수립  
기본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9.

연구책임자  
박 동 석



## 연구의 개요

가. 용역명 : 윗놀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전략 수립 기본연구

나. 착수일 : 2025년 5월 20일

다. 준공일 : 2025년 9월 16일

라. 연구책임자 : 박 동 석 (K헤리티지재단 이사장)

마. 책임연구원 : 김 지 성 (K헤리티지재단 무형유산센터장)

바. 보조연구원 : 문 귀 호 (K헤리티지재단 활용실장)



# 목 차

I. 연구 개요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가. 문헌 검토 및 사례 분석 .....	5
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 적합성 검토 .....	6
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	7
II.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환경 및 사례 분석 .....	7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개요 .....	7
가.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	7
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	15
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운영방식 및 기준·절차 .....	16
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심사 최근 동향 .....	31
마. 최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동향 시사점 .....	37
2. 인류무형문화유산 놀이문화 관련 영역 사례 분석 .....	40
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무형유산 정의에 대한 관점 .....	40
나. 인류무형문화유산 ‘전통놀이’ 분류 .....	43
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전통놀이’ 종목 특징 .....	46
III. 율놀이의 역사적 기원과 문화 .....	54
1. 율놀이의 역사적 기원 .....	54
가. 역사 .....	54
나. ‘율’ 낱말 어원 .....	55
다. ‘율’ 낱말 표기 .....	56
2. 율놀이의 시원과 천문학 관련성 .....	56
3. 율판형 암각화 .....	58
4. 율놀이 구성 .....	63
가. 율판 .....	63
나. 율가락 .....	64

다. 옷말 .....	65
5. 옷놀이 방식과 규칙 .....	66
가. 옷 모양(裋意)의 명칭과 이동거리 .....	66
나. 옷말 행마법 .....	66
다. 그 밖의 방식과 규칙 .....	67
6. 응용 옷놀이 .....	67
가. 시각장애인형 옷놀이 .....	67
나. 공주형 옷놀이 .....	68
다. 벌칙형 옷놀이 .....	68
7. 기타 옷문화 .....	68
<b>IV. 옷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적합성 검토</b> ....	<b>70</b>
1. 옷놀이 문화 전승의 학술적 고찰 .....	70
가. 옷문화 전래 양상 .....	70
나. 외국학자가 본 대한민국의 옷문화 .....	73
다. 놀이분류법상 옷놀이의 위치 .....	74
2. 옷놀이 문화 전승 현황과 의의 .....	75
가. 국가무형유산 지정-공동체 종목 .....	75
나. 다양한 전승방식 .....	75
다. 활발한 연구 및 활동 .....	76
라. 옷놀이의 지역별 연행 사례 및 활용 .....	76
마. 옷놀이의 현대적 전승 현황과 변화 .....	81
바. 무형유산으로서의 옷놀이의 가치와 특성 .....	84
3. 옷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적합성 검토 .....	85
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개요 .....	85
나. 옷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적합성 .....	86
<b>V. 옷놀이 현지조사 결과</b> .....	<b>90</b>
1. 현지조사 개요 (샘플 조사) .....	90
2. 현지조사 결과 (요약) .....	90
가. 공주시 .....	90
나. 임실군 .....	91

3. 현지 실태조사 사진 .....	92
4. 옷놀이 현지조사 면담결과 .....	93
가. 옷놀이 단체 및 전승자 등 .....	93
나. 지원기관(정부 및 지자체 등) .....	95
<b>VI. 전문가 용역 검토회의 결과 .....</b>	<b>97</b>
1. 전문가 검토회의 개요 .....	97
2.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및 보고서 반영 내용 : 전면 반영 .....	97
가. 장장식 소장 .....	97
나. 김지욱 회장 .....	98
3. 전문가 검토회의 사진 .....	98
4. 전문가 의견서 각 1부 .....	99
<b>VII. 최종 용역 보고회 결과 .....</b>	<b>101</b>
1. 최종 용역 보고회 개요 및 결과 .....	101
2. 최종 용역 보고회 사진 .....	101
<b>VIII. 옷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및 로드맵 .....</b>	<b>102</b>
1.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리적 등재 전략 .....	102
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선제적 대응 .....	102
나. 국가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	104
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 .....	113
라. 대표목록 등재기준 충족 요소의 적극 발굴·반영 .....	120
마. 개념적 특성(Concepts) 및 생물 군계(Biome)의 명확성 제시 .....	140
2.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장기 등재 로드맵(2025년~2036년) .....	143
가. 추진전략 개요 .....	143
나. 5단계(12개년) 추진 로드맵 .....	145
3. 종합의견 및 제언 .....	154
가. 종합의견 .....	154
나. 제    언 .....	156
<b>[부록] .....</b>	<b>159</b>

# 표 목차

<표 1>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한민국 무형유산 .....	2
<표 2>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준비 국내종목 .....	3
<표 3>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	10
<표 4> 제3장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 .....	13
<표 5> 제4장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	15
<표 6> 2024년 제19차 정부 간 위원회 의장단 및 위원국 .....	18
<표 7>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기구 .....	19
<표 8> 긴급보호목록 등재 기준 요약 .....	21
<표 9> 대표목록 등재 기준 요약 .....	22
<표 10> R.1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및 본질 설명 .....	22
<표 11> R.2 공동체 정체성,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방식 ..	23
<표 12> R.3 유산보호를 위한 과거, 현재, 미래 조치 .....	23
<표 13> R.4 공동체의 자유롭고 사전 정보에 기반한 동의 .....	24
<표 14> R.5 국가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현황 .....	24
<표 15> 등재신청서 작성 유의사항(공통) .....	24
<표 16>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 구성 .....	25
<표 17>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검토 우선 순위 .....	28
<표 18>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일정(절차) 요약 .....	29
<표 19> 국내신청과정을 포함한 등재 일정(절차) 요약 .....	30
<표 20>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후보목록 선정 내용 및 과정 ..	31
<표 21> 무형유산협약 관련 2024년~2025년 주기 주요 변화 .....	33
<표 2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심사 최근 동향 요약 ..	34
<표 23> 최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동향의 시사점 및 전략 ..	40
<표 24> 무형유산협약과 한국 무형유산법상 ‘무형유산’의 정의 ..	42
<표 25>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전통적 놀이’ 종목 현황 .....	43
<표 26> 국가무형유산 중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 종목 ..	45
<표 27> 인류무형문화유산 ‘전통놀이’ 관련 종목 특징 .....	46
<표 28> 인류무형문화유산 ‘전통적 놀이’ 개념적 특징 .....	49

<표 2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분석 .....	51
<표 30> 생물 군계(Biome) 연계 분석 .....	53
<표 31> 고구려의 5부 제도와 5방위 사상 .....	55
<표 32> 옷판 암각화의 분포 .....	58
<표 33> 옷가락의 종류 .....	65
<표 34> 옷가락 모양에 따른 사의의 명칭과 발 수 .....	66
<표 35> 공주 지역 옷놀이 종류 .....	77
<표 36> 2025년 옷놀이 척사대회 현황 .....	81
<표 37> 단계별 실행 로드맵 수립 .....	119
<표 38> R.1~R.5 각 항목별 필수요소 .....	121
<표 39> R.1 기준 필수요소 충족성 .....	123
<표 40> R.2 기준 필수요소 충족성 .....	124
<표 41> R.3 기준 필수요소 충족성 .....	125
<표 42> R.4 기준 필수요소 충족성 .....	126
<표 43> R.5 기준 필수요소 충족성 .....	128
<표 44> MDGs와 SDGs의 비교 .....	130
<표 45> SDGs의 5대 영역 .....	131
<표 46> 옷놀이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분석 .....	135
<표 47> 지속가능발전(SDGs) 연계분석 설명방식(예시) .....	139
<표 48> 개념(Concepts) 연계분석 설명방식(예시) .....	140
<표 49> 생물군계(Biome) 연계분석 설명방식(예시) .....	141
<표 50>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 중인 종목 현황 ..	144
<표 51> 제1단계 추진과제 내용 및 성과지표(KPI) .....	146
<표 52> 제2단계 추진과제 내용 및 성과지표(KPI) .....	148
<표 53> 제3단계 추진과제 내용 및 성과지표(KPI) .....	149
<표 54> 제4단계 추진과제 내용 및 성과지표(KPI) .....	151
<표 55> 제5단계 추진과제 내용 및 성과지표(KPI) .....	153
<표 56> 등재 주요 전략 요소 .....	153
<표 57> 옷놀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2개년 로드맵 (2025년-2036년) .....	153
<표 58> ‘옷놀이, 옷놀이문화, 옷문화’ 의 용어 비교 .....	156

# 그림 목차

<그림 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주년 기념행사	3
<그림 2> ‘옷’ 낱말의 표기	56
<그림 3> 옷놀이의 시원과 천문학 관련성 자료	56
<그림 4> 옷관형 암각화 자료	59
<그림 5> 포항 신흥리 오줌바위에 새겨진 천문관측(별자리) 유적모습	60
<그림 6> 한국 옷관 유적 분포도 및 한국 암각화 파급 경로	61
<그림 7> 전북 임실 옷관형 암각화 유적	62
<그림 8> 옷관 모양	64
<그림 9> 옷의 종류	65
<그림 10> 옷말 행마법	67
<그림 11> 시각장애인용 옷	68
<그림 12> 풍속화 속의 옷놀이	71
<그림 13> 옷점책(필사본)과 옷(주머니 포함)	72
<그림 14> ‘옷송’ 과 ‘저포송’	72
<그림 15> 스텐터트 켈린 및 옷놀이 출간 책	73
<그림 16> 놀이분류법상 옷놀이의 위치	74
<그림 17>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	82
<그림 18> 옷놀이 제품	82
<그림 19> 옷놀이 온라인게임	83
<그림 20> 현지 실태조사 사진	92
<그림 21> 전문가 검토회의 사진	98
<그림 22> 최종 용역 보고회 사진	101
<그림 23> 옷놀이 대회 포스터	106
<그림 24> 옷놀이축제 및 강사 수강생 모집 홍보 자료	106
<그림 25> 제1회 월드코리아컵 옷문화 경기 대회(안)	108
<그림 26> 옷놀이문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모형도	111
<그림 27> 시멘틱데이터 상호작용 방식	111
<그림 28> 시멘틱데이터 구조	112
<그림 29> UN의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SDGs)	129
<그림 30> 등재신청서 양식에 기재된 지속가능발전 항목	131

# 1. 연구 개요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제도는 자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외교의 전략적 자산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총 150개국에서 등재한 788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무형유산의 보편적 가치와 함께 각국이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실례로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2024년 12월 3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9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IGC)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됨으로써, 세계에 대한민국의 식문화와 공동체 중심 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23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무형유산 정책 역량과 문화다양성 구현 측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sup>1)</sup>

다음 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23개 무형유산이다.

---

1)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총 23개가 등재되어, 일본과 세계 공동 2위의 등재국가이다. 세계 단독 1위는 중국이다. 중국은 38개가 등재되어 압도적으로 앞서있다.

<표 1>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한민국 무형유산

연도	종목	등재 내용
2001	종묘제례 및 제례악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에서 전환(2006년)
2003	판소리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에서 전환(2006년)
2005	강릉단오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에서 전환(2006년)
2009	남사당놀이	
2009	강강술래	
2009	처용무	
2009	영산재	
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	
2010	가곡	
2010	대목장	
2010	매사냥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벨기에, 프랑스, 몽골 등 11개국 공동 등재
2011	택견	
2011	줄타기	
2011	한산모시짜기	
2012	아리랑	
2013	김장문화	
2014	농악	
2015	줄다리기	대한민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4개국 공동 등재
2016	제주해녀문화	
2018	씨름	남북 공동 등재
2020	연등회	
2022	대한민국의 탈춤	
2024	대한민국의 장 담그기 문화	

2023년 7월, 서울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대규모 국제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중략) - 본 행사는 유네스코가 무형유산 분야에서 한국에 부여하는 기대와 위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유산 보유국을 넘어, 무형유산 보호의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 협력과 정책적 기여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7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채택 20주년 기념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그림 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주년 기념행사  
(출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s://unesco.or.kr>)

회원국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각국 대사를 포함한 국외 전문가 23명이 참석했고, 200명으로 예상했던 참석 희망자가 400명을 넘으면서 주관단체는 행사장 좌석을 늘리고 명찰과 리플릿을 추가 배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싱취 유네스코 부사무총장, 에르네스토 오토네 문화사무총장보, 팀 커티스 협약 사무국장과 박상미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대사 등이, 한국 정부에서는 박진 외교부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작성자 추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과 유인촌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참석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다.<sup>2)</sup>

국내에서의 등재 준비 작업도 활발하다. 이미 한지 등 3개 종목이 2030년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준비를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표 2>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준비 국내종목

종목	후보결정(국내)	유네스코 신청서 제출	등재 결정(예상)
한지, 전통지식과 기술	2023.7월	2024.3.30.	2026.12월
인삼문화:자연과 가족(공동체)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문화	2024.4월	2026.3.30.	2028.12월
한복생활:전통기술과 한국인의 상징	2025.10월	2028.3.30.	2030.12월

2) 유네스코뉴스 위원칼럼(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김지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힘-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 및 서울비전의 의미」 (UNESCO News vol.80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와 더불어, 아직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찰음식이 2025년 5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데 이어, 태권도가 국가무형유산 지정<sup>3)</sup>을 추진 중이다. 이들 종목은 모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각종 준비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웃놀이” (또는 웃놀이 문화)<sup>4)</sup> 또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sup>5)</sup>

사실 웃놀이만큼 우리 민족의 생활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놀이도 드물 것이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물론이고, 각종 지역축제마다 웃놀이 판이 예외 없이 마련되어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는 놀이마당이 되어 왔다.

유명 역사학자인 故이이화 선생은, 웃놀이를 극찬하고 있다.

「이이화의 역사풍속기행」에서 ‘웃놀이’, ‘씨름’ 등 우리 한민족의 전통놀이를 소개하면서, 웃놀이를 ‘우주 사상이 담긴 놀이’로 소개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13 전통문화 계승 학술대회’에서 “우리 겨레 생활사에 있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3대 발명이 있으니 주택에는 온돌, 음식에는 김치, 놀이에는 웃입니다. 웃은 통구스계에 속하는 동이족이 창작해낸 놀이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웃놀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sup>6)</sup>

그러나 최근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외래문화의 일상화로 인해, 전통놀이인 웃놀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차 일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민속 명절과 일상 속 공동체 문화의 핵심으로 기능해온 웃놀이는, 그 대중성과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단절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웃놀이의 보존과 전승은 단순한 문화 향유 차원을 넘어, 현세대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문화적 책무로 부각되고 있다.

---

3) 북한이, 2025년 3월 태권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도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 지정 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단순한 놀이 중심의 ‘웃놀이’보다 윷판 암각화와 관련된 천문사상 등을 포괄하는 ‘웃놀이 문화’ 또는 ‘웃문화’가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5) K-헤리티지재단은 2024년부터 웃놀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인심판을 양성하고 웃놀이 게임규칙, 경기복, 참가자격, 지도자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규정안도 마련하였다. 재단은 조만간 「제1회 월드컵 웃문화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에서 먼저 웃놀이 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6) “웃엔 고대 천문학·세계관 담겨있다”(문화일보, 2013.6.18.) <https://v.daum.net/v/20130618143106530>

따라서 윷놀이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현대적 놀이문화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체와 민간단체는 물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는, 윷놀이의 문화적 재조명과 보호·진흥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같이하고 확산하는 훌륭한 장치로 기능할 수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윷놀이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등재전략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 문헌 검토 및 사례 분석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하 ‘무형유산협약’)」 및 동 운영지침, 총회 및 정부간위원회(IGC) 회의록, 유네스코 본부 및 국가유산청 등 관련 기관의 공식 문서와 누리집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등의 등재 기준과 절차, 최근 등재 심사 경향 및 결정 요건을 분석하고, 윷놀이와 유사한 전통 놀이문화의 등재 사례 또한 비교 검토한다.

2013 전통문화 계승 학술대회’ 등 윷놀이 관련 학술회의 자료를 참조한다. 해당 학술대회는 윷문화를 주제로 개최된 국내 최초의 전문 학술회의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윷놀이의 역사적 기원, 지역별 연행 양상, 실천 주체 등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윷놀이가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 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 명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 적합성 검토

웃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해당 기준(R.1~R.5)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등재기준에 각각 웃놀이의 특성을 대입하여 적합성을 분석한다.

- R.1: 유산의 무형문화유산적 정의 해당 여부
- R.2: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될 경우 기대되는 가시성 증대, 인식 제고, 문화 간 대화 촉진, 문화다양성 및 인류 창의성 증진 등 지속가능발전 기여 가능성
- R.3: 웃놀이의 보호, 보존, 진흥을 위한 과거 및 현재의 조치와 향후 계획의 구체성
- R.4: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폭넓은 동의 여부
- R.5: 국가무형문화유산 분류목록 또는 관련 공적 목록에의 공식 등재 여부

이와 병행하여, 웃놀이의 전승 현황 및 보호 필요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현지 샘플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비록 샘플조사 이기는 하지만, 향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종합적인 전국 실태조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종합적인 전국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추진 목적 및 내용으로 실시되기를 권장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승단체,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실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등재 전략에 반영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 특히 전통 연행 방식, 지역별 전승의 다양성, 참여 집단의 구조와 활동, 전승 위기의 징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신청서 작성 시 요구되는 실증적 근거자료를 확보한다.

## 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R.1~R.5) 적합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율령의 등재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둘러싼 국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한지, 인삼문화, 한복생활 등 여러 유산이 이미 등재 후보로 선정되어 대표목록 등재를 추진 중이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율령의 대표목록 등재는 단기간 내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보호 조치와 국제적 공감대 형성, 공동체 기반 확대를 전제로 한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율령의 유산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과 지속 가능한 보호·활용 전략을 포함한 12개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환경 및 사례 분석

###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개요

#### 가.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sup>7)</sup>

유네스코는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하 ‘무형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와 지속가능한 전승을 위한 구속력

---

7) 해당 협약 관련 내용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가 참고자료로 발간한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기본문서 및 국내 무형유산 관련 법률(2024)」를 참고하였다.

있는 최초의 다자간 국제문서로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보호조치, 국제 협력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본 협약에 앞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권고와 프로그램을 도입해 왔다.

-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sup>8)</sup>
- 1993년 「인간문화재 제도(Living Human Treasures)」<sup>9)</sup>
- 1997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포(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sup>10)</sup>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도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태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기할만한 사실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1993년 「인간문화재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존 제도를 국제적으로 확장한 사례로 평가되며, 이는 이후 2003년 ‘무형유산협약’ 채택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의 원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는 국제적 보호 체계의 법제화 필요성에 따라 본 협약을 마련하였다.

2003 무형유산협약은 2006년 4월 20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특히 영국이 2024년 6월 7일 183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이로써 유럽 주요국 대부분이 협약에 참여하게 되었다.

---

8) 유네스코의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는 전통문화와 민속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문서이다. 이 권고는 전통문화와 민속이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 아래, 급속한 산업화와 세계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전통문화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

9) 유네스코의 「인간문화재 제도」는 전통 예술이나 기술 등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가진 인물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소멸 위기의 전통 문화를 보존·전승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채택 이후, 2006년경 UNESCO 프로그램으로서 폐지되었다.

10) 유네스코의 1997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포(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는 세계 각지의 우수한 무형유산을 선정하여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발효되기 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 프로그램이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183개국이 가입함으로써, 무형유산협약은 오늘날 사실상 보편적인 국제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무형유산협약의 주요 목적과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그리고 협약이 제시하는 보호 조치의 범위와 등재 절차 등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향후 윗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맥락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 (1) 협약의 목적(무형유산협약 제1장 제1조)

이 협약은 먼저 각국과 공동체의 고유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을 창조하고 계승해온 공동체, 집단, 그리고 개인들이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방, 국가,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지니는 중요성과, 이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이 왜 중요한지를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 협약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호와 인식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간의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진하는 것도 이 협약이 추구하는 중요한 방향이다.

-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보호
- 관련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보장
- 지방·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

### (2)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무형유산협약 제1장 제2조)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나 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라고 여기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을 의미하며, 여기에 관련된 도구나 물품, 공예품, 문화 공간도 포함된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며,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이를 통해 정체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며, 이는 곧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존중하는 기반이 된다.

이와 같이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 예술
- 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
-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 공예 기술

〈표 3〉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구분	내 용
의미와 특징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practices)·표상(representations)·표현(expressions)·지식(knowledge)·기술(skills), 이와 관련한 도구(instruments)·물품(objects)·공예품(artefacts) 및 문화 공간(cultural spa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간 전승</li> <li>■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li> <li>■ 공동체 및 집단이 정체성 및 계속성 유지</li> <li>■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 증진</li> </ul>
명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예술(performing art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공예 기술(traditional craftsmanship)</li> </ul>

여기서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특히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

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3) 무형유산협약 관련 기구(무형유산협약 제2장 제4조~제10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근거한 기구 체계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는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협약 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보다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집행 논의를 담당하는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가 있다. 이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등재 심사, 보호 조치 권고, 기술 지원 및 국제 협력 사업을 주도한다.

이외에도, 총회와 정부 간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기구 및 실무단위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운영 효율성 제고와 기술적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 (가) 당사국 총회(제4조)

- 무형유산협약의 최고기관임
-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기로 회합. 총회는 총회의 결정에 따르거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또는 당사국 최소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기로 회합할 수 있음
- 총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함

#### (나) 정부 간 위원회(제5조~제10조, 이하 ‘위원회’)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회를 유네스코 내에 두며, 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24개
  - 위원회의 위원국은, 총회에 참석한 협약 당사국에 의하여 4년 임기로 선

출되고 2년마다 위원회의 위원국 절반 갱신함

- 위원회의 위원국은 두 번의 임기를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음
- 위원회의 위원국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적격자를 자국 대표로 선정함

#### ○ 위원회의 임무

- 무형유산협약 목적의 증진 및 그 이행의 장려 및 감독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최량의 관행에 대한 지침의 제공 및 이를 위한 조치의 권고
- 기금 재원 사용에 관한 계획안 작성 및 승인을 위해 총회 제출
- 재원 확충 방안의 강구 및 이를 위한 필요조치의 채택
- 무형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방침 작성 및 승인을 위해 총회 제출
-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및 총회 제출
- 당사국이 제출한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 및 제안
- 국제원조의 공여 등

#### ○ 자문기구의 인가

-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관련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비정부기구가 자문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구의 인가를 총회에 제안

#### (다) 사무국

이들 두 축인 총회 및 정부 간 위원회를 행정적·실무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또 하나의 기구로는 사무국이 있다.

○ 위원회는 유네스코사무국의 지원을 받음

○ 사무국은 총회 및 위원회의 회의 의제 초안 및 문서를 준비하고 총회와 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되도록 보장

#### (4) 무형문화유산의 국내·국제적 보호(무형유산협약 제3장~제4장)

##### (가)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제3장)

무형유산협약 제3장은 당사국이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과 조치를 다루고 있다.

먼저, 당사국은 자국 내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동체, 집단,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가운데 유산을 감정하고 규정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하나 이상 작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해당 목록과 관련한 정보를 유네스코 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하고, 보호를 국가 기획과 정책에 통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보호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고, 위협에 처한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실연 공간 확보, 접근성 보장, 기록기관 설립 등도 포함된다.

또한, 교육과 인식 제고,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공동체 내 훈련, 과학적 연구능력 강화, 비공식 전승 수단 등이 활용되어야 하며, 유산 보호활동과 그 위협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높이는 활동도 필수적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공동체, 집단, 개인의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들이 유산의 창출, 유지, 전승, 관리에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4〉 제3장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

항목	주요 내용
당사국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조치 마련</li> <li>■ 유산 요소 감정·규정 시 공동체·집단·NGO 참여</li> </ul>
목록 작성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 내 무형유산 목록 작성 (1개 이상)</li> <li>■ 목록 정기 갱신 및 위원회에 보고</li> </ul>
보호를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통합</li> <li>■ 보호기관 지정/설치</li> <li>■ 위협 유산 대상 연구 촉진</li> <li>■ 법적·행정적 조치 시행 (실연 공간, 접근성, 기록기관 등)</li> </ul>

항목	주요 내용
교육 및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대중 및 청소년 대상 교육</li> <li>■ 공동체 내 훈련 프로그램</li> <li>■ 비공식 지식 전수</li> <li>■ 보호활동·위협 요소에 대한 홍보</li> </ul>
공동체·개인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출·유지·전승 주체인 공동체·개인의 광범위한 참여 보장</li> <li>■ 유산 관리에 적극적 관여 유도</li> </ul>

#### (나)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제4장)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세 가지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그리고 보호 프로그램·사업·활동의 선정 및 증진이다.

첫째,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은 무형문화유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련 당사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 간 위원회가 목록을 작성·갱신·공표하며, 이 목록의 기준 역시 위원회가 마련해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둘째, 긴급보호 무형문화유산 목록은 소멸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 간 위원회가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갱신·공표한다. 특히, 극도의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가 직접 등재할 수 있다.

셋째, 보호 프로그램·사업·활동은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잘 반영한 우수한 국내·소지역·지역 차원의 활동을 선정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당사국의 제안을 기초로 하여 정부 간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 원조 요청도 접수·검토·승인하고, 최량의 관행을 보급함으로써 보호 활동의 실행을 지원한다.

〈표 5〉 제4장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구분	주요 내용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도 제고, 문화다양성 존중, 국제적 대화 촉진</li> <li>■ 당사국 제안 → 정부 간 위원회가 작성·갱신·공표</li> <li>■ 작성 기준은 위원회가 마련 후 총회 승인</li> </ul>
긴급보호 무형유산 목록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멸 위기의 유산 보호 목적</li> <li>■ 당사국 요청 → 정부 간 위원회가 등재·공표</li> <li>■ 극도의 긴급 상황 시, 당사국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직접 등재</li> <li>■ 기준 마련 후 총회 승인</li> </ul>
보호 프로그램·사업·활동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원칙 반영한 국내·지역 보호 활동 선정 및 증진</li> <li>■ 당사국 제안 기반, 개발도상국 우선 고려</li> <li>■ 국제 원조 요청 접수·검토·승인</li> <li>■ 정부 간 위원회가 최량의 관행 보급 및 이행 지원</li> </ul>

## 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이미 살펴본 대로, 국제사회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인해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여,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30개국의 가입을 통해 2006년 4월 20일 정식 발효되었다.

무형유산협약 발효 이전 1997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을 운영, 2001년부터 2005년까지 70개국의 총 90건을 지정<sup>11)</sup>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 90건의 걸작은 무형유산협약 발효와 함께 대표목록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 무형유산협약은, 특히 산업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유형문화유산)은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와 ‘진정성(authenticity)’을 주요 기준으로 요구한다.

○ OUV는 특정 유산이 국경을 넘어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예외적인 문화적·자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11)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은 협약이 아닌 프로그램 이므로, 정확하게는 ‘지정’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기간 중 대한민국은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 등 3종목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 진정성은 해당 문화유산이 원래 창조 당시의 재질과 기법, 정신을 충실히 보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유네스코가 정의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끊임없이 재창조하며, 세대를 넘어 전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 창조성의 근원이 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체의 권리 존중에 기반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협약의 목적과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해당 무형유산의 문화적 가치, 공동체 참여, 지속가능성 및 보호 조치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운영방식 및 기준·절차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의 실질적 집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이하 ‘위원회’)는 협약 규정에 근거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운영 지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유네스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서는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하 ‘운영지침’)」이다.

운영지침은 무형문화유산의 등재 절차, 심사 기준, 보호 조치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골격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절차 및 기준, 그리고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운영방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는 정부 간 위원회다. 협약 당사국 중 24개국이 대륙별 균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2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정부 간 위원회는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의 등재 심사, 보고서 검토, 국제원조 승인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등재 신청서에 대한 실제 평가는 평가기구(Evaluation Body)가 맡는다. 이 기구는 정부 간 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비위원국 전문가 6인과 인가 NGO 대표 6인으로 구성되며, 총 12명이 활동한다. 평가기구는 각종 등재 신청서, 국제원조 요청 등을 검토하고, 등재 여부나 정보 보완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정부 간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평가기구는 2011년부터 기존의 보조기구와 자문기구를 통합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산 분야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된다.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며, 매년 1/4씩 교체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유네스코는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무형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 (가) 위원회의 구성

앞서 ‘무형유산협약 관련 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형유산 협약 제2장 제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및 유네스코 총회 제출,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 심사와 제안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되며, 대륙별 균형을 고려해 6개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위원국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반인 2년마다 위원국의 절반씩 순환 교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태평양 그룹(제4그룹)에 속하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 번째 위원국으로 활동<sup>12)</sup>

하였다. 2024년부터는 중국이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해당 그룹의 위원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6> 2024년 제19차 정부 간 위원회 의장단 및 위원국

그룹	위원국 * 제19차 위원회(2024년) 의장단 <sup>13)</sup>	임기
1그룹(Group I) (서유럽, 3개국)	독일 (* 부의장)	2022년~2026년
	프랑스, 스페인	2024년~2028년
2그룹(Group II) (동유럽, 3개국)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부의장)	2022년~2026년
	우크라이나	2024년~2028년
3그룹(Group III) (남미·캐리비안, 4개국)	파라과이(* 의장)	2022년~2026년
	바베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2024년~2028년
4그룹(Group IV) (아시아·태평양, 5개국)	방글라데시,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의장)	2022년~2026년
	중국	2024년~2028년
5a그룹(Group Va) (아프리카, 6개국)	앙골라(* 부의장),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2022년~2026년
	나이지리아, 우루과이, 잠비아	2024년~2028년
5b그룹(Group Vb) (아랍, 3개국)	모리타니	2022년~2026년
	알제리, 아랍에미리트	2024년~2028년

#### (나) 신청서의 평가 및 평가보고서의 작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평가는, 등재신청서, 제안서 및 국제원조 요청서가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긴급보호목록, 대표목록, 보호 등 다양한 등재신청서뿐만 아니라,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국제원조 신청, 그리고 대표목록 등재 종목의 긴급보호목록 이관 신청과 관련한 국제원조 요청서도 포함한다.

위원회의 중대한 결정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담은 평가보고서는, 평가기구(Evaluation Body)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최종 심의 및 결정을 내리게 된다.

12) 대한민국은 2008년~2012년, 2014년~2018년, 2020년~2024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정부 간 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2017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2차 정부 간 위원회에서는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는데, 개최국이 의장국을 맡는다.

13) 제19차 위원회(파라과이 아순시온, 2024.12.2.~7.)에서 다음 제20차 위원회(인도 뉴델리, 2025.12.8.~13.) 의장단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의장국 : 인도(그룹IV, 개최국이 자동 의장국) / 부의장국 : 프랑스(그룹 I), 슬로바키아(그룹 II), 바베이도스(그룹 III), 에티오피아(그룹 V(a)), 모리타니아(그룹 V(b), 연임) \* 개최국은 자동으로 의장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룹IV를 제외한 선거그룹의 부의장 선출

(다) 평가기구(Evaluation Body)<sup>14</sup>의 설치·운영

평가기구(Evaluation Body)는 무형유산협약 제8조 3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자문기구가 수행한다. 평가기구는 위원회가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 및 다양한 무형유산 영역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 평가기구의 구성원

- 12인으로 구성. 정부간위원회 비위원국 대표로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6인, 인가NGO<sup>15</sup>(비정부기구) 6개 대표자
- 평가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4년. 매년 위원회는 평가기구 구성원의 1/4을 교체
- 평가기구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
  - 긴급보호목록 또는 대표목록<sup>16</sup>에 등재 신청한(목록 간 이관, 기등재 종목의 등재 확장 및 축소 포함) 종목의 등재 여부 혹은 제출국에 정보보완 요청
  - 보호 등재 여부 혹은 제출국에 정보 보완 요청
  -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와 동시에 제출된 국제원조 승인 여부 혹은 제출국에 정보보완 요청 등

<표 7>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기구

기구	구성	주요 기능
정부 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회에 참석한 협약 당사국에 의해 선출</li> <li>■ 대륙별 6개 그룹으로 구성</li> <li>■ 임기 4년</li> <li>■ 두 번 임기 연속 선출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류무형문화유산 국제적 보호</li> <li>- 긴급보호 목록·대표목록 등재</li> <li>- 프로그램·사업 및 활동의 제안</li> <li>- 국제원조 공여 등</li> </ul>
평가기구 (Evaluation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가 임명</li> <li>■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6인, 인가 NGO(비정부기구) 6개 대표자 등 12인</li> <li>■ 임기 4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에 관한 평가</li> </ul>

1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심사에 관한 기구 구성은, 협약의 *이행지침*(Operational Directives) 및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의 결정 사항에 근거하여, 제도적으로 임기 1년의 두개 평가기구가 병행하여 운영되어 왔다. 특히 2010년까지는 Subsidiary Body [보조기구 /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 국제원조(International Assistance) 일부 심사], Consultative Body [자문기구. 국제원조 요청에 대한 심사, NGO 인증 관련 평가, 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자문 제공]되어왔다.

그러다가 심사과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5차 정부간위원회(5.COM, 2010년)에서의 결정에 따라, 2011년부터는 기존의 Subsidiary Body와 Consultative Body를 통합하여, 단일 평가기구인 Evaluation Body가 도입되었다.

15) 무형유산협약 정부간 위원회의 자문역할을 하는 인가NGO는 총회가 인가하는데, 제10차 총회에서 58개의 신규 NGO를 인가하여 2025년 기준 총 264개의 인가NGO가 활동 중이다.

16) 무형유산협약에는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순으로 조항이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지침'에는 등재 우선 고려대상인 긴급보호목록이 가장 앞선 조항으로 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목록의 순서에 관계없이 설명 상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순서를 바꿔 사용할 예정이다.

## (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기준·절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으로 나뉘며, 등재를 원하는 당사국은 각 목록별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목록은 유산의 문화적 가치와 상징성, 공동체 참여, 보호조치 마련 여부 등을, 긴급보호목록은 유산의 생존 위기 상황과 긴급한 보호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 신청서는 평가기구가 심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후 정부간위원회가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등재 평가는 일정에 따라 2년간 진행되며,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반영 여부도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 (가) 등재 기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의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 등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무형유산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활동’ 과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원조’ 도 함께 선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웃놀이’ 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대표목록의 등재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참고로 긴급보호목록의 등재 기준 및 절차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 ○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기준(운영지침 1.1)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이하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신청하는 당사국은 등재신청서를 통해 해당 유산이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 U.11<sup>7)</sup> 해당 유산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 U.2

a. 해당 유산은 관련 공동체, 집단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 및 당사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존력이 위태로우므로 긴급보호가 필요하거나,

b. 해당 유산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여 즉각적인 보호 없이는 생존 여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극도로 긴급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 U.3 관련 공동체 집단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 등이 계속해서 해당 유산을 연행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계획이 마련되었다.

■ U.4 등재 신청 시 관련 공동체, 집단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가 있었으며, 이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획득하였다.

■ U.5 협약 제11조 및 제12조에 정의된 것처럼, 해당 유산은 등재 신청국 영토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위해 만든 분류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 U.6 극도로 긴급한 상황의 경우, 관련 당사국은 협약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유산의 등재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된다.

〈표 8〉 긴급보호목록 등재 기준 요약

구 분		등재 기준
U.1		무형문화유산 정의 충족(무형유산협약 제2조)
U.2	a.	노력에도 생존력이 위태로워 긴급 보호 필요
	b.	심각한 위협 직면하여 극도로 긴급 보호 필요
U.3		해당 유산을 연행·전승할 수 있는 보호계획 마련
U.4		공동체 등의 광범위한 참여와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
U.5		등재 신청국 영토에 있는 분류목록에 포함
U.6		극도의 긴급 상황의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협의대상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운영지침 1.2)

대표목록 등재를 신청하는 당사국은, 등재신청서를 통해 해당 유산이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 R.1 해당 유산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충족

17) “U”는 무형유산협약 제17조의 긴급보호목록(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의 “Urgent(긴급한)”의 약어이다. 또한 다음에 등장하는 “R”은 무형유산협약 제16조의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의 “Representative(대표적인)”의 약어이다. ‘운영지침’에 표기된 대로 사용하였다.

- R.2 해당 유산의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대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문화 다양성을 반영하고 인류 창의성을 증명
- R.3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조치 마련
- R.4 등재 신청 시 관련 공동체, 집단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가 있었으며, 이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획득
- R.5 협약 제11조 및 제12조에 정의된 것처럼, 해당 유산은 등재 신청국 영토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위해 만든 분류목록에 포함

〈표 9〉 대표목록 등재 기준 요약

구분	등재 기준
R.1	무형문화유산 정의 충족(무형유산협약 제2조)
R.2	가시성 확보, 중요성 인식 제고 및 대화증진에 기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 창의성 증명
R.3	해당 유산 보호·증진할 수 있는 보호조치 마련
R.4	공동체 등의 광범위한 참여 및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
R.5	등재 신청국 영토에 있는 분류목록에 포함

○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기준(R.1~R.5)별 작성 필수요소<sup>18)</sup>

위의 운영지침 1.2의 등재기준에 따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R.1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및 본질 설명 : 유산이 협약 제2조에서 정의한 무형문화유산 개념에 부합하는지 검증

〈표 10〉 R.1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및 본질 설명

항목	설명
명칭 및 지역적 범위	유산의 현지어 및 번역 명칭, 실행되는 지리적 범위
유산 유형	무형문화유산 5대 분야 중 해당 분야 지정 - 구전전통,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의례, 자연·우주에 관한 지식, 전통공예
주요 특징 및 구성요소	유산의 핵심 요소 (의례, 기술, 노래, 춤, 도구 등) 구체적으로 기술

18) 한국의 장담기 문화 등 그동안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자가 도표 위주로 정리한 내용이다.

항목	설명
실행 방식 및 활동 맥락	유산이 실현되는 장소, 시기, 방식, 관련 인물 및 환경 등 설명
문화적/사회적 기능	유산이 공동체에서 수행하는 역할 (정체성, 통합, 교육, 의례 등)
역사성과 변화 수용력	유산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양상과 그 변화 수용 방식,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전통의 적응력
포용성과 비차별성	성별·세대·계층·종교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비배타성, 공동체 간 갈등 유발하지 않음 명시

- R.2. 공동체 정체성,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방식 : 유산이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 문화 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평가

<표 11> R.2 공동체 정체성,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방식

항목	설명
정체성 형성 기여	유산이 공동체의 자긍심, 소속감, 역사적 연속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세대·지역 간 연계성	유산 실천을 통해 세대 간 지식 전수, 지역 간 연대·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유산이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창조적 변형·응용 가능성 설명
상호 존중과 포용성	다른 공동체·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촉진한 사례
사회적 통합 기능	유산이 공동체 내 상호 신뢰, 협력,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방식
지속가능발전 기여	유산이 다음 측면에서 기여한 구체 사례: - 사회적: 교육, 청년/여성 참여, 공동체 회복력 - 경제적: 전통기술 기반의 생계활동, 공정관광 등 - 환경적: 생태지식,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 문화적: 문화권 보장, 표현의 자유 확대

- R.3 유산 보호를 위한 과거, 현재, 미래 조치 : 유산 보존을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호계획의 존재 여부 확인

<표 12> R.3 유산 보호를 위한 과거, 현재, 미래 조치

항목	설명
과거 및 현재의 보호 조치	교육 프로그램, 전승활동, 구술 채록, 워크숍, 축제, 전시, 학술연구 등 실천 사례
주체별 역할 분담	공동체, 정부, 민간, 연구기관 간 협력 구조 및 각자의 역할 기술
향후 보호 계획	향후 5~10년간의 보호 목표, 실행 로드맵, 교육·기록·전시 등 세부 계획
정책·재정 기반	보호활동을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 예산, 전담 인력 등 제도적 기반
공동체의 참여 방식	보호계획 수립 및 이행에서 공동체의 실질적·주도적 참여 방식 설명

- R.4 공동체의 자유롭고 사전 정보에 기반한 동의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 신청이 실천 공동체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검토

〈표 13〉 R.4 공동체의 자유롭고 사전 정보에 기반한 동의

항목	설명
참여 유도 방식	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회, 워크숍 등 진행 방식
신청서 준비 시 공동체의 실질적 역할	회의, 의견 수렴, 공동 문서 작성, 전통지식 제공 등 실질 참여 내용
동의 입증 자료	공동체 구성원(또는 대표)의 서면 동의서, 회의록, 선언문 등 증빙 문서
참여자의 대표성	동의 주체가 전체 공동체를 적절히 대표하는지에 대한 설명 및 명단 제시
등재 이후 참여계획	공동체가 향후 유산 보호·활용·평가·감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구조 기술

- R.5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현황 : 해당 유산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호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확인

〈표 14〉 R.5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현황

항목	설명
국가 목록 명칭 및 관리 기관	유산이 수록된 공식 국가 목록의 명칭 및 이를 관리하는 정부기관 이름
등재 근거 문서	유산의 국가 목록 등재를 입증하는 공고문, 지정서, 법률 문서 등
보호 조치 이행 실적	국가 등재 이후 실제로 시행된 전수, 기록, 정책적 지원 등 구체 사례
목록의 갱신 체계	목록이 주기적으로 검토·갱신되는 절차 존재 여부와 그 운영 방식
공식 플랫폼	국가 차원의 무형유산 데이터베이스 및 유산 소개 웹사이트 주소 (URL 포함)

- 등재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공통)

〈표 15〉 등재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공통)

항목	설명
공동체 중심 서술	유산의 실천 주체인 공동체의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정부는 지원자 역할로 제한
구체적이고 사례 기반	이론적 설명이 아닌, 실제 실행 사례와 맥락 중심으로 서술
항목 간 일관성 유지	R.1~R.5 간 논리적 흐름과 정보의 일관성 확보 (예: R.2와 R.4의 공동체 정보 동일해야 함)
유네스코 용어 기준 사용	‘전승’, ‘보호조치’, ‘공동체’, ‘참여’, ‘포용성’, ‘지속가능성’ 등 공인 용어 일관성 유지
협약 핵심 가치 반영	참여성 (Participation), 다양성 (Diversity),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반영 강조

○ 효과적인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운영지침 활용

무형유산협약 운영지침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세부적인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0차

총회에서 개정된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각 장과 주요 항목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6〉 무형문화유산협약 운영지침 구성

구 분	세부항목
제1장 국제적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협력 및 국제원조	I.1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기준 I.2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 I.3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선정 기준 I.4 국제원조 요청 자격 및 선정 기준 I.5 공동등재 신청 I.6 등재확장 또는 축소 등재 I.7 신청서의 제출 I.8 신청서의 평가 I.9 극도로 긴급한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 I.10 위원회의 신청서 검토 I.11 목록 간 종목 이관 또는 목록에서의 종목 삭제 I.12 등재 유산 명칭 변경 I.13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선정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I.14 국제원조 I.15 일정 - 절차 개요 I.16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포 유산의 대표목록 통합
제2장 무형문화유산 기금	II.1 기금 자원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II.2 무형문화유산 기금 자원 증대 수단 II.2.1 기부자 II.2.2 조건 II.2.3 기부자 혜택
제3장 협약 이행에의 참여	III.1 공동체, 단체, 해당될 경우 개인 및 전문가, 전문단체, 연구소의 참여 III.2 비정부기구와 협약 III.2.1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정부기구 참여 III.2.2 비정부기구 인가의 기준
제4장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엠블럼의 사용	IV.1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IV.1.1 총칙 IV.1.2 현지 공동체 및 국가적 차원 IV.1.3 국제적 차원 IV.2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엠블럼의 사용 IV.2.1 정의 IV.2.2 유네스코 로고 및 협약 엠블럼 사용에 적용되는 개별 규정 IV.2.3 사용권 IV.2.4 승인 IV.2.5 후원 목적을 위한 엠블럼 사용의 기준과 조건 IV.2.6 상업적 이용 및 계약상 합의 IV.2.7 그래픽 표준 IV.2.8 보호
제5장 위원회 보고	V.1 협약 이행에 관한 당사국 보고서 V.2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유산에 대한 당사국 보고서 V.3 보고서의 접수 및 처리 V.4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유산을 보유한 협약 비당사국 보고서

구분	세부항목
제6장 국가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VI.1 포용적 사회 발전 VI.1.1 식량안보 VI.1.2 보건의료 VI.1.3 양질의 교육 VI.1.4 성평등 VI.1.5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 가능한 물 이용 VI.2 포용적 경제 발전 VI.2.1 소득 창출 및 생계 유지 VI.2.2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VI.2.3 무형유산 보호와 관광의 상호 영향 VI.3 환경 지속가능성 VI.3.1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VI.3.2 무형유산 보호에서의 환경적 영향 VI.3.3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체 회복 탄력성 VI.4 무형유산과 평화 VI.4.1 사회적 결속과 공정성 VI.4.2 분쟁의 예방 및 해결 VI.4.3 평화와 안보 회복 VI.4.4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항목은, 무형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장 ‘국제적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력 및 국제원조’ 중 제2항인 ‘대표목록 등재기준’이다. 대표목록 등재 신청 시에는 이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그 중 특히 ‘R.2’ 항목에 주목해야 한다. R.2는 해당 유산이 가치성을 확보하고, 중요성 인식 제고 및 국제적 대화 증진에 기여하며, 세계 문화 다양성 반영과 인류 창의성의 증명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한다.

최근 R.2 기준에는 ‘지속가능발전’ 요소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임기인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의 개혁 과제인 ‘전략적 전환(strategic transformation)’ 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2017년 11월 첫 임기를 시작한 이래, 유네스코 업무와 신흥 글로벌 위기 사이의 간극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폭력과 분쟁, 테러, 세계 공중보건 위기 등 다양한 신흥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Agenda 2030)를 적극 수용하여 2022~2029년 중기전략에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평가기준 중 R.2 항목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2021년 제16차 정부간 위원회에서는 관련 워킹그룹의 권고사항이 논의되었고, 2022년 제9차 유네스코 총회(9GA)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이 개정은 무형유산 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긴밀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협약의 방향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조치였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관련 요소로는 식량안보(Food security), 보건(Health care),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성평등(Gender equality), 포용적 경제발전(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cluding climate change), 평화와 사회 응집력(Peace and social cohesion)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무형유산협약 운영지침 제6장 ‘국가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과 내용상 거의 일치하므로, 해당 지침을 참고하여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등재전략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나) 등재 절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기구(Evaluation Body)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간 위원회에 제출한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평가보고서와 요약본을 포함한 모든 등재신청서,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활동 제안서, 그리고 국제원조 요청서들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전달한다. 또한, 등재신청서와 평가보고서는 협약 당사국에게 공개되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 위원회의 신청서 검토

위원회는 가용 자원과 역량을 고려하여, 향후 두 사이클(4년) 동안 처리할 신청서 총량을 2년 전에 60건 이하로 제한한다. 이 한도는 긴급보호목록

등재(Inscription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및 대표목록 등재(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신청서, 그리고 보호모범사례 등록(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19) 신청서에 모두 적용된다.

위원회는 이 한도 내에서 신청국별로 최소 한 건의 신청서가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검토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만약 한 국가가 동일 사이클에 다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시 검토 우선순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때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 (0) 직전 사이클에 검토된 건이 없는 국가에서 제출한 신청서
- (i) 대표목록 등재, 보호모범사례 등록 건이 없는 국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
- (ii) 공동등재신청서
- (iii) 대표목록 등재, 보호모범사례 등록 건이 해당 사이클의 다른 신청국과 비교해 가장 적은 국가에서 제출한 신청서

<표 17>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검토 우선 순위

순위	등재 기준
0	직전 사이클에서 미 검토된 국가의 제출 신청서
1	대표목록 등의 등재 건 없는 국가의 제출 신청서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
2	공동 등재 신청서
3	해당 사이클의 다른 신청국과 비교해 가장 적은 국가의 제출 신청서

### ○ 신청서 검토 후 결정 사항

- 긴급보호목록 또는 대표목록에 등재 신청한 종목의 등재 여부 혹은 제출국에 정보 보완 요청
- 보호모범사례 등록 여부 혹은 제출국에 정보보완 요청
-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와 동시에 제출된 국제원조 및 대표목록 등재

19) 이 세 가지는 각각 긴급보호목록 등재(Inscription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대표목록 등재(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보호모범사례 등록(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보호모범사례는 '등재'가 아니라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제적인 프로그램 채택 행위에 중점을 두어 사용되고 있는 '선정(Selection)'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Selection for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종목의 긴급보호목록으로의 이관 신청 맥락에서 제출된 국제원조 승인 여부  
 혹은 제출국에 정보보완 요청

○ 등재 일정-절차 개요(운영지침 제1장 제15호)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의 등재 일정은 운영지침 제1장 제15호에 정  
 리되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표로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표 18>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일정(절차) 요약

구분	시기		내용
1단계 준비 및 제출	0년차	3.31.	준비 지원 신청 마감 기일
		12.15.	긴급보호목록에서 대표목록으로의 종목 이관 신청서 마감 기일
	1년차	3.31.	긴급보호목록, 대표목록 등 등재신청서의 사무국 접수 마감 기일
		6.30.	사무국은 신청서 접수사실 통보 및 미흡한 신청서 보완 권고
		9.30.	보완 권고 당사국은 추가 정보 보완 제출
	2년차	1.31.	대표목록에서 긴급보호목록으로의 종목 이관신청서 제출 마감 기일
2단계 평가	1년차 2년차	12월 ~	평가기구 구성원들에 의한 개별 신청서 평가
		5월	
	2년차	6월	평가기구가 모여 신청서 평가 확정. 대화프로세스 대상 신청서는 평가기구 최종 회의 때까지 그 결정 보류
		6월 회의 개최+2주 후	평가기구가 사무국을 통해 대화 프로세스 대상이 되는 등재 신청 당사국에 협약의 공식 언어인 영어와 불어로 질문 전달하는 기한
		9월까지	평가기구가 대화 프로세스를 진행한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포 함해 모든 신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회의 개최
	위원회 회기 개시-4주 전	4주전 사무국은 평가보고서를 위원국에 전달하고, 온라 인에 공개	
3단계 검토	2년차	11월(또는 12월)	위원회는 등재 신청서와 제안서, 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결정

○ 국내 신청과정을 포함한 등재 절차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당사국의 준비 단계부터 위원회의 최종 등재 결정에  
 이르기까지 최소 4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이는 당사국이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조치와 준비를 철저히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등재까지 훨씬 더 장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는 국내 신청 절차와 함께 앞서 설명한 유네스코 등재 절차의  
 개요를 포함한 전체 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표 19〉 국내신청과정을 포함한 등재 일정(절차) 요약

단계	신청주체	절차 및 내용
0단계 국내신청	민간단체	① 신청서 작성(국문) 국내 신청서+사진+공동체 등 동의서 ② 국가유산청에 유네스코 등재 후보 신청 ③ 무형유산위원회 합동분과(무형+세계유산분과) 심의 및 선정 ④ 국가유산청 최종 선정 결정
1단계 유네스코 신청준비	국가유산청 민간단체	① 신청서 작성(영문) ② 동영상 제작(10분) ③ 동영상 제작(SDGs 증명-시간제한 없음) ④ 심포지엄 및 행사 개최 등 분위기 조성 - 공동체 등 참여 독려, 등재 종목의 주제 및 방향성 등 정리 *단계에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직
2단계 유네스코 신청	국가유산청	① 신청서 파일 제출-2년에 한번(3월) ② 유네스코(사무국) 협의 ③ 유네스코(사무국) 보완권고 시 수정제출 - 보완권고(6.30.), 수정제출(9.30.)
3단계 유네스코 평가	-	① 평가기구(구성원들 개별) 신청서 평가 (12월~다음해 5월) ② 평가기구(합동) 신청서 평가 확정(6월) - 대화프로세스 대상은 추가 절차 진행 ③ 대화프로세스 대상 포함 평가결과 확정 회의 개최(9월) ④ 유네스코(사무국)는 평가보고서를 위원국에 전달하고, 온라인 공개 (위원회 회기 개시 4주전)
4단계 검토·결정	-	① 위원회(11월 또는 12월)에서 등재 결정 - 등재 신청서와 제안서, 요청서 검토 후 결정 ② 위원회 현장 감사 연설(국가유산청장)

위 표에서 ‘0단계 국내신청’ 과 관련된 절차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국가유산청의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등에 관한 규정(2024.3.19.)」에 따르면, 대상 무형유산은 먼저 ‘국가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이후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에 선정되어야 한다. 옷놀이는 202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이미 ‘국가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진행하면 된다.

### ① 국가목록 종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 중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의 무형유산 목록

-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시·도무형유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 예비목록

② 예비목록 정의·조사·선정

-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유산 중에서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유산 목록
- 조사 : 국가유산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유산을 조사할 수 있음
- 선정 :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음

③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함

<표 20>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후보목록 선정 내용 및 과정

구 분		내 용
국가목록	종류	① 국가무형유산
		② 시·도무형유산
		③ 예비목록
예비목록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유산 중에서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유산 목록
	조사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유산을 조사할 수 있음(국가유산청장)
	선정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 선정할 수 있음 (국가유산청장)
등재신청 목록	선정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함 (국가유산청장)

## 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사 최근 동향

제19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부간 위원회 결정사항 및 대표목록 등의 등재심사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9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2024년~2025년 및 2026년~2027년 심사한도와 심사 우선순위 등에 관한 주요 결정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의제 배경부터 결정사항 초안까지의 요약이다.

### (1) 의제 배경

㉠ 2018년~2022년 협약 목록 메커니즘 국제적 성찰을 바탕으로, 심사한도와 우선순위 기준이 협약 운영지침 33·34단락에 명시되어 2022년 6월 제9차 총회에서 최종 개정됨

#### ㉡ 주요 내용:

- 심사한도: 각 2년 주기 최대 60건 이내로 심사 신청서 수를 사전 결정
- 우선순위 적용:

우선순위 (0) - 직전 사이클에 검토된 건이 없는 국가에서 제출한 신청서  
우선순위 (i) - 대표목록 등재, 보호모범사례 등록 건이 없는 국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  
우선순위 (ii) - 공동등재신청서  
우선순위 (iii) - 대표목록 등재, 보호모범사례 등록 건이 해당 사이클의 다른 신청국과 비교해 가장 적은 국가에서 제출한 신청서  
신청국이 동일 사이클에 여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검토 우선순위를 명시해야 하며, 이 경우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청한다.

### (2) 과거 주기에 대한 보고

#### ㉢ 2024년-2025년 주기 특징

- 2018~2022년 국제 성찰 결과가 전면 반영된 첫 주기
- 등재, 제안, 요청 양식 개편 및 보호모범사례 기준 수정 등 절차 개선
- 목록 간 이동 및 확장/축소 등 신설 절차 도입
- 국제원조 심사 업무 분담 조정

〈표 21〉 무형유산협약 관련 2024년~2025년 주기 주요 변화

구분	주요 내용
양식 개편	등재, 제안, 요청용 양식이 개정·단순화·신설됨
기준 수정	보호 모범사례에 대한 등재 기준이 변경됨
절차 신설	목록 간 종목 이동, 확장/축소, 삭제 및 후속 조치 절차 도입
역할 조정	국제원조 심사에서 위원회와 사무국 간 업무분담이 조정됨

㉠ 2024년 주기 심사 현황

- 2023년 접수: 74건
- 심사 완료: 71건(정상 61건 + 초과 10건)
- 우선순위 (0), (i), (ii), (iii) 모두 포함, 일부 국가 신청서 우선순위로 미처리됨
- 초과 심사: 대표목록 확장 6건, 긴급보호목록 → 대표목록 이동 4건

㉡ 2025년 주기 심사 현황(예정)

- 신규 접수 120건, 백로그 22건 포함 총 142건
- 예정 심사: 69건(정상 60건 + 초과 9건)
- 공동등재 신청서 18건 중 13건 미처리, 우선순위 (ii) 신청서 많음
- 등재 종목 보유국 25개국 신청서(우선순위 iii) 미처리, 다음 주기 우선 고려 예정

㉢ 최근 동향

최근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9개국, 즉 전체 당사국의 약 65%가 신청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제출된 신청서의 총 수는 140건에 달한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동등재 신청서가 85건으로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보

이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존재합니다. 일부 지역은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사 가능한 건수의 한계를 초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신청국 119개국(전체 당사국 65%) 참여, 총 140건 신청서
- 지역 균형 및 참여 증가
- 공동등재 신청서 85건(12%) 존재, 증가 추세이나 지역별 불균형 지속
- 우선순위 충돌 및 심사한도 초과 문제 지속 발생

〈표 2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심사 최근 동향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등재신청서 처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국: 119개국 (전체 당사국의 65%)</li> <li>■ 총 신청서: 140건</li> <li>■ 철회된 신청서: 5건 (완전성 점검 중 철회)</li> <li>■ 일부 신청서는 연간 심사한도 초과로 처리 지연</li> <li>■ 연간 심사한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신청서가 2년 주기에 걸쳐 처리됨</li> </ul>
지역 분포 및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간 균형 잡힌 신청서 분포 달성</li> <li>■ 전 지역에서 무형유산 등재 역량 및 참여 증가</li> </ul>
공동등재 신청서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등재: 전체 730건 중 85건(12%)</li> <li>→ 2020년 이후 등재 44건, 꾸준한 증가 추세</li> <li>■ 지역 간 공동등재 참여 불균형 지속</li> <li>■ 그룹별 공동등재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 I: 37건 / 그룹 II: 33건 / 그룹 III: 9건</li> <li>- 그룹 IV: 24건 / 그룹 Va: 8건 / 그룹 Vb: 18건</li> </ul> </li> <li>■ 일부 국가는 공동등재에 과도하게 참여 (최대 13건 보유)</li> </ul>
우선순위 충돌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등재 증가로 우선순위 (ii) 신청서가 (0), (i) 신청서에 밀려 심사 지연</li> <li>■ 향후 심사 주기에 백로그 누적 가능성 우려</li> </ul>

#### (나) 2026-27년 주기 제안

##### ① 기본 방향 및 심사 한도

- 운영지침 33·34단락 및 이전 위원회 결정에 기반
- 매 주기 최대 60건 등재신청서 심사 가능

- 우선순위 (0) 신청서는 반드시 포함

## ② 공동등재 신청서 우선순위 기준 (60건 초과 시)

- 이전 주기에서 심사되지 못한 공동등재 신청서
- 등재 종목이 전무한 국가가 1개 이상 포함된 공동등재 신청서  
단, 해당 주기에 별도 단독 신청이 없을 경우
- 등재 종목 수가 가장 적은 국가에서 제출한 공동등재 신청서
- 공동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우선 처리 희망 신청서 선택 가능

## ③ 공동등재 신청서 심사 효율화 방안

- 당사국이 공동등재 신청서에 우선순위 (0) 표기 고려 권장
- 2025년 미처리 공동등재 신청서는 2026년에 포함 권고
- 복수 공동등재 제출 국가는 1건 선택 요청 가능

## ④ 연간 심사한도 초과 처리 대상 (계속 허용)

- 대표목록 ↔ 긴급보호목록 종목 이동 신청 (지침 54단락)
- 목록 이동에 따른 보호모범사례 등록 신청 (지침 39.3단락)
- 등재 종목 후속조치 관련 신청 (지침 40.2, 40.3단락)
- 목록 확장/축소 신청 (시범적 적용 포함)

## ⑤ 예상 심사 건수 및 행정 부담

- 026-27년 주기 예상 심사 건수: 연간 약 80건
- 2022-23년 대비 약 34% 증가
- 위원회 · 사무국 · 심사기구의 업무량 증가 예상

## ⑥ 보호모범사례 등록 활성화 필요성

- 2024-25년 주기 보호모범사례 등록은 전체의 3%에 불과
- 최근 국제 성찰을 바탕으로 접근성 개선 및 가시성 제고 조치 시행 중
- 위원회는 제출 장려,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별도 할당량 도입 등 추가 장려 방안 논의 가능

(다) 결정사항 초안 (DRAFT DECISION 19.COM 15)

① 보고 내용 확인 및 배경 정리

■ 위원회는 제19차 사무국 보고서와 기존 결정사항 (제17차 위원회, 총회 결의 등)을 검토함.

· 2024년 주기: 신청서 71건 (정상 61건 + 초과 10건)

· 2025년 주기: 신청서 69건 예정 (정상 60건 + 초과 9건)

② 2026-27년 심사 한도 설정

■ 한 주기당 심사할 신청서 수를 최대 60건으로 제한함.

■ 등재신청서 뿐만 아니라 보호 프로그램이나 활동 제안서도 포함됨

③ 심사 시 지역 균형 고려

■ 신청서가 같은 우선순위에 속하면 지역 안배를 위해 일정한 유연성을 부여함

■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목록의 균형성과 실효성을 높임

· 보호 성공 사례를 모범사례 목록에 포함 가능

· 등재기준을 간소화

· 국제지원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 강화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범 사례 공유

④ 공동등재 신청서 우선순위 기준

■ 공동등재 신청서가 많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 처리

· 이전 주기에 미처리된 신청서

· 등재 종목이 없는 국가가 참여한 경우

· 등재 종목이 가장 적은 국가가 주도한 경우

※ 복수 신청 시, 당사국은 우선 심사 희망 건을 선택 가능

⑤ 공동등재 제출 시 유의사항

■ 공동등재 신청서를 여러 개 제출한 국가는 심사한도에 맞춰 1건만 선택해야 함

■ 2025년에 처리되지 못한 공동등재 신청서는 2026년 주기에 자동 포함됨

■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동등재 다중 제출 자제 권고

⑥ 심사한도 초과 시에도 처리되는 사례

- 다음 신청 유형은 심사한도와 무관하게 계속 심사:
- 목록 간 이동 (긴급 → 대표목록 등)
- 이동 후 보호 성공사례 → 모범사례로 등재
- 종목의 확장 또는 축소
- 등재 후 후속조치 필요 사례

⑦ 보호모범사례 활성화

- 모범사례 신청이 여전히 적음 → 활성화 필요
- 당사국에 신청서 제출 권장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신청 촉진
- 향후 동향 지속 모니터링 예정

⑧ 향후 보고 요청

- 2026년 제21차 위원회에서 다음 항목 보고 요청
  - 신청서 수와 내용 분석
  - 무형유산의 대표성 확보 현황
  - 지속가능발전과 성평등 반영 여부
  - 공동등재 및 모범사례 신청 실적
  - 한도 초과 신청 처리의 운영 경험 등

## 마. 최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동향 시사점

최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등재 추진 방향이 요구된다.

최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동향을 보면, 등재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청서의 완성도와 제출 일정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동등재가 활발해지면서 유네스코는 심사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다양성과 국제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 제도 변화와 공동등재 증가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고 백로그가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등재 절차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간 등재 역량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보호모범사례 등록이 저조한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분야의 전략적 활용과 지역 간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이러한 동향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등재의 질적 관리와 함께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균형 잡힌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① 등재 경쟁 심화 및 신청서 완성도 관리 필요성

현재까지 전체 당사국의 약 65%에 해당하는 119개국이 등재 신청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청서 수는 140건에 달한다. 반면 유네스코는 연간 심사 건수를 60건으로 제한하고 있어, 매년 이를 초과하는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6~2027년에는 연간 약 80건이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가기구와 사무국의 행정 부담이 약 3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신청서는 완전성 점검 단계에서 철회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준비 부족과 서류 완성도의 문제를 시사한다.

#### ② 공동등재의 확대와 제도적 유연성 증가

공동등재는 전체 등재 건수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44건이 등재될 정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동등재의 활성화에 따라 유네스코는, 우선순위 (0) 지정 허용, 복수 공동등재 신청 시 1건 선택 권고 등 심사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목록 간 이동, 확장 또는 축소, 후속조치 등 일부 심사 유형은 심사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계속 심사되는 등, 등재 절차 전반의 융통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공동등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며, 문화다양성과 국제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③ 우선순위 충돌과 백로그 누적 가능성

공동등재 증가와 우선순위 지정 제도의 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인 (ii) 유형의 신청서가 (0), (i) 유형에 밀려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사되지 못한 신청서가 다음 주기로 이월되며 백로그(미처리 신청서 누적)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백로그 누적은 차후 등재 일정 전반의 비효율성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 ④ 지역 간 불균형 지속 및 보호모범사례 활용 저조

공동등재 참여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룹 I(서유럽 등 37건), 그룹 II(동유럽 33건)에 집중된 반면, 그룹 III(라틴아메리카 9건), 그룹 Va(아프리카 8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무형유산 등재 역량의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아울러, 보호모범사례 목록 신청은 전체의 약 3%에 불과할 만큼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보호모범사례 등록은 비교적 경쟁이 적고, 무형유산 보호 정책의 모범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창구로 활용 가능하므로, 향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⑤ 전략적 대응 방향

이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등재 실적이 낮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등재 추진으로 등재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이는 국제협력 이미지 강화와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둘째, 공동등재 시 ‘우선순위 (0)’ 지정 등을 사전 조율함으로써 심사 순위를 확보하고, 복수 공동등재가 제출될 경우 1건을 선택하도록 조정하여 심사한도 초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보호모범사례로 등재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협력 기반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넷째, 신청서 제출 전 사무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제출 일정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심사 누락이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보호모범사례 공유, 성평등·지속가능발전 등 국제 의제 반영 등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23〉 최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동향의 시사점 및 전략

구분	주요 내용	대응 전략
등재 경쟁 심화	신청국 119개국, 신청서 140건, 행정 부담 증가	신청서 완성도 제고, 조기 제출 및 일정 관리
공동등재 확대	공동등재 85건(12%), 제도 유연화 추세	전략적 공동등재 추진, 사전 우선순위 조율
백로그 누적 우려	우선순위 충돌로 일부 신청서 이월	신청서 우선순위 관리, 심사 백로그 모니터링
지역 불균형 및 모범사례 저조	그룹 I·II 중심, 3% 수준	저등재국 협력 강화, 모범사례 적극 발굴
국제 의제 반영 필요	지속가능발전, 성평등 등 반영 필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국제 기준 반영 신청서 구성

## 2. 인류무형문화유산 놀이문화 관련 영역 사례 분석

### 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무형유산 정의에 대한 관점

무형유산의 정의는, 국제법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대한민국 국내법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각각 규정되고 있다.

먼저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은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으로, 대한민국 무형유산법은 ‘무형유산(Intangible Heritage)’으로 표기하여 ‘Cultural’에서 일부 차이는 나지만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

두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 무형유산을 인간의 창의성과 정체성이 담긴 문화적 표현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정의의 구성 방식과 분류체계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은 무형유산의 정의를 ‘정의’, ‘특성’, ‘분야(영역)’의 세 요소로 구분<sup>20</sup>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무형유산은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이 전통적으로 전승하고 현재도 살아 있는 문화적 실천으로 규정되며, 대표적으로 구전 전통,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 자연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전통공예 기술 등의 다섯 개 분야를 제시한다.

반면, 한국 무형유산법은 무형유산을 “세대를 거쳐 공동체·집단 또는 개인이 전승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의의 항목에 ‘특성’을 간단히 언급한 뒤 곧바로 전체 개념을 묶어 서술하고 있다. 다만 분야 구분에서는 무형유산협약보다 훨씬 세분화된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

20) 무형유산협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어놓지는 않았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자가 편의상 나누어놓은 구분이다. 다음 표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해놓았다.

〈표 24〉 무형유산협약과 한국 무형유산법상 ‘무형유산’의 정의

구분	무형유산협약	무형유산법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제3조)</li> </ul>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 간 전승</li> <li>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li> <li>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으로 증진</li> </ul>	
분야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li> <li>공연 예술</li> <li>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li> <li>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li> <li>전통 공예 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적 공연·예술</li> <li>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li> <li>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li> <li>구전 전통 및 표현</li> <li>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li> <li>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li> <li>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li> </ul>

이러한 차이는 제도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2016년 2월 3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후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진흥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같은 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무형 분야는 외형상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괄하는 모법(母法)인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2023.5.16.)된 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 중심의 명칭에서 벗어나 ‘유산’ 개념을 포괄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2024.5.17.)됨에 따라, 국내법상 용어도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전환되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위 표의 ‘분야(영역)’에서 읽을 수 있다. 순서상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등의 두 가지가 가장 앞쪽에 등장하는데, 이는 무형유산법의 전신(前身)인 「문화재보호

법」 시기부터 오랫동안 축적된 기·예능 위주의 분류체계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다시 말하면, 유네스코 분류를 반영하면서도 국내 문화유산 행정의 특수성과 실무적 필요에 맞춘 구체화된 분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무형유산 개념은,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의 기준을 수용하면서도 기존 문화재 행정 체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형유산의 국제적 기준과 국내 정책 실행 간의 조화를 모색한 입법적 조치로 평가된다.

## 나. 인류무형문화유산 ‘전통놀이’ 분류

무형유산협약에서는, 무형유산의 분야를 ‘구전 전통,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행, 전통공예 기술’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윷놀이와 같은 전통놀이는, 이 중 ‘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 분야에 해당되며, 특히 그 하위 개념인 ‘사회적 관습(Social practices)’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범주는 공동체의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상호작용, 의사소통, 공동체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문화적 실천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윷놀이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윷놀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무형유산법상의 ‘전통놀이’ 분류를 중심으로 유사한 성격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들을 찾아보았다. 이는 국제적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윷놀이의 보편적 가치와 독자적 특성을 동시에 조명하고, 향후 등재 추진 시 전략적 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5>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전통적 놀이’ 종목 현황<sup>21)</sup>

종목 (14종목)	등재연도	국가	목록유형	SDGs
펠레반리크 문화: 전통 조르카나 게임, 스포츠, 레슬링	2022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3,4
토카티, 전통 게임과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	2022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이탈리아	모범사례	3,4,16,17

종목 (14종목)	등재연도	국가	목록유형	SDGs
나무르 죽마 시합	2021	벨기에	대표목록	4,5,16
유목민 놀이들, 유산의 재발견과 다양성의 찬예	2021	키르기스스탄	모범사례	3,4,16,17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의 전통적인 지능 전략 게임: 토기즈쿠말락/코구즈 코르굴/망갈라(괴취르메)	2020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대표목록	4,16,17
헐링	2018	아일랜드	대표목록	3,5,16
씨름, 대한민국의 전통 레슬링	2018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목록	3,4,16,17
초건, 음악과 스토리텔링이 있는 승마 경기	2017	이란	대표목록	3,15,16
콧보루(Kok boru), 전통 승마 경기	2017	키르기스스탄	대표목록	3,15,16
아식 놀이, 카자흐의 전통 놀이	2017	카자흐스탄	대표목록	4,12,10
줄다리기	2015	대한민국,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대표목록	2,16,17
몽골족의 샤가이 쓰아 맞추기	2014	몽골	대표목록	4,8,16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전통 카라바흐 승마 게임인 초브칸	2013	아제르바이잔	긴급보호	3,15,16
‘놀이다양성’ 진흥 프로그램:플랑드르 지역의 전통 놀이 보호	2011	벨기에	모범사례	3,16

무형유산법 상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는, 국가무형유산 전체 162종목 중 강릉단오제 등 14종목(약 8.6%)에 해당하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전통놀이’로 분류되는 종목은 안동차전놀이 등 총 8종목(4.9%)에 불과하다. 이는 ‘전통놀이’ 분야가 국가무형유산 체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14종목 가운데 6종목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으며, 그 중 ‘전통놀이’로 분류되어 유네스코에 등재된 종목은 줄다리기와 씨름 두 종목에 불과하다. 특히 줄다리기는 대한민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4개국이 공동으로 등재한 사례로, 공동등재를 통해 국제적 가시성과 문화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한 무형유산이다.

한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줄다리기는 국내적으로도 세부 목록이 존재한다. 국가무형유산으로는 영산줄다리기와 기지시줄다리기

21) 이 표에는 전통적 놀이만 들어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분류상 전통적 놀이뿐만 아니라,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 종목들 모두 정리하여 보고서 뒷부분 [부록]에 표로 정리해두었다.

2종목이 포함되며, 시도지정무형유산으로는 삼척기줄다리기, 감내계줄당기기, 의령큰줄맹기기, 남해선구줄끗기 등 4종목이 해당된다. 이를 종합하면 줄다리기와 관련된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은 총 6종목에 이른다.<sup>22)</sup>

웃놀이는 2022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놀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늦은 시기에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웃놀이는 무형유산법 상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 중 '전통놀이'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황은 전통놀이가 민속적 뿌리와 문화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 제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웃놀이와 같은 대표적 전통놀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전·진흥 및 국제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표 26> 국가무형유산 중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 종목

연번	종목명	지정연도	분류	인류무형유산 등재
1	강릉단오제	1967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축제	○
2	안동차전놀이	1969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3	영산쇠머리대기	1969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4	영산줄다리기	1969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 (줄다리로 공동등재)
5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	1970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6	경산자인단오제	1971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축제	
7	밀양백중놀이	1980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8	기지사줄다리기	1982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 (줄다리로 공동등재)
9	택견	1983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무예'	○
10	연등회	2012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축제	○
11	법성포단오제	2012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축제	
12	씨름	2018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
13	활쏘기	2020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무예	
14	웃놀이	2022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22)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줄다리기는 대한민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4개국 공동등재 종목이다. 대한민국의 세부목록은,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줄다리기, 기지사줄다리기 등 2종목과 시도지정무형유산인 삼척기줄다리기, 감내계줄당기기, 의령큰줄맹기기, 남해선구줄끗기 등 4종목 등 총6종목의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윷놀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전통놀이'로 분류된다. 이는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온 놀이문화로서, 민속성과 공동체적 가치가 두드러진 무형유산의 한 유형이다.

## 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전통놀이' 종목 특징

### (1) 유네스코 '전통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재 종목의 특징

대한민국 무형유산법 체계 상의 '전통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에 해당할 수 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보관리시스템(UNESCO ICH -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tabase)에서 추출하였다. 그 결과 놀이 14종목, 축제 99종목, 기예 4종목, 무예 8종목 등 총 125종목이 확인되었다. 본문에는 '전통놀이'에 해당되는 등재 유산들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부록에 표로 정리해 놓았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전통놀이'는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레슬링, 벨기에의 죽마 시합, 남북한의 씨름, 한국·캄보디아·필리핀·베트남의 줄다리기, 몽골의 샤가이 쏘아맞추기, 아일랜드의 혈링, 이란과 키르기스스탄의 승마 경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연대, 문화 간 교류, 도덕적 가치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인 건강, 교육, 평화, 국제 협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표 27> 인류무형문화유산 '전통놀이' 관련 종목 특징

종 목	등재 연도	국가	목록 유형	개념(Concepts)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펠레반리크 문화: 전통 나 츠, 레슬링	2022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서사시, 게임, 수공예, 기악, 군사 교육, 도덕적 가치관, 음악, 교육, 체육 대회, 체육 대회, 막대기, 전통 도구, 무기, 레슬링	SDG3 건강과 웰빙 SDG4 양질의 교육

23) 혈링, 몽골족의 샤가이 쏘아맞추기, 나무르 죽마시합은 작성자 기준으로 볼 때, 놀이로 해석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표에 추가하였다.

종 목	등재 연도	국가	목록 유형	개념(Concepts)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토카티, 전통 게임과 스포츠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	2022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이탈리아	모범사례	아카이브 기록, 축제, 게임, 수공예품, 문화 간 대화, 소창품(재고), 여가 및 교육, 도덕적 가치, 박물관, 비영리 정부 기구, 주기적 장소, 사회적 포용, 워크숍 (교육 방법)	SDG3 건강과 웰빙
					SDG4 양질의 교육
					SDG16 평화·정의·포용
					SDG17 지구촌 협력 강화
나무르 죽마 시합	2021	벨기에	대표목록	의상,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게임, 사교 모임, 스포츠 대회, 도시 공간	SDG4 양질의 교육
					SDG5 성평등 보장
					SD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유목민 놀이들, 유산의 재발견과 다양성의 참여	2021	키르기스스탄	모범사례	양궁, 시합, 대회, 문화 전시, 탈식민화, 교육, 게임, 오락, 승마, 게임, 축제, 게임, 수공예, 국제 협력, 유목, 공예, 민주적, 비형식 교육, 체육, 스포츠, 레슬링	SDG3 건강과 웰빙
					SDG4 양질의 교육
					SDG16 평화·정의·포용
					SDG17 지구촌 협력 강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의 전통적인 지능 전략 게임: 투기즈쿠말락/코구즈 코트쿨/앙갈라(괴취르메)	2020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키예	대표목록	대수학, 도제, 동아리, 시합, 창의성, 공식 교육, 게임, 수공예, 지능, 정신 발달, 도덕적 가치, 비형식 교육, 사회적 포용	SDG4 양질의 교육
					SCD9 혁신과 인프라
					SDG16 평화·정의·포용
					SDG17 지구촌 협력 강화
혈링	2018	아일랜드	대표목록	게임, 가족, 신화, 스포츠 대회, 막대기, 재능	SDG3 건강과 웰빙
					SDG5 성평등 보장
					SDG16 평화·정의·포용
씨름, 대한민국의 전통 레슬링	2018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목록	농업 의식, 게임, 명절, 체육, 체육 대회, 재능, 레슬링	SDG3 건강과 웰빙
					SDG4 양질의 교육
					SDG16 평화·정의·포용
					SDG17 지구촌 협력 강화
초견 음악과 스토리텔링이 있는 승마 경기	2017	이란	대표목록	춤, 서사시, 승마 게임, 잔치, 민속 문학 수공예, 기악, 공연 예술, 이야기하기	SDG3 건강과 웰빙
					SDG15 육상 생태계
					SDG16 평화·정의·포용
콧보루 (Kokboru), 전통 승마 경기	2017	키르기스스탄	대표목록	운동선수, 승마 경기, 게임, 체육, 스포츠 경기	SDG3 건강과 웰빙
					SDG15 육상 생태계
					SDG16 평화·정의·포용
아식 놀이, 카자흐의 전통 놀이	2017	카자흐스탄	대표목록	콘테스트, 교육 게임, 잔치, 게임, 천연료, 비형식 교육	SDG4 양질의 교육
					SDG10 불평등 완화
					SDG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줄다리기	2015	대한민국,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대표목록	농업 의식, 음료, 농업, 부, 게임, 성별, 분업, 신화적 존재, 새해, 신념, 종교적 신념, 대	SDG2 식량안보 및 농업 강화
					SDG16 평화·정의·포용
					SDG17 지구촌 협력 강화

종 목	등재 연도	국가	목록 유형	개념(Concepts)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몽골족의 샤가이 쏘아 맞추기 <sup>23)</sup>	2014	몽골	대표목록	도제, 경연대회, 공예가, 점술, 윤리, 게임, 유목민, 의식, 전통 도구, 성악, 노동요	SDG4 양질의 교육
					SD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16 평화·정의·포용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전통 카라바흐 승마 게임인 초브칸	2013	아제르바이잔	긴급보호	의상, 승마 게임, 일상 생활, 모자, 악기 음악, 가족, 유목민, 스포츠 대회, 재능, 훈련	SDG3 건강과 웰빙
					SDG15 육상 생태계
					SDG16 평화·정의·포용
‘놀이 다양성’ 진흥 프로그램 : 플랑드르 지역의 전통 놀이 보호	2011	벨기에	모범사례	곡예, 지역 사회 활동, 문화 단체, 춤, 기록, 오락, 축제, 게임, 모둠식 교육, 비정부 기구, 공원, 놀이터, 연구, 보호 관행, 스포츠, 여성, 청소년	SDG3 건강과 웰빙
					SDG16 평화·정의·포용

## (2) 인류무형문화유산 ‘전통놀이’ 종목 특징의 핵심 분석

이들 ‘전통놀이’ 종목의 특징을, 유네스코 누리집(UNESCO ICH)에 근거해서, ‘개념(Concepts) 적 특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분석’, ‘생물 군계(Biome) 연계분석’ 등으로 나누어 핵심 분석하고자 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사무국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종목별로 개념(Concepts), 해당 종목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의 상관성 등을 분석하여 유네스코 누리집에 실어놓았다. 전통놀이에 해당되는 종목의 특징을 분석해보았다.

### (가) 개념(Concepts) 적 특징 분석

유네스코는 전통놀이를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 실천·교육적 매체·전통 지식의 전승 경로로 본다. 등재 사례를 보면, 전통놀이는 크게 다섯 가지 개념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지적 전략 놀이: 수학적 사고와 지능, 도덕성, 비형식 교육을 중시하는 망갈라 계열 놀이
- ② 신체 활동 중심 놀이: 줄다리기, 레슬링, 승마, 씨름, 혈링 등 힘과 기술을 강조하는 놀이
- ③ 문화·예술적 통합 놀이: 이야기, 음악, 공연, 잔치 등이 결합된 복합적 놀이
- ④ 공예·도구 활용형 놀이: 전통 도구나 수공예품을 활용하는 죽마 시합, 아식 놀이 등
- ⑤ 교육·사회 연계형 놀이: 공동체 활동과 비형식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형 놀이

〈표 28〉 인류무형문화유산 ‘전통적 놀이’ 개념적 특징

유형	대표 개념	종목 예시
지적 전략 놀이	지능, 수학적 사고, 도덕성, 비형식 교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의 전통적인 지능 전략 게임 ‘망갈라’ 계열 놀이: 토기즈 쿠말락/코구즈 코르굴/망갈라(괴취르메)
신체 활동 중심 놀이	레슬링, 전통적인 스포츠 또는 놀이	씨름, 혈링, 콕보루
문화·예술적 통합	서사시, 음악, 공연, 잔치, 의상 (놀이에 이야기, 음악 등 복합)	샤가이 쓰기, 초브칸
공예·도구 활용형	전통 도구, 가죽, 수공예, 장비	아식 놀이, 죽마 시합
교육·사회 연계형	공동체, 비형식 교육 강조	토카티 놀이, 플랑드르 전통놀이

이처럼 전통놀이는 문화다양성·교육적 가치·공동체 전승성을 아우르는 복합적 실천이며, 한국의 윷놀이 또한 이러한 다층적 속성을 지닌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 ○ 유네스코 등재 종목 분류 상 불일치

유네스코에 등재된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은 줄다리기와 씨름이다. 그러나 유네스코 누리집에서 ‘game’ 또는 ‘traditional games’ 로 검색 가능한 사례는 ‘줄다리기(Tugging rituals and games)’ 하나뿐이다. 씨름은 ‘game’ 등으로 검색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제르바이잔의 펠레반리크 문화는, ‘game’ 으로 검색된다. 씨름과 유사한 신체활동·놀이적 속성을 공유함에도 분류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나는 모순이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분류체계가 엄격한 기준보다는 등재 신청서에 기재된 개념, 서술 방식, 해석의 차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분류기준 자체의 일관성 부족뿐만 아니라, 등재 신청국이 제출하는 문서에서 해당 종목의 성격을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도 실제 분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등재신청서 작성 시 참고해야할 사항 중 하나로 보여진다.

####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분석

전통놀이는 단순한 문화적 오락이 아니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긴밀히 연결되는 사회적 실천으로 평가된다.

첫째, SDG 3(건강과 웰빙) 측면에서 씨름, 줄다리기, 혈링, 승마 경기, 초브칸, 곡보루 등 신체 활동 중심의 놀이들은 체력 증진과 사회적 유대 강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종목들은 단순한 운동적 기능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 협력과 경쟁을 통한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촉진한다.

둘째, SDG 4(양질의 교육)과 관련하여, 망갈라 계열 지적 전략 놀이(토기즈 쿠말락, 코구즈 코르굴 등), 토카티, 플랑드르 지역 전통놀이, 아식 놀이, 나무르 죽마 시합 등은 도제식 및 비형식 교육의 특성을 지니며, 지식과 기술, 전략적 사고와 도덕적 가치 전승에 기여한다. 이러한 놀이들은 세대 간 교육과 지역 공동체 내 학습 장치로서 기능하며, 전통적 지식의 지속적 전승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SDG 16(평화·정의·제도 구축) 관점에서, 놀이 규칙 학습과 협력 경험을 통해 갈등 조정과 사회적 규범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줄다리기, 씨름, 혈링, 승마 경기 등은 공정한 경쟁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공동체적 연대와 평화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며, 문화적 전승 과정에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넷째, SDG 17(파트너십 구축)은 특히 줄다리기, 유목민 놀이, 국제 공동 전

승 프로그램 등에서 두드러진다. 여러 나라가 공동 등재하거나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되는 전통놀이는 글로벌 문화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 되며, 국가 간, 지역 간 공동체 유대와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일부 종목은 SDG 5(성평등), SDG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 15(생태계 보존) 등과도 연계된다. 예를 들어, 일부 전통 승마 경기는 남녀 참여 균형을 강조하며 성평등의 가치를 내포하고, 샹가이 쏘기나 아식 놀이 등은 지역 생태 기반 활동과 자원 활용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한다.

특히 모범사례(Good Safeguarding Practices)로 선정된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SDG 3과 SDG 16을 포함하며, 단순한 오락을 넘어 지역 공동체 발전, 사회적 통합, 정체성 강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무형유산임을 보여준다.

〈표 2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분석

SDG 목표	설명	연계 전통놀이 종목	특징/기여
SDG 3 건강과 웰빙	신체 활동과 사회적 유대 강화	씨름, 줄다리기, 혈링, 승마 경기, 초브칸, 곡보루	체력 증진, 공동체 유대, 심리적 안정, 사회적 건강
SDG 4 양질의 교육	도제식·비형식 교육 통한 지식 전승	망갈라 계열 지적 전략 놀이 (토기즈 쿠말락, 코구즈 코르 굴), 토카티, 플랑드르 전통놀이, 아식 놀이, 나무르 죽마 시험	세대 간 지식·기술 전수, 전략적 사고 및 도덕적 가치 학습, 지역 공동체 내 학습
SDG 16 평화·정의·제도 구축	규칙 학습과 협력 통한 사회적 통합	씨름, 줄다리기, 혈링, 승마 경기	갈등 조정, 사회적 규범 내면화, 공정한 경쟁과 상호 존중, 공동체적 연대 형성
SDG 17 파트너십 구축	국제 협력과 공동체 유대 강화	줄다리기, 유목민 놀이, 국제 공동 전승 프로그램	다자적 협력, 국가·지역 간 문화 교류, 공동 보호 및 등재 프로그램
SDG 5 성평등	남녀 참여 균형, 여성 권익 증진	일부 씨름 및 승마 경기	전통적 남성 중심 놀이에서 여성 참여 확대, 성평등 가치 내포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자원 활용과 환경 친화적 놀이	샹가이 쏘기, 아식 놀이	지역 자원 활용, 전통적 생활 방식과 지속가능성 반영
SDG 15 생태계 보존	자연과 환경 보호	일부 전통 놀이 지역 기반 활동	생태 기반 활동, 지역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생태 전승

## (다) 생물 군계(Biome) 연계분석

유네스코는, 무형유산협약(2003)에서 생물 군계(Biome)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거나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네스코 누리집(UNESCO ICH)의 등재 유산 설명에서, 유산이 실존하는 자연환경, 생태계, 지리적 배경을 서술할 때 ‘Biome’ 개념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무형유산이 단지 문화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생태환경 속에서 실천되고 전승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물 군계는 곧 ‘무형유산이 뿌리내린 생태적 배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생물 군계는 특정 유산이 어느 자연환경(예: 초원, 산악, 해양, 습지 등)에서 실천되는지를 분류하기 위한 틀로 활용되며, 같은 유형의 전통놀이라도 어떤 군계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그 내용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전승되는 토기즈 쿠말락(전통 지능 전략 놀이)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유목민 공동체의 생활 방식과 생태적 환경 속에서 실천되는 지식·기술 전승 수단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전략적 사고와 도덕적 규범을 학습하며, 공동체 구성원 간 협력과 정체성 강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육적·문화적 기능은 SDG 4(양질의 교육)와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기여한다. 즉, 초원이라는 특정 생물 군계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놀이는 환경 조건과 공동체 구조에 적합하게 발전하면서, 교육과 공동체 유지라는 SDGs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

또한,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전통지식은 식물·동물 자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은 수천 년간 축적된 생태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약용 식물을 채집·활용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숲을 관리한다. 이는 SDG 3(건강과 웰빙)과 SDG 15(육상 생태계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전통문화와 생물다양성 보호가 상호보완적임을 보여준다. 생물 군계라는 맥락은 이러한 전통지식이 특정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 그 효과와 의미가 명확히 드러남을 시사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동부 해양 지역의 전통 관습인 사시(Sasi)는 일정 기간

해양 자원 채취를 금지하는 규율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실현한다. 이는 SDG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와 SDG 14(해양 생태계 보존)의 직접적 실행 사례로, 전통적 관습이 현대 지속가능성 목표와도 긴밀히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물 군계라는 개념은 이러한 전통 관습이 단순히 문화적 활동을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체계적 실천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국 생물 군계는 무형유산과 SDGs 간의 연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생태문화적 분석 도구로 기능하며, 유산 보호와 정책 수립 시 그 적용 가능성이 크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전통놀이 종목은, 다음과 같은 생물 군계(Biome) 유형과 연계된다.

〈표 30〉 생물 군계(Biome) 연계 분석

생물 군계	설 명	비 고
초원/사바나	유목생활, 승마, 넓은 평지 위 중심	콕보루(중양아시아 전통 승마 경기), 샤가이 쏘기
농업 생태계	논·밭 중심, 계절적 농경 행사	줄다리기(대한민국·베트남 등), 씨름
도시 지역	도시 축제, 길거리 퍼레이드 등	죽마 시합, 토카티(이탈리아 전통놀이)
비생태계적 특징	특정 자연환경과 무관, 주로 실내 또는 전략 중심	망갈라, 토기즈쿠말락 (지능 게임류)

웃놀이는 농업 생태계에 기반한 유산으로 볼 수 있다. 주로 겨울철 농한기, 계절별 명절(설날, 정월대보름 등)에 공동체가 모여 즐기던 놀이이며, 마을 중심의 공동체 문화와 관련된다.

이는 지역성과 생태적 정체성 측면에서 유네스코의 기준과 부합하며, 등재 시 관련 서사 구성이 가능하다.

### Ⅲ. 윗놀이의 역사적 기원과 문화

#### 1. 윗놀이의 역사적 기원

##### 가. 역사

윗놀이 역사에 대해선 학자들에 견해에 따라 ① 오가 사출도 기원설, ② 암각화 기원설, ③ 저포 기원설, ④ 자생적 기원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키백과 사전에 나온 내용을 서술한다.

윗의 기원에 대해 성호 이익(1681~1763)은 “고려의 유숙”이라 했고, 육당 최남선(1890~1957)은 “조선 특유 민속”이라 했으며, 단재 신채호(1880~1936)는 “부여에 그 기원을 두었다. 부여(서기전 2세기경부터 494년까지 북만주지역에 존속했던 예맥족(濊貊族)의 국가)의 사출도 전통이 윗에 투영되었다”고 했다. 즉, 저가(猪加)가 돼지를 뜻하는 '도'에, 구가(狗加)가 개를 뜻하는 '개'에, 우가(牛加)가 소를 뜻하는 '윗'에, 마가(馬加)가 말을 뜻하는 '모'에 반영된 것이고 걸은 의문으로 남겨두었다.

고조선의 정치제도였던 5가(五加: 마가, 우가, 양가, 구가, 저가)를 보면 양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자에 수놈의 양 걸이라고 하고, 큰 양을 갈(羯)이라고 하니 여기에서 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돼지, 개, 양, 소, 말' 등의 동물들이, 대략 몸집 크기 순이나 한걸음의 크기 순이기도 하여 낄수와도 연관지어 진다. 부여의 관직 이름에도, 가축이름에서 나왔으며 여섯 가축에는 '양'과 '낙타'도 포함돼 있다. 윗과 소와의 관련성은 소의 방언으로 '슈, 슷, 숭, 중, 중, 쇼' 등이 남은 것으로 보아, 이 윗과 소로 나뉘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참고로 북한에서는 “뜰·개·걸·중(슌)·모“라고 부른다.<sup>24)</sup>

---

24) 위키백과

## 나. ‘옷’ 낱말 어원

옷 낱말에 대한 어원은 옷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크게 ① 우리말 고유설, ② 한자 裯(사)설, ③가축상징설, ④ 점술도구설 등이 있다.

- 우리말 고유설: 옷가락을 던져서 확인하는 행위
- 한자 裯(사)설: 손가락/국자를 뜻하는 한자 ‘裯(사)’에서 유래 - ‘裯戲(사회)’ / ‘擲裯(척사)’
- 가축 상징설: 놀이의 각 면(도, 개, 걸, 옷, 모)은 각각 돼지, 개, 양, 소, 말을 상징함(부여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가축 이름을 사용한 데서 유래옷놀이의 행마 방식이 가축의 크기와 걸음 속도에 비유)
- 점술 도구설: 삼국 시대 이전부터 농사의 풍흉이나 개인의 길흉을 점치는 점술 도구로 사용

<표 31> 고구려의 5부 제도와 5방위 사상<sup>25)</sup>

구분	동	서	중앙	남	북
나부명 (那部名)	순노부 (順奴部)	소노부 (消奴部)	계루부 (桂婁部)	관노부 (灌奴部)	절노부 (絶奴部)
삼국사기	환나부 (桓那部)	비류나부 (沸流那部)	계루부 (桂婁部)	관나부 (貫那部)	연나부 (椽那部/提那部)
오가명 (五加名)	마가(馬加)	우가(牛加)	대가(大加)	구가(狗加)	저가(猪加)
위치부명	좌부(左部) 상부(上部)	우부(右部) 하부(下部)	내부(內部)	전부(前部)	후부(後部)
방위부명	동부(東部)	서부(西部)	중부(中部)	남부(南部)	북부(北部)
오색부명 (五色部名)	청부(靑部)	백부(白部)	황부(黃部)	적부(赤部)	흑부(黑部)
옷말	모	옷	걸	개	도

25) 김일권. 2014. 한국 옷의 문화사와 옷판암각화의 천문사상. 한국암각화연구 제18집 한국암각화학회 81~120쪽 참고 인용

## 다. ‘윷’ 낱말 표기

윷 낱말의 표기와 관련, K헤리티지재단(당시, 국제문화재전략센터)에서 시행한 ‘윷문화 아카데미’ 교육용 자료 교재 내용 중 김일권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자료<sup>26)</sup>를 요약 정리하면, ‘윷’ 이란 말을 한자어로 가차한 비유어로 표기하거나, 자작(自作)해서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포(擣蒲)	“향저(鄉擣)”	“사희(柶戲)”	“사도(柶圖)”	“탄희(攤戲)”	“척사(擲柶)”
백제	조선 김시습 (1453~1493) <만복사저포기> (萬福寺擣蒲記)	태종실록(1417) 세종실록(1447)	김문표 (1568~1608) 「사도설(柶圖說)」	유의건 (1687-1760) <화계집(花谿集)> (8권) 권9 <탄희조>	이덕무 (1741-1793) <장관전서> 「동규(童規)」 <사물편>

<그림 2> ‘윷’ 낱말의 표기

## 2. 윷놀이의 시원과 천문학 관련성

조선시대 중기 김문표(金文豹, 1568~1608)가 주장한 사도설(柶圖說 - 우주  
의 모양을 국자 또는 숟가락에 비유한 조선시대의 우주론)에서 윷놀이를 천  
지, 별자리, 오행, 책력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문표의 「사도설柶圖  
說」은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나온 윷에 관한 저술로서 김육(金堉, 1580~  
1658)의 『송도지松都志』에 실려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松都志>(1648) 김문표의 윷판을 설명 그림>

2013년 안동mbc 창사 43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윷’에서 채록

<그림 3> 윷놀이의 시원과 천문학 관련성 자료

26) 김일권. (2024) 「한국 윷의 문화사와 윷판암각화의 천문사상」-임실 윷판 암각화 발굴과 천문의 도시 단상을 붙여-. 『윷문화 아카데미 교재』. 국제문화재전략센터. 55 ~ 95쪽의 내용 인용 정리

사도설의 내용은 “옷을 만든 분은 도를 알고 있었으리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니 건곤이 정해지며, 성신(星辰)엔 궤도가 있어 경위(經緯)가 세워지며, 태양의 운행에 법도가 있으니 밤낮이 나뉘진다. 그러나 하늘은 지극히 높고 성신은 지극히 멀어 선기옥형의 도(圖)나 혼천의 의(儀)로 미뤄서 헤아려야만 알 수 있다. 지극히 간단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옷 뿐이로다.

옷의 밖은 둥글어 하늘을 상징하고 안은 네모져서 땅을 상징하니 하늘이 땅의 밖을 둘러싸고 있으며, 중심에 있는 별은 북극성이고 곁에 벌려진 별들은 28수이니, 곧 북극성이 제자리에 거하고 뭇별들이 그를 싸안고 있는 것이다.

태양은 水에서 나와 木으로 들어간 다음 土에 머물다가 돌아온다. 수에서 나오는 것은 동지의 낮이 짧고, 수에서 목으로 들어갔다 갈라져서 金으로 운행했다가, 다시 수에서 나오는 것은 춘분의 낮이 중간이 되는 것이다. 수에서 나와 목을 거쳐 火로들어 갔다가 직행해서 수에서 나오는 것은 추분의 밤이 중간이 되는 것이며, 수에서 나와 목을 거치고 화를 거쳤다가 다시 수로 나오는 것은 하지의 낮이 가장 긴 것에 해당한다.

옷의 위가 둥근 것은 하늘이요 아래가 네모난 것은 땅이니 한번 덮어지고 한번 갖혀져서 천지가 나누어진다. 넷을 사용하는 것은 땅의 수요 5를 쓰는 것은 하늘의 수이다. 4와 5가 서로 곱해져서 오행이 운행되며 사시가 이루어진다. 말이 직방(直方)함은 땅의 체(體)이고, 4시로 행하는 것은 음의 용(用)이다. 한번은 음이 되고 한번은 양이 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양이 아니면 생(生)할 수 없고 음이 아니면 성(成)할 수가 없는 법이다. 천도는 양을 위주로 하지만 음이 없을 수 없고, 지도 또한 그렇다. 쌍육의 주사위는 네모지고 짝이 되고, 말은 둥글고 홀수이니 이 한 물건에 지극한 이치가 있다.

두 사람이 짝이 되어 번갈아 던지는데, 고농(高農)이 이기면 산전(山田)이 잘 익고 오농(汚農)이 이기면 해전(海田)이 잘 익게 된다. 반드시 세시에 노는 것은 천신을 점쳐 한 해의 풍흉을 점치기 때문이다. ...” 27)

김문표는 사도설에서 옷판과 옷놀이에 대해서 당시 우주설인 개천설(蓋天

27) 출처: K스피릿(<http://www.ikoreanspirit.com>-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교수, 한국웃문화연구소장) 인용

說)에 따른 천원지방(天圓地方)사상에 음양오행설을 더하여 설명하였다.

즉 윗판의 둥근 부분을 하늘, 네모난 부분을 땅으로 비유하며,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우주의 원리를 설명했고, 특히, 윗판의 중심을 북극성으로, 나머지 점들을 28수로 보아 천문 현상을 윗놀이에 투영하여 윗판의 형태를 우주 모형으로 해석했다.

또한 24절기와 2분2지(태양이 24절기를 운행하는 모습을 윗판 위에서 말의 움직임으로 표현), 해의 이동(윗판에서 가장 짧은 길을 통해 들어오는 말이 해의 이동을 상징)을 설명했다. 음양오행과 역법을 근거로 윗문화의 천문학적이고 철학적 의미를 깊이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윗판형 암각화

윗판형 암각화를 연구자들에 의하면 청동기시대 고인돌문화 하한기인 B.C. 4 ~ 3세기부터 성립되어 나타나는 윗판형 암각화 유적은 89개소 328점(2024년 5. 현재)이 조사되었다.<sup>28)</sup>

<표 32> 윗판 암각화의 분포[328점(231/97, 기타 359), 2024년 5월 현재]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참고료	
유적	3	1	4	3	3	1	1	2	6	1	16	1	37	3	2	5	89
윗판 (부분윗판)	5	1	13 (6)	4	4	3 (2)	1 (1)	2 (2)	9 (4)	1	65 (20)	1	108 (51)	7 (11)	2	5	231 (97)
비고	주초석	.	.	전돌	산석	.	.	.	와편	.	주초석 교각	.	고인돌 전돌 주초석	.	.	전돌 주초석 해의	

이에 대해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윗놀이와 의례 등 윗문화의 상관성을 추론하고 윗판이 지향하고 있는 천문학적성을 밝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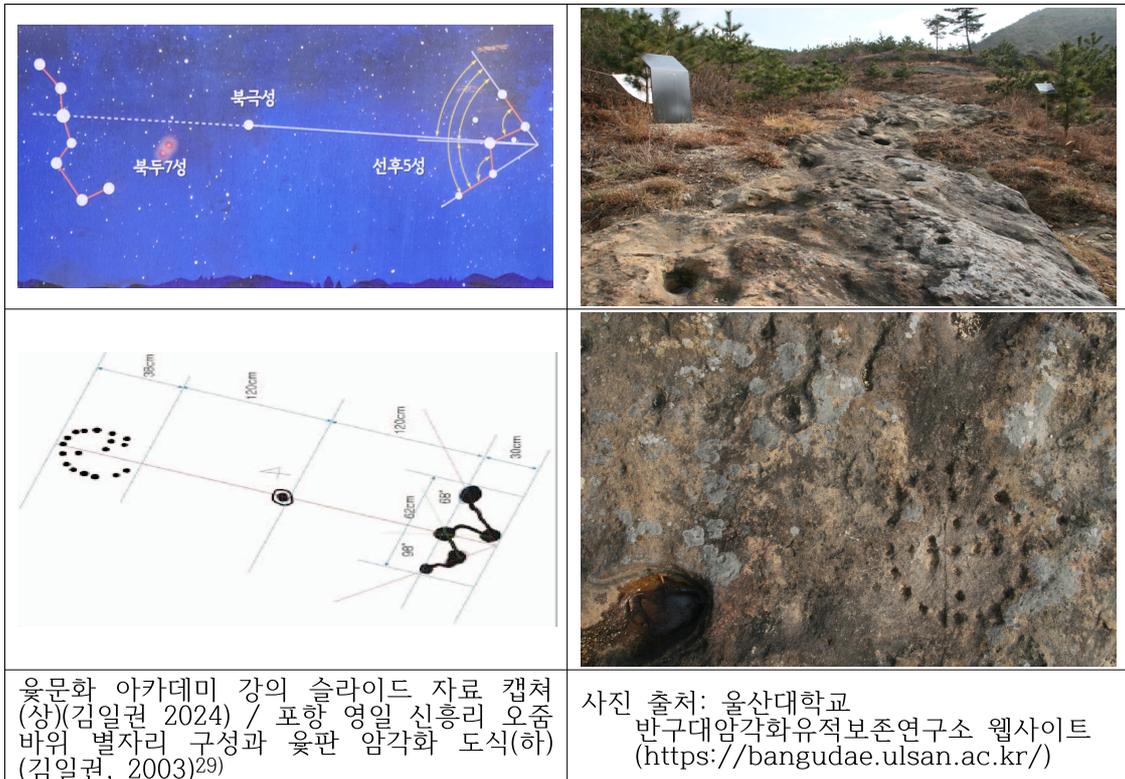
연구자들은, 이러한 대표적인 유적이 포함 영일 신흥리 오즘바위 유적이고,

28) 이하우. 2024. 윗판 암각화의 성립에서 발전까지. 윗문화아카데미 교육용 교재. 100 ~ 118쪽

이 유적을 국내 유일의 별자리 모양 암각화 표현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암반에서 카시오페이아(Cassiopeia, 낫달)형, 북극성형, 원형 옷판도형이 일정한 질서와 모양새를 갖춘 별자리 구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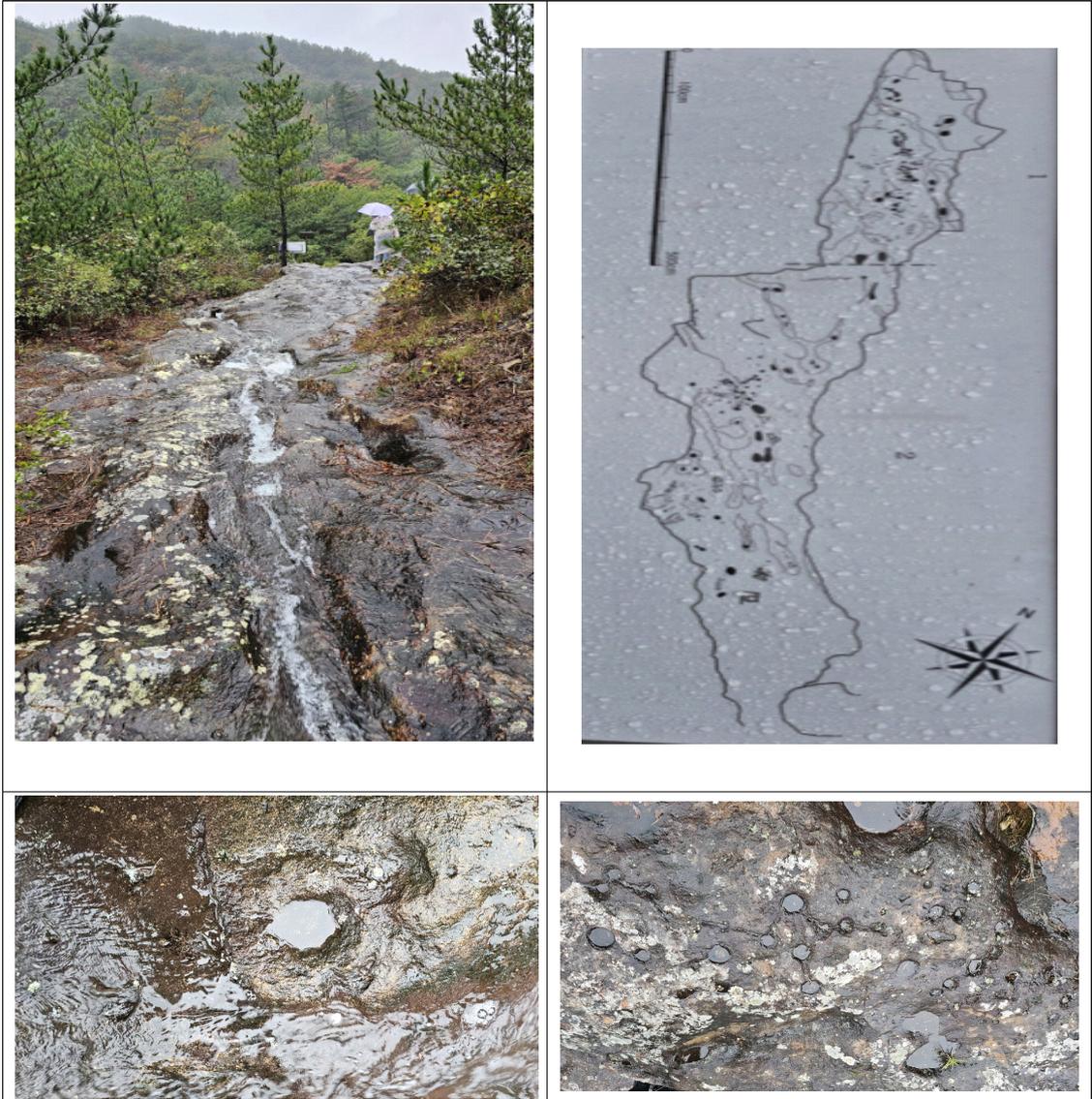
카시오페이아 별자리는, 북극성을 가리키는 지극성(指極星) 역할을 하므로, 북극성을 찾는 길라잡이가 되는 별자리이다. 연구자들은 북극성형 별자리를 중심으로 한쪽은 카시오페이아형 별자리, 그 반대편에 원형 옷판형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형태가 옷판의 태양 주천설(周天說)과 북두칠성 주천운동설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형 옷판은 북극성을 중심축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북두칠성 형상과 주천현상에서 원형적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도안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천체모형의 상징체계를 갖춘 지상의 도형으로 이해되고, 우리 고유의 칠성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옷판형 암각화 자료

29) 김일권. 2024. 울문화사와 천문사상. 울문화 아카데미 교육용 교재. 77쪽 인용



<그림 5> 포항 신흥리 오줌바위에 새겨진 천문관측(별자리) 유적 모습(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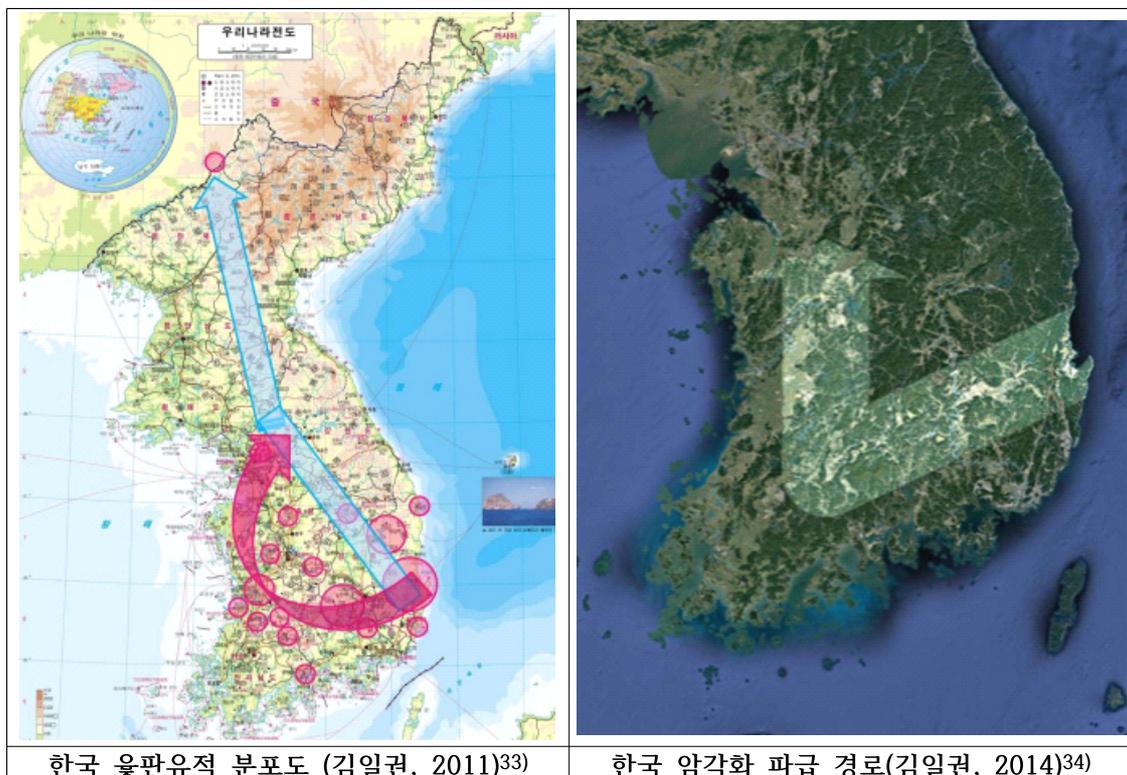
그의 유적으로, 김일권 교수는 고인돌 덮개돌에 새겨진 윗판형 암각화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북두칠성의 일주를 묘사한 도형으로 보고 있다.<sup>30)</sup> 이에 이하우 교수는 이 도형이 춘분에서 입하까지 계절적 상관물(Ritual Correlative)로 보고,<sup>31)</sup> 장장식 박사는 농경문화 의례의 성소(聖所, Sacred sites)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32)</sup>

30) 김일권. 1988. 별자리형 바위구멍에 대한 고찰. 고문화 제51집 등

31) 이하우. 2004. 한국 윗판형 바위그림 연구-방위각을 중심으로. 한국암각화연구 제5집. 한국암각화학회. 38 ~ 42쪽.

32) 장장식. 2019. 영일만 칠포리 암각화군 소재, 윗판형 암각화 형성과 의례성. 한국암각화연구 제23권 한국암각화학회. 179~202쪽 등

연구자들에 따르면 옷판형 암각화는 주로 자연암석에서 새겨져 있다. 평지형 암반, 경사도가 있는 암반, 수직적인 암반, 산 정상부 암반 등에서 발견된다. 때때로 건축물 주초석, 고인돌 무덤 상석 등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옷판형 암각화 분포지를 보면 크게 경북 포항-경주-영천-고령-상주-전북 임실-남원 등으로 이어지는 분포 맥이 띠를 형성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한국 옷판 유적 분포도 및 한국 암각화 파급 경로

이런 옷판형 암각화는 대부분 미지정 유산으로 남아 있는 데, 이중 유일하게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에 있는 유적이, ‘상가 옷판형 암각화 유적(上可 옷版形 巖刻畵 遺蹟)’란 명칭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이 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 옷판형 암각화 유적은 선사시대 이래 천체관, 옷놀이 문화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고고민속자료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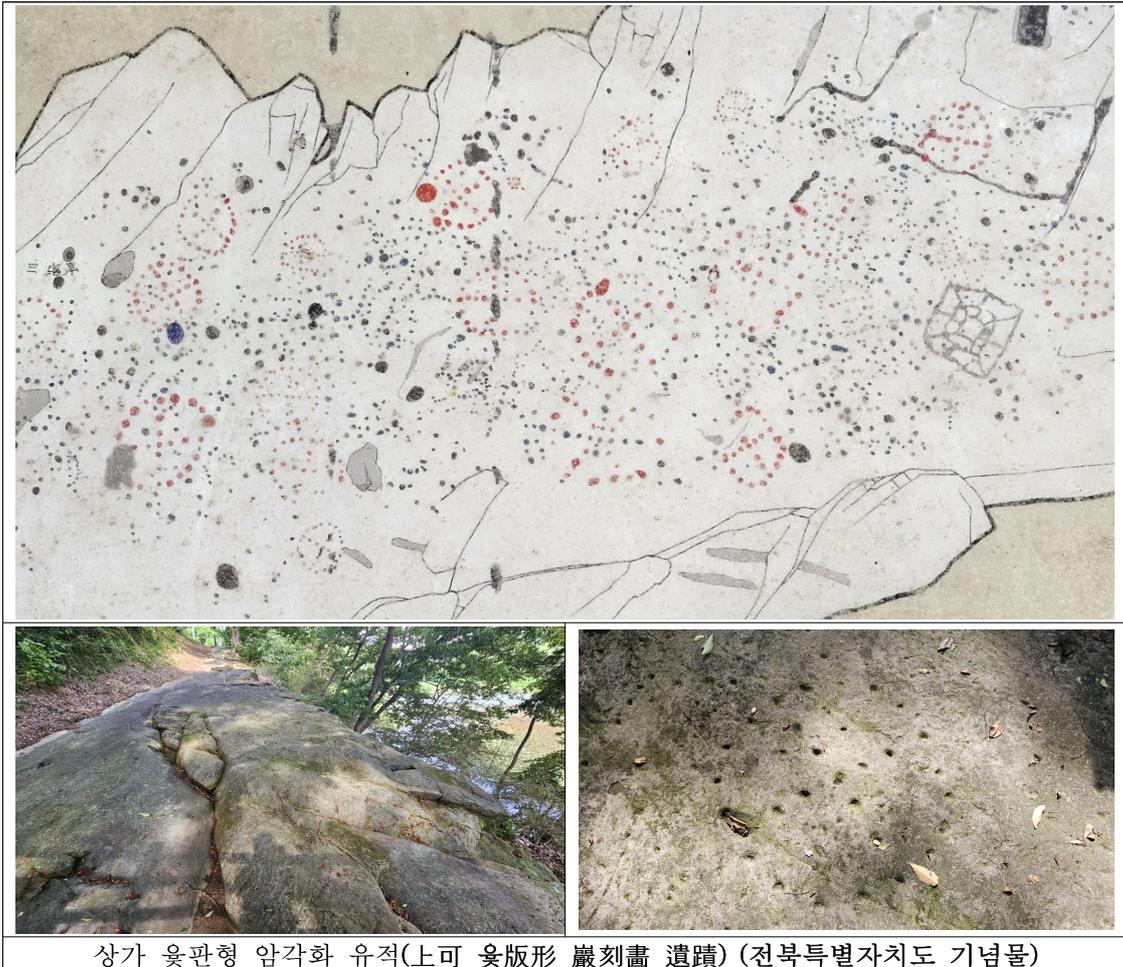
이 유적에는 옷판형 표현물 23점, 옷판형 패턴 16점 등 모두 39점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 유적 조사자들의 의견에

33) 김일권.(2024). 옷의 문화사와 천문사상. 옷문화 아카데미 교육용 교재 84쪽 인용

34) 이하우 (2024). 옷판 암각화의 성립과 발전까지. 옷문화 아카데미 교육용 교재 115쪽. 인용

따르면 이 유적의 생성연대는 BC 2,4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서 2km정도 떨어진 섬진강 지류 신평천 변에 ‘하가 구석기유적’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이 있는 것을 볼 경우 선사시대 섬진강 역사문화권으로 어느 정도 상호 일맥성과 상통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5)</sup>



상가 옷판형 암각화 유적(上可 옷版形 巖刻畵 遺蹟)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그림 7> 전북 임실 상가 옷판형 암각화 유적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옷판형 암각화는 한국 선사시대 문화의 중요한 유물로, 윷놀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대국가 시대부터 문헌적으로 기록된 윷놀이는, 현재까지도 전통놀이를 계승되고 있고, 옷판형 암각화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조까지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기에 그 시원을 선사시대와 연결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35) 임실군청. 2016.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기념물) 신청서-상가 옷판형 암각화- 인용정리

옷판형 암각화는, 상당수가 북쪽을 향하고 있어, 고대인 삶과 사상의 기저에 있는 우주관, 세계관, 생활 풍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원형 또는 타원형의 옷판 형태는, 하늘의 모습과 별자리를 상징하며, 북두칠성을 형상화했다는 해석이 의미성을 가지고 있어, 고대인들이 우주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옷판형 암각화는 단순히 놀이 도구를 넘어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제의적 의미를 지녔을 가능성이 있다. 원형 암각은 태양을 상징하며, 다산과 풍작·풍어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는 해석도 있다.<sup>36)</sup>

종합하면 옷판형 암각화는 주로 한국에서 발견되고 있고 고대 문명의 자취이자 한국인의 세계관과 생활 습속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현대 윷놀이와 연관성을 가지며, 고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 문화와 놀이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해석을 통해 그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4. 윷놀이 구성

윷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윷판, 윷가락, 윷말 3종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윷놀이 도구 3종은 시대, 지역, 공간, 대상 등에 따라 응용하거나 변용해서 사용된다.

### 가. 윷판

윷판은 열십자형(+)과 원형(○)이 조합된 독특한 모양의 도판으로 동북아 문화권에서 한국에만 존재한다. 도판은 크게 앞밭, 뒷밭, 썰밭, 날밭의 네개의 밭으로 구성된다. 각 밭은 7개의 밭을 가지고 있으며, 가운데 방과 함께 총

---

36) [김석훈의 보물섬] 신도의 옷판형 암각화와 그 의미. 인천일보 2023. 7.18.

29개의 발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7)</sup> 현재 전승되고 있는 윷판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원형, 방형, 가지형이 있다.<sup>38)</sup>

원형(장장식 구성)	방형:대백과사전(학원사, 1963)	가지형: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북편)

<그림 8> 윷판 모양

## 나. 윷가락

윷가락의 한자어는 ‘柶(사)’라고 하는 데, 이는 ‘네 개의 나무’라는 뜻으로 적은 동국자(東國字) 표기라고 한다. 이에 윷놀이를 ‘사희(柶戲)’라고 하듯 ‘4개의 윷가락 놀이’ 또는 ‘윷가락 4개의 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윷가락은 원통형 나무를 잘라 만드는데 위(등)를 둥글게 하고 아래(배) 면은 모난 형태로 다듬는다.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을 본뜬 것으로 둥근 것은 하늘이고 모난 것은 땅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까닭에 윷가락의 등은 하늘이며 양이고, 윷가락의 배는 땅이며 음으로 인식하여, 음양(陰陽)론의 시각으로도 상징화하였다.

윷가락은 모양, 크기, 재료, 등에 따라 가락윷, 장작윷, 장군윷, 종지윷, 콩윷, 밤윷, 5각윷 등으로 분류된다.

37) 나무위키

38) 장장식. 2024. 윷놀이 문화양상. 윷문화 아카데미 교육용 교재. 25~52쪽의 내용과 그림을 인용 정리

	 <p>남해형</p>  <p>삼척형</p>	 <p>나무로 만는 콩형 옷</p>  <p>나무로 만든 밤형 옷</p>
가락옷	종지옷(출처:국립민속박물관)	콩옷/밤옷 (출처:https://blog.naver.com/lovekkj4)

<그림 9> 옷의 종류

<표 33> 옷가락의 종류<sup>39)</sup>

옷의 종류	설 명
장군옷	옷 중에서 가장 큰 옷으로 1명이 1가락씩 던지는 단체용 옷
가락옷	일반적으로 15cm 내외 정도 길이의 옷
종지옷	옷가락을 손가락 1마디 정도 크기로 제작해 종지에 담아 던지는 옷
보리옷	여성전용으로 만든 가늘고 길어 4개의 가락이 한 손에 쥐어지는 옷
밤옷	생밤 4개를 한 틀로 사용하는 옷
콩옷	콩이나 팥 1개를 반으로 쪼개어 4개를 한 틀로 사용하는 옷
5각옷	나무를 5각형으로 다듬고 1~5개 홈을 내어(도~모 대응) 사용하는 옷

## 다. 옷말

옷말은, 옷가락을 던져서 나타나는 말 수에 따라 앞으로 이동하는 표현물로 통상 4개(동)를 1틀로 본다. 옷말의 재료와 모양은, 목적, 장소, 놀이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작해 사용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옷말은 ‘동’이란 이름으로 사용한다. 농경사회에서 옷판은 농토이고, 옷말은 풍년을 기원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여겼다. 옷말 이동이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변수가 작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옷말 이동에는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39) 이걸재. 2023. 옷놀이 강사용 교육교재. 공무문화관광재단, 전통옷놀이보존회. 3쪽

## 5. 윷놀이 방식과 규칙

### 가. 윷 모양(栖意)의 명칭과 이동거리

윷가락을 공중에 던지는 행위는 “하늘의 뜻을 물어보는 행위” 이고, 던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윷의 모양새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형상”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의(栖意)라 명명한다. 윷을 공중에 던져서 땅에 떨어져 엮어지고 자빠지는 형태, 즉 음양의 조화에 따라 표출되는 사의를 ‘도’ - ‘개’ - ‘걸’ - ‘윷’ - ‘모’ 라 부르고 이에 준거하여 이동하는 발 거리를 정한다.

〈표 34〉 윷가락 모양에 따른 사의의 명칭과 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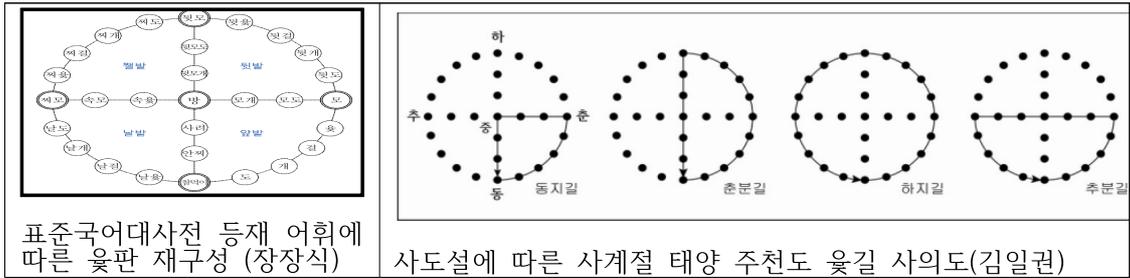
사의 모양					
사의 명칭	도	개	걸	윷	모
사의 상징	돼지	개	양	소	말
사의 발수	앞으로 1발	2발	3발	4발	5발
특이 사의	* 뒷도: 윷가락 1개에 표식을 두어 표식된 윷가락이 도가 나올 경우 통상 뒤로 1발 이동함.				

### 나. 윷말 행마법

윷말 행마법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만 가고 뒤로는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윷말 행마와 관련, 김일권 교수의 윷길 태양주천도설과 장장식 박사의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에 따라 재구성한 윷판에 대입하면, 윷길의 방향과 윷말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윷말이 앞발 ‘도’ 에서 출발해 앞발 ‘모’ 에서 꺾여 정중앙의 ‘방’ 에서

다시 꺾여 가장 짧게 돌아서는 옷길을 ‘동지길’, 앞밭 ‘모’ 를 넘어서 이를 넘어서 뒷밭 뒷모에서 꺾여 ‘방’ 을 지나 ‘참덕이’ 로 오는 길은 ‘춘분길’, 앞밭 모에서 꺾여 중앙의 ‘방’ 을 지나 날밭의 밭길을 따라 돌아 오는 길은 ‘추분길’, 그리고 뒷밭 ‘뒷모’ 를 넘어 쯤밭-날밭의 밭을 모두 돌아 가장 멀리 도는 길은 ‘하지길’ 이라 부른다.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에 따른 윷판 재구성 (장장식)

사도설에 따른 사계절 태양 주천도 윷길 사의도(김일권)

<그림 10> 윷말 행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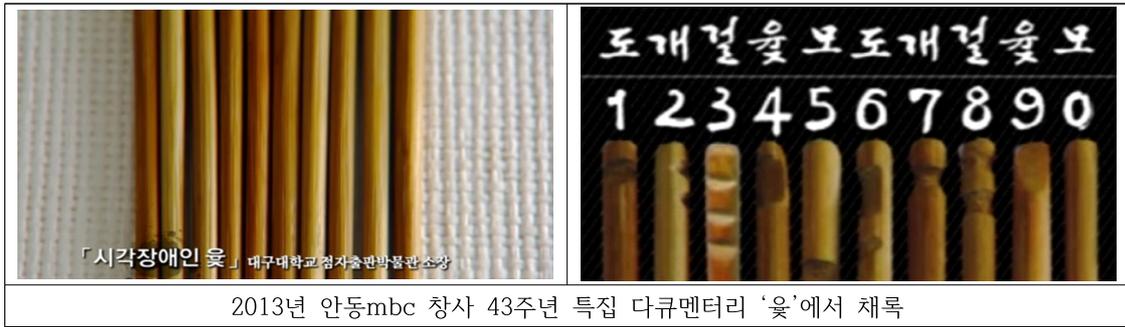
### 다. 그 밖의 방식과 규칙

윷놀이의 방식과 규칙에는 이동거리, 행마법 이외에 낙, 윷말 엮기, 윷말 잡기, 한번 더 던지기, 처음부터 다시 하기, 이동정지 등이 있다.

## 6. 응용 윷놀이

### 가. 시각장애이용 윷놀이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Person with visual impairment)이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윷놀이도 있다. 시각장애인 윷놀이는, 4개의 윷 대신 막대기마다 서로 다른 홈이 새겨진 10개의 막대기를 이용하며, 윷을 던지는 대신 막대기 3개를 뽑아서 나온 홈의 조합에 따라 숫자를 결정하여 숫자에 따라 도, 개, 걸, 윷, 모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윷판 및 말은 사용하지 않고, 참가자들이 머릿속으로 진행 상황을 기억하며 진행하는 일명 ‘건궁형(乾宮型) 윷놀이’ 인 셈이다.



2013년 안동mbc 창사 43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옷'에서 채록

<그림 11> 시각장애이용 옷

## 나. 공주형 옷놀이

공주의 이결재 선생이 조사한 공주지역에 전승되는 옷놀이는 보통 전형인 옷놀이와 다르게 응용 고안되어 전승되고 있는 옷놀이가 있다.

그 사례로는 옷두기옷놀이, 보리풍년 옷놀이, 베틀 옷놀이, 썸 옷놀이, 풍감 옷놀이, 종지옷(콩옷, 팔옷), 갑오잡기 옷놀이, 진치기 옷놀이, 풍감땡감 옷놀이, 자릿날 세기 옷놀이, 빨개덩이 옷놀이 등이 있다.<sup>40)</sup>

## 다. 벌칙형 옷놀이

각 지역에 따라 '벌칙 칸'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변형된 규칙이 존재한다. 벌칙 칸은, 옷판의 특정 지점에 말이 도착하면 그 말이 죽어버리거나 한 회를 쉬는 등의 벌칙을 부여한다. 이를 뜻하는 용어로 '풍당' 등이 있다.<sup>41)</sup>

## 7. 기타 옷문화

옷놀이에서 생겨난 구비문학 성격의 옷속담, 옷판전설, 옷판설화, 옷노래, 옷푸리 등이 있고, 민간신앙 성격을 지닌 옷점 등이 있다.

특히 옷점은 '사점(柶占)' · '척사점(擲柶占)' 이라고 부르는데, 조선시대

40) 공주시. (2023). 공주옷놀이 1. 38 ~ 183쪽 인용 정리

41) 위키백과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경도잡지(京都雜誌),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의 문헌에도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의 군사적 목적으로도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면 옷을 던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길(吉)과 흉(凶)을 점쳤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亂中日記)』에도 총 14차례에 걸쳐 옷점을 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중 가장 처음의 기록은 1594년 7월 13일 아들 병세에 대해 점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2)</sup>

“홀로 앉아 아들 면의 병세가 어떤지 척자점(擲字占)을 쳤다. 결과는 ‘임금을 만난 것과 같다(여현군왕·如見君王)’ 는 쾌였다. 아주 좋았다. 다시 쳐보니 ‘밤에 등불을 얻은 것과 같다(여야득등지·如夜得燈之)’ 였다.”

- 이순신(1545~1598), 『난중일기(亂中日記)』 1594년 7월 13일 기록 -

옷점은, 통상 매년 정초에 토정비결을 보듯 1년의 운세를 예측해 보는 세시 풍속 행위로, 통상 옷을 세 차례 던져 각각을 상괘 - 중괘 - 하괘로 하여 점괘를 뽑아 운수나 재수를 보는 것이다. 옷점을 운수옷 또는 재수옷으로 여겨, 개인·집단의 운세를 보는 행위로, 개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거나, 일기예보처럼 미래의 일을 미리 예측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

42) 한글박물관 홈페이지 내용 인용

## Ⅳ. 윷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적합성 검토

### 1. 윷놀이 문화 전승의 학술적 고찰

윷놀이는, 한국 전통문화 속에서 널리 알려진 민속놀이 중 하나로,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어울리며 신명을 나누는 대표적 전통 놀이이다. 윷놀이의 지역별 연행 사례 및 활동 현황을 중심으로, 윷놀이가 지닌 전승 가치와 무형 유산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가. 윷문화 전래 양상

윷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의 윷놀이 기록과 청동기시대 암각화 속 윷판형 문양을 통해 그 기원을 유추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사희(柶戲)”, “쌍사(雙四)”, “척사(擲柶)”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문헌에 등장하였다.<sup>43)</sup> 특히, 정월대보름이나 세시 명절, 제의의 일부로 연행되었으며, 공동체의 유대 강화와 한(恨)의 해소, 신명의 분출이라는 한국적 정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44)</sup>

장장식(2022)은 『회화와 문헌에 나타난 윷놀이의 양상과 변화』에서 윷놀이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인간의 삶과 공동체 의례, 자연 순환에 대한 상징적 질서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고문헌에 기록된 윷놀이의 용례를 분석하여, 명칭과 연행 방식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민화 속 윷놀이 장면이 단순한 놀이 묘사를 넘어 복(福), 장수, 공동체 화합 등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인에게 가장 낮익고 유명한 윷놀이 그림은, 단연코 조선후기 풍속화가

43) 장장식 (2022), 「회화와 문헌에 나타난 윷놀이의 양상과 변화」, 『한국민화』 제16호.,

44) 정형호 (2024), 「한국 전통 놀이의 역사와 특징, 그 변화」, K-윷문화 아카데미 발표 자료.

인 단원 김홍도(金弘道, 1745년~1806년 추정)가 25개의 그림을 엮은 ‘풍속화첩’ 중 하나인 옷놀이 모습일 것이다. 이 작품은 ‘고누그림’으로 알려져 왔으나, 장장식이 2008년 국립민속박물관 월간 ‘민속소식’ 7월호에서 해당 놀이는 고누그림이 아니고 ‘옷놀이 그림’이라고 주장하였다.

장 박사는, 25폭으로 구성된 김홍도 풍속화첩에는 낙관이나 제목이 없다가 근대에 와서야 화폭별로 제목이 붙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13번 그림 또한 식민지시대에 일본 민속학자인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1891~1968)’이 처음으로 ‘고누그림’이라고 이름을 붙인 뒤 현재까지 아무런 의문 없이 이 제목이 통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 박사는 단원 풍속도의 ‘고누 그림’은 그에 등장하는 말판 생김새가 지금의 윷판과 똑같은 데다, ‘윷판’ 내부에 던져진 물건 또한 그 숫자가 4개임을 볼 때 이는 명백히 ‘이미 던져진 밤윷가락’이므로 ‘고누놀이’라는 설명은 통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sup>45)</sup>



<그림 12> 풍속화 속의 옷놀이

또한 장장식은, 옷놀이의 회화, 문헌, 실물 유물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윷판의 형태가 역사적으로 원형에서 방형, 이후 가지형(八字형)으로 변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도형의 변화가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자연 중심의 공간 개념이 점차 사회적·공동체적 공간 개념으로 전환된

45) "단원 풍속화 '고누'는 '옷놀이'"(연합뉴스, 2008.7.7.) <https://www.yna.co.kr/view/AKR20080707149300005>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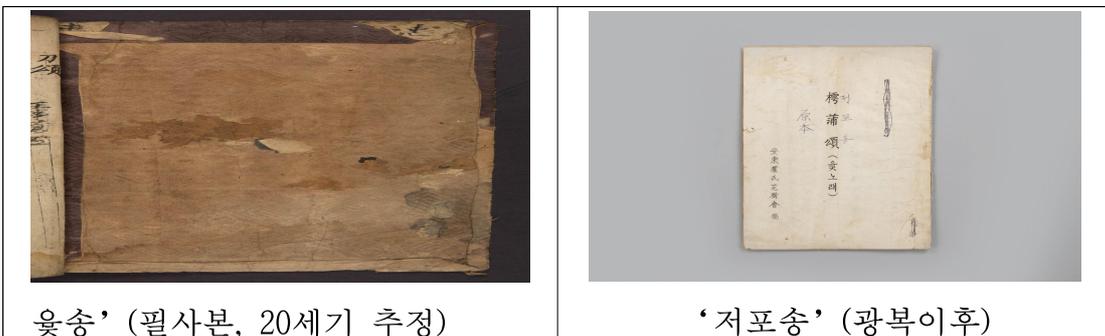
아울러 지역별 사례 연구를 통해, 옷놀이는 단순한 민속놀이를 넘어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문화적 유희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의 놀이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회 내 여성의 역할과 문화적 표현이 옷놀이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옷놀이는, 유희성뿐만 아니라 의례성과 점술성(점치기) 기능을 함께 지닌 복합적인 민속 행위로서,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옷놀이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적 연속성과 정체성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통문화유산임을 알 수 있다.<sup>46)</sup>



<그림 13> 옷점책(필사본)과 옷(주머니 포함)(출처 : 국립한글박물관)

옷놀이의 대중화와 더불어, 옷노래도 지어 불렀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옷노래와 관련된 ‘옷송’과 ‘저포송’의 국한문혼용본을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옷송’ (필사본, 20세기 추정)

‘저포송’ (광복이후)

<그림 14> ‘옷송’과 ‘저포송’ (출처 : 국립한글박물관)

근현대에 이르러, 옷놀이는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전통적 맥락에서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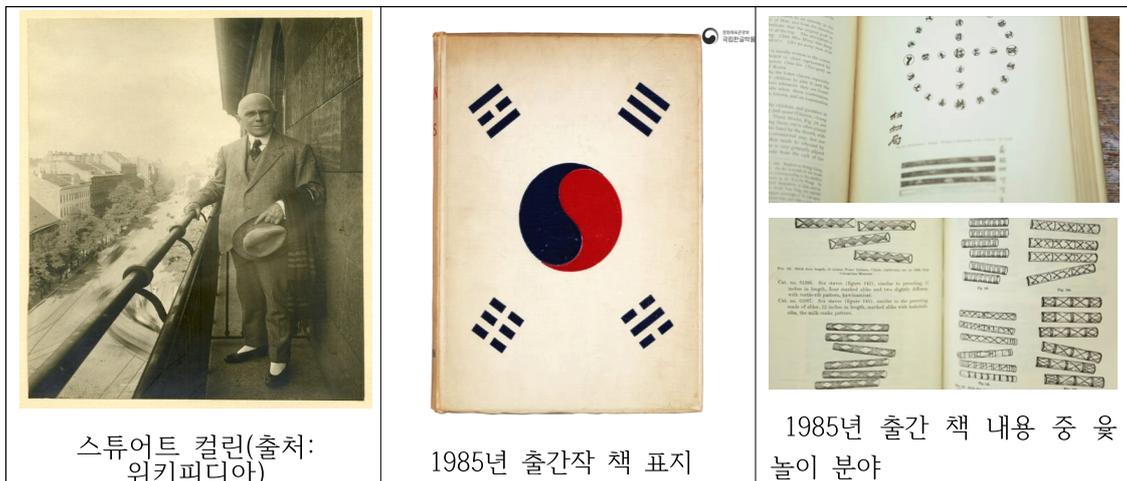
46) 장장식, 위 책

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동 놀이, 척사 대회, 민속축제 등으로 형태를 달리하며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

## 나. 외국학자가 본 대한민국의 윷문화

대한민국의 윷문화 대해, 외국 학자 스튜어트 컬린(Stewart Culin, 1858~1929)의 기록이 주목할 만하다. 컬린은 미국의 민족지학자이자 작가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고고학박물관장(인류학자)과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민족학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특히 한국 놀이 및 게임 연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브루클린 박물관에 한국 놀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895년 당시 조선에서 현존하던 놀이 97종을 173점의 삽화와 함께 다룬 『Korean Games With Notes on the Corresponding Games of China and Japan』(조선의 놀이와 그에 상응하는 중국과 일본의 놀이)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한국의 윷놀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놀이들의 원형으로 여겨 질 수 있다.” “The Korea game of Nyoutbe regarded as the antetype of large number of games which exit throughout the world.” 라고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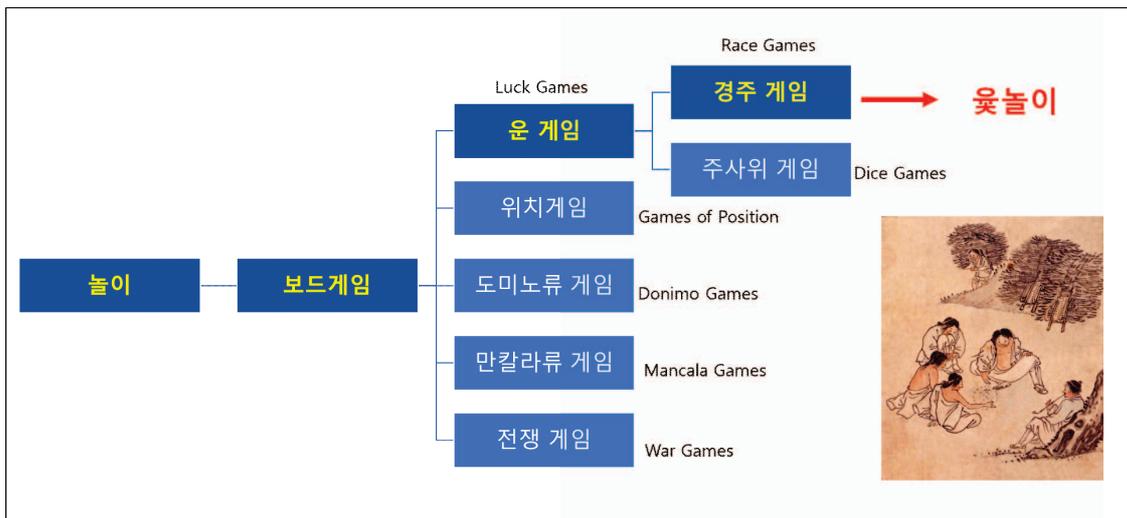
<그림 15> 스튜어트 컬린 및 윷놀이 출간 책 (가운데 및 오른쪽 출처: 국립한글박물관)

## 다. 놀이분류법상 윗놀이의 위치

네덜란드 역사학자 요한 호이징가(Johan Huizinga, 1872 ~ 1945)는, 사람을 놀이의 꿈을 꾸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이라 하였다. 놀이는 게으른 베짦이의 행동이 아니라, 문명을 낳는 동력이고 토양이라고 한다. 놀이의 원리로 구성된 미래에 대한, 오래된 상상으로 놀이가 일상이 되는 세상을 그려본다.

윗놀이는, 과거와 현대의 호모루덴스가 별이는 향연이다. 그렇지만, 윗놀이는 연이나 팽이 같이 숨씨를 겨루는 기교놀이가 아니고, 단순히 심심풀이와 우연과 운으로 경쟁하는 놀이도 아니다. 오롯이 우주의 질서와 하늘의 뜻에 따라 법칙을 준수하고 순응하면서 조화적-교화적-치화적이고 강력한 지성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전략놀이이다.

놀이를 본능·성질·특징·규칙·만족감 등에 분류할 경우, 윗놀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놀이분류법상 보드게임 - 운게임 - 경주게임 계통으로 볼 수 있다.<sup>47)</sup>



<그림 16> 놀이분류법상 윗놀이의 위치

47) 이상호. (2024). 지구촌 유사 윗놀이. 윗문화 아카데미 교육용 교재. 122쪽 인용 정리

## 2. 윷놀이 문화 전승 현황과 의의

### 가. 국가무형유산 지정 - 공동체 종목

윷놀이는, 2022년 11월 11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아닌, 한반도 전역에서 온 모든 국민이 함께 전승하고 즐기는 민속문화라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윷놀이는 ①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②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관련 역사적 기록이 풍부하게 확인되는 점, ③ 윷판의 형성과 윷가락 사위를 나타내는 ‘도·개·걸·윷·모’에 대한 상징성 등 학술 연구 주제로서 활용도가 높은 점, ④ 가족 및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단절 없이 전승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 받았다. 이는 윷놀이가 한민족 공동체 문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전통놀이로서, K유산으로서의 역사적·학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 나. 다양한 전승 방식

윷놀이는, 세시풍속과 관련된 놀이, 세대 간 공감력이 있는 놀이로서, 가정, 마을 단위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복지시설, 자치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전승되고 있다. 윷놀이 전승방식은 세시형, 여가형, 체험형, 교육형, 축제형, 대회형, 디지털형 등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회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유연하게 전승되는 환경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맹인 윷놀이처럼, 사회의 필요적 요구에 따라 변형되거나 포용적으로 전승되는 특징을 보인다.

## 다. 활발한 연구 및 활용

윷놀이는, 민속학, 암각학, 역사천문학 등에서 학술 연구의 주제로 하여, 천문사상성, 윷놀이판의 형태, 놀이방법의 변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각종 대회나 축제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 라. 윷놀이의 지역별 연행 사례 및 활동

대한민국의 전통 민속놀이인 윷놀이는, 오랜 세월을 걸쳐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다양하게 전승되어 왔으며, 이는 지역별로 다른 지리적 조건과 문화적 배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지역마다 윷놀이에 사용되는 도구의 형태나 재료는 물론, 놀이의 규칙과 행마 방식, 참여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놀이의 틀을 넘어 각 지역 공동체의 생활 양식과 세계관을 반영한다.

특히 공주, 울진, 제주, 전북 등 지역에서는, 윷놀이가 단지 오락적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세대 간 구술 전승과 의례적 맥락 속에서 고유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과 전승 양상은, 윷놀이가 단순한 민속놀이를 넘어,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과 일상생활 속 문화적 실천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 (1) 공주 지역<sup>48)</sup>: 입말 기반의 기억형 윷놀이— ‘윷두기’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서는 ‘윷두기’라 불리는 독특한 윷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이는 말판이나 시각적 지시 요소 없이, 구술(口述)과 기억에 의존하여 경기가 진행되는 입말형 윷놀이로 분류된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각각 두 개의 윷가락을 던지고, 그 조합에 따라 말을 이동시키는데, 말의 위치는 참

48) 디지털공주문화대전. 「보리풍년 윷놀이」. <https://gongju.grandculture.net/gongju/toc/GC01702572>

가자들의 기억과 즉석 구술에 따라 추론된다.

공주의 옷두기는, 과거 부녀자 공동체를 중심으로 안방놀이로 널리 전파되었으며, ‘보리풍년 옷놀이’ 나 ‘베틀옷’ 이라는 변형 형태를 통해 풍요와 여성 노동의 연계 상징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옷두기는 단순히 놀이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기억문화와 여성 공동체 문화의 결합체로 작동하며, 공간적 제약 없이 실내에서 연행 가능한 구조 덕분에 일상 속에서 자주 실천될 수 있었다. 이는 문서화된 규칙이나 고정된 말판 없이도 오랜 기간 놀이의 지속과 공동체 유대가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옷놀이가 2022년 11월 11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現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때, 공주시에서 옷놀이를 조사한 결과 60여 종의 다양한 옷놀이가 전승되고 있었다고 한다.<sup>49)</sup>

<표 35> 공주 지역 옷놀이 종류

분 류		내 용
대분류	소분류	
놀이방식	말판 사용	· 일반 옷놀이, 장군옷·콩옷·밤옷, 옷두기, 증지옷, 승경도옷놀이, 변형 말판 옷놀이 등
	말판 불사용	· 공기처럼 노는 ‘옷놀리기’ : 보리풍년 옷놀이(25종), 베틀 옷놀이(14종), 풍감땡감옷놀이 · 자릿날 세기 옷놀이 · 벌거숭이 옷놀이
참여자 성별 및 상황	여성중심놀이	· 옷놀리기 계열(공기놀이처럼 가볍고 유희적 성격) · 베틀옷
	남성중심놀이	· 척사위 옷(일명 ‘노름옷’) : 4대 척사위, 무대 척사위, 돼지보기 척사위 등
기능 및 목적	점복용 옷놀이	· 옷점(공주, 온양 등지에서 전승, 정초에 운세 점침)
	수 개념을 활용한 셈옷놀이	· 덧셈 옷, 뺄셈 옷 · 콩나무 팠나무 옷 · 진치기 옷놀이 · 갑오잡이 옷놀이

49) “국가 무형문화재 ‘옷놀이 이야기’”(중부매일, 2023.3.8.)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6749>

## (2) 경북 울진 지역<sup>50)</sup> : 구조 없는 놀이의 구술적 진화 ‘말발 없는 윷놀이’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지역에서는 ‘말발 없는 윷놀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전통 윷놀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 지역의 윷놀이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판이나 시각적 보조 도구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윷놀이와 뚜렷이 구별된다. 총 29개의 말의 위치와 이동 경로는 모두 참가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구성되며, 놀이의 흐름은 구술을 통한 대화와 상호간의 확인, 합의 과정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은 놀이의 진행에 있어 참가자들 간의 높은 수준의 신뢰, 집중력, 그리고 공동의 기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윷놀이는 주로 정월 대보름과 같은 전통 명절이나 겨울철 농한기, 그리고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등 공동체의 일상적 공간에서 연행되며, 특히 노년층과 여성층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여가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왔다. 놀이 과정 전반이 기록이나 물리적 매개체에 의존하지 않고 구술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과 협상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는 전통 구술문화(oral tradition)의 현대적 재현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 윷놀이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유대와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공동체의 기억을 세대 간에 실천적으로 전승하는 문화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민속학적 가치와 문화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3) 전북 순창 지역<sup>51)</sup>: 감각 중심의 실내형 놀이— ‘각쟁이윷’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일대에서는 ‘각쟁이놀이’ 또는 ‘각쟁이윷’으로 불리는 특이한 형태의 윷놀이가 지역 고유의 전통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 놀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길이 3~4cm 정도의 작은 윷가락을 사용하

50) 디지털울진문화대전 “말발 없는 윷놀이” <https://uljin.grandculture.net/uljin/toc/GC01801742>

51) 디지털순창문화대전 “각쟁이놀이” <https://sunchang.grandculture.net/sunchang/toc/GC05901703>

며, 이를 ‘깍쟁이’라 불리는 종지 모양의 그릇에 담아 던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야외형 윷놀이와 달리, 깍쟁이놀이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실내형 기술놀이로, 단순한 투척이 아닌 손의 섬세한 감각, 회전력의 조절, 정확한 방향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이로 인해 참가자 간의 기술적 숙련도에 따라 놀이의 양상이 달라지며, 민속놀이의 영역 내에서도 독특한 기교성과 전략성이 돋보이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말판은 별도의 보드 없이 명석 위에 손으로 직접 그려 제작하며, 기본적인 윷놀이의 구조를 따르되 도수에 따라 말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이 각각 팀을 이루어 대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성별 간 협동과 상호작용이 중요한 사회적 기능으로 작동하며, 경쟁성과 협동성의 균형을 통해 공동체적 유희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계절적으로는 주로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실내 여가 활동으로 활용되거나, 농한기와 같은 노동 강도가 낮은 시기에 자연스럽게 연행되며, 마을 잔치나 제의적 성격을 띤 공동체 축제와 같은 집단 행사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연행 맥락은 깍쟁이놀이가 단순한 오락적 기능을 넘어서 지역 사회 내에서 사교적 소통, 의례적 참여, 세대 간 유대의 강화 등 복합적인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깍쟁이윷은 순창 지역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정서, 놀이를 통한 관계 맺기의 문화를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민속 실천의 한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4) 제주 지역<sup>52)</sup>: 도구와 방식의 생태적 적응— ‘넉똥빠기’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서는 ‘넉똥빠기’ 혹은 ‘넉지빠기’라는 독특한 형

52)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윷놀이” <https://seogwipo.grandculture.net/seogwipo/index/GC04601778>

태의 윷놀이가 전통적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이 놀이의 특성은 제주 지역 고유의 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넉뚱빠기’는 작은 종지 안에 4개의 윷가락을 넣고 흔들어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일반적인 윷놀이에서 사용되는 말판과 같은 외부 도구를 대신해 명석 위에 손으로 선을 그어 말의 위치를 표시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놀이 방식은 놀이가 실내 중심으로 행해졌음을 시사하며, 공간적 제약 속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놀이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제주 지역의 생태적 자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가시나무나 동백나무 등 제주도의 대표적인 수종으로 소형 윷가락을 제작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제주 지역 특유의 자연환경을 반영한 놀이 도구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도구는 단순히 놀이의 기호적인 요소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자연과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물로 작용한다.

‘넉뚱빠기’는 주로 노인층을 중심으로 정월대보름이나 겨울철 농한기와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행되었으며, 그 특성상 공동체 내에서 세대 간의 소통과 유대 강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오늘날에는 제주 지역의 전통 행사나 축제와 결합되어 민속 체험프로그램이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변화는 윷놀이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제주도의 ‘넉뚱빠기’ 윷놀이는 그 소규모적이고 구체적인 방식, 그리고 실천적 특성을 통해 제주라는 섬 특유의 공간적 고립성과 공동체 내부의 응집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방식, 공동체 의식,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민속적 실천이자, 제주 문화의 독창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마. 윷놀이의 현대적 전승 현황과 변화

윷놀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양상으로 전승되며, 전통적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변화된 생활환경과 기술적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통과 현대, 실물 놀이와 디지털 콘텐츠라는 두 축의 접점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속놀이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 마을 공동체의 잔치와 축제, 전통놀이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군부대 내 장병들의 여가활동, 노인복지관에서의 세대통합형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천적 공간에서 윷놀이는 활발하게 활용되며, 일상문화의 일부로서 그 전승이 지속되고 있다.

〈표 36〉 2025년 윷놀이 척사대회 현황 (언론보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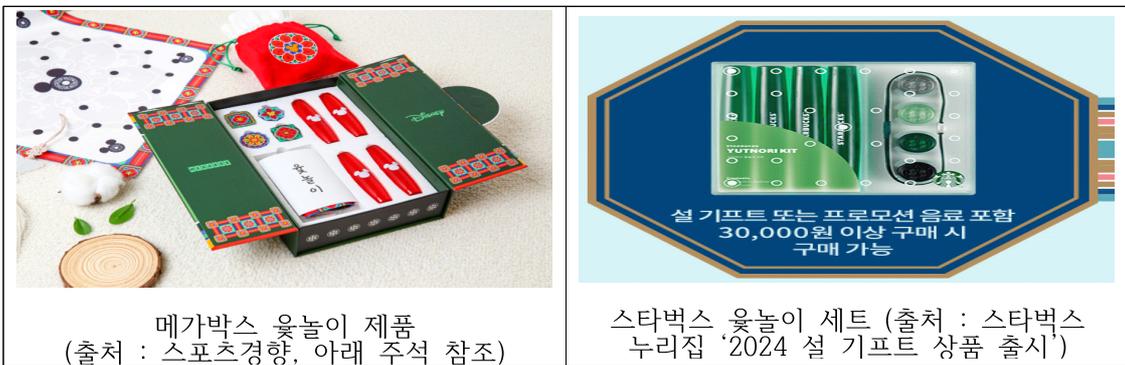
행사명	주최	일자	내용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	성남시 영남향우회	2.16.	지신밟기·원놀이 등 다양한 민속 프로그램 포함
2025 척사대회	국제라이온스클럽 356-B지구 용인동백라이온스클럽	2.22.	윷놀이 중심의 대회 및 친교 행사
2025년 을사년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고양특례시의회	2.14.	의원·직원 약 80명 참가, 윷놀이 및 제기차기 진행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	남양주시 다산2동 사회단체협의회	2.15.	지역 사회 화합 중심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	남양주시 별내동 사회단체협의회	2.14.	부대행사(노래경진, 윷놀이 등) 포함
2025 종암동 척사대회 (서울 성북구)	종암동 척사대회 추진위원회 (청년회 중심)	2.8.	투호·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병행, 수상자 쌀 기부 등
오산 대원2동 주민 화합 척사대회	오산시 대원2동 주민자치회 등	2.10.	주민·단체 회원 200여 명 참여, 눈으로 실내 전환 후 진행
2025년 가평읍 척사대회	가평읍 이장협의회	3.11.	32개 리 주민, 군수·의회 의장 참석, 전통놀이 중심 화합 행사
2025년도 정월대보름 금강송면 윷놀이대회	울진군 새마을지도자금강송면협의회	2.14.	총 32개의 조 출전, 윷놀이대항전
제5회 경기윷놀이대회	경기문화재단	9.13.	2025 경기전통놀이한마(9.13.~14.) 행사 일부



<그림 17>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

(출처 : 뉴시스, 2014.2.15. <https://v.daum.net/v/20140215023908482>)

대기업이 참여하는 옷놀이의 상품화도 심심치 않게 한국인의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 메가박스는 K-헤리티지(heritage·유산)를 활용한 디즈니코리아 아트웍을 적용한 옷놀이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상품은 설날 연휴를 맞아 전통 놀이문화 옷놀이에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 테마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옷가락, 옷판, 말(馬) 등 패키지 곳곳에서 한국 전통 단청 무늬와 ‘미키 마우스’가 어우러진 전통적인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sup>53)</sup> 스타벅스도 2024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스타벅스 옷놀이 키트그린’이라는 옷놀이 세트를 판매하기도 했다



메가박스 옷놀이 제품  
(출처 : 스포츠경향, 아래 주석 참조)

스타벅스 옷놀이 세트 (출처 : 스타벅스 누리집 '2024 설 기프트 상품 출시')

<그림 18> 옷놀이 제품

현대의 디지털 기술 및 상업적 플랫폼과의 융합을 통해 옷놀이는 모바일

53) “메가박스, 디즈니코리아 협업 ‘미키 마우스’ 테마 옷놀이 제품 출시”(스포츠경향, 2025.1.21.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501211910003>)

기반의 게임 콘텐츠, 보드게임 형태의 상품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한 민속놀이 콘텐츠로 재구성되며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윷놀이가 단순한 전통 오락의 범주를 넘어, 디지털 사회 속에서도 충분한 적응력과 확장성을 지닌 ‘살아 있는’ 민속놀이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19> 윷놀이 온라인게임 (출처 : 넷마블)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는 지역문화단체나 민속놀이 보존회를 중심으로 ‘자리윷’, ‘종지윷’, ‘여성 윷놀이’ 등 고유한 지역형 윷놀이의 전승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학문적 영역에서는 윷놀이의 규칙 체계, 말판 구조, 사위(四位)의 명칭과 상징성 등에 대한 민속학적·게임학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윷놀이를 둘러싼 전승 문화에 대한 이해가 보다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윷놀이는 전통문화의 고정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적·기술적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변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 무형유산으로서, 그 살아 있는 문화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전승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바. 무형유산으로서 윷놀이의 가치와 특성

윷놀이는 단순한 전통놀이를 넘어,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 내며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전수해 온 소중한 무형유산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명절이나 마을 잔치, 가족 모임, 군부대와 학교, 복지기관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폭넓게 전승되어 왔으며, 각 지역의 고유한 방식과 규칙, 놀이 도구를 통해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도 함께 담아왔다. 오늘날에는 전통적 형태뿐 아니라 모바일 게임, 체험 교육, 보드게임, 유튜브 콘텐츠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형식으로 재창조되며, 문화유산으로서의 생명력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다.

이러한 지속성과 융통성, 그리고 공동체적 기능은 윷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며, 이는 곧 윷놀이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는 생활 속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보여준다.

### 3. 윗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적합성 검토

#### 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 개요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해당 무형유산이 무형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 명시된 다섯 가지 핵심 등재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전승공동체가 인식하고 존중하는 전통적 관습, 표현, 지식,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표현이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오락이나 여가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과 기술의 세대 간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문화유산임을 의미한다. (R.1)

둘째, 국제적 가치성을 확보하고 중요성 인식 제고 및 국제적 대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세계 문화다양성을 반영하고 인류 창의성과 지혜의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유산이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수준에서 문화적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R.2)

셋째, 유산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계획,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전승과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교육적 활동, 공동체 참여 기반 관리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산의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단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3)

넷째, 유산과 관련된 공동체 및 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자유 의사에 기반한 동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공동체가 유산의 전승과 활용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유산의 사회적 의미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R.4)

다섯째, 해당 유산이 등재 신청 국가의 공식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신청국의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보호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국제 등재 신청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공식적 인정과 보호는 유산의 지속 가능한 전승과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다.(R.5)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들은 무형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에서 공유되는 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 나. 율놀이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적합성

율놀이가,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따른 대표목록 등재기준(R.1~R.5)에 부합하는지를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등재기준 검토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본 장에서는 핵심 사항만 간략히 다루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검토는 ‘Ⅵ. 율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및 로드맵’의 ‘라. 대표목록 등재기준 충족 요소의 적극 발굴·반영’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1) 대표목록 등재기준(R.1~R.5) 충족 여부

#### ① R.1 기준 적합성 - 전승성과 공동체 문화로서의 인식

율놀이는,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으며, 전통 명절과 마을 단위 공동체 행사에서 세대 간 자연스럽게 전승되어 왔다. 이러한 전승 과정에서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놀이를 즐기며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참여자 간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한 오락 이상의 문화적 의미를 가진

다. 윗놀이는 전승 공동체가 인식하고 존중하는 전통적 관습과 기술, 지식의 표현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 ② R.2 기준 적합성 - 문화 다양성 증진 등에의 기여

윗놀이는, 세계 여러 지역의 경주형 보드게임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독창성을 지닌다. 윗가락을 던져 이동 수를 결정하고, 다단계 진행 체계와 사회적 규칙이 결합된 구조는 한국적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비교 맥락에서도 독자적 가치를 가진다. 아울러 윗놀이는 정월대보름 적사대회,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및 현대적 체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승되며, 세대 간 연결과 공동체 유대 강화, 문화적 창의성 증진이라는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 즉, 윗놀이는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살아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R.3 기준 적합성 - 보호 및 전승 노력

윗놀이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지역 문화단체, 민간 단체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전통 방식뿐 아니라 현대적 변형과 포용적 전승을 포함하며, 학술 연구와 대회, 축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실행 가능한 조치들은 윗놀이의 보호와 전승 노력을 충분히 입증한다.

#### ④ R.4 기준 적합성 - 공동체 참여와 동의

윗놀이는, 전승 공동체와 민속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기반이 충분하다. 정월대보름을 비롯한 공동체 행사, 세대통합형 체험 프로그램, 지역 문화단체 중심의 전승 활동 등을 통해 남녀노소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며, 공동체의 주체적 역할과 권리를 보장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등재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동체 참여와 동의 확보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 ⑤ R.5 기준 적합성 - 국내 무형유산 지정 현황

웃놀이는, 2022년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특정 보유자나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전역의 공동체가 전승·향유한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인벤토리 등록과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신청국 영토 내 분류목록 포함이라는 R.5 기준을 충족하며, 대표목록 등재의 필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 (나) 웃놀이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충족 여부

웃놀이는, 단순한 전통 오락을 넘어,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깊이 연관된 무형유산이다. 오랜 세대에 걸쳐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되어 온 웃놀이는,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유엔이 제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여러 항목과 실질적으로 연계된다.

첫째, 웃놀이는, 포용적 사회 발전 측면에서, 세대·성별·계층 간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놀이로 기능하며, 형식·비형식 교육의 장으로서 SDG 4(양질의 교육), SDG 5(성평등), SDG 10(불평등 감소),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기여한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는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포용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둘째, 웃놀이는, 환경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나무, 천, 종이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하고, 별도의 기반 시설 없이 어디서나 놀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SDG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 13(기후변화 대응), SDG 15(육상 생태계 보전)와도 관련이 깊다. 자연의 순환 주기를 반영한 전통 전승 방식은, 생태 감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율놀이,는, 포용적 경제 발전과 관련, 지역축제나 관광 콘텐츠로 확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9(산업·혁신·인프라)와 연계된다. 체험형 콘텐츠나 디지털 율놀이 상품 개발은 전통문화를 현대 산업과 연결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넷째, 율놀이,는, 평화와 사회통합 영역에서, 공동체 내 협력과 신뢰를 촉진하는 문화 활동으로 작용하며, 남북한 주민이 함께 즐겨온 전통이라는 점에서, SDG 16(평화·정의·제도), SDG 17(파트너십 구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공동 놀이 경험은 갈등 완화와 평화적 공존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

종합하면, 율놀이,는, 사회적 포용성, 환경 친화성, 경제적 활용성, 평화적 가치를 고루 지닌 전통문화로서, SDGs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무형유산이다. 이러한 특성은 율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될 타당성과 국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V. 윷놀이 현지조사 결과

### 1. 현지조사 개요 (샘플 조사)

- 일 자 : 2025. 8. 7.(목)
- 장 소 : 대표성을 갖는 윷놀이 보존회 (공주시) 및 윷판 암각화 현장 (임실군)
  - 공주시 : 전통놀이보존회(대표 이결재)
  - 임실군 :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팀장 김철배)
- 조 사 자 : 박동석(책임연구원), 김지성(연구원)
- 조사내용 : 전승주체 및 활동방식, 전승 공간 및 환경, 대중화 및 프로그램, 협력 및 네트워크,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지역 반응 등

### 2. 현지조사 결과 (요약) \* '4. 윷놀이 현지조사 면담 조사표' 참조

#### 가. 공주시

- 전승주체 : 전통윷놀이보존회(공주문화관광재단 등 사업추진 지원)
- 전승활동방식
  - 강사 양성 정규프로그램, 윷두기 등 청소년 윷놀이교실 프로그램 운영
  -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공동체 종목 전승활성화사업 운영
- 전승공간 및 환경
  - 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 내 지하강당을 전통놀이보존회 전승공간으로 공동사용
- 대중화 및 교육프로그램
  - 위 전승활동방식의 내용과 같음

- 이외에도 매년 정월대보름에 10개 마을에서 자발적인 윷놀이 행사 개최
- 협력 및 네트워크 : 공주교육지원청과 초중고 윷놀이프로그램 공동 운영
- 지정과 지역 반응
  - 윷놀이 국가무형유산 지정(2022년)과 함께 국민 관심도 증가 및 전승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 윷놀이프로그램 충분한 강사비 지급, 공주형 6가지 윷놀이 전승을 위해 정부 지원 희망하고 있음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한 등의 공동 등재 희망
- 요청사항
  - 윷놀이를 상시적으로 체험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4계절 윷놀이 상설시범지구 지정 요청

## 나. 임실군

- 전승주체 : 단체 없음
- 전승활동방식
  - 주로 종지윷이 전승되고 있으나 마을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정적 전승
  - 전북도청에서 임실치즈마을 관광객 대상 체험형프로그램이 운영 중임
- 대중화 및 교육프로그램
  - 위 전승활동방식의 내용과 같음
  - 이외에도 매년 정월대보름에 10개 마을에서 자발적인 윷놀이 행사 개최
- 협력 및 네트워크 : 공주교육지원청과 초중고 윷놀이프로그램 공동 운영
- 지정과 지역 반응
  - 윷놀이 국가무형유산 지정(2022년)과 함께 국민 관심도 증가 및 전승활성

화를 기대하고 있음

○ 요청사항 : 옷놀이프로그램 충분한 강사비 지급, 공주형 6가지 옷놀이 전승을 위해 정부 지원, 4계절 옷놀이 상설시범지구 지정 요청

### 3. 현지 실태조사 사진



공주 전통놀이보존회 옷놀이 전승활동 현지조사(2025. 8. 7.)



임실 상가 옷판형 암각화 및 전승실태 현지조사(2025. 8. 7.)

<그림 20> 현지 실태조사 사진

#### 4. 윷놀이 현지 조사 면담결과

##### 가. 윷놀이 단체 및 전승자 등

현지 면담 조사표			
I. 기본 정보			
단체명(대표자)	전통윷놀이보존회(이걸재)		
지역명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단체 설립목적	윷놀이의 보존·전승 및 활성화		
면담일시	2025. 8. 7.(목). 11:00	면담장소	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 내 전통윷놀이보존회 사무실
II. 전승 주체 및 활동 현황			
전승 주체	1-1. 윷놀이의 전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유지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단체명(대표자) : 위와 같음 - 설립일 : 2019년 - 회원 : 70명 - 분회(2022년 설립) : 청양 소재		
	1-2. 다른 목적의 단체이지만 윷놀이 전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공주문화관광재단 : 전국윷놀이축제 유치 등을 통해 윷놀이의 활성화 도모 - 공주문화원 : 윷놀이의 이론적·학술적 지원		
전승 활동 방식	2-1. 윷놀이 전승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회원 대상: 강사 정규프로그램 운영 등 - 일반인 대상: 청소년 윷놀이교실 운영(10~15시간 프로그램/체험형 놀이마당)		
	2-2. 지역 고유의 윷놀이 유형이 전승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공주 '윷두기'(지능형 윷놀이) 등 전래되어 오는 70여가지 윷놀이 중 상당수가 잘 전승되고 있음. - 특히 초중고등학교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윷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윷두기 대회 등을 통해 공주지역 고유의 윷놀이 전승에 힘쓰고 있음.		
	2-3. 윷놀이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국가, 지방정부, 민간 등)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국가유산청: 2023년부터 국가유산 공동체종목 전승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임 - 공주 교육지원청: '행복놀이 교실'사업 안에 '윷놀이교실'프로그램 운영함		

<b>현지 면담 조사표</b>	
<b>III. 전승 공간 및 환경</b>	
<b>전승 공간 및 환경</b>	3-1. 윷놀이 전승을 위한 전용 공간이나 거점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충남 공주시 의당면 와룡동길 8 소재) 내 지하 강당을 전통윷놀이보존회의 전승공간으로 공동사용하고 있음
	3-2. 전용 공간이 없다면 윷놀이 활동은 주로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전용공간 외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 강당 또는 교실 등을 활용
<b>IV. 대중화 및 교육 프로그램</b>	
<b>대중화 및 교육 프로그램</b>	4-1. 윷놀이의 대중화를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국윷놀이축제」와 같은 전국 대상 대규모 행사 개최(공주시 주최, 공주문화원 주관, 전통윷놀이보존회 전체 행사 진행) - 앞에서 언급했던 공주 교육지원청의 초중고 대상 윷놀이 프로그램 운영 - 매년 정월대보름에는 10개 마을에서 자발적인 윷놀이 행사 개최
	4-2. 해당 프로그램은 주로 어느 시기에 운영되며, 정기성이 있습니까? - 「전국윷놀이축제」는 윷의 날(11월 11일)을 기념해서 11월 중 개최 - 공주 교육지원청의 초중고 윷놀이 프로그램은 학기 중 진행
	4-3. 프로그램의 참여자 구성은 어떠하며, 주민 참여는 활발합니까? - 「전국윷놀이축제」는 전국에서 선수만 500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행사이며, 일반시민, 청소년 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함
<b>V. 협력 및 네트워크</b>	
<b>협력 및 네트워크</b>	5-1. 지역 내 단체(교육기관, 기업, 유관기관 등) 또는 다른 무형유산 보유 단체와의 협업 관계가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공주 교육지원청과 초중고윷놀이 프로그램 협업 진행
	5-2. 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초·중·고 윷놀이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및 진행
<b>VI.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과 지역 반응</b>	
<b>지정과 지역반응</b>	6-1. 윷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전후로 지역사회나 단체의 반응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윷놀이 축제 등 행사장에서 남녀노소, 가족 단위들의 반응을 보며 윷놀이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음 - 국가유산청의 윷놀이 등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지원에 따라, 윷놀이의 전승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6-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 첫째, 초·중·고 윷놀이프로그램 등 충분한 강사비 지원 - 둘째, 공주형 6가지 윷놀이의 원활한 전승을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안정적 지원 - 셋째, 윷놀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남북한, 중국, 일본 공동등재 추진 희망 (중국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타진하고 있음)
<b>VII. 추가 의견</b>	
<b>추가 의견</b>	6-1.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윷놀이를 상시적으로 체험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4계절 윷놀이' 상설 시범지구 육성을 희망하고 있음.

## 나. 지원기관(정부 및 지자체 등)

현지 면담 조사표			
I. 기본 정보			
기관명(면담자)	임실군청 김철배 팀장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		
지역명	전라북도 임실군		
면담일시	2025. 8. 7.(목). 16:00	면담장소	상가웃판형암각화 현장 등
II. 전승 주체 및 활동 현황			
전승 주체	1-1. 율놀이의 전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유지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1-2. 다른 목적의 단체이지만 율놀이 전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전승 활동 방식	2-1. 율놀이 전승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전북도청이 임실군 소재 임실치즈마을 관광객 대상으로 전통놀이체험프로그램 중 율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전승활동 지원책은 없음		
	2-2. 지역 고유의 율놀이 유형이 전승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임실군에서는 주로 '종지율'이 전승되고 있으나, 마을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정적 전승이 되고 있음		
	2-3. 율놀이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국가, 지방정부, 민간 등)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위에 언급한 대로, 전북도청의 임실치즈마을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이 있으나, 전승활동이라기보다는 체험형 프로그램만이 있음		
전승 공간 및 환경			
전승 공간 및 환경	3-1. 율놀이 전승을 위한 전용 공간이나 거점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3-2. 전용 공간이 없다면 율놀이 활동은 주로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야외 또는 마을회관 등에서 자발적 놀이		
IV. 대중화 및 교육 프로그램			
대중화 및 교육 프로그램	4-1. 율놀이의 대중화를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위에 언급한 대로, 전북도청의 임실치즈마을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4-2. 해당 프로그램은 주로 어느 시기에 운영되며, 정기성이 있습니까? - 관광객 대상 상설프로그램 운영		
	4-3. 프로그램의 참여자 구성은 어떠하며, 주민 참여는 활발합니까? - 전국의 일반 시민, 청소년, 외국인 등 다양함		

현지 면담 조사표	
<b>V. 협력 및 네트워크</b>	
<b>협력 및 네트워크</b>	5-1. 지역 내 단체(교육기관, 기업, 유관기관 등) 또는 다른 무형유산 보유 단체와의 협업 관계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5-2. 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특이사항 없음
<b>VI.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과 지역 반응</b>	
<b>지정과 지역반응</b>	6-1. 율령이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전후로 지역사회나 단체의 반응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특이사항 없음
	6-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 2024년말을 기점으로 그동안 문화유산팀이 없었던 임실,장성,청송 등 기초 지자체 3곳에도 문화유산팀이 신설되었음. 이를 전후로 임실군은 문화유산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임실 상가 율령형 암각화'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음. - 임실 하가의 구석기유적은 2026년 2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 후에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임. 해당 구석기 유적 구역 내에 생태문화관을 건립 구상임. 이 생태문화관에 '임실 상가 율령형 암각화' 디지털화 작업도 수행할 예정임 - 상가 율령형 암각화 뿐만 아니라 율령이의 전승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음
<b>VII. 추가 의견</b>	
<b>추가 의견</b>	6-1.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특이사항 없음

## VI. 전문가 용역 검토회의 결과

### 1. 전문가 검토회의 개요

- 일 시 : 2025. 9. 4.(목) 10:00
- 장 소 : K헤리티지재단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가길 59)
- 참 석 자
  - 발주처 : 권 신 팀장, 유상호 차장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 전문가 : 장장식 소장(길문화연구소), 김지욱 회장(경기민속학회)
  - 용역 수행처 : K헤리티지재단 박동석 이사장, 김지성 무형유산센터장, 문귀호 활용실장
- 검토내용 : 용역 내용 전반에 대한 자문의견 제시

### 2.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및 보고서 반영 내용 : 전면 반영

#### 가. 장장식 소장

- 시각장애인용 윷놀이에 대한 언급 및 활용성 : 104쪽 반영
- 남북공동등재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119쪽 반영
- 세계 유사 윷놀이의 네트워크 결성 방안 및 활용성 : 146쪽 반영
- 공동체의 축제 놀이로서의 성격 강조 - 대보름놀이, 단오놀이, 상례놀이. 잔치놀이 : 121쪽 반영
- 윷점 등 변형 활용 윷놀이 부각 필요 : 121쪽 반영

## 나. 김지욱 회장

- 경기도 사업 추진 현황 및 경기도 윗놀이 전승현황에 대한 내용 : 105쪽 반영
- 국가유산 지정 명칭을 기반으로 윗놀이, 윗놀이문화, 윗문화에 대한 설명 및 제안 희망 : 155쪽 반영
- 로드맵 지도 필요(표/한눈에 볼 수 있는 용도) : 155쪽 <표57> 반영

## 3. 전문가 검토회의 사진



<그림 21> 전문가 검토회의 사진

4. 전문가 의견서 각 1부

**웃놀이 인류무형유산 등재전략 수립 기본연구 자문의견서**

성명	장장식 <del>박</del>	주민번호	
소속	길문화연구소	직위	소장
자문일시	2025. 9. 4	장소	K헤리티지재단

자 문 의 견

- 기보 연구의 전체 내용이 매우 바람직함.
- 시각장애인의 웃놀이에 대한 언급 및 현충당
- 남북공동 등재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세계 유산 웃놀이의 네트워크 형성 방안 및 화합성
- 공중재의 축제놀이로서의 성격 강조; 대안적 놀이 · 단오놀이 · 생애놀이 · 잔치놀이
- 율령 등 변형 · 현충 웃놀이 부각 필요

## 옯놀이 인류무형유산 등재전략 수립 기본연구 자문의견서

성명	김지우 (인원)	주민번호	
소속	계원대학교	직위	원장
자문일시	2025. 8. 9. 4.	장소	K-허미캐시

### 자 문 의 견

- 경기도의 사업조건 현황 및 경기도 옯놀이 전승현황에 대한 내용 (가능한 만큼만) 추가 희망.
- 국가유산 지정 현황을 기반으로 옯놀이, 옯놀이문화, 옯놀이 등에 대한 형차관 규정 범주에 대한 설명 및 제안 희망
- 지도맵 지도 필요 (동영상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용도로!

## Ⅶ. 최종 용역 보고회 결과

### 1. 최종 용역 보고회 개요 및 결과

○ 일 시 : 2025. 9. 14.(일) 15:00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 101호~102호

○ 행사명 : 경기 전통놀이 계승 한마당 학술심포지움(2025.9.13~14.)

\* 동 학술심포지움 2일차(9.14.) 제3부 세션에서 발표

○ 참석자

- 발주처 : 권 신 팀장, 유상호 차장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 전문가 : 김종대(중앙대 명예교수), 이상호(놀이연구소 펠 소장), 정형호(무형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장장식(길문화연구소 소장), 김지옥(경기민속학회 회장 등) 등 다수
- 용역 수행처 : K헤리티지재단 박동석 이사장, 김지성 무형유산센터장, 문귀호 활용실장

○ 보고회 결과 : 특이사항 없음(웃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및 로드맵 용역 결과 보고 후 문답)

### 2. 최종 용역 보고회 사진



<그림 22> 최종 용역 보고회 사진

## Ⅷ. 윗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및 로드맵<sup>54)</sup>

### 1.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리적 등재 전략

#### 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선제적 대응

중국은, 44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압도적 1위 국가이다. 56개 다민족(55개 소수민족)을 이점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무형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있다. 예측 여부를 떠나, 이러한 점은 다른 나라와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조선족의 무형유산을, 중국 국가·지방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는, 대한민국과 중국 양국 국민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대립 양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관련 소식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 여론은 뜨거워지고, 정부와 국회 등은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한다. 최근의 한 사례를 살펴본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등은 “중국 지린성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인 돌솥비빔밥의 조리 기술을 지역 무형문화유산에 포함하고, 중국 식당은 이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고 전했다.

실제로, 지린성 제5차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 종목 명부를 보면,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돌솥비빔밥을 성급 문화유산으로 추천했다. 반크 등은 돌솥비빔밥 외에도 윗놀이와 김치 조리법 등 최소 17건이 중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대응이 시급한 무형유산을 선별, 추가 연구용역을 진행해 경쟁력 강화 방

54) 여기서 제시되는 등재전략 및 로드맵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가능성과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료이므로, 향후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보다 현실적·체계적으로 보완·작성되어야 한다.

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우선 등재를 위한 선제적 조치 강구 등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sup>55)</sup>

반크 등 애국적 민간단체의 대응은, 매우 칭찬해주고 싶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문화적 측면에서만 보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문화란, 원래 다양성, 복잡성, 창의성과 역동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개인, 가정, 집단, 사회 및 국가 등 모든 단위 주체는, 서로 소통·교류하고 끊임 없이, 문화와 함께 변화된다. 물론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과 독창성은 일정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절대불변인 문화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특히 무형유산은 변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더군다나 중국은 많은 소수민족을 국가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 중국 한족(漢族)의 입장에서는, 국가통합의 관점에서, 소수민족의 문화를 독려하고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키워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중국 정부로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진 조선족의 문화만큼 매력적인 문화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계속적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사례처럼, 국가유산 지정 또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은, 역사왜곡의 형태가 아닌 이상은 문제 제기의 타당성과 실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지정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있어, 대한민국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 윗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55)“‘돌솥비빔밥’ 중국 무형문화유산 지정 ‘파장’…국가유산청 “선제적 조치 강구”“(KBS) <https://v.daum.net/v/20240919181551394>

## 나. 국가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중국은 2016년 김치, 2008년 한복(조선족 복식), 2011년 아리랑과 씨름, 2014년 추석, 2021년 율놀이를 각각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에 비해 국가유산청은 아리랑을 2015년, 김치와 씨름을 2017년, 한복과 율놀이를 2022년, 추석을 2023년에야 각각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sup>56)</sup> 중국은 2008년 '조선족 농악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했다.

아무리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현실은 냉혹하다. 앞서 나가는 국가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중국 등 주변국의 동향 파악을 위해 정보력을 키우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의 적절하고 충분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제적으로 국가 또는 시·도 무형유산 지정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지름길이자 해법일 것이다.

설사 중국 등 주변국보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무형유산을 국제사회에 보란 듯이 내놓으면 되는 것이다.

### (1)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도 율놀이가 2022년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지정무형유산이나 예비목록으로 선정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정해놓고 있다. 유네스코

---

56) “[단독] 중국보다 늦게 김치, 한복 등 무형문화유산 등재한 국가유산청” (경향신문, 2024.10.9.)  
<https://v.daum.net/v/20241009171649399>

무형유산협약 운영지침대로, 제도적·행정적 보호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율놀이,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일단락되었으므로, 이제 인류무형문화유산 후보 선정과 함께, 등재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율놀이의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더불어, 2023년 율놀이와 활쏘기 등 총16건을 ‘국가무형유산 전승공동체사업’으로 선정하고 최대 2억원(국비·지방비 각 50%)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전승공동체란,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 없이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아리랑, 씨름, 김치 담그기, 한복 생활 등 일상에 널리 퍼진 16개 종목이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종목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작성자 추가)이 이번에 처음 지원을 시작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체 종목의 전승공동체를 육성해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강화하려는 취지다.<sup>57)</sup>

한편으로는, 놀이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용 율놀이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애인과 그 장애인 중 약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장애인용 율놀이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기회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 등의 보호조치와 활성화사업 등은 해당 무형유산의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이다.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국가 및 지방정부는, 율놀이를 비롯해 가치가 큰 무형유산을 조기에 발굴하여, 보다 충분하고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57)“율놀이·활쏘기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지원 사업 선정”(서울신문,2023.3.29.) <https://v.daum.net/v/20230329050344575>

## (2) 율놀이 단체들의 전략적 육성

공동체를 비롯한 율놀이 단체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들 공동체와 진흥 단체들이, 지역 사회에서 문화·경제적 활력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율놀이 전승과 활성화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같은 정부지원사업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대체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투자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3> 율놀이 대회 포스터(출처 : 서울뉴스통신, <http://www.snakorea.com/news>) 상당히 큰 규모로, 또한 가장 활발하게, 율놀이 등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단체로, 경기문화재단을 들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최근까지 ‘2024 경기 율놀이 한마당대회’ 라는 율놀이 단일대회를 개최해 왔다. 그러다가 2025년에는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 으로 명칭을 바꾸고 해당 행사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제5회 경기율놀이대회’ 를 이어오고 있다.



<그림 24> 율놀이 축제 및 강사 수강생 모집 홍보자료(출처 : 공주문화관광재단) 공주문화관광재단도, 율놀이 전승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재단의 율놀이 사업이, 국가유산청의 ‘2024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재단은 공주시의 전통율놀이보존회와 함

계 2023년 ‘제1회 전국 윗놀이 축제’ 및 2024년 ‘제2회 전국 윗놀이 축제’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윗놀이 강사양성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윗놀이 강사 양성사업’은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2일 2시간씩 총 9일간의 이론 및 실습 강의를 통해 수강 완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에게는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윗놀이 교실’, ‘관광객 대상 체험마당 운영’ 등 각종 윗놀이 대회에서 강사 및 심판으로 참여하거나 전통·민속문화 활용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 두 재단은 물론, 전국적·세계적 규모의 윗놀이 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윗놀이대회 주관단체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주목할 만한 단체 중의 하나로, ‘K헤리티지재단’을 들 수 있는데, 이 단체는 재단 소속으로 (가칭) ‘윗문화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설치 준비와 아울러, 국제 규모의 윗문화 경기대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이미 ‘제1회 월드코리아컵 경기대회 개최(안), 윗문화 경기 방법 및 규칙(안), 윗문화 경기용 윗갈판 윗발규격(안)’ 등을 마련해 놓고 시행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이 단체는 2012년 ‘윗판의 철학과 윗놀이 문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전통문화를 지키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사)한민족학세계화본부와 발을 맞춰 이 대회를 치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제1회 월드코리아컵 경기대회 개최(안)’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 대회명칭 : 제1회 월드코리아컵 윗문화 경기 대회(안)														
○ 기간 : ○○년 ○월 ○일(금) ~ ○월 ○일(일)(3일간)														
○ 장소 : 서울시내 실내·외 경기장(대학-기업 등의 체육시설)														
○ 대회구성 : 3마당으로 꾸밈(본행사 / 부대행사 / 특별행사)														
○ 경기종별 : 66개 부문(개인전 12개 부문, 단체전 54개 부문)														
- 개인전 : 12개 부문(남성부 / 여성부 각각 6개 부문)														
- 단체전 : 54개 부문(남성부 / 여성부 / 혼성부 각각 18개 부문)														
학생부						일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25세이하)		청년부 26세~40세		장년부 (40~60세)		노년부 (61세 이상)				
2인	4인	6인	2인	4인	6인	2인	4인	6인	2인	4인	6인	2인	4인	6인

- 게임종목
  - 선수국적별 : 국내부, 국제부
  - 선수인원별 : 개인전, 단체전(2인전, 4인전, 6인전)
  - 선수구성별 : 남성부, 여성부, 혼성부(단체전) / 특별:가족부(3代 이상)
  - 생애주기별 :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 필요예산 : 3억원(인건비 1억 3천만원+경비 1억 7천만원)(내역 별첨)
- 주최/주관 : (사)국제문화재전략센터, (사)한민족학세계화본부
- 후원
  - 중앙정부 : ○○부, ○○부, ○○청, ○○청
  - 지방정부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 유관단체 : ○○위원회, ○○위원회, ○○센터, ○○재단, ○○학회 등
- 협찬 : 대기업,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그림 25> 제1회 월드코리아컵 율문화 경기 대회(안) (출처 : K-헤리티지재단)

이들 단체와 같이, 율놀이문화에 열정을 갖고 있는 율놀이 단체를 육성하고 지역 율놀이 단체들을 한데 묶어 전국적 조직으로 육성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4) 세미나 등을 통한 율놀이의 학술적 토대 강화 및 붐 조성

본 보고서는 율놀이의 현황과 등재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초 연구 단계에 불과하다. 율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관 단체(현재 미정)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전략 추진단(또는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칭 ‘율놀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 추진단(이하 ‘추진단’ )’ 을 공식 발족하여, 중장기적 등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진단은 율놀이 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공청회 및 심포지엄 개최, 국민 서명운동 전개,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활동은, 율놀이가 가진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확보하며, 공동체 육성

을 통해 무형유산으로서의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율놀이 성공적인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및 학계가 협력하는 추진체계 구축과 함께 적극적인 전략적 활동 전개가 절실하다.

#### (5) 공인심판 등 운영제도의 체계적 정비

율놀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중요하다. 그것 중 하나인 공인심판 제도 도입은, 율놀이 경기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인지도자 및 심판 자격 제도를 명확히 마련하고, 체계적인 심판 교육 및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경기 운영 심판의 복장, 의전 기준, 심판 절차 등 세부 규정을 통일하여 국내외에서 율놀이가 동일한 규범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화 작업은, 단순히 경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율놀이가 전통문화로서 갖는 정체성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율놀이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율놀이의 국내외 전승 및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율놀이를 통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전통 민속놀이의 현대적 가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율놀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팀(또는 추진단)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 확립을 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계획과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 (6) 윷놀이 통합정보시스템(허브, 플랫폼) 구축

202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윷놀이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지닌 전통 민속놀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과 연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학술적 배경, 전승 현황, 척사대회 운영 상황, 지역별 변형 놀이 방식 등 윷놀이의 전통과 현대적 활용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윷놀이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 그리고 향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윷놀이 허브(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해당 허브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 학술정보 및 전승자료의 집대성 : 윷놀이의 역사, 지역별 특성 및 변형, 놀이 규칙의 변화 과정, 구술 자료 등 다양한 연구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한다.
- 심판 및 지도자 양성 정보 제공 : 공인 심판 및 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교육자료, 연수 과정, 자격 기준 등을 안내하여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한다.
- 참여형 전승 활성화 : 디지털 윷놀이, 전통 윷 만들기 체험, 참여자 인터뷰 등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하여 전승 문화 활성화를 촉진한다.
- 대회 및 행사 기록 아카이빙 : 시멘틱 데이터 및 기술에 의한 윷놀이 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모형도에 따라 국내외 윷놀이 대회, 척사대회 등 주요 행사와 관련된 기록과 영상 자료, 학술자료 등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참고로 윷놀이문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모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은, ‘시멘틱데이터 아카이브 + 메타버스 + 인공지능’을 기본 구성요소로 한다.<sup>58)</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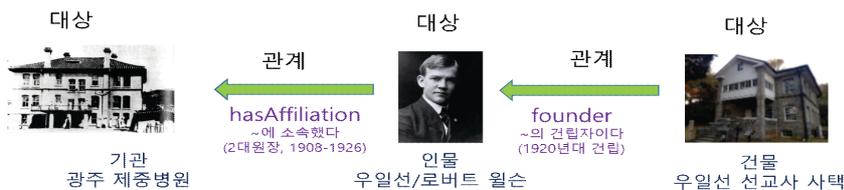
58)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제공 자료



<그림 26> 윗놀이문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모형도

### ○ 시맨틱데이터

- 개념 : 독립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의 연결방식을 표현함으로써 데이터에 담긴 의미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정보
- 형태 : 대상(사람, 장소, 사건, 사물 등)에 대한 정의와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서로 연결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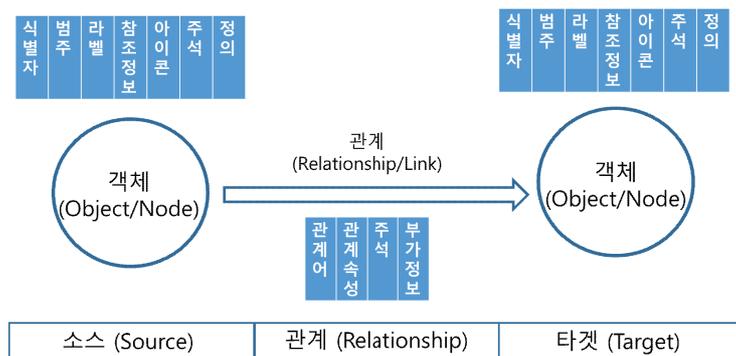
<그림 27> 시맨틱데이터 상호작용 방식

- 제작 이유
  - 디지털환경에서 디지털원어민이 활용
  - 미래세대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필수적으로 인공지능(AI)을 도구로 사용
  - 디지털원주민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원천 자원도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만들어져야 함.

■ 제작 방법

- 데이터 파악 대상의 담긴 정보에서 의미를 갖는 요소(대상, 객체, 사물 등)가 무엇인지를 파악함.
- 이런 의미있는 요소들 사이에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정의를 함.

■ 구조



<그림 28> 시맨틱데이터 구조

○ 시맨틱데이터 아카이브(Semantic Data Archive)

■ 개념

- 인문학분야의 시맨틱데이터를 수집·정리 보존하는 큐레이팅된 디지털 자원의 저장소
- 대상 객체의 개별적인 속성 정보와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기록하여 대상 정보의 의미적 맥락을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한 데이터베이스

■ 활용: 학제간 연구, 교육적 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

- 여러 분야에 걸친 데이터 통합(Integrates Data Across Disciplines):
  - 학제간 의사소통과 협업을 촉진하여 인간의 지식과 문화를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
- 교육적 응용 지원(Supports Educational Applications ):
  - 교육자와 학생은 아카이브를 인간 삶의 상호 연결성을 탐구하는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인공지능-준비성(AI-Readiness ):

- 큐레이팅된 콘텐츠는 인공지능이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됨.

○ 메타버스(Metaverse)

■ 개념

-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체험하며, 교류하고 발전시키는 가상세계
- ‘공급자’ → ‘소비자’의 단방향 세계가 아니라
  - ‘체험하고 교류하고 생산하는 프로슈머(Producer+Consumer)들에 의해 진화하는 쌍방향 세계’
  - ‘그러한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플랫폼)’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개념 : 인간의 지적·언어적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만들어진 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 역할 : 반복적이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 작업을 대신. 인간이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에 더 깊이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함

이와 같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유희이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 놀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유희이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 놀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

### (1) 정책적 배경과 추진 타당성

웃놀이는, 남북한 모두의 세시풍속과 명절, 지역 공동체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대표적 전통 민속놀이로, 남북이 같이 보유한, 상징성을 지닌 무형유산이다.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익숙한 웃놀이는, 놀이 도구, 규칙, 전승 방식, 공동체적 의미에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며, 민족공동체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적 표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한편 정치·군사적 대립 상황에서, 문화 분야는 교류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2018년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는, 유네스코의 절차적 유연성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활용한, 문화분야 교류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웃놀이의 공동등재 추진도, 정책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한다.

### (2) 전략적 접근 방향

전략적 접근 방향은 첫째, 남북이 각각 독립적인 신청서를 제출하되 평가과정에서, 하나의 등재로 병합 승인받는 ‘이원 병렬 등재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과거 씨름 공동등재 사례에서처럼 공동 작성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정치적 문화협력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웃놀이가 남북 공동 문화유산임을 부각한다. 웃놀이는, 남북 모든 지역에서, 정월대보름이나 설날과 같은 전통 명절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는 물론 마을 공동체 단위의 행사 속에서도 꾸준히 계승되어 온 생활문화로, 분단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민족 전체가 공유해 온 문화적 연속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웃놀이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남북한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실천되어 왔다는 점에서, 남북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다.

셋째, 민간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남북 간 공식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 옷놀이 전승단체,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국제 NGO, 학술단체 등 다양한 비공식·다자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의 일방통행 요소를 줄이고 민족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㉔ 이원 병렬 등재전략 적용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사례는, 이원 병렬 등재전략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남북한이 각각 독립적으로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뒤, 유네스코의 평가 과정에서 병합되어 공동등재된 방식이다.

북측은 2016년에, 남측은 2017년에 각각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에 씨름이 공동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남북 간의 공동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정치적 문화협력 모델로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측의 옷놀이 전승 실태조사 및 행정적 지원 등의 남측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정치상황이 급속히 좋아진다면, 일원 통합 등재, 즉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남북 공동으로 준비하고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재를 추진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 ㉕ 공동 유산으로서의 정당성 부각

남북한 간 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를 추진함에 있어, 해당 유산이 공동유산으로서 정당한 지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는 단순히 등재 요건 충족을 넘어서, 국제사회와 유네스코를 대상으로 공동유산으로서의 정체성과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이 각각 다른 문화·정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등재가 단순한 상징적 행위를 넘어 실질적인 문화협력 모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정당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거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율놀이(俗놀이)는 공동유산으로서의 정당성을 부각해야 할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율놀이는 정월대보름, 설날 등 전통 명절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 행사에서,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실행·전승되고 있으며, 남북 모두의 일상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있는 생활형 무형유산이다.

이 전통 놀이문화는 유네스코가 중시하는 세대 간 전승성과 공동체 기반성을 충족하며, 공동체 내부의 정체성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특성은 유산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공동등재 추진 시 국제사회로부터 문화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또한 공동유산으로서의 정당성은, 유산의 문화사적 배경과 사회적 기능이 단순 병존이 아닌 문화적 접점과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율놀이와 같이 남북 간 문화적 공통 기반이 명확한 유산일수록, 정당성을 적극 부각함으로써 등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해석의 차이나 문화적 오해를 사전에 완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북 공동등재 추진 과정에서 공동유산의 정당성을 전략적으로 부각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단순한 문화보존을 넘어 남북 문화협력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공신력을 담보하는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㉔ 민간·국제기구 연계 통한 간접 협력 채널 구축

남북 간 정치적 긴장과 외교적 단절이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무형유산의 공동등재와 같은 협력적 문화사업은, 공식 정부 간 채널에만 의존할 경우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율놀이와 같이 남북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유산의 공동등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국제기구를 연계한 간접적 협력 채널을 구축·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율놀이와 관련된 전승단체,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관련 분야의 국제 NGO, 그리고 민속학·문화유산 분야의 학술단체 등은 남북 간 비공식 협력의 촉진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자적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정치적 긴장을 낮추면서도 문화적 접촉과 정보 공유, 그리고 전승현황의 비교 연구 및 자료 축적 등이 비교적 수월해질 수 있다.

특히 무형유산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협력 과정에 참여할 경우, 정책 결정이 특정 기관이나 정부 입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우되는 구조를 피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실무적인 신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공동등재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공공외교 및 문화협력 기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공동유산인 율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데 있어, 민간과 국제기구를 연결하는 간접적 협력 채널은,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남북 문화유산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공동등재를 넘어 문화유산 분야의 평화적 교류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㉔ 남북 율놀이 공동등재 실행 로드맵

남북한 간 정치적 긴장과 공식 채널의 단절 상황을 고려할 때,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공동등재는,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남북이 독립적으로 준비한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가 평가 과정에서 병합

승인하는 ‘이원 병렬 등재(dual parallel nomination)’ 방식은 씨름 사례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남북 율놀이 공동등재를 위한 실행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남북 율놀이 전승 현황의 비교조사이다. 정치적 민감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과정은 민간 연구기관과 학계 중심으로 수행하며, 남북 양측의 전승 형태, 놀이 방식, 지역적 분포, 공동체 참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상호 유사성과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등재 서류 작성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제2단계는, 율놀이 비교자료집 발간 및 국제 학술 교류의 개최이다. 비교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집은 남북 문화의 공통 기반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학술 교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동유산으로서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율놀이 전승단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관련 NGO, 학술단체 등의 참여는 간접협력 채널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제3단계는, 남북이 각각 등재신청서 초안을 작성하고 병렬적으로 제출하는 ‘이원 병렬 등재 전략’을 적용한다. 공동 문서 작성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공동등재라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행 가능 방안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 그룹 간의 비공식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신청서 간 내용의 조화와 병합 가능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4단계는, 등재 확정 이후의 홍보 및 문화교류 확대 단계이다.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남북이 율놀이를 매개로 한 문화행사, 공동전시, 전승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통해 공동유산의 의미를 확산시킨다. 이로써 공동등재는 단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남북 문화협력의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원 병렬 등재 전략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실행은, 정치적 민감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문화협력 모델이다. 특히 윗놀이와 같은 일상생활 기반의 민속놀이를 통해, 남북은 문화유산의 공동 보존을 넘어 상호 인식의 회복과 문화적 점점 확대라는 중장기적 목표까지 함께 달성할 수 있다.

〈표 37〉 단계별 실행 로드맵 수립

단계	주요 과제	추진 주체·비고
1단계	남북 윗놀이 전승 현황 비교조사	민간 학계·연구기관 주도
2단계	윗놀이 비교자료집 발간·국제 학술 교류 개최	국내외 전문가 참여
3단계	남북 각각 신청서 초안 작성·병렬 제출	공동 작성 부담 해소
4단계	공동등재 확정 후 홍보·남북 문화교류 확대	국제사회 여론·미디어 활용

### (3) 기대효과 및 정책제언

남북 간 문화교류의 실질적 재개를 위한 무형유산 공동 등재 사업은, 현재 단절된 정치·군사적 소통 채널을 대신할 새로운 협력 모델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문화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의 교두보가 될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민족 문화의 연속성과 상징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윗놀이’와 같은 무형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는, 한민족의 문화적 유산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과 보존 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평화 담론을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문화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윗놀이문화의 연구 활성화 및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평화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국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과거 ‘씨름’ 공동 등재 성공 사례를 제도화하여, 실무 매뉴얼과 표준화된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윗놀이의 남북공동 등재방안 연구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민간과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상시 운영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적 연대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무형유산 공동 등재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문화 교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에도 교육 프로그램, 전시, 국제대회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지속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문화 교류와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종합하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통한 남북 문화협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민족공동체 회복,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실행 전략이 병행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 라. 대표목록 등재 기준 충족요소의 적극 발굴·반영

‘Ⅳ. 율령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적합성 검토’에서, 율령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R.1~R.5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R.1~R.5의 필수요소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은 각 항목별 필수요소이다.

〈표 38〉 R.1~R.5 각 항목별 필수 요소

기준	명칭	필수 포함 요소
R.1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제2조 정의 명시: 전통, 관습, 표현, 지식, 기술 등과 관련 도구·공간 포함</li> <li>■ 세대 간 전승과 재창조 과정 설명</li> <li>■ 공동체의 정체성·복원성<sup>59)</sup> 제공 기능 명시</li> <li>■ 전승자(보유자, 실행자, 구성원, 교육자 등) 등 주체, 장소, 전승방식 등 명시</li> <li>■ 인권과 지속가능발전과의 조화 강조<sup>60)</sup> (운영지침 VI 챕터 관련)</li> </ul>
R.2	대표목록의 목적에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재가 무형유산의 가시성 증가와 인식 제고에 기여함을 설명</li> <li>■ 문화 간 대화(intercultural dialogue) 및 상호이해 촉진 기능</li> <li>■ 문화 다양성과 인간 창의성을 반영하는 유산임을 명시</li> <li>■ 지속가능성(사회·경제·환경) 명시<sup>61)</sup></li> </ul>
R.3	보호 및 증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보호 조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도 보호, 조사, 문서화, 교육 프로그램 등</li> </ul> </li> <li>■ 보호 활동의 지속성 및 공동체 주도성 강조</li> <li>■ 잠재적 위협 및 그에 대한 대응 전략 포함</li> <li>■ 전승 조치에서 형식·비형식 교육 병행</li> </ul>
R.4	공동체 참여 및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유산의 실행자(공동체, 집단, 개인 등)의 폭넓은 참여 설명</li> <li>■ 등재 추진과정에서의 능동적 역할 강조</li> <li>■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기반한 동의 확보</li> <li>■ 공식 동의 문서 또는 영상 자료 첨부 필요</li> </ul>
R.5	국가 인벤토리 등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이 국가·지역 무형유산 인벤토리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li> <li>■ 인벤토리는 협약 제11조 및 12조에 따라 공식 인정되어야 함</li> <li>■ 인벤토리 등재 시점, 기관명, 관련 문서 명기 필요</li> </ul>

59) 복원성(resilience)은 유산이 외부 충격(전쟁, 기후위기, 근대화, 경제 변화 등) 속에서도,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고, 계속해서 실천·재창조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과거처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남고 재해석되는 능력이다.

60) 무형유산협약에 근거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는, 기존 인권선언 등 국제문서와 양립 가능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R.1에 넣었다.

61) 지속가능성을 R.1에 포함시켰지만, 등재신청서 작성 시 R.2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가 지속가능성이다. 이의 이유 및 경위에 대해서는 “II.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환경 및 사례 분석.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개요. 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운영방식 및 기준·절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시, 등재기준 필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웃놀이는 고유성과 다양성을 지닌 전통 놀이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전승 기반이 여전히 살아 있고, 현대적 계승 노력이 활발하며, 세계 유사 놀이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점, 특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상당한 정도로 부합하여 등재 타당성 및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 (1) 대표목록 등재기준(R.1~R.5) 충족 여부

##### (가) R.1 기준 적합성 검토 - 공동체 기반의 전승성과 문화적 인식

웃놀이는, 한반도 전역에서 세대와 계층을 넘어 자발적으로 전승되어 온 전통 민속놀이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제2조에 명시된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과 관련된 전통적인 놀이와 실천’에 해당한다. 이 유산은 말판, 웃가락, 말 등의 관련 도구와 놀이 공간을 포함한 형태로, 공동체가 세대를 거쳐 재창조하며 실천해 온 문화적 행위이다.

웃놀이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대감을 상징하는 문화적 실천이다. 주로 정월대보름, 설날과 같은 전통 명절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에서의 공동 놀이로 행해졌다. 공동체의 축제놀이로도 기능해왔는데, 대보름놀이, 단오놀이, 상례놀이, 잔치놀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연행되어 온 대표적 공동체 놀이였다. 또한 웃점, 웃송(웃노래) 등 변형을 통해 그때그때 쓸모에 맞는 웃놀이의 활용을 하였다는 점은 무형유산으로서의 창의성을 나타내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웃놀이는 학교 수업, 전통놀이 대회, 지역축제, 복지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실천되며,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세대 간 전승 구조와 재창조 과정이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9〉 R.1 기준 필수요소 충족성

구분	내용	R.1 기준 충족성
협약 제2조 정의 부합	관습, 표현, 지식, 기술과 관련된 도구, 물품, 공예품, 문화 공간 등으로 구성된 무형문화유산	웃놀이는 전통 지식, 놀이 기술, 윷가락·말 등의 도구와 놀이 공간을 포함하며, 협약 제2조의 무형유산 정의에 부합함
공동체 기반의 전승성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역, 계층, 연령에 관계없이 실천되고 있음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 기반 유산임
세대 간 전승 및 재창조	가족과 지역공동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계승되고, 현대 생활에 맞게 다양하게 재구성됨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변화에 적응해 재창조되는 생동하는 유산임
생활문화로서의 포용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일상 속 놀이로 자리 잡음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되어 접근성과 포용성이 뛰어난 대중적 민속놀이임
공동체 정체성 유지 및 복원성	명절과 마을 행사 등에서 유대감과 정체성 형성에 기여	공동체 소속감 강화와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며 외부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함
인권 및 지속가능 발전과의 조화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협동과 소통을 중시함	포용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실천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님

이러한 점들은, 웃놀이가 유네스코 무형유산 협약 운영지침상 R.1 기준, 즉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문화 실천을 반영하는 유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나) R.2 기준 적합성 검토 - 문화다양성의 반영과 인류 창의성에의 기여

웃놀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2) 기준에서 요구하는 핵심 요소들을 고르게 충족하고 있다. 먼저, 다양한 교육 현장과 지역 축제,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서 활발히 전승되고 있어 무형유산의 가시성을 높이고 대중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대표목록의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웃놀이는 중앙아시아의 ‘토기즈 쿠말락’이나 튀르키예의 ‘망갈라’ 등과 같은 유사한 전략 놀이와 비교 가능성이 높아, 문화 간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학술적 협업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권

간의 대화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율놀이 는 독창적인 도구 구성과 규칙, 전략적 협동 구조를 바탕으로 인류의 집단적 창의성과 민속적 상상력을 표현하며, 지역별 변형과 확장을 통해 문화 응용 가능성도 지닌다.

마지막으로, 율놀이 는 교육(SDG 4), 성평등(SDG 5), 불평등 해소(SDG 10),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SDG 11), 글로벌 협력(SDG 17)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산이다.

<표 40> R.2 기준 필수요소 충족성

구분	내용	R.2 기준 적합성
대표목록 목적 부합	율놀이가 무형유산의 가치성 제고와 인식 확대에 기여함	국내외 교육·축제·국제문화교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전승·홍보 중
문화 간 대화 촉진	다양한 문화권 전략 놀이와 비교 가능하여 상호이해 및 학술 협업에 기여	중앙아시아 토기즈 쿠말락, 튀르키예 망갈라 등과 유사 놀이와 문화적 대화 가능
인류 창의성 표현	독창적인 도구·규칙 및 전략적 협동으로 민속창작과 문화응용 사례 제공	지역별 변형과 확장 가능, 집단적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지속가능성 구현	사회·경제·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	SDG 4(교육), 5(성평등), 10(불평등 감소), 11(지속가능 공동체), 17(글로벌 협력)과 연계됨

이와 같은 점들은, 율놀이 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R.2 기준, 즉 ‘대표목록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 다양성 및 인류 창의성의 반영, 그리고 지속가능성 구현’ 을 충족함을 보여준다.

(다) R.3 기준 적합성 검토 - 보호 조치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

율놀이 는 국가·지역사회·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보호와 전승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R.3 기준에 부합한다. 특히 전승 공동체 및 문화 기관들은 전통 방식의 보존뿐 아니라 현대적 수단을 활용한 전승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법적·제도적 기반도 뒷받침되고 있다.

웃놀이는 전승 공동체와 민간단체가 교육 프로그램, 척사대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게임과 온라인 콘텐츠 등 현대적 수단을 활용해 세대 간 접근성을 넓히고 있다. 정부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웃놀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전승 공동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전승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학교 현장 교육과 지역 축제 연계 활동, 아카이빙 등을 통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 요소를 바탕으로 디지털화와 미디어 교육, 놀이문화 콘텐츠 개발을 병행하여 현대적 보존 방식과 융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전승을 도모하고 있다.

<표 41> R.3 기준 필수요소 충족성

구분	내용	R.3 기준 적합성
전승 공동체 및 민간단체 실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 웃놀이 보존회, 지역 문화원, 학교 교육기관 주관 교육 프로그램, 척사대회, 실태조사 등</li> <li>공동체 기반 전승과 현대적 접근(디지털 게임, 온라인 콘텐츠, 체험 교재) 병행으로 세대 간 접근성 확대</li> </ul>	전승 공동체의 주도적 참여와 현대적 보호 방식 병행으로 지속성 및 실현 가능성 확보
정부의 제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보호</li> <li>정기적인 전승실태조사 실시</li> <li>목록화, 기록화, 시연행사, 교육 커리큘럼 등 체계적 보호 조치 수행</li> <li>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지정 전승 공동체 16개, 연간 약 2억 원 지원</li> </ul>	법·제도적 보호 근거와 행정적 지원, 조사·관리 체계 구축으로 보호 조치 실행력 확보
전문기관 주도의 보호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지원청·한국전통문화전당 협력, ‘우리 웃놀이 세대 전승사업’ 운영</li> <li>교수자료 개발, 교사 연수, 체험교육, 축제 연계 실습, 아카이빙 등 보호 조치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 강화</li> </ul>	전문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으로 보호 기반 마련, 교육 및 현장 활동 병행 통한 보호 조치 강화
창의성과 현대적 접근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 요소 기반 디지털화, 미디어 교육, 놀이문화 콘텐츠화</li> <li>현대적 방식과 전통적 방식의 융합으로 유산의 생명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전승 가능</li> </ul>	전통 보존과 현대적 재창조의 조화로 유산 가치 유지 및 확장, 지속가능성 증대

이와 같이, 웃놀이는 제도적·공공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실천이 조화를 이루며,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보호조치를 갖춘 무형유산으로서 R.3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

(라) R.4 기준 적합성 검토 -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및 사전 동의 가능성

웃놀이는 공식적인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미 등재 추진을 위한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구조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R.4 기준, 즉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기반한 동의” 요소에 부합할 수 있는 준비된 유산이다.

2024년 3월, (사)겨레살림공동체 이해학 목사는 “웃놀이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민 인식을 촉구했다. 또한 2022년에는 충남문화재단이 ‘남북 공동 웃놀이 대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웃놀이 유사 사례가 세계 80여 개국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등재 추진 분위기를 조성했다.

현재 전국의 전통 웃놀이 보존회, 지역 문화재단, 민속놀이 협회 등은 활발히 등재 필요성을 논의하며 세미나, 놀이대회, 문화제 등을 통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남북 문화교류 차원에서도 웃놀이의 공동문화로서 상징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계 역시 학술지 발표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등재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지역 축제나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활발한 대중 참여는 향후 참여형 캠페인이나 서명운동 등을 통한 동의 확보 기반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웃놀이는 이미 국가무형유산(2022년 지정)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당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며, 보존회들과 전승자, 문화재단 등의 협력 네트워크는 사전 동의 절차와 기록화를 위한 행정 인프라로 바로 활용 가능하다.

<표 42> R.4 기준 필수요소 충족성

구분	내용	R.4 기준 적합성
공동체 민간단체 참여	전통 웃놀이 보존회, 문화재단, 민속놀이 협회 등이 등재 추진 찬성 발언 및 문화제·놀이대회 개최	공동체의 자발적인 추진 의지와 공론 형성 주도
남북 공동체 협력	남북 공동 웃놀이 대회, 교류 행사	분단 상황에도 공유 문화자로서의 상호

구분	내용	R.4 기준 적합성
가능성	추진 논의	이해와 참여 기반 존재
전문가·연구자 학술 공감	학술지·심포지엄 발표를 통해 등재 필요성 인식 확산	학계의 연구적 지지와 공동체 참여를 위한 제도적 권고 확보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지역 축제,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대중 참여 확대	향후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통한 참여자 기반 마련 가능성
정당한 등재 기반 확보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시·도무형유산 포함, 기록화 및 사전 동의 기반 인프라 보유	제도적 기반 위에서 투명하고 정당한 등재 절차 운영 가능

이처럼 율놀이, 등재를 위한 실질적인 공동체 동의 가능성과 참여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참여’의 조건에 부합한다. 등재 절차가 개시될 경우, 정당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동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R.4 기준 충족에 있어 높은 타당성을 지닌 유산으로 평가된다.

#### (마) R.5 기준 적합성 검토 - 국가무형유산 목록 포함 여부

율놀이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보편성과 공동체적 연행 기반을 지닌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등재의 전제 조건인 국가 목록 등재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한다.<sup>62)</sup>

율놀이는 2022년 11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 의해 ‘공동체 놀이’ 유형의 대표 사례로 국가무형유산으로 공식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L) 등재를 위한 R.5 기준—즉, 신청국의 공식 무형유산 보호 목록에 해당 유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충족하는 것이다.

율놀이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연행되며, 명절, 교육 현장, 지역 축제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세대 간 전승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유산이 아니라 생활문화 속에서 살아 있는 무형유산임을 보여준다.

62) “문화재청, ‘율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서울문화투데이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26>)

또한, 제도적 보호 체계도 점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전통놀이 규칙의 표준화, 지도자 및 심판 양성 교육, 디지털 기반의 아카이브 구축, 교육용 자료 개발, 청소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보호·전승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비록 보호체계가 완전하게 구축된 단계는 아니나, 정부와 지역사회,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유연한 방식으로 제도적 기반을 확장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보존 가능성과 함께 국제 문화교류 확장성도 갖추고 있다.

〈표 43〉 R.5 기준 필수요소 충족성

구분	내용	R.5 기준 적합성
국가무형유산 지정	2022년 11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공동체 놀이’ 유형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유네스코 등재 전제 조건인 국가 목록 포함 요건 충족
전국적 보편성과 공동체 기반	특정 지역이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연행, 명절·교육·축제 등 다양한 맥락에서 실천됨	살아 있는 생활문화로서의 무형유산으로 실천성 확보
제도적 기반 정비	규칙 표준화, 지도자·심판 양성,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보호 체계 점진 정비	보호·전승 기반의 체계적 강화와 지속 가능성 보장
국제적 확산 가능성과 유연성	정부·지역사회·민간 협력으로 보호 체계 유연하게 발전, 현대 매체와 콘텐츠를 통한 확산 추진	다양한 문화교류 채널을 통한 국제사회 연계와 문화적 파급력 확보 가능

결론적으로, 율놀이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무형유산으로서, 유네스코 R.5 기준인 ‘국가 보호 목록 등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관련 보호·전승 체계의 제도적 기반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등재 준비를 위한 제도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작성할 때, R.1~R.5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II.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환경 및 사례 분석.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개요. 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운영방식 및 기준·절차.’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기준(R.1~R.5)별 작성 필수요소”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항목별로 필수요소들을 충실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등재조건 개념 확장에 따른 분석

### (가)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해

위에서 여러 번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충족해야한다는 것을 언급해왔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유엔(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잠시 학습해보고자 한다.



<그림 29> UN의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SDGs)  
(출처 :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s://www.ncsd.go.kr>)

위 그림처럼, 2015년 유엔이 2030년까지 해결을 목표로 새롭게 설정한 목표로서, 지구촌 문제는 인류 모두가, 공존과 책임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하는 공통의 과제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빈곤과 기아를 없애

고, 모두가 건강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평등과 안전한 물·위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양질의 일자리, 혁신적인 산업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해양과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 모든 과정은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때 가능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유엔이 지구촌의 심각한 문제들을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든 글로벌 목표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전에도 새천년개발목표(MDGs)라는 유엔의 글로벌 목표가 있었는데, 해당 목표는 선진국을 지원자로 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목표였다. 두 가지 목표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4〉 MDGs와 SDGs의 비교<sup>63)</sup>

구분	새천년개발목표 (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기간	2000~2015	2016~2030
목표(세부목표)개수	8개(21개)	17개(169개)
적용대상	주로 개발도상국(선진국은 지원자)	모든 국가(선진국·개발도상국 모두)
중심	빈곤,건강,교육 등 개발 중심	사회,경제,환경 분야 발전 중심
수립 참여	제한적 참여(정부, 국제기구 등)	광범위한 이해당사자 참여(시민사회,기업 등)
접근 방식	원조, 지원(Top-Down)	보편성,통합성,파트너십
포괄성 및 확장성	비교적 협소(빈곤,건강 등 일부)	매우 포괄적(불평등,환경,평화 등 대폭 확대)
슬로건 및 주 메시지	공식 슬로건 없음. 국제개발협력, 빈곤과 기아 감소, 인류 기본권 강조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Leave One Behind) 지속가능성, 포용적인 성장, 평등, 협력

SDGs 17개 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이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영역은 각각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목표이며,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 영역은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건 및 방법이다.

63) “SDGs(지속가능발전목표)”(티스토리 ‘친절한 밤샘,2025.7.25.) <https://bam-saem.tistory.com/192>

〈표 45〉 SDGs의 5대 영역(5P)<sup>64)</sup>

5P	SDGs	분야
People(사람)	SDG1.빈곤퇴치, SDG2.기아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업, SDG3.건강과 웰빙, SDG4.양질의 교육, SDG5.성평등 보장, SDG6.깨끗한 물과 위생	사회발전
Prosperity(번영)	SDG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9.산업,혁신,사회기반 시설, SDG10.불평등 감소, SDG11.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경제성장
Planet(지구)	SDG7.적정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SDG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SDG13.기후행동, SDG14.해양생태계 보존, SDG15.육상생태계 보존	환경보존
Peace(평화)	SDG16.평화·정의·강력한 제도	사회·경제·환경 목표달성 위한 조건 및 방법
Partnership (협력)	SDG17.목표달성을 위한 협력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따른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양식에는 두 번째 항목에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인지도, 대화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내용을 구술토록 하였다.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박스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데, 식량안보, 보건, 교육, 성평등, 포용적 경제발전,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평화와 사회응집력 등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5대 영역(5P)’ 과 ‘등재신청서 양식에 기재된 지속가능발전 항목(이하 ‘SDG항목’ )’ 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식량안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평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포용적 경제발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평화와 사회 응집력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 필요한 경우, 상기 진술의 근거를 서술하시오.
--

〈그림 30〉 등재신청서 양식에 기재된 지속가능발전 항목

〈표 . SDGs의 5대 영역(5P)〉의 사람(People) 부분의 경우만, ‘SDG항목’ 에서 ‘식량안보’, ‘보건’, ‘교육’, ‘성평등’ 등 4가지로 세분류 해놓았고 나머지는 ‘포용적 경제발전’,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평화와 사회 응집력’ 등으로 대분류해 놓았다.

64) 위와 같음. 작성자 일부 내용 및 양식 변형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체인 인간(People)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강조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 (나) 윷놀이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분석

윷놀이는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로, 오랜 기간동안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민족적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단순한 오락으로 보이기 쉬운 이 전통놀이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글로벌한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 문화적 요소이다.

특히 유엔이 제시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비교해볼 때, 윷놀이는 교육, 사회적 포용, 공동체 강화, 환경적 지속 가능성,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는 위에서 말한 대분류에 따라 윷놀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분석을 통해, 대표목록 등재 타당성 및 가능성의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 ① 포용적 사회 발전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4 (양질의 교육), SDG 5 (성평등), SDG 10 (불평등 감소),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윷놀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놀이로서, 특히 정월대보름을 중심으로 한 세시풍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 활동으로 기능하고 있다. 명절이나 마을 공동체 행사를 계기로 가족 단위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윷놀이를 즐기는 과정은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교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윷놀이는, 교육지원청의 체험교실 등을 통한 공식적·비공식적 교육, 구술을 통한 규칙 전수, 놀이 중 수적 계산과 전략을 통한 사고력 강화, 규칙과 순서를 지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인식을 내면화하게 되는 등

비형식적 교육의 기능도 뛰어나며, 이는 교육의 기회가 제한된 세대나 계층에서도 문화적으로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지속적 전승은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포용력을 강화하고, 성별과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된 사회 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농한기에 실내에서 즐기도록 변형된 ‘보리풍년웃’은 여성과 고령층이 놀이의 주도적 주체로 참여하는 전통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대등하게 어우러지는 공동체 놀이 문화의 긍정적인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전통은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여성이 문화적 실천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자연스럽게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평등 실현의 기초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성평등 요소는, 정부 간 위원회가 등재신청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 ② 환경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 13 (기후변화 대응), SDG 15 (육상 생태계 보전)

웃놀이는 놀이 도구와 진행 방식에서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통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웃가락은 주로 나무를 깎아 만들며, 말판은 천, 명석, 종이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고 생분해되어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놀이가 이루어지는 장소 역시 특별한 기반 시설이 필요 없이 마루, 마당, 들판 등 일상적인 실내외 공간에서 간단히 설치할 수 있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합리적이다.

또한 웃놀이는 정월대보름을 비롯한 음력 명절과 같은 계절적 주기를 따라 전승되어 왔으며, 이는 자연의 순환과 생태적 시간감각에 기초한 문화 실천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은 웃놀이가 전통의 생태 감수성을

담고 있으며, 놀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전승해왔음을 보여준다.

### ③ 포용적 경제 발전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9 (산업·혁신·인프라),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웃놀이는 단순한 전통놀이의 영역을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산업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문화 자원으로 점차 재조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의 ‘척사대회’는 지역축제와 연계되어 주민 참여를 넘어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며, 이는 지역 특산품 판매, 숙박, 음식 서비스 등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직결된다.

또한 웃놀이의 역사적 상징성과 교육적 가치에 기반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보드게임이나 모바일 앱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 상품화 등은 웃놀이가 문화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대적 재해석은 웃놀이를 경제적으로도 자립 가능한 무형유산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끄는 토대가 된다.

### ④ 평화와 사회통합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6 (평화·정의·제도), SDG 17 (파트너십 구축)

웃놀이는 전통적으로 마을 단위의 척사대회나 가족 단위의 실내 놀이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왔다. 특히 경쟁과 협동이 동시에 요구되는 웃놀이의 규칙 구조는, 참가자 간의 상호 존중과 양보, 공동 목표 달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이는 평화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문화적 훈련의 역할을 한다.

대회 형식의 공동체 웃놀이는 주민들 간의 상호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세대 간 갈등이나 지역 내 긴장 요소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더 나아가 율놀이는 남북 공동체 간 문화 교류의 접점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민족 간의 평화로운 소통 가능성을 실현하는 문화적 매개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율놀이는 놀이를 통한 화해, 통합, 협동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실천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표 46〉 율놀이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분석

SDGs 분류	관련 SDGs	율놀이 연계 내용 / 실천 사례
포용적 사회 발전	SDG4(양질의 교육)	구술 규칙 전수, 놀이 속 수적 계산과 전략, 비형식 교육 기능 제공
	SDG5(성평등)	남녀노소 모두 참여 가능, 여성과 고령층 주도적 참여 사례 존재
	SDG10(불평등 감소)	세대·성별·계층 상관없이 참여 가능, 문화적 학습 기회 균등 제공
	SDG11(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명절·마을 행사, 척사대회 등 공동체 유대 강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
환경 지속가능성	SDG12(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나무, 천, 종이 등 자연 재료 활용, 재활용 가능
	SDG13(기후변화 대응)	특별 기반 시설 없이 놀이 가능, 자연 친화적 전승
	SDG15(육상 생태계 보전)	자연 재료 사용과 계절적 주기에 맞춘 전승으로 생태 감수성 유지
포용적 경제 발전	SDG8(양질의 일자리·경제 성장)	지역 축제·척사대회와 연계, 관광객 유치, 지역 상권 활성화
	SDG9(산업·혁신·인프라)	체험형 관광 콘텐츠, 디지털 게임, 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 산업 연계
평화·사회 통합	SDG16(평화·정의·제도)	세대·계층 간 협동과 경쟁, 상호 존중, 공동 목표 달성 경험 제공
	SDG17(파트너십 구축)	남북 공동 율놀이, 국제 교류, 문화적 네트워크와 협력 관계 형성

#### (다) 대표목록 등재기준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종합 검토의견

율놀이는 한국 사회 전역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이어온 대표적인 전통 민속놀이이다. 이 놀이는 명절, 세시풍속, 그리고 마을 공동체 행사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전승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공동체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율놀이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는 핵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율놀이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하며,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높은 가치를 갖는다.

율놀이가 지닌 전승 방식은 공동체 중심의 자생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전통을 단절 없이 이어가면서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포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놀이 방식과 전통문화의 보전 노력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율놀이는 제도적 보호 기반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여건도 잘 갖추고 있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법적·사회적 지원 체계와 연계되어 전승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처럼 율놀이는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실천력, 제도적 뒷받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례로서,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문화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 전통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 ① 공동체 문화 정체성과 연속성 측면

율놀이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와 사회 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전승해 온 전통 놀이로서, 특정 지역이나 한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대표성을 지닌다. 단순히 가족 단위의 놀이를 넘어서, 정월대보름이나 설날과 같은 공동체 명절 행사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로 치러지는 척사대회 등 다양한 사회적 모임에서 율놀이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동체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으며, 문화유산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다. 특히 율놀이가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온 공통의 문화적 실천이라는 점은, 한반도

전역에 깊게 뿌리내린 민족적 유산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 나아가, 남북 공동등재는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어 온 문화적 연속성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한민족의 문화적 유대와 화합의 상징적 회복을 의미한다.

## ② 창의성과 문화다양성 측면

윷놀이는 인간의 협동심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의례적·점술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전통문화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전통놀이와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도구의 형태, 규칙의 운영 방식, 참여하는 방식 등에서 고유한 독창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같은 특성은 유네스코 등재 기준인 R.2에서 강조하는 ‘인류 창의성의 표현’ 과 ‘문화다양성 증진’ 에 부합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윷놀이는 단순한 놀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공식·비공식적 교육의 장으로서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성별·연령·사회 계층을 초월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특성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양질의 교육(SDG 4), 성평등(SDG 5), 불평등 감소(SDG 10),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DG 11)와도 깊게 연결된다. 특히 남북 양측에서 모두 전승되고 있는 공통된 전통성은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설득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이다.

## ③ 제도적 보호와 전승 기반 측면

윷놀이는 정부와 민간 양측에서 다양한 보호 및 전승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실질적인 보호 조치(R.3 기준)를 충실히 갖추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전승 지원 사업과 지역 문화재단 및 민속 단체들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윷놀이 심판제도 도입 추진,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의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전승 기반의 현대화와 확장 가능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호 체계는,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며, 앞으로도 윷놀

이가 지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더불어 남북한이 협력하여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율놀이 는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한 국제적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 ④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합의 측면

율놀이는 보존회, 지역 문화원,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는 무형유산이다. 학술 세미나 개최, 대국민 교육 캠페인, 그리고 척사대회 등 다양한 전승 활동이 진행되면서 공동체 내부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사전 동의를 이끌어내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 기준 R.4가 요구하는 ‘자유롭고 사전적인 공동체의 동의와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특히 남북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척사대회와 문화교류 행사는 공동 등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족 공동체의 문화적 연대와 상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국가 무형유산 등재 측면

율놀이는 2022년 11월, 한국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 의해 ‘공동체놀이’ 분야의 독립된 항목으로 국가무형문화재에 정식 등재되었으며, 이는 유네스코 등재 기준 R.5에 해당하는 사전 조건을 분명히 충족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 제도 아래에서 율놀이의 보존과 활용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북측에서도 유사한 목록화가 이루어진다면, 남북이 함께 ‘공동 목록화 및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형태는 국제 사회에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 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측면

윷놀이는 사회·경제·환경·평화 분야 등 다차원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지닌다. 사회 발전 영역(SDG 4, 5, 10), 생태적 감수성 영역(SDG 12, 13, 15),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SDG 8, 11), 평화와 포용적 공동체(SDG 16) 등 다양한 목표와 연결된다.

놀이의 생태적 제작 방식, 참여적 구조, 지역사회 기반 활용 모델은 단순한 전통 보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의 문화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남북 공동 등재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평화, 지속가능성, 문화다양성 증진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

결론적으로, 윷놀이는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자생적으로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로서, 문화적 정체성 구현, 사회통합 촉진, 국제적 문화 교류 가능성, 제도적 보호 실현 가능성을 두루 갖춘 유산이다.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 기준 R.1~R.5를 다각도로 충족하며, SDGs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현대적 가치와 실천 가능성 또한 입증할 수 있다. 남북 공동 등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문화통합, 국제사회 문화대화 플랫폼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표 47〉 지속가능발전(SDGs) 연계분석 설명 방식(예시)

항목	설명	구체적 예시
포용성과 세대 간 통합 강조	-SDGs의 핵심인 "Leave no one behind" <sup>65)</sup> 정신과 윷놀이는 자연스럽게 연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 → Goal 10 (불평등 감소)
교육을 통한 전통 전승 가능성	-윷놀이는 비형식 교육의 좋은 예시로, SDGs의 교육 목표와 부합	-초등학교 전통놀이 수업에 활용 → Goal 4 (양질의 교육)
가족·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	-현대사회에서 단절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데 활용 가능	-설날 윷놀이 대회, 마을 축제 윷놀이 →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문화다양성 및 무형 유산 보호 촉진	-유산의 다양성과 전통문화 보존은 SDGs의 문화 관련 핵심 내용	-지역별 윷놀이 형식 다양성 보존 → Goal 16 (포용적 사회)
친환경 콘텐츠로의 전환 유도	-단순 도구 기반의 놀이로 탄소 발생 거의 없음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조 가능	-디지털 기반보다 저탄소 전통놀이로 활용 → Goal 13 (기후변화 대응)

65) "Leave no one behind"는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 마. 개념적 특성(Concepts) 및 생물 군계(Biome)의 명확성 제시

앞서 ‘II.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환경 및 사례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전통놀이는 개념적 명료성(Conceptual clarity)과 함께 문화·환경적 맥락(Biome)의 구체적 설명이 등재 평가뿐 아니라 이후의 홍보·검색·활용 단계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분류 개념의 모호성은 등재 이후 유네스코 내 검색과 범주화에 영향을 미쳐 해당 유산의 국제적 인지도 및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윷놀이 등재 추진과 관련한 분류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대한민국의 대표적 전통 전략놀이인 ‘윷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등재 전략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① 국제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개념(Concepts) 정의

윷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지능적 전략 구성, 공동체 협동, 놀이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전통 지식 기반 놀이문화이다. 등재 신청서에서는 이를 ‘전통 전략 게임(traditional strategic game)’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기반 전통 놀이’로 정의하고, 게임성과 문화적 서사성의 균형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표 48〉 개념(Concepts) 연계분석 설명방식(예시)

항목	설명	구체적 예시
단순한 놀이를 넘어선 문화적 복합성 강조	-윷놀이는 단순한 던지기 놀이가 아님 -점복·의례·오락·교육적 요소가 결합된 종합 행위	-설날, 정월대보름 등 명절 의례와 결합 -말판에 우주관·농경 세계관 반영(천·지·인 등)
전략성과 사고력 기반의 지능형 전통 게임	-윷놀이는 확률, 전략, 상대방 판단을 요하는 고차원 게임 -지능적·전략적 요소를 개념에 포함시켜	-말을 합칠지 나눌지, 잡을지 피해갈지 판단 필요 -윷·모 확률 계산, 순서 배치 전략 등

보장하자는 원칙이다.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Leave No One Behind, <https://unsdg.un.org/2030-agenda/universal-values/leave-no-one-behind>

항목	설명	구체적 예시
	야 교육 및 콘텐츠 확장에 유리	-보드게임의 조상으로서 현대 교육 콘텐츠화 가능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역할 반영	-세대 간 교류, 가족 간 유대, 공동체 참여 촉진 도구로서 기능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규칙과 예절을 설명 -세대 통합형 가족 놀이로 지속 활용 가능
교육적·사회성 발달 도구로서 기능	-감정 조절, 질서 지키기, 규칙 이해 등 사회성 훈련의 기회 제공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 시간에 활용 -전통놀이를 통한 SEL(Social Emotional Learning) 가능
지역적 다양성과 변형의 기반 제시	-지역마다 옷의 모양, 말판 형태, 규칙에 차이가 있음 -문화다양성 설명의 자료가 됨	-제주도 12칸 옷판 -전남 일부 지역 5개의 옷대 사용 등 지역 변형
현대적 재해석 기반 마련	-디지털, 교육,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	-모바일 옷놀이, 전략 보드게임화 -외국인 대상 전통 전략 게임 체험 관광 콘텐츠

## ② 생물군계(Biome) 연계분석을 통한 맥락적 설명

옷놀이는 한반도의 특정 생태와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겨울철 실내 공동체 활동, 농경 사회의 주기성, 가축(말, 소)의 이동을 상징하는 말판 구성 등은 옷놀이가 한반도의 농경 생물군계(temperate agricultural biome)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의 통합적 표현임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이다.

<표 49> 생물군계(Biome) 연계분석 설명방식(예시)

항목	설명	옷놀이 구체 사례
놀이 재료의 생태적 기반 설명 가능	-옷놀이 도구(옷, 말, 판)는 모두 지역 생물자원 기반으로 제작됨	-옷 : 나무(밤나무, 대나무 등) -말 : 콩, 팥, 돌, 조각 나무 등
지역 생물다양성과 생활 문화의 연결고리 제공	-옷놀이는 지역의 식생 및 자연 자원 활용 지식이 포함되어 있음	-옷 제작 시 적합한 나무 선택 -지역별 나무 특성에 따른 옷 모양 차이
환경 변화에 따른 놀이 방식 변화 탐색 가능	-도시화, 산림 자원 감소 등으로 전통적 도구 제작 어려움 발생	-나무 옷 대신 플라스틱 사용 증가 -전통방식 복원 위한 지역 자원 보호 필요
생태적 놀이문화로 재해석 가능	-자연 기반 전통놀이로서 환경 친화적 활동으로 분류 가능	-비전력, 무소음, 무탄소 놀이 → 환경 교육 연계 가능
지속가능한 유산 보호를 위한 자원 관리 필요	-생물군계 분석은 도구 제작·사용과 자연자원 보호의 연결고리를 제공	-옷 재료로 사용되는 지역 수종 보호와 연계된 교육 필요

### ③ 율놀이의 국제 등재를 위한 분류 전략과 해석의 재정립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분류체계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제출 문서의 기술 방식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율놀이는 ‘전통 게임(traditional games)’ 이나 ‘전통 놀이문화(traditional play culture)’ 등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범주어를 활용하여 분류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몽골의 ‘샤가이(Shagai)’ 나 아제르바이잔의 ‘팔라바니(Pahlavani culture)’ 와 같은 유사 유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율놀이의 독창성과 공통된 문화적 요소를 동시에 부각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율놀이가 민속놀이나 명절 행사, 가족 단위 여가활동 등으로 다소 제한적으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제적 심사 기준—즉, 사회적 기능, 공동체적 가치, 문화적 지속 가능성 등을 반영한 재정의 작업이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무형유산 보호와 국제 등재 확대를 위해서는, 율놀이와 같은 전통놀이에 대해 민속적 특성뿐 아니라 문화 생태적 맥락(Biome), 전통 지식, 공동체 기여도, 국제 분류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특히 유네스코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활용해 사전 개념 정립 및 분류 전략을 체계화할 경우, 율놀이 등재 추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2.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장기 등재 로드맵(2025년~2036년)

### 가. 추진 전략 개요

웃놀이는, 정월대보름을 비롯한 세시풍속과 깊이 연결된, 한국 고유의 민속 놀이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성,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 오랜 세월 구전과 실천으로 이어져 온 세대 간 전승성을 두루 갖춘 무형유산이다.

이미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웃놀이는, 향후 제도적 기반 정비, 공동체 중심 보호조치, 국제적 보편성 확보를 통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203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목표로 한다. 특히 2018년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초기에는 남북 각각 신청서를 준비·제출하고, 이후 유네스코 심사 과정에서 공동등재로 병합하는 ‘이원 병렬’ 전략을 검토한다.

○ 등재 목표 : 2036년 12월

○ 추진 기간 : 2025년 ~ 2036년 (총 12개년)

○ 주관기관 : 국가유산청 및 관련 지자체, 문화재단 및 공동체 등

○ 협력기관 :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국가유산진흥원, 국내외 민속학회 및 북한 연구기관 등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후보가 결정된 종목은 2025년 9월 현재 3종목이다. 그리고 이들은 2026년~2030년 격년마다 차례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2026년 한지, 2028년 인삼문화, 2030년 한복생활).

이렇게 국내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보 결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등재 준비에 돌입한 이들 세 종목들 외에도, 사찰음식, 수륙제, 한글서예, 태권도 등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들 중에서 국가유산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계종의 사찰음식과 수륙제, 2018년부터 남북한 공동등재를 추진 중인 태권도, 전라북도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은 한글서예 등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한글서예와 태권도는 이미 등재 추진단을 결성하고 체계적 준비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웃놀이가 2036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도 사실상 버거울 수 있는, 공격적 일정일 것이다.

한편, 남북 공동등재를 목표로 하는 태권도의 진행 과정은, 웃놀이 공동등재 추진에도 시사점을 준다. 남북 간 직접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간·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비공식 채널을 활용하고, 병렬 신청을 통해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이다.

<표 50>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 중인 종목 현황

종목	지정(국내)	후보 결정(국내)	등재 결정(예상)
수륙제(국가무형유산)	2013.12월	2026년 이후	2032년 이후
한글서예	2025.1월	2026년 이후	2032년 이후
사찰음식(국가무형유산)	2025.5월	2026년 이후	2032년 이후
태권도(국가무형유산)	미지정	2026년 이후	2032년 이후

웃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와 관련, 2025년부터 12개년 5단계 중장기 프로젝트로 로드맵을 작성해 보았다. 제1단계는 제도 정비 및 인식 기반 조성(2025년~2027년), 제2단계는 학술 기반 강화 및 국제 연계 기반 조성(2027년~2029년), 제3단계는 국내 등재 후보 확정 및 보호조치 강화(2030년~2032년), 제4단계는 등재신청서 제출 및 국제홍보 강화(2033년~2035년), 제5단계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 및 실천공동체의 지속적 확대(2035년~2036년)이다.

특히 북한 내 웃놀이 전승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을 병행하여, 남북 공동 유산으로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병렬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포함된다. 5단계 계획은, 일부 단계별로 기간이 겹치는 경우도 있다.

## 나. 5단계(12개년) 추진 로드맵

웃놀이는, 남북 공동으로 전승해 온 전통놀이이며 공동체 정신과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무형유산이다. 본 로드맵은 2025년부터 2036년까지 5단계에 걸쳐 제도 정비, 학술 기반 구축, 국내 등재 후보 확정, 유네스코 신청 및 국제 홍보,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남북 공동등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학술·공동체·외교 등 다방면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며, 유네스코 등재 기준(R.1~R.5) 충족을 위해 충실히 대응한다. 이를 통해 웃놀이의 세계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전승 기반을 확립하고, 평화와 공존의 상징 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자 한다.

### (1) 제1단계 : 제도 정비 및 인식 기반 조성 (2025년~2027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웃놀이의 제도적 보호 기반을 확보하고, 공공의 인식을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향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설정된다.

우선, ‘전통 웃놀이 진흥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 기초연구 및 공청회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 공동등재를 고려한 법·제도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웃문화는, 웃판암각화에서 드러나는 천문사상과 공동체 놀이, 신년 세시풍속 등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므로, 향후에는 ‘전통 웃문화 진흥법’ 형태로 보다 포괄적인 입법 추진도 가능하다.

또한, 웃놀이의 경기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인심판제도를 신설하고, 민간 주도의 지도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기반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남

북 공동대회 개최를 염두에 둔 ‘통일 룰북(Rulebook)’의 시범 적용도 추진한다.

등재 절차의 전략적 기획을 위해 기 등재 종목(예: 태권도)의 등재 전략과 유사 유산 사례를 분석하고, 율놀이의 문화적 독자성 및 남북 공동등재의 타당성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세대 간 전승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재 및 디지털 콘텐츠(AR/VR 등)를 개발한다. 이때 북한 율놀이 용어와 자료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남북 공통 교육자료 개발의 기초를 확보한다.

현장의 전승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지역별 고유의 율놀이 방식에 대한 구술채록과 자료 수집을 통해 디지털 전승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율판 암각화 조사 및 율놀이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북한 전승형태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검토하여 남북 비교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무형유산원과 협력하여 상설전시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중 인식을 제고하고, 전시 기획 과정에서 남북 간 자료 교환 및 공동 기획의 가능성도 함께 모색한다.

<표 51> 제1단계 추진과제 내용 및 성과지표(KPI)

목 표		제도 정비 및 인식 기반 조성 (2025년~2027년)
추진과제	주요내용	성과지표(KPI)
입법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율놀이진흥법(가칭)」 연구 및 공청회 → 제정 추진</li> <li>남북 공동등재 관련 법·제도 연계 조항 포함</li> </ul>	제정안 국회 발의 완료 (2026년 내)
전문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인 심판제도 도입</li> <li>민간 주도의 율놀이 지도사 과정 개설</li> <li>통일 룰북 시범 적용</li> </ul>	연간 자격취득자 100명 이상
실태 조사 및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구술채록 및 지역 놀이 방식 조사</li> <li>율판 암각화 조사 및 율놀이와의 연관성 규명</li> <li>북한 전승형태 비교 가능성 검토</li> </ul>	참여 지역 30곳 이상, 채록 1,000건 이상
세대 전승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등 교과 연계 자료 및 AR/VR 콘텐츠 개발</li> <li>북한 관련 용어 분석 반영</li> </ul>	시범학교 20교 이상 사례 확보
문화 기관 연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민속박물관·국립무형유산원 상설전 개최</li> <li>체험형 프로그램 운영</li> </ul>	연간 관람객 10만 명 이상

## (2) 제2단계 : 학술기반 강화 및 국제 연계 기반 조성(2027년~2029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윷놀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문화적 정당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학술적으로 입증하고 국제 연계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둔다.

우선, 윷놀이의 역사적 기원과 문화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남북한의 전승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동 학술총서 발간의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윷놀이가 지닌 전통성과 공동체적 가치, 현대적 변용을 포괄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서사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몽골의 샤가이, 인도의 파치시, 스페인의 카넬라 등 세계 각지의 유사 윷놀이문화를 비교 분석하여, 윷놀이의 세계적 보편성과 독자성을 함께 입증한다. 아울러 이 윷놀이의 국제 네트워크 결성 등 활용 방안도 연구하면 좋을 것이다. 이때 북한의 전통놀이 자료를 함께 포함하여 연구의 범위와 국제적 신뢰도를 높인다.

유네스코의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통 놀이문화와 공동체 유산’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연구자 및 실연자를 초청하여 공동 발표 세션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추진한다.

한편, 등재 요건인 공동체 참여 기반(R.4 항목) 확보를 위해 지역문화원, 보존회, 주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10개 이상 구성하고, 남북 간 공동체 교류를 대비한 협의체 운영 매뉴얼도 병행하여 마련한다.

생활 속에서 윷놀이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문화유산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이나 지역축제, 문화관광지 등과 연계한 윷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남북 공동체 간 체험 프로그램의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향후 실제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표 52〉 제2단계 추진과제 내용 및 성과지표(KPI)

목 표	학술기반 강화 및 국제 연계 기반 조성(2027년~2029년)	
추진과제	주요내용	성과지표(KPI)
학술 토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율놀이 총서 발간</li> <li>■ 남북 비교연구 반영</li> <li>■ 학술세미나 연 2회 개최</li> </ul>	논문 20편 이상 발표
유사 율놀이 비교 등 활용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샤가이(몽골), 파치시(인도), 카벨라(스페인) 등 비교 및 국제 네트워크 결성 등 활용방안 연구</li> <li>■ 북한 포함 보고서 작성</li> </ul>	연구보고서 1권 출간
국제 심포지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관심 유도</li> <li>■ 북한 연구자 초청 및 공동 세션 운영</li> </ul>	10개국 이상 참가
공동체 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원 중심 협의체 구성</li> <li>■ 교류 대비 매뉴얼 작성</li> </ul>	10개 이상 운영
문화관광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 지역축제 연계 체험 프로그램</li> <li>■ 남북 공동 시범안 마련</li> </ul>	연간 체험 5만 명 이상

(3) 제3단계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보 선정 및 보호조치 강화(2030년~2032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율놀이를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보로 공식 확정하는 것을 중심 목표로 설정하며, 등재 준비의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거쳐 등재 후보로 선정되는 절차를 진행하고,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협의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등재 추진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전수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율놀이 전승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교육생 확보뿐 아니라, 북한 내 전승기관과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가능성도 열어두어, 향후 남북 간 연계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집된 구술자료, 사진,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율놀이 디지털 아카이브 및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남북 양측의 자료를 통합하여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발전시키고, 아카이브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사전 검토한다.

이와 병행하여, 다국어(한국어·영어·프랑스어) 기록화 보고서를 제작하고, 북한 관련 자료를 포함한 공동 기록화 작업도 수행함으로써 유네스코 등재 요건 중 R.5(기록화 기반) 항목을 충족한다.

한편, 유네스코가 중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율령의 연계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정리하여, 정부 공동 정책제안서 형태로 발표한다. 율령이 지역 공동체, 교육, 문화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형유산임을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표 53〉 제3단계 추진과제 내용 및 성과지표(KPI)

목 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보 선정 및 보호조치 강화(2030년~2032년)		
추진과제	주요내용	성과지표(KPI)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li> <li>■ 남북 공동등재 실무협의회 구성</li> </ul>	2030~2032년 내 선정
평가 대응 매뉴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질의 대응 자료 정비</li> <li>■ 남북 협력 리스크 분석 포함</li> </ul>	사전 대응 브리핑 완료
전수교육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율령 전승기관 지정</li> <li>■ 남북 교류 시범교육 실시</li> </ul>	연간 교육생 100명 이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영상·사진 통합 플랫폼 구축</li> <li>■ 남북 자료 통합 아카이브 시범 운영</li> </ul>	공개 콘텐츠 1,000건 이상
다언어 기록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기록서 제작</li> <li>■ 북한 공동 기록 포함</li> </ul>	언어별 1권 이상 제작
SDGs 연계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정책 제안서 발표</li> </ul>	정부 공동보고서 1권

#### (4) 제4단계 : 등재신청서 제출 및 국제 홍보 강화(2033년~2035년)

네 번째 단계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신청서 제출과 국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신청서에는 R.1부터 R.5까지의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남북 공동등재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홍보영상과 브로셔 등도 함께 제작한다. 영상물은 공동체 주도성과 전통성 확보를 위해 실제 전승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브로셔는 유네스코 평가위원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남북 공동등재의 취지와 평화·공존의 메시지를 담은 형태로 개발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2034년 3월 31일까지 무형유산협약 사무국에 공식 제출한다. 이때, R.1~R.5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3개 국어(영문·불문·국문)로 작성·제출한다.

해외 문화원 및 대사관과 연계하여 전시·체험 중심의 국제 홍보 캠페인을 기획·운영하며, 남북 공동 기획 전시회 및 체험 행사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율령의 문화적 상징성과 국제적 공감대를 동시에 확산시킨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평가과정에서 전 세계의 문화적 신뢰와 지지 기반을 확보한다.

외교부,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무형유산원 등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관 외교 채널을 강화하고, 남북 간 협력 네트워크를 외교 분야까지 확장한다.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국제 학술지 기고와 외신 대상 홍보를 통해 율령의 문화적 가치와 남북 공동등재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특히 남북 공동연구 결과와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술적 홍보 활동은 등재의 타당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

〈표 54〉 제4단계 추진과제 내용 및 성과지표(KPI)

목 표		등재신청서 제출 및 국제홍보 강화(2033년~2035년)
추진과제	주요내용	성과지표(KPI)
홍보물 제작 및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과 현대 융합, 공동체 주도 중심 영상 및 브로셔 제작</li> <li>■ 전승자 참여 영상 포함</li> <li>■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영·불·한) 제출 : R.1~R.5 항목 충족</li> <li>■ 남북 공동등재 협력 내용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영상 3종 이상 제작</li> <li>■ 공식 신청서 2034년 3월 제출 완료</li> </ul>
국제 홍보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사관·해외 문화원 연계 체험·전시 순회</li> <li>■ 남북 공동 전시 포함</li> </ul>	10개국 이상 순회 행사 개최
민관 외교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민속국악원 등 협업 시스템 구축</li> <li>■ 남북 외교 채널 연계</li> </ul>	실무협의체 운영
외신 및 학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학술지 기고, 언론 릴리즈</li> <li>■ 남북 공동연구 결과 홍보</li> </ul>	국제 학술지 게재 5건 이상

(5) 제5단계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 및 실천공동체의 지속적 확대 (2035-2036년)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외 율놀이 실천공동체를 안정적으로 확대·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유네스코 심의 통과 및 최종 등재 결정을 위한 준비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남북 공동등재 결과를 포함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유네스코 평가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철저히 대비한다. 이를 통해 2036년 12월까지 등재 확정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 성과 목표다.

등재 추진과 함께, 국내 실천기반 강화를 위한 대표 행사인 ‘한국 율놀이 대축제’를 정례화한다. 이 축제는 전국 순회형 문화행사로 기획되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형 전통놀이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 특히, 남북 공동 참여가 최소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기획하여, 문화유산을 통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대축제는 총 3회 이상 개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

포용적 문화 실천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로 설정된다. 다문화 가정, 고령층,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위한 맞춤형 율놀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율놀이가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할 수 있는 무형유산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10종 이상의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운영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세계 율놀이 국제협회’ (가칭)를 창립하여 국제 놀이유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협회는 남북을 포함한 1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연맹 형태로 운영되며, 전통놀이를 통한 국제문화교류와 공동연구의 기반이 된다. 이는 율놀이의 세계적 확산과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구조 마련에 기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등재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승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율놀이연구소를 설립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한다. 연구소는 향후 남북 공동연구 및 정책 협력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하며, 율놀이의 학술적 기반 강화와 실천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표 55〉 제5단계 추진과제 내용 및 성과지표(KPI)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 및 실천공동체의 지속적 확대(2035년~2036년)		
목 표		
추진과제	주요내용	성과지표(KPI)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심의 통과 및 최종 등재</li> <li>■ 남북 공동등재 최종 결과 반영</li> </ul>	2036년 12월 등재 확정
한국 율놀이 대축제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순회형 행사</li> <li>■ 남북 공동 참여 1회 이상</li> </ul>	3회 이상, 연 10만 명 이상
포용적 놀이유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고령층, 장애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li> </ul>	특화 프로그램 10종 이상
국제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율놀이 국제협회(가칭)’ 창립</li> <li>■ 남북 포함 놀이유산 네트워크 운영</li> </ul>	연맹 회원국 10개국 이상
율놀이연구소 설립 및 사후관리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재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li> <li>■ 연구소 설립 및 공동연구 추진</li> </ul>	연구소 설립 및 법안 통과 (2036년 전후)

율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 도출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대표목록 등재 사례들의 주요 전략 요소들을 벤치마킹하였다. 그것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6〉 등재 주요 전략 요소

등재종목	주요 전략요소
대한민국의 장 담그기	공동체 중심 실천 → 전통+현대 융합 교육 프로그램
씨름	남북 공동등재 → 국제 평화·공존의 가치 강조
아리랑	지역별 다형태 통합 → 포괄적 개념 정의 및 문화 다양성 인정
농악	공연+참여형 실천 → 지역축제와 결합한 생활문화로 확대
율놀이 (등재 추진)	남북 공동체 협력 및 평화 상징 강화 → 공동 참여 및 문화교류 활성화

중장기 추진 로드맵에 제시된, 단계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7> 윷놀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2개년 로드맵 (2025년~2036년)

단계	기간	목표	주요 추진과제
제1단계	2025년 ~ 2027년	제도 정비 및 인식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윷놀이진흥법(가칭)」 제정 추진</li> <li>■ 공인 심판제도 및 윷놀이 지도사 과정 개설</li> <li>■ 전국 구술채록 및 지역 전승 조사</li> <li>■ 윷판 암각화 조사 및 윷놀이와의 연관성 규명</li> <li>■ 초중등 교육 연계 자료 및 AR/VR 콘텐츠 개발</li> <li>■ 민속박물관 등 문화기관 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li> </ul>
제2단계	2027년 ~ 2029년	학술기반 강화 및 국제 연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윷놀이 총서 발간 및 남북 비교 연구</li> <li>■ 유사 유산(샤가이, 파치시 등) 비교 및 국제 네트워크 등 활용방안 연구</li> <li>■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북한 연구자 초청</li> <li>■ 지역 문화원 중심 공동체 협의체 구성</li> <li>■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li> </ul>
제3단계	2030년 ~ 2032년	등재 후보 선정 및 보호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 및 후보 선정</li> <li>■ 남북 공동등재 실무협의회 구성</li> <li>■ 전수교육기관 지정 및 시범교육 운영</li> <li>■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li> <li>■ 한국어·영어·프랑스어 기록화 보고서 제작</li> <li>■ SDGs 연계 정책 제안</li> </ul>
제4단계	2033년 ~ 2035년	등재신청서 제출 및 국제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등재신청서(다국어) 작성 및 제출</li> <li>■ 전통·현대 융합 영상 및 브로셔 제작</li> <li>■ 해외 전시·체험 순회 캠페인 전개</li> <li>■ 외교·문화기관 협업 체계 구축</li> <li>■ 해외 학술지 기고 및 공동연구 성과 홍보</li> </ul>
제5단계	2035년 ~ 2036년	등재 결정 및 실천공동체의 지속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등재 최종 결정(무형유산협약 정부 간 위원회)</li> <li>■ 한국 윷놀이 대축제 정례화 및 남북 공동 행사</li> <li>■ 다문화·고령층·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li> <li>■ ‘세계 윷놀이 국제협회’ 창립</li> <li>■ 윷놀이연구소 설립 및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li> </ul>

### 3. 종합의견 및 제언

#### 가. 종합의견

웃놀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요구하는 핵심 가치인 공동체 참여, 세대 간 전승, 포용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루 충족하는 전통놀이유산으로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승되어 온 웃놀이는, 세대 간 문화 전승의 매개이자, 공동체 정체성과 유대감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생활형 유산이다.

이에 따라, 203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목표로, 웃놀이에 대한 체계적 보호조치와 국제 협력 기반 마련, 공동체 중심의 실천 강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총체적 접근은 등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남북 공동등재 추진 경험과 협력 모델을 반영하여, 웃놀이의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및 동아시아 지역 문화 네트워크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등재 이후에는 ‘세계 웃놀이 포럼’ 개최 및 ‘세계 놀이유산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 교류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통해 웃놀이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단일 유산의 보호를 넘어, 남북 공동등재 종목 발굴 및 협력적 연구 확대 등 지속가능한 문화외교 모델 구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웃놀이의 등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전통놀이 문화가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의 모범사례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나. 제 언

이 용역보고서는 당초 「윷놀이의 인류무형유산 등재전략 수립 기본연구」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에는 「윷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전략 수립 기본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출한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는 ‘무형유산’을 공식명칭으로 쓰고 있지만,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라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초점을 맞추기 기하기 위한 것이며, 보고서 본문에서도 최대한 이를 구별해 쓰고자 하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윷놀이는 2022년 ‘윷놀이’라는 명칭으로 국가무형유산에 지정되었으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할 때는, ‘윷놀이 문화’, ‘윷문화’ 등 다른 명칭 변환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들 용어 간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윷놀이’는, 도·개·걸·윷·모의 결과에 따라 말을 움직이며 승부를 겨루는 놀이 규칙 중심의 전통 게임으로, 가장 좁은 범위를 가진다. 윷놀이 문화’는, 이 놀이가 명절 등 공동체 내에서 세대 간 전승되고 함께 즐기는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된 문화를 말하며, 윷놀이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반면 ‘윷 문화’는 단순한 놀이나 공동체 관습을 넘어서 점복·의례·도구 제작·윷판 암각화 등 윷을 둘러싼 민속적·상징적 요소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8〉 ‘윷놀이, 윷놀이 문화, 윷 문화’의 용어 비교

항목	윷놀이	윷놀이문화	윷문화
핵심 개념	전통 놀이 그 자체 (게임 규칙)	공동체 내에서의 윷놀이 관습과 전통	윷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속 문화 전체
범위	가장 좁음	중간	가장 넓음
주요 내용	도개걸윷모 등 규칙, 말판, 말 이동과 승패	명절 놀이, 가족·이웃 간 전승, 공동체 놀이 관습	윷놀이 + 점복, 의례, 도구 제작, 암각화 등 전체 문화

항목	웃놀이	웃놀이문화	웃문화
포함 요소	웃판, 말, 웃가락, 규칙	웃놀이 대회, 시합, 명절놀이, 지역 간 전승 방식	웃점, 웃 제작 방법, 웃판 암각화, 지역 전승 설화, 상징체계 등
초점	놀이 방법과 규칙	놀이가 사회·공동체에서 갖는 역할	웃 전반의 역사·민속·상징·물질문화까지 포괄
유형 vs 무형	순수 무형유산 (놀이 행위)	무형유산 중심(사회적 관습)	무형 + 유형 통합 (예: 암각화, 도구 등)
예시	“웃놀이에서 도가 나오면 한 칸 이동”	“설날마다 가족끼리 웃놀이를 한다”	“강원도 웃판 암각화는 고대 웃문화의 흔적이다”
유네스코 등재 적합성	단일 놀이만으로는 어려움 있음	공동체적 실천문화 강조 시 가능함	유형+무형 통합 개념으로, 가장 적합할 수 있음
샤가이, 파치시 등과 비교	형식적 유사성	실천 방식 비교 가능	문화적 기원·상징 비교 가능

물론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등재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고, 향후 보호·연구·활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어휘를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무형유산인 웃놀이 박물관 건립을 제안한다. 현재 웃놀이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박물관(또는 전시관)이 없는 상황이다. 『웃문화 박물관(가칭)』은 보존·연구·교육, 전통놀이문화 계승, 지역사회 발전, 관광·경제적 효과, 국제 문화교류와 지역 브랜드 제고라는 다차원적 효과를 창출하는 문화인프라이다.

이에 경기도가,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전국 웃놀이 대회를 진행해 오면서 저변을 늘리고 인지도를 높여 온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웃놀이 문화를 역사·교육·관광·산업자원으로 확장하여, 국가적 위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웃놀이 문화 거점으로 기능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반을 마련하는 문화적 효과, 웃놀이를 창의력·협동심 함양과 세대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적 효과, 전통놀이산업과 관광객 유치 등에 의한 경제적 효과, 웃놀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 및 문화외교로 확장하는 외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역사문화 자원이므로, 시급하게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 록

1. 옷놀이 현지 면담 조사표 .....	161
2.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	164
가. 영 문 .....	164
나. 국 문 .....	184
3. 「무형유산협약 운영지침」 6장 지속가능한 발전 전문 .....	201
가. 영 문 .....	201
나. 국 문 .....	217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230
5.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	251
6. 국가무형유산 등재 종목 : 162종목(2025.7월 현재) .....	254
7.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종목 : 150개국 788개 종목 .....	258
8.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전통 놀이·축제·기예·무예’ 분야 종목 현황 ..	303
9.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서 양식 .....	309
가. 영 문 .....	309
나. 국 문 .....	315
10. 참고문헌 .....	322
가. 단행본 및 각종 간행물 .....	322
나. 언론보도 .....	323
다. 블로그 등 SNS .....	324
라. 정부 및 유네스코 등 관련기관 누리집 .....	324



# 1. 윷놀이 현지 면담 조사표

현지 면담 조사표			
I. 기본 정보			
단체명 (대표자)			
단체 설립목적			
면담일시	2025. . .	면담장소	
II. 전승 주체 및 활동 현황			
전승 주체	1-1. 윷놀이의 전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유지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있다면 단체명, 대표자, 설립 시기 및 활동 개요를 작성해 주세요.		
	1-2. 다른 목적의 단체이지만 윷놀이 전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있다면 해당 단체나 개인의 활동 내용과 윷놀이 전승과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세요.		
전승 활동 방식	2-1. 윷놀이 전승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예: 교육 프로그램, 시연회, 축제 등		
	2-2. 지역 고유의 윷놀이 유형이 전승되고 있습니까? - 예: 공주시(윷두기), 울진군(말발 없는 윷놀이), 순창군(깍쟁이윷), 서귀포시(넉동빼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승되고 있다면 지역과 내용, 방법 등을 기술해 주세요.		
	2-3. 윷놀이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국가, 지방정부, 민간 등)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있다면 구체적 내용(예산, 정책, 협약 등)을 설명해 주세요.		

현지 면담 조사표

III. 전승 공간 및 환경	
전승 공간 및 환경	3-1. 윷놀이 전승을 위한 전용 공간이나 거점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있다면 위치와 운영방식 등을 기술해 주세요.
	3-2. 전용 공간이 없다면 윷놀이 활동은 주로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예: 마을회관, 공원, 학교 운동장 등
IV. 대중화 및 교육 프로그램	
대중화 및 교육 프로그램	4-1. 윷놀이의 대중화를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있다면 주요 내용, 대상, 운영주체 등을 기술해 주세요.
	4-2. 해당 프로그램은 주로 어느 시기에 운영되며, 정기성이 있습니까? - 예: 명절, 지역 축제, 방학 등
	4-3. 프로그램의 참여자 구성은 어떠하며, 주민 참여는 활발합니까? - 참여자 예시: 일반 시민, 청소년, 외국인, 단체 등
V. 협력 및 네트워크	
협력 및 네트워크	5-1. 지역 내 단체(교육기관, 기업, 유관기관 등) 또는 다른 무형유산 보유 단체와의 협업 관계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협업 기관 및 연계 활동을 기술해 주세요.
	5-2. 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예: 공동 기획 행사, 연합 교육 프로그램, 문화 교류 등

현지 면담 조사표	
<b>VI.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과 지역 반응</b>	
<b>지정과 지역반응</b>	6-1. 율농이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전후로 지역사회나 단체의 반응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예: 인식 변화, 참여 확대, 기대감 등
	6-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 예: 제도적 지원, 예산 확보, 홍보 강화 등
<b>VII. 추가 의견</b>	
<b>추가 의견</b>	6-1.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본 면담표는 율농이 전승 실태 파악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제공된 정보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2.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 가. 영문

####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ESCO, meeting in Paris, from 29 September to 17 October 2003, at its 32nd session,

**Referring** to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 particular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of 1948,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1966,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1966,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mainspring of cultural diversity and a guaran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underscored in the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of 1989, in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of 2001, and in the Istanbul Declaration of 2002 adopted by the Third Round Table of Ministers of Culture,

**Considering** the deep-seated interdependence betwee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tangibl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Recognizing** that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alongside the conditions they create for renewed dialogue among communities, also give rise, as does the phenomenon of intolerance, to grave threats of deterioration, disappearance and destruc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owing to a lack of resources for safeguarding such heritage,

**Being** aware of the universal will and the common concern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Recognizing** that communities, in particular indigenous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duction, safeguarding, maintenance and re-cre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us helping to enrich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Noting** the far-reaching impact of the activities of UNESCO in establishing normative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1972,

**Noting** further that no binding multilateral instrument as yet exist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sidering** that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recommendations and resolutions concerning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need to be effectively enriched and supplemented by means of new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sidering** the need to build greater awareness,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s, of the import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f its safeguarding,

**Considering**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tribute, together with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to the safeguarding of such heritage in a spirit of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Recalling** UNESCO's programmes relating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he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Considering** the invaluable ro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factor in bringing human beings closer together and ensuring exchange and understanding among them,

**Adopts** this Convention on this seventeenth day of October 2003.

## I.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 Purposes of the Convention*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re:

- (a)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b) to ensure respect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 (c) to raise awarenes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f the import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f ensuring mutual appreciation thereof;

(d) to provid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 *Article 2 -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1.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and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thus promot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onsideration will be given solely to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s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2.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is manifested inter alia in the following domains:

- (a)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b) performing arts;
- (c)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 (d)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 (e) traditional craftsmanship.

3. “Safeguarding“ means measures aimed at ensuring the via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protection, promotion, enhancement, transmission, particularly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s well as the revitalization of the various aspects of such heritage.

4. “States Parties“ means States which are bound by this Convention and among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5. This Convention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territories referred to in Article 33 which become Parties to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out in that Article. To that extent the expression “States Parties“ also refers to such territories.

### *Article 3 – Relationship to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Nothing in this Convention may be interpreted as:

(a) altering the status or diminishing the level of protection under the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with which an item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directly associated; or

(b) affec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deriving from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o the use of biological and ecological resources to which they are parties.

## **II. Organs of the Convention**

### *Article 4 – General Assembly of the States Parties*

1. A General Assembly of the States Parties is hereby establish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is the sovereign body of this Convention.

2. The General Assembly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every two years. It may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 if it so decides or at the request either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 of at least one-third of the States Parties.

3. The General Assembly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Article 5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 A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s hereby established within UNESCO. It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18 States Parties, elected by the States Parties meeting in General Assembly, once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2. The number of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increased to 24 once the number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reaches 50.

*Article 6 – Election and terms of office of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1. The election of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obey the principles of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and rotation.

2.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by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meeting in General Assembly.

3. However, the term of office of half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is limited to two years. These States shall be chosen by lot at the first election.

4. Every two years, the General Assembly shall renew half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5. It shall also elect as many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as required to fill vacancies.

6. A State Member of the Committee may not be elected for two consecutive terms.

7.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choose as their representatives persons who are qualified in the various field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7 – Functions of the Committee*

Without prejudice to other prerogatives granted to it by this Convention,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to:

- (a) promote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to encourage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thereof;
- (b) provide guidance on best practices and make recommendations on measur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c) prepare and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a draft plan for the use of the resources of the Fu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 (d) seek means of increasing its resources, and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this e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 (e) prepare and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 (f) examin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the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and to summarize them for the General Assembly;
- (g) examine reques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and to decide thereon, in accordance with objective selection criteria to be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and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for:
  - (i) inscription on the lists and proposals mentioned under Articles 16, 17 and 18;
  - (ii) the granting of international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Article 8 – Working methods of the Committee*

1. The Committee shall be answerable to the General Assembly. It shall report to it on all its activities and decisions.
2. The Committee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by a two-thirds majority of its Members.

3. The Committee may establish, on a temporary basis, whatever ad hoc consultative bodies it deems necessary to carry out its task.

4. The Committee may invite to its meetings any public or private bodies, as well as private persons, with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various field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consult them on specific matters.

#### *Article 9 – Accreditation of advisory organizations*

1. The Committee shall propose to the General Assembly the accredit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act in an advisory capacity to the Committee.

2. The Committee shall also propose to the General Assembly the criteria for and modalities of such accreditation.

#### *Article 10 – The Secretariat*

1. The Committee shall be assisted by the UNESCO Secretariat.

2. The Secretariat shall prepare the document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of the Committee, as well as the draft agenda of their meetings, and sha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ir decisions.

### **III.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national level**

#### *Article 11 – Role of States Parties*

Each State Party shall:

(a)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b) among the safeguarding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2, paragraph 3, identify and define the various element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with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releva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Article 12 – Inventories*

1. To ensure identification with a view to safeguarding, each State Party shall draw up, in a manner geared to its own situation, one or more inventor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These inventories shall be regularly updated.

2. When each State Party periodically submits its report to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it shall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on such inventories.

#### *Article 13 – Other measures for safeguarding*

To ensure the safeguarding,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to:

(a) adopt a general policy aimed at promoting the func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ciety, and at integrating the safeguarding of such heritage into planning programmes;

(b) designate or establish one or more competent bodi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c) foster scientific, technical and artistic studies, as well as research methodologies, with a view to effectiv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danger;

(d)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aimed at:

(i) fostering the creation or strengthening of institutions for training in the manag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transmission of such heritage through forums and spaces intended for the performance or expression

thereof;

- (ii) ensuring access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respecting customary practices governing access to specific aspects of such heritage;
- (iii) establishing documentation institutions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acilitating access to them.

*Article 14 - Education, awareness-raising and capacity-building*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by all appropriate means, to:

- (a) ensure recognition of, respect for, and enhanc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ciety, in particular through:
  - (i) educational, awareness-raising and information programmes, aimed at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young people;
  - (ii) specific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mes within the communities and groups concerned;
  - (iii) capacity-building activiti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management and scientific research; and
  - (iv) non-formal means of transmitting knowledge;
- (b) keep the public informed of the dangers threatening such heritage, and of the activities carried out in pursuance of this Convention;
- (c) promote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spaces and places of memory whose existence is necessary for express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15 -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safeguarding activit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ropriate, individuals that create, maintain and transmit such heritage, and to involve them actively in its management.

**IV.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rticle 16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1. In order to ensure better visi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wareness of its significance, and to encourage dialogue which respects cultural diversity, the Committee, upon the proposal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establish, keep up to date and publish a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2. The Committee shall draw up and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the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updating and publication of this Representative List.

*Article 17 –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1. With a view to taking appropriate safeguarding measures,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keep up to date and publish a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shall inscribe such heritage on the List at the request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2. The Committee shall draw up and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the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updating and publication of this List.

3. In cases of extreme urgency – the objective criteria of which shall be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proposal of the Committee – the Committee may inscribe an item of the heritage concerned on the List mentioned in paragraph 1, in consultation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Article 18 –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 On the basis of proposal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an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to be defined by the Committee and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ommittee shall periodically select and promote national,

subregional and regional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heritage which it considers best reflect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2. To this end, it shall receive, examine and approve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from States Parties for the preparation of such proposals.

3. The Committee shall accompany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jects, programmes and activities by disseminating best practices using means to be determined by it.

## V.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 *Article 19 - Cooperation*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es, inter alia,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joint initiativ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chanism of assistance to States Parties in their efforts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eir national legislation and customary law and practices, the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of general interest to humanity, and to that end undertake to cooperate at the bilateral, subreg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Article 20 - Purposes of international assistance*

International assistance may be grant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a) the safeguarding of the heritage inscribed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b) the preparation of inventories in the sense of Articles 11 and 12;

(c) support for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carried out at the

national, subregional and regional levels aimed at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 any other purpose the Committee may deem necessary.

#### *Article 21 – Forms of international assistance*

The assistance granted by the Committee to a State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eseen in Article 7 and by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24, and may take the following forms:

- (a) studies concerning various aspects of safeguarding;
- (b) the provision of experts and practitioners;
- (c) the training of all necessary staff;
- (d) the elaboration of standard-setting and other measures;
- (e)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infrastructures;
- (f) the supply of equipment and know-how;
- (g) other forms of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e granting of low-interest loans and donations.

#### *Article 22 – Condi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assistance*

1.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the procedure for examining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shall specify what inform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requests, such as the measures envisaged and the interventions required, together with an assessment of their cost.

2. In emergencies, requests for assistance shall be examined by the Committee as a matter of priority.

3. In order to reach a decision, the Committee shall undertake such studies and consultations as it deems necessary.

#### *Article 23 –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1. Each State Party may submit to the Committee a request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2. Such a request may also be jointly submitted by two or more States Parties.

3. The request shall include the information stipulated in Article 22, paragraph 1, together with the necessary documentation.

#### *Article 24 – Role of beneficiary States Parties*

1.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granted shall be regulated by means of an agreement between the beneficiary State Party and the Committee.

2. As a general rule, the beneficiary State Party shall, within the limits of its resources, share the cost of the safeguarding measures for which international assistance is provided.

3. The beneficiary State Party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a report on the use made of the assistance provided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V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nd**

#### *Article 25 – Nature and resources of the Fund*

1. A “Fund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is hereby established.

2. The Fund shall consist of funds-in-trus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egulations of UNESCO.

3. The resources of the Fund shall consist of:

(a) contributions made by States Parties;

(b) funds appropriated for this purpose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c) contributions, gifts or bequests which may be made by:

(i) other States;

(ii) organizations and programm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particularl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as well a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ii) public or private bodies or individuals;

(d) any interest due on the resources of the Fund;

(e) funds raised through collections, and receipts from events organized for the benefit of the Fund;

(f) any other resources authorized by the Fund's regulations, to be drawn up by the Committee.

4. The use of resources by the Committee shall be decided on the basis of guidelines laid down by the General Assembly.

5. The Committee may accept contributions and other forms of assistance for general and specific purposes relating to specific projects, provided that those projects have been approved by the Committee.

6. No political, economic or other conditions which are incompatible with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may be attached to contributions made to the Fund.

#### *Article 26 - Contributions of States Parties to the Fund*

1. Without prejudice to any supplementary voluntary contribution,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to pay into the Fund, at least every two years, a contribution, the amount of which, in the form of a uniform percentage applicable to all Stat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General Assembly. This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which have not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n no case

shall the contribution of the State Party exceed 1% of its contribution to the regular budget of UNESCO.

2. However, each State referred to in Article 32 or in Article 33 of this Convention may declare, at the tim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at it shall not be b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has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endeavour to withdraw the said declaration by notifying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However, the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shall not take effect in regard to the contribution due by the State until the date on which the subsequent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pens.

4. In order to enable the Committee to plan its operations effectively, the contributions of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hich have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paid on a regular basis, at least every two years, and should be as close as possible to the contributions they would have owed if they had been b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5.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is in arrears with the payment of its compulsory or voluntary contribution for the current year and the calendar year immediately preceding it shall not be eligible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the first election. The term of office of any such State which is already a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come to an end at the time of the elec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6 of this Convention.

#### *Article 27 – Voluntary supplementary contributions to the Fund*

States Parties wishing to provide voluntary contributions in addition to those foreseen under Article 26 shall inform the Committee, as soon as

possible, so as to enable it to plan its operations accordingly.

#### *Article 28 – International fund-raising campaigns*

The States Parties shall, insofar as is possible, lend their support to international fund-raising campaigns organized for the benefit of the Fund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VII. Reports

#### *Article 29 – Reports by the States Parties*

The States Parties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observing the forms and periodicity to be defined by the Committee, reports on the legislative, regulatory and other measures take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 *Article 30 – Reports by the Committee*

1. On the basis of its activities and the reports by States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29, the Committee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at each of its sessions.
2. The report shall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 VIII. Transitional clause

#### *Article 31 – Relationship to the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1. The Committee shall incorporate i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items proclaimed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2. The incorporation of these items i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hall in no way prejudice the criteria for future inscriptions decided up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paragraph 2.

3. No further Proclamation will be mad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 IX. Final clauses

### *Article 32 –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1.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States Members of UNESCO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 *Article 33 – Accession*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ll States not Members of UNESCO that are invi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to accede to it.

2. This Convention shall also be open to accession by territories which enjoy full internal self-government recognized as such by the United Nations, but have not attained full independence in accordance with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514 (XV), and which have competence over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including the competence to enter into treaties in respect of such matters.

3. The instrument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rticle 34 - Entry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but only with respect to those States that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n or before that date. It shall enter into force with respect to any other State Party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rticle 35 - Federal or non-unitary constitutional system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to States Parties which have a federal or non-unitary constitutional system:

(a)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implementation of which comes under the legal jurisdiction of the federal or central legislative power, the obligations of the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shall be the same as for those States Parties which are not federal States;

(b)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implementation of which co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individual constituent States, countries, provinces or cantons which are not obliged by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federation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such States, countries, provinces or cantons of the said provisions, with its recommendation for their adoption.

*Article 36 - Denunciation*

1. Each State Party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It shall in no way affect the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denouncing State Party until the date on which the withdrawal takes effect.

#### *Article 37 - Depositary functions*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s the Depositary of this Convention, shall inform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33,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32 and 33, and of the denunci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36.

#### *Article 38 - Amendments*

1. A State Party may, by written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The Director-General shall circulate such communication to all States Parties. If,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irculation of the communication, not less than one half of the States Parties reply favourably to the request, the Director-General shall present such proposal to the next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for discussion and possible adoption.
2. Amendments shall be ado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3. Once adopted,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submitted for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o the States Parties.

4.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but solely with respect to the States Parties that have ratified, accepted, approved or acceded to them,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by two-thirds of the States Parties. Thereafter, for each State Party that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an amendment, the said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by that State Party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5. The procedure set out in paragraphs 3 and 4 shall not apply to amendments to Article 5 concerning the number of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Thes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at the time they are adopted.

6. A State which becomes a Party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failing an expression of different intention, be considered:

(a) as a Party to this Convention as so amended; and

(b) as a Party to the unamended Convention in relation to any State Party not bound by the amendments.

#### *Article 39 – Authoritative texts*

This Convention has been drawn up in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six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 *Article 40 – Registration*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DONE at Paris, this third day of November 2003,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 of the President of the 32nd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These two copies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UNESCO. Certified true copies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32 and 33,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 나. 국 문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년 10월 17일, 파리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총회는,

기존의 인권관련 국제문서, 특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참조하고,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 · “2001년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선언“ 및 제3차 문화장관원탁회의에서 채택된 “2002년 이스탄불 선언“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장수단인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 및 자연유산 간의 깊은 상호의존 관계를 고려하고,

세계화 및 사회변화의 과정이 공동체간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불관용 현상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유산의 쇠퇴·소멸 및 파괴라는 심각한 위협을 또한 초래함을 인정하며,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편적 의지와 공통의 관심사를 인식하고,

공동체, 특히 토착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창출·보호·유지 및 재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1972년세계문화유산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범적 문서의 성립에 유네스코의 활동이 광범한 영향을 미침에 주목하고,

나아가, 현재까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다자간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에 주목하며,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정·권고 및 결의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새로운 규정으로 효과적으로 강화되고 보충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무형문화유산 및 이의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필요성을 고려하며,

국제공동체가 이 협약의 당사국과 함께 협력 및 상호 원조의 정신으로 이러한 유산의 보호에 기여하여야 함을 고려하고,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 등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을 상기하며,

사람 사이를 더욱 긴밀히 하고 사람 사이의 교류와 이해를 보장하는 요소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면서,

2003년 10월 17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 제 I 장 일반 규정

### 제 1 조 -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나. 관련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보장

다. 지방·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라.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

## 제 2 조 -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1.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세대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와 공동체·집단·개인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된다.

2. 위 제1항에서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 명시된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예 기술

3.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특히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에 구속되고 이 협약이 발효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5. 이 협약은 제3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동 조에 언급된 영역에 대하여 준용된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당사국이라 함은 이러한 영역을 포함한다.

### 제 3 조 - 다른 국제 문서와의 관계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가. 무형문화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지위를 변경하거나 보호수준을 저하시키거나,

나. 당사국이 당사자로 있는 지적재산권 또는 생물학·생태학적 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 문서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II. 협약상의 기관

#### 제 4 조 - 당사국 총회

1. 당사국의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총회는 이 협약의 최고기관이다.
2.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기로 회합한다. 총회는 총회의 결정에 따르거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또는 당사국 최소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기로 회합할 수 있다.
3. 총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 제 5 조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유네스코 내에 둔다. 위원회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후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이 선출하는 18개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다.
2. 협약 당사국의 수가 50에 달하면 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24로 증가한다.

#### 제 6 조 -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 및 임기

1.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공평한 지역별 대표성 및 순환의 원칙을 따른다.
2. 위원회의 위원국은 총회에 참석한 협약 당사국에 의하여 4년 임기로 선출된다.
3.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국 중 절반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된다. 이에해당되는 국가는 최초 선거에서 추첨으로 선택된다.
4. 총회는 2년마다 위원회의 위원국 절반을 갱신한다.
5. 총회는 또한 공석을 채우는 데 필요한 수만큼 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한다.
6. 위원회의 위원국은 두 번의 임기를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7. 위원회의 위원국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적격자를 자국 대표로 선정한다.

#### 제 7 조 - 위원회의 임무

이 협약이 부여한 다른 권한에 대한 영향 없이,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가. 협약 목적의 증진 및 그 이행의 장려 및 감독
- 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최량의 관행에 대한 지침의 제공 및 이를 위한 조치의 권고
- 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재원의 사용에 관한 계획안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에 제출
- 라.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 확충 방안의 강구 및 이를 위한 필요조치의 채택
- 마.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 방침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에 제출
- 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및 총회 제출을

위한 요약

사. 위원회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객관적 선정기준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다음에 관한 요청의 검토 및 이에 대한 결정

- (1) 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언급된 목록상 등재 및 제안
-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원조의 공여

#### 제 8 조 - 위원회의 운영 방법

1. 위원회는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정을 총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는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3.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협의기구를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공공·민간단체 및 개인을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 제 9 조 - 자문 기구의 인가

1.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관련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비정부기구가 자문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구의 인가를 총회에 제안한다.
2. 위원회는 또한 위 인가의 기준 및 양식을 총회에 제안한다.

#### 제 10 조 - 사무국

1. 위원회는 유네스코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2. 사무국은 총회 및 위원회의 회의 의제초안 및 문서를 준비하고 총회와 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 III.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

#### 제 11 조 - 당사국의 역할

모든 당사국은,

가.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나. 제2조제3항에 언급된 보호조치 중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를 공동체·집단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하에 감정하고 규정한다.

#### 제 12 조 - 목 록

1. 보호를 위한 감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2. 당사국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때 이러한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 13 조 - 보호를 위한 다른 조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개발 및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을 채택한다.

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권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한다.

다. 특히, 위협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예술적 연구 및 연구방법을 촉진한다.

라. 다음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법적·기술적·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1)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훈련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의 장려 및

이러한 유산의 실연 또는 표현을 위한 장소 및 공간을 통한 이 유산의 전수의 장려

(2)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면모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관례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유산에 대한 접근의 보장

(3)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립 및 이러한 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

#### 제 14 조 - 교육·인식제고 및 능력형성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한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의 보장

(1)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식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2)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특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능력형성 활동

(4) 비공식적 지식전수 수단

나.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협과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을 위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는 자연공간 및 기념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의 증진

#### 제 15 조 -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참여

당사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틀 내에서 이러한 유산을 창출·유지 및 전수하는 공동체·집단 및, 적절한 경우, 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들이 이러한 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한다.

### IV.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 제 16 조 -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1. 무형문화유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러한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된 당사국의 제안에 따라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을 작성·갱신 및 공표한다.
2. 위원회는 이 대표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 기준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 제 17 조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

1.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갱신 및 공표하고 관련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유산을 목록에 등재한다.
2. 위원회는 이 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의 기준을 작성하여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3. 극도의 긴급 상황(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가 승인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다)에서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유산을 위 제1항에 언급된 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

#### 제 18 조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사업 및 활동

1. 당사국이 제출한 제안을 기초로 하고 위원회가 작성하고 총회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는 개발도상국가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이 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적·소지역적·지역적 유산보호프로그램·사업 및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한다.
2.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준비하기 위한 당사국의 국제적 원조 요청을 접수·검토 및 승인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량의 관행을 보급함으로써 위 사업·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을 보조한다.

## V. 국제협력 및 원조

### 제 19 조 - 협력

1.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협력은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환, 공동사업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대한 원조 체제의 확립을 포함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관습법 및 관행을 해함이 없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인류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양자·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제 20 조 - 국제원조의 목적

국제원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여될 수 있다.

- 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호
- 나.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목록의 준비
- 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국가·소지역 및 지역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사업 및 활동의 지원
- 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목적

### 제 21 조 - 국제원조의 형식

위원회가 당사국에 공여하는 원조는 제7조에 언급된 운영 지시 및 제24조에 언급된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가. 보호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연구
- 나. 전문가 및 기능보유자의 제공
- 다. 모든 필수 직원에 대한 훈련
- 라. 표준 설정 및 다른 조치의 마련
- 마.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바. 설비 및 노하우 제공
- 사. 적절한 경우 저리 융자 및 공여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재정 및 기술 원조

## 제 22 조 - 국제원조의 조건

1. 위원회는 국제 원조 요청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예상조치·필요한 개입 및 비용산정 등 요청에 포함될 정보를 명시한다.
2. 긴급상황시 위원회는 원조 요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및 협의를 수행한다.

## 제 23 조 - 국제원조 요청

1.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원조 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이러한 요청은 또한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이러한 요청은 필요서류와 함께 제22조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한다.

## 제 24 조 - 수혜당사국의 역할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공여된 국제원조는 수혜당사국과 위원회간 협정으로 규율된다.
2. 원칙적으로 수혜당사국은 국제 원조가 공여된 보호조치의 비용을 자국의 재원 한도 내에서 분담한다.
3. 수혜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공여된 원조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VI. 무형문화유산기금

### 제 25 조 - 기금의 성격 및 재원

1.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이 기금은 유네스코의 재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구성된다.
3. 이 기금은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 가. 당사국의 분담금
  - 나. 유네스코 총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계상한 자금
  - 다. 다음에 의할 수 있는 기부·증여 및 유증
    - (1) 다른 국가
    - (2) 특히,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국제연합소속의 기구·프로그램 및 다른 국제기구
    - (3) 공공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 라. 기금의 재원에 대한 이자
  - 마. 모금을 통하여 마련된 자금 및 기금을 위하여 개최된 행사로부터의 수입
  - 바. 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다른 재원
4. 위원회의 재원의 사용은 총회가 결정한 지침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5. 위원회는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일 것을 조건으로 특정 사업 관련 일반적·구체적 목적의 기부 및 다른 형태의 원조를 수령할 수 있다.
6. 이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정치적·경제적 또는 다른 조건을 기금에 대한 기부에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 26 조 - 기금에 대한 당사국의 분담금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발적인 추가 분담금에 대한 영향 없이 최소한 2년마다 분담금을 기금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분담금 액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동일한 백분율의 형식으로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하지 아니한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당사국의 분담금은 유네스코 정규 예산에 대한 자국 분담금의 1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2. 다만, 이 협약 제32조 또는 제33조에 언급된 국가는 비준·수락·승인·가입서 기탁 시 자국이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기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선언을 철회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선언의 철회는 차기 총회가 개최하는 날까지 이 국가가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의 분담금은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납부되며,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되었다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에 최대한 근접하여야 한다.

5. 당해년도와 그 전년도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 분담금을 체납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위원회의 위원국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이 규정은 최초 선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체납 국가가 이미 위원회의 위원국인 경우 그 국가의 임기는 이 협약 제6조에 규정된 선거 시 종료된다.

#### 제 27 조 - 기금의 자발적 추가 분담금

제26조에 언급된 것에 추가하여 자발적 분담금 납부를 희망하는 당사국은 위원회가 이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 제 28 조 - 국제적 모금 운동

당사국은 기금을 위하여 유네스코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제적 모금 운동을 가능한 한 지원한다.

### VII. 보고서

#### 제 29 조 - 당사국 보고서

당사국은 위원회가 정한 형식 및 주기를 준수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입법·규제 및 다른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 30 조 - 위원회 보고서

1.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및 제29조에 언급된 당사국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총회의 각 회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 총회에 통지된다.

### VIII. 경 과 규 정

#### 제 31 조 -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와의 관계

1.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전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선포된 유산을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통합한다.
2. 위 유산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대한 통합으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향후 등재기준이 예단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 위 선포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다.

### IX. 최 종 규 정

#### 제 32 조 - 비준·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 각각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된다.
2. 비준·수락 또는 승인서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 33 조 - 가 입

1. 이 협약은 유네스코 총회의 가입 초청을 받은 유네스코 비회원국의 가입

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또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1514(XV)에 따른 완전한 독립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국제연합이 인정한 완전한 자치 정부를 가지며, 이 협약이 규율하는 문제에 관하여 조약체결권 등 권한을 가진 영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가입서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 34 조 - 발 효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월 후 그날 또는 그 이전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은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 제 35 조 -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한 헌법체제

다음의 조항은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한 헌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당사국에 적용된다.

가. 연방 또는 중앙입법권의 법적 관할에 속하는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 또는 중앙정부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나. 연방의 헌법체제하에서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각각의 구성 주·국·도 또는 현의 관할에 속하는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그러한 주·국·도 또는 현에 채택 권고와 함께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통보한다.

#### 제 36 조 - 협약의 탈퇴

1. 당사국은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문서로써 통고된다.

3. 탈퇴는 탈퇴통고서 수령 후 12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는 그것이 효

력을 발생하는 날까지는 탈퇴를 행하는 당사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37 조 - 기탁처의 기능

이 협약의 기탁처로서 유네스코사무총장은 유네스코 회원국, 제33조에 언급된 유네스코 비회원국 및 국제연합에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제36조에 규정된 탈퇴통고서에 대하여 통보한다.

### 제 38 조 - 개정

1. 당사국은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보로써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회람한다. 통보가 회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사국 절반 이상이 이러한 요청에 긍정적으로 회신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 총회 회기에 토의 및 채택을 위하여 이러한 제안을 제출한다.
2. 개정안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3. 채택된 이 협약의 개정은 채택된 후 당사국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위하여 제출된다.
4. 개정은 당사국 3분의 2가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문서를 기탁한 후 3월 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서만 발효한다. 그 이후 개정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이러한 개정은 그 당사국이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절차는 위원회의 위원국 수에 관한 제5조의 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개정은 채택시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조 제4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한 후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다음으로 본다.

가. 개정된 협약의 당사자

나. 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정되지 아니한 협약의 당사자

#### 제 39 조 - 정 본

이 협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의 6개의 문서로 작성되었다.

#### 제 40 조 -등 록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네스코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된다.

2003년 11월 3일 파리에서 제32차 총회의장 및 유네스코사무총장이 서명한 두통의 정본으로 작성되었다. 이 두 정본은 유네스코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인증등본은 제32조 및 제33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및 국제연합에 송부된다.

위의 내용은 파리에서 개최되어 2003년 10월 17일 폐회가 선언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당히 채택된 협약의 진정한 본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2003년 11월 3일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3. 『무형유산협약 운영지침』 6장. 지속가능한 발전 전문<sup>66)</sup>

#### 가. 영문

####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CHAPTER VI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170. With a view to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by all appropriate mean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strengthen the rol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driver and guaran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fully integrate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o their development plans, policies and programmes at all levels. While recognizing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ates Parties shall strive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 well as their interdependence with peace and security, in their safeguarding efforts and shall to this end facilitate cooperation with relevant experts, cultural brokers and mediators through a participatory approach. States Parties shall acknowledge the dynamic na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both urban and rural contexts and shall direct their safeguarding efforts solely on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is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

66)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기본문서 및 국내 무형유산 관련법”(ICHCAP, 2024년)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171. Insofar as their development plans, policies and programmes invol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 may potentially affect its viability,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a) ensure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ropriate, individuals that create, maintain and transmit such heritage, and involve them actively in elabor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ch plans, policies and programmes;

(b) ensure that those 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ropriate, individuals concerned are the primary beneficiaries, both in moral and in material terms, of any such plans, policies and programmes;

(c) ensure that such plans, policies and programmes respect ethical considerations and do not negatively affect the via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cerned or de-contextualize or denaturalize that heritage;

(d) facilitate cooper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experts and cultural brokers for the appropriate integration of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o plans, policies and programme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cultural sector.

172.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take full cognizance of the potential and actual impacts of all development plans and programm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mpact assessment processes.

173.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recognize, promote and enhance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strategic resource to enable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and groups themselves, aimed at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issues linked to protection of various rights of th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nected to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in particular through the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ivacy rights and any other appropriate forms of legal protection, to ensure that the rights of th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hat create, bear and transmit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duly protected when raising awareness about their heritage or engaging in commercial activities.

174.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their safeguarding plans and programmes are fully inclusive of all sectors and strata of society,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migrants, immigrants and refugees, people of different ages and gender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embers of vulnerable groups, in conformity with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175.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or groups themselves an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imed at understanding the contribu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importance as a resource for dealing with development problems and at demonstrating its value with clear evidence, including appropriate indicators if possible.

176.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inscrip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the Convention's lists as provided in Articles 16 and 17 of the Convention and the selection of best safeguarding practices as provided in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are used to advance the

Convention's goals of safeguar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re not misused to the detri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ommunities, groups or individuals concerned, in particular for short-term economic gain.

## VI.1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177.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recognize that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comprehends issues such as sustainable food security, quality health care, quality education for all, gender equality and access to safe water and sanitation, and that these goals should be underpinned by inclusive governance and the freedom for people to choose their own value systems.

### VI.1.1 Food security

178.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sure the recognition of, respect for and enhancement of those farming, fishing, hunting, pastoral, food-gathering, food preparation and food preservation knowledge and practices, including their related rituals and beliefs, that contribute to food security and adequate nutrition and that are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or groups themselves, aimed at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those knowledge and practices, demonstrating their efficacy, identifying and promoting their contributions to maintaining agro biodiversity, providing food security and strengthening their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b)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including codes or other tools of ethics, to promote and/or

regulate access to farming, fishing, hunting, pastoral and food gathering, food preparation and food preservation knowledge and practices, that are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they generate, and ensure the transmission of such knowledge and practices;

(c)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recognize and respect the customary rights of communities and groups to those land, sea and forest ecosystems necessary for their farming, fishing, pastoral and food-gathering knowledge and practices that are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VI.1.2 Health care**

179.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sure the recognition of, respect for and enhancement of those health practices that are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at contribute to their well-being, including their related knowledge, genetic resources, practices, expressions, rituals and beliefs, and to harness their potential to contribute to achieving quality health care for all. To that end, they are encouraged to:

(a)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and groups themselves, aimed at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health care practices that are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monstrating their functions and efficacy and identifying their contributions to meeting health care needs;

(b)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in consultation with knowledge holders, healers and practitioners, to promote access to healing knowledge and raw materials, participation in

healing practices, and transmission of such knowledge and practices that are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respecting customary practices governing access to specific aspects of them;

(c) enhance collaboration and complementarity among the diversity of health care practices and systems.

### VI.1.3 Quality education

180. Within their respective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by all appropriate means, to ensure recognition of, respect for and enhanc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ciety, emphasizing its particular role in transmitting values and life skills and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particular through specific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mes within the communities and groups concerned and through non-formal means of transmitting knowledge.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i. ensure that educational systems promote respect for one's self, one's community or group, mutual respect for others and do not in any way alienate people from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aracterize their communities or groups as not participating in contemporary life or harm in any way their image;

ii. ensure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integrated as fully as possible into the content of educational programmes of all relevant disciplines, both as a contribution in its own right and as a means of explaining or demonstrating other subjects at the curricular, cross-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levels;

iii. recognize the importance, along with innovative safeguarding methods, of modes and methods of transmit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are themselves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eek to harness their potential withi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systems;

(b) enhance collaboration and complementarity among the diversity of educational practices and systems;

(c)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and groups themselves, aimed at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pedagogical methods that are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ssessing their efficacy and suitability for integration into other educational contexts;

(d) promote educ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and the protection of natural spaces and places of memory whose existence is necessary for express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VI.1.4 Gender equality**

181.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foster the contribu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safeguarding to greater gender equality and to eliminating genderbased discrimination while recognizing that communities and groups pass on their values, norms and expectations related to gender thr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 is, therefore, a privileged context in which group and community members' gender identities are shaped.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take advantage of the potential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f its safeguarding to create common spaces for dialogue on how best to achieve gender equality, 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e perspectives of all stakeholders;

(b) promote the important role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safeguarding can play in building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and

groups whose members may not share the same conceptions of gender;

(c) assist communities and groups in examining expressions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regard to their impact and potential contribution to enhancing gender equality and to take the results of this examination into account in decisions to safeguard, practice, transmit and promote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se expressions;

(d)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and groups themselves, aimed at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gender roles within particular express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 ensure gender equality in the planning,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safeguarding measures, at all levels and in all contexts, in order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diverse perspectives of all members of society.

#### **VI.1.5 Access to clean and safe water and sustainable water use**

182.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sure the viability of water management systems that are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at promote equitabl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sustainable water use, notably in agriculture and other subsistence activities.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and groups themselves, aimed at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those water management systems that are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dentifying their contributions to meeting environmental and water-related development needs, as well as how to strengthen their resilience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b)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identify, enhance and promote such systems in order to respond to water needs and climate change challenge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VI.2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183.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cknowledge that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ributes to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and to recognize in this context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depends upon stable, equitable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based on sustainable pattern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requires reduction of poverty and inequalities, productive and decent employment as well as ensuring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renew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and improving progressively resource efficiency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184.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take full advantag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powerful force for inclusive and 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 encompassing a diversity of productive activities with both monetary and nonmonetary value, and contributing in particular to strengthening local economies.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respect the nature of that heritage and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ommunities, groups or individuals concerned, particularly their choice of collective or individual management of their heritage while providing them with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practice of their creative expressions and promoting fair trade and ethical economic relations.

### **VI.2.1 Income generation and sustainable livelihoods**

185.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recognize, promote and enhance the contribu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generating income and

sustaining livelihoods for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and groups themselves, aimed at identifying and assessing opportunities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fers for generating income and sustaining livelihoods for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its role in supplementing other forms of income;

(b)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i. promote opportunities for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o generate income and sustain their livelihood so that the sustainable practice, transmission and safeguarding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ensured;

ii. ensure that th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are the primary beneficiaries of income generated as a result of their ow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at they are not dispossessed of it, in particular in order to generate income for others.

#### **VI.2.2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186.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recognize, promote and enhance the contribu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and groups themselves, aimed at identifying and assessing opportunities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fers for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th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its adaptability to family and household circumstances and relation to other forms of employment;

(b)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including tax incentives, to:

i. promote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in the practice and transmission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extending social security protection and benefits to them;

ii. ensure that th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are the primary beneficiaries of work opportunities involving their ow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at they are not dispossessed of it, in particular in order to create employment for others.

### **VI.2.3 Impact of tourism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vice versa**

187.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any activities related to tourism, whether undertaken by the States or by public or private bodies, demonstrate all due respect to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their territories and to the rights, aspirations and wishes of th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therewith.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assess, both in general and in specific terms, the potential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tourism and the impact of tourism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anticipating potential impact before activities are initiated;

(b)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i. ensure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are the primary beneficiaries of any tourism associated with their ow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promoting their lead role in managing such tourism;

ii. ensure that the viability, social functions and cultural meanings of

that heritage are in no way diminished or threatened by such tourism;

iii. guide the interventions of those involved in the tourism industry and the behaviour of those who participate in it as tourists.

### **VI.3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188.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cknowledge the contribution of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to recognize tha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quires sustainably managed natural resources and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which in turn could gain from improved scientific understanding and knowledge-sharing about climate change, natural hazards, the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 limits and that strengthening resilience among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is essential.

#### **VI.3.1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189.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sure recognition of, respect for, sharing of and enhancement of the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that are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at contribute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cognizing their capacity to evolve, harnessing their potential role in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i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recogniz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s the bearers of knowledge about nature and the universe and as essential actors in sustaining the environment;

(b)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and groups themselves, aimed at

understanding system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sustainable resource use, that are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emonstrating their effectiveness while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identification and sharing of good practices;

(c)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i. promote access to and transmission of traditional knowledge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while respecting customary practices governing access to specific aspects of it;

ii. conserve and protect those natural spaces whose existence is necessary for express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VI.3.2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90.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recognize the potential and actual environmental impac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ctices and safeguarding activiti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their intensification.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and groups themselves, aimed at understanding such impacts;

(b)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encourage environmentally friendly practices and to mitigate any possible harmful impacts.

### **VI.3.3 Community-based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191.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sure recognition of, respect for

and enhancement of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geoscience, particularly the climate, and harness their potential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risk, recovery from natural disasters, particularly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social cohesion and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impacts.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recogniz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s the bear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bout geoscience, particularly the climate;

(b)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and groups themselves, aimed at understanding and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knowledge of disaster risk reduction, disaster recovery, climate adaptation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that are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enhancing the capacities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o face challenges related to climate change that existing knowledge may not address;

(c)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i. promote access to and transmission of knowledge concerning the earth and the climate, that is recogniz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respecting customary practices governing access to specific aspects of it;

ii. fully integrat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who are bearers of such knowledge into systems and programmes of disaster risk reduction, disaster recovery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 **VI.4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eace**

192.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cknowledge the contribution of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foste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which are based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free from fear and violence. Sustainable development cannot be realized without peace and security; and peace and security will be at risk without sustainable development.

193. States Parties should endeavour to recognize, promote and enhance those practices, representations and express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have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at their core, bri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ogether and ensure exchange, dialogue and understanding among them.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deavour to fully realize the contribution that safeguarding activities make to the construction of peace.

#### **VI.4.1 Social cohesion and equity**

194. States Parties should endeavour to recognize and promote the contribution of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social cohesion, overcom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strengthening the social fabric of communities and groups in an inclusive way.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those practices, expressions and knowledge that help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o transcend and address differences of gender, colour, ethnicity, origin, class and locality and to those that are broadly inclusive of all sectors and strata of society,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migrants, immigrants and refugees, people of different ages and gender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embers of marginalized groups.

#### **VI.4.2 Preventing and resolving disputes**

195. States Parties should endeavour to recognize, promote and enhance the contribution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make towards the prevention of disputes and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and groups themselves, aimed at demonstrating expressions, practices and representa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contributors to dispute prevention and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b) promote the adoption of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 i. support such expressions, practices and representations;
- ii. integrate them into public programmes and policies;
- iii. reduce their vulnerability during and in the aftermath of conflicts;
- iv. consider them as complements to other legal and administrative mechanisms of dispute prevention and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 **VI.4.3 Restoring peace and security**

196. States Parties should endeavour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potential rol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restoration of peace, reconciliation between parties, re-establishment of safety and security, and recovery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foster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conducted by the communities and groups themselves, aimed at understanding ho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contribute to restoring peace, reconciling parties, re-establishing safety and security, and recovery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b) promo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integrate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o public programmes and policies aimed at the restoration of peace, reconciliation between parties, re-establishment of safety and security, and recovery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 VI.4.4 Achieving lasting peace

197. States Parties should endeavour to recognize, promote and enhance the contribution that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makes to the construction of lasting peace.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 ensure respect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indigenous peoples, migrants, immigrants and refugees, people of different ages and gender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embers of vulnerable groups in their safeguarding efforts;

(b) take full advantage of the contribution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democratic governance and human rights by ensuring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 promote the peace-building potential of safeguarding efforts that involve intercultural dialogue and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 나. 국 문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sup>67)</sup>

#### 제6장. 국가적 차원에서 무형유산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170.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이자 보장수단으로서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며 모든 수준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당사국의 개발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에 온전히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당사국은 무형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며, 보호 노력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3 요소(경제적, 사회적, 환경적)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힘쓰고 이를 위해 참여중심적인 접근법을 통해 유관 전문가, 문화 중개인

67)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기본문서 및 국내 무형유산 관련법”(ICHCAP, 2024년)

및 중재자의 협력을 돕는다. 당사국은 도시와 농촌의 맥락 속에서 무형유산이 지니는 역동성을 인정하며 보호 활동은 현존하는 국제적 인권 규범, 공동체, 집단 및 개인 간의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무형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171. 당사국의 개발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이 무형유산과 관계되거나 무형유산의 생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사국은 아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a) 당사국은 이러한 유산을 창출, 유지, 전수하는 공동체, 집단 및 적절한 경우 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들이 이러한 개발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의 입안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한다.

(b) 관련 공동체, 집단 및 적절한 경우 개인이 이러한 개발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인한 도덕적, 물질적 이득의 주요 수혜자가 되도록 보장한다.

(c) 이러한 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이 윤리적 문제를 존중하고 해당 무형유산의 생명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유산의 탈맥락화 혹은 탈자연화를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d) 문화 분야 내외의 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에 무형유산 보호의 적절한 통합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전문가 및 문화적 중개자와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172. 당사국은 특히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영향 평가 과정의 맥락에서 개발 계획 및 프로그램이 무형유산에 미치는 잠재적, 실제적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173.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서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인식, 증진 및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다.

(a)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권리 보호에 얽힌 다양한 이슈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시키며 이는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b)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조치, 특히 지적 재산권, 사생활권 및 기타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의 적용을 통해 무형유산을 창출, 보유 및 전승하는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해당 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거나 상업적 행위에 참여할 때 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174. 당사국은 협약 제 11조에 따라 보호 계획 및 프로그램이 토착민, 이주자, 이민자, 난민, 다양한 연령 및 성별 집단, 장애인, 취약계층 등 사회 내 모든 집단 및 계층을 포용하도록 노력한다.

175.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무형유산의 공헌과 개발 문제에 대응하는 자원으로서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능한 경우 적절한 지표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거나 NGO에서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한다.

176. 당사국은 협약의 제 16조 및 17조에 따른 목록 등재 및 제18조에 의거한 보호모범사례의 선정을 통해 협약의 목적인 무형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특히 단기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해당 무형유산과 공동체, 집단 및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 **VI.1. 포용적 사회 발전**

177. 당사국은 포용적인 사회 발전에 있어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양질의 보건의료 및 교육, 양성평등 그리고 깨끗한 급수 및 위생시설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거버넌스와 자신의 가치 체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 **VI.1.1 식량안보**

178. 당사국은 식량안보와 충분한 영양공급에 기여하면서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여기는 농업, 어업, 사냥, 목축, 식량 채집, 요리 및 식품 보존 관련 지식 및 관습, 그리고 관련된 의식과 신념을 인식, 존중 및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다.

(a) 이러한 지식 및 관습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증명하며, 나아가 농산물 다양성 유지, 식량안보 보장 및 기후변화로부터의 회복 탄성력 강화에 기여하는 바를 밝히고 알리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시키며 이는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b) 규율 및 윤리 원칙을 포함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여기는 농업, 어업, 사냥, 목축, 식량 채집, 요리 및 식품 보존 관련 지식 및 관습에 대한 접근을 장려/규제하고, 이러한 지식과 관습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며 전승을 보장한다.

(c)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여기는 농업, 어업, 사냥, 목축, 식량 채집 관련 지식 및 관습에 필요한 토지, 해양 및 산림 생태계에 대한 해당 공동체와 집단의 관습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VI.1.2 보건의료

179. 당사국은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여기는 보건의료 행위중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관련 지식, 유전자 자원, 관습, 표현, 의식 및 신념을 인식, 존중 및 증진하고, 이러한 지식과 관습이 지니는 잠재력을 활용해 만인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다.

(a)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여기는 다양한 보건의료 행위를 이해하고, 이의 기능과 효용성을 증명하며, 보건의료 수요 충족에 대한 기여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시키며 이는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b) 지식보유자, 치료사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치료 지식 및 재료에 대한 접근성과 치료 행위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고,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여기는 지식과 관습의 전승을 증진시키되, 특정 부분에 대한 접

근을 규제하는 관습을 존중한다.

(c) 다양한 보건행위와 제도간의 협력과 상호보완성을 향상시킨다.

### VI.1.3 양질의 교육

180. 각국의 교육제도와 정책 내에서 당사국은 공동체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비공식적 전승 수단을 통해 무형유산이 삶에 필요한 기술을 전승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등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사회속 무형유산을 인식, 존중 및 증진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다.

(a)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i) 교육제도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및 집단에 대한 존중, 그리고 타자에 대한 상호존중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사람을 자신의 무형유산에서 소외시키거나- 63 그들의 공동체나 집단이 동시대의 일상생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형성하거나 사회인식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ii) 모든 관련 학문적 분야의 교육적 콘텐츠에 무형유산이 그 자체로서 또는 커리큘럼 내외 및 커리큘럼 간 학습과정에서 다른 과목을 설명,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가능한 한 온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iii)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여기는 유산의 전승 방식의 중요성과 함께 혁신적인 보호 방법을 인식하고 공식, 비공식적 교육제도 속에 이러한 유산의 잠재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b) 다양한 교육적 관습 및 제도간의 협력 및 상호보완성을 향상시킨다.

(c)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여기는 다양한 교육법을 이해하고, 이를 그 밖의 교육적 맥락에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효용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시키며 이는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d) 무형유산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장려하고 자연적인 공간 및 기념적인 장소를 증진한다.

#### VI.1.4 성평등

181. 당사국은 양성평등을 발전시키고 성차별을 철폐하는데 있어 무형유산과 무형유산 보호활동이 기여하는 바를 알리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무형유산을 통해 성별 관련 가치관, 규범 및 기대가 후세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무형유산이 집단 및 공동체 구성원의 성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우선적인 맥락이 됨을 인지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다.

(a) 무형유산과 무형유산 보호활동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공동의 장을 만든다.

(b) 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지닌 공동체 및 집단의 구성원들 간 상호 존중을 구축해나가는 데 있어 무형유산과 보호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알린다.

(c) 공동체 및 집단이 자신의 무형유산 표현을 양성평등 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 기여도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해당 표현의 보호, 연행, 전승 및 국제적 증진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d) 특정 무형유산 표현에 내재된 다양한 성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시키며 이는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e) 모든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모든 차원과 맥락에서 보호조치의 계획, 관리 및 이행에 양성평등을 보장한다.

#### VI.1.5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 가능한 물 이용

182. 당사국은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여기며 농업 및 기타생계활동에서 안전한 식수와 지속가능한 수자원 사용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증진하는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지속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다.

(a)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여기는 다양한

수자원 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환경적, 개발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지니는 효과와 기후변화로부터의 회복 탄성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시키며 이는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b)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수자원 수요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확인, 강화, 증진한다.

## VI.2 포용적 경제 개발

183. 당사국이 무형유산 보호가 포용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에 기반한 안정적이며 공정한 포용적 경제성장에 기반하고, 나아가 빈곤 및 불공평의 해소, 생산적이며 바람직한 고용, 만인에 대한 지속·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 생산과 소비에서 자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장려한다.

184. 당사국은 다양한 화폐적·비화폐적 가치를 지닌 생산활동을 아우르고 지역경제 강화에 기여하는 등 무형유산이 공정하며 포용적인 경제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 창조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고 공정무역 및 윤리적 경제관계가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해당 유산의 본질과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 특히 유산의 집단적·개인적 관리 여부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도록 장려한다.

### VI.2.1 소득 창출 및 생계 유지

185. 당사국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소득 창출과 생계 유지에 대한 무형유산의 공헌을 인정, 증진 및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다.

(a) 무형유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수입창출 및 생계유지 기회를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타 형태의 수입 보충

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시키며 이는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b)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i)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연행, 전승 및 보호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킨다.

(ii) 해당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주요 수혜자가 되며 특히 타인에게 수입을 창출해 주기 위해 그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VI.2.2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186. 당사국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무형유산의 공헌을 인식, 촉진 및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다.

(a) 무형유산이 해당 공동체, 집단 및 개인에게 주는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다양한 가정 및 가구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기타 고용방식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시키며 이는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b) 조세 혜택을 포함한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i) 무형유산의 연행과 전승을 통한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고 혜택을 제공한다.

(ii) 해당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과 관련된 일자리의 주요 수혜자가 되며 특히 타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 그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VI.2.3 무형유산 보호와 관광의 상호 영향

187. 당사국은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 주체가 수행한 관광 관련 모든

활동이 자국 내 영토의 무형유산 보호 및 이와 관련된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권리, 포부, 소망에 최고 수준의 존중을 보일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 한다.

(a) 지속가능한 관광에 동원될 수 있는 무형유산의 잠재성, 그리고 관광이 무형유산 및 해당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구체적인 평가를 하되 활동이 개시되기 전 잠재적 영향을 예측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b)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i) 관련된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과 관련된 관광의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관광을 관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취하도록 지원한다.

(ii) 이러한 관광으로 인해 해당 무형유산의 생명력, 사회적 기능 및 문화적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든 약해지거나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iii) 관광 산업 관계자의 개입과 관광객으로 참여하는 이들의 행위를 지도한다.

### VI.3 환경 지속가능성

188. 당사국이 환경지속성에 대한 무형유산 보호활동의 공헌을 인정하고, 이러한 환경지속성을 위해서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자원의 한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이용이 필요하며, 또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직면한 취약한 인구의 회복 탄성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하도록 장려한다.

#### VI.3.1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189. 당사국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여기며 환경지속성에 기여하는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의 인식, 존중, 공유 및 증진을 보장하며 해당 지식 및 관습의 진화적 역량을 인지하고 해당 무형유산이 생물다양성보호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대해 지니는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

다.

(a)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의 보유자이자 환경 유지의 필수적인 행위자로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을 인정한다.

(b)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여기는 생물다양성 보존, 자원관리 및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의 효용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모범 사례의 지정 및 공유를 위한 국제적 공조 위해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시키며 이는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c)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i) 자연과 우주에 대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전송을 증진시키되, 특정 부분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관습을 존중한다.

(ii) 무형유산의 표현에 필요한 자연적 공간을 보존하고 보호한다.

### VI.3.2 무형유산 보호에서의 환경적 영향

190. 당사국은 무형유산의 연행 및 보호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및 실제적인 환경적 영향을 인정하고, 특히 이러한 환경적 영향의 심화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다.

(a)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시키며 이는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b)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친환경적인 행위를 장려하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킨다.

### VI.3.3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체 회복 탄력성

191. 당사국은 지구과학, 특히 기후에 대한 지식 및 관습의 인식, 존중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지식 및 관습이 지닌 잠재력인 사회적 화합 강화 및 기후변화 영향의 완화를 통해 자연재해의 위험 감소 및 피해 복구에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다.

(a)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을 지구과학, 특히 기후에 대한 전통지식 보유자로 인식한다.

(b)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으로 여기는 재난위험 감소, 재해복구, 기후적응, 기후변화 완화 관련 지식의 유효성을 이해하고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지식으로 해결 불가능한 기후변화 대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시키며 이는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c)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i)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여기는 지구와 기후에 대한 지식의 접근 및 전송을 증진시키되, 특정 부분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관습을 존중한다.

(ii) 이러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을 재해위험 감소, 재해복구, 기후적응 및 기후변화 영향의 완화를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킨다.

#### VI.4 무형유산과 평화

192. 당사국은 무형유산의 보호가 인권존중(발전의 권리 포함)에 기반하고 폭력에서부터 자유로운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평화와 안보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실현 불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없이 평화와 안보는 위협에 처할 것이다.

193. 당사국은 평화창설과 평화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무형유산 관습, 표상 및 표현을 인식, 증진 및 향상시키며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을 한자리에 모아 교류, 대화 및 상호이해를 도모한다. 나아가 당사국은 평화 구축에 대한 보호활동의 잠재적 공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

##### VI.4.1 사회적 결속과 공정성

194. 당사국은 무형유산 보호가 사회적 화합 도모,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포용적인 방법으로 공동체 및 집단의 사회적 결속력 강화에 기여하는 바를 인식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이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성별, 인종, 민족, 기원, 계급 및 지역의 다름을 초월하는 동시에 적

절히 취급하여 원주민, 이주자, 이민자, 난민, 다양한 연령 및 성별 집단, 장애인, 소외계층 등 사회의 모든 집단 및 계층을 포용하는 관습, 표현, 및 지식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한다.

#### VI.4.2 분쟁의 예방 및 해결

195. 당사국은 분쟁의 예방 및 평화적인 해결에 무형유산이 공헌할 수 있는 바를 인식, 증진 및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다.

(a) 무형유산의 표현, 관습 및 표상이 분쟁의 예방 및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 공헌하는 바를 증명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시키며 이는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b)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i) 이러한 표현, 관습 및 표상을 지원하고,

(ii) 공공 프로그램 및 정책에 통합하며,

(iii) 분쟁 발생 시 및 분쟁 후 여파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iv) 표현, 관습 및 표상을 기타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적, 행정적 기제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고려한다.

#### VI.4.3 평화와 안보 회복

196. 당사국은 평화회복, 당사자 간 화해, 안전 및 안보의 재건, 그리고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회복에 있어 무형유산이 지닌 잠재적 역할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다.

(a) 평화회복, 당사자 간 화해, 안전 및 안보의 재건, 그리고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회복에 대한 무형유산이 기여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증진시키며 이는 해당 공동체 및 집단이 직접 실행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b)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평화회복, 당사자 간 화해, 안전 및 안보의 재건, 그리고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프로그램 및 정책에 무형유산을 통합시킨다.

#### VI.4.4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

197. 당사국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무형유산을 보호함이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바를 인식, 증진 및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다음의 조치를 장려한다.

(a) 토착민, 이주자, 이민자, 난민, 다양한 연령 및 성별의 집단, 장애인 및 취약 계층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을 존중한다.

(b)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참여를 극대화시켜 민주적 거버넌스 및 인권에 대한 무형유산 보호의 공헌을 최대한 활용한다.

(c) 문화간 대화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무형유산 보호 노력이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증진한다.

## 4.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무형유산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6. 9., 2022. 1. 18., 2023. 8. 8.>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승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승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8.>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8.>

##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 8. 8.>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제목개정 2023. 8. 8.]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포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8. 8.]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2024. 2. 13.>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라 한다) 무형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 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3. 8. 8.>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③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

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  
14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3. 8. 8.]

####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  
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분  
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6. 9., 2023. 8. 8., 2024. 2. 13.>

1. 전승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4. 2. 13.>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3. 8. 8., 2024. 2. 13.>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목개정 2020. 6. 9.]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3. 8. 8.]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2024. 2. 13.>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2의2.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8.]

제22조(정기조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승활동 공간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2024. 2. 13.>

1.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신고 사항)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제24조(행정명령)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 보전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3. 8. 8.>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2023. 8. 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022. 1. 18.>

[제목개정 2023. 8. 8.]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전수장학생)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절차·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제2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1.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②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4. 2. 13.>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제목개정 2016. 12. 20.]

#### 제6장 시·도무형유산 <개정 2023. 8. 8.>

제31조(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8.>

②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제목개정 2023. 8. 8.]

제32조(시·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

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2023. 8. 8.>

④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시·도지사는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무형유산 또는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제33조(보고 사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2024. 2. 13.>

1. 시·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3.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4. 시·도무형유산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시·도지사는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35조(준용규정) 시·도무형유산 및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도무형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개정 2024. 2. 13.>

[전문개정 2023. 8. 8.]

제36조(이북5도 무형유산) ① 국가유산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취득·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유산의 지정 절차, 경비 및 수당의 대상과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 8. 8., 2023. 10. 31.>

[제목개정 2023. 8. 8.]

####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개정 2023. 8. 8.>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제38조(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13.>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2. 13.>

[제목개정 2023. 8. 8.]

제42조(인증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2. 13.>

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무형유산 관련 단체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본조신설 2023. 10. 31.]

제44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유산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 등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제목개정 2023. 8. 8.]

제46조(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를 둔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제목개정 2023. 8. 8.]

##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한다)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2022. 1. 18., 2023. 8. 8., 2024. 2. 13.>

②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③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0. 12. 8.>

④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0. 12. 8., 2023. 8. 8.>

1. 무형유산 정보공유의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활동 지원
2. 무형유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전시 및 콘텐츠 개발과 활용
3. 무형유산 관련 개인, 비정부기구·시민사회단체 등 단체 및 교육기관·학술기관 등 기관 간의 교류·협력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행사의 개최
4. 공유된 무형유산 정보의 국내 활용을 위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⑧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제7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⑨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8.>

⑩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제8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제47조의2(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인류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진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지원
2.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 조사·연구
3. 무형유산 보호 분야 국제 연수 및 전문인력 교류
4. 무형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수행되는 국내외 프로그램 및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 18.]

[제목개정 2023. 8. 8.]

## 제9장 보칙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제목개정 2023. 8. 8.]

제50조(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9.>

제52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1. 제1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3.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4. 제4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제55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제3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4. 제5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 제10장 벌칙

제5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22조제3항 전단(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
3.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51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 2. 13.>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제1항·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호·제4호 및 제5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5조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5.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2.4.17. 문화재청 예규	제2012-109호
일부개정	2015.3.27. 문화재청 예규	제146호
일부개정	2016.3.23. 문화재청 예규	제161호
일부개정	2024.1.8. 문화재청 예규	제299호
일부개정	2024.3.19. 문화재청 예규	제334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 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국가목록” 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2.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 무형유산
3. 제2항에 따른 예비목록

② 이 규정에서 “예비목록”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유산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인

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의 명칭
2. 해당 무형유산의 범주
3. 해당 무형유산의 개념 및 정의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공동체 및 그 범위
5.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여건 및 실연방식
6. 해당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관계
7. 해당 무형유산의 보호조치 방안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전승자, 집단, 공동체,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국가목록의 공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전승자, 집단, 공동체 또는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109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6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1호,2016.3.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99호,2024.1.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4호, 2024.3.1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 국가무형유산 등재 종목 : 162종목(2025.7월 현재)

연번	종목명	지정연도	분류
1	종묘제례악	1964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2	양주별산대놀이	1964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3	남사당놀이	1964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4	갯길	1964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5	판소리	1964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6	통영오광대	1964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7	고성오광대	1964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8	강강술래	1966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9	은산별신제	1966	무형유산/의례·의식/그 밖의 의식·의례
10	나전장	1966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1	진주삼천포농악	1966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12	평택농악	1985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13	이리농악	1985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14	강릉농악	1985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15	임실필봉농악	1988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16	구례잔수농악	2010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17	김천금릉빛내농악	2019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18	남원농악	2019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19	진주검무	1967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춤
20	강릉단오제	1967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축제
21	한산모시짜기	1967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22	북청사자놀이	1967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23	거문고산조	1967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24	봉산탈춤	1967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25	동래야류	1967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26	선소리산타령	1968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27	대금정악	1968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28	승전무	1968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춤
29	매듭장	1968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30	가야금산조 및 병창	1968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31	안동차전놀이	1969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32	영산쇠머리대기	1969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33	영산줄다리기	1969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34	승무	1969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춤
35	나주의 셋골나이	1969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36	서도소리	1969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37	가곡	1969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38	낙죽장	1969	무형유산/전통기술/미술
39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	1970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40	강령탈춤	1970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41	조각장	1970	무형유산/전통기술/미술

연번	종목명	지정연도	분류
42	조선왕조궁중음식	1971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식생활
43	처용무	1971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춤
44	학연화대합설무	1971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춤
45	가사	1971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46	악기장	1971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47	수영야류	1971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48	경산자인단오제	1971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축제
49	대금산조	1971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50	피리정악 및 대취타	1971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51	궁시장	1971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52	단청장	1972	무형유산/전통기술/미술
53	송파산대놀이	1973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54	영산재	1973	무형유산/의례·의식/종교의례
55	남도들노래	1973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56	채상장	1975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57	소목장	1975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58	종묘제례	1975	무형유산/의례·의식/그 밖의 의식·의례
59	경기민요	1975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60	줄타기	1976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61	장도장	1978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62	은율탈춤	1978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63	좌수영어방놀이	1978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64	두석장	1980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65	백동연죽장	1980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66	망건장	1980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67	탕건장	1980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68	밀양백중놀이	1980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69	하회별신굿탈놀이	1980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70	양주소놀이굿	1980	무형유산/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71	제주칠머리당영등굿	1980	무형유산/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72	진도씻김굿	1980	무형유산/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73	가산오광대	1980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74	대목장	1982	무형유산/전통기술/건축
75	기지시줄다리기	1982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76	택견	1983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무예
77	유기장	1983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78	입사장	1983	무형유산/전통기술/미술
79	발탈	1983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80	자수장	1984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81	진도다시래기	1985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연희
82	동해안별신굿	1985	무형유산/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83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1985	무형유산/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연번	종목명	지정연도	분류
84	위도띠뱃놀이	1985	무형유산/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85	남해안별신굿	1987	무형유산/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86	구례향제줄풍류	1985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87	이리향제줄풍류	1985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88	고성농요	1985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89	예천통명농요	1985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90	석전대제	1986	무형유산/의례·의식/그 밖의 의식·의례
91	문배주	1986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식생활
92	면천두견주	1986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식생활
93	경주교동법주	1986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식생활
94	명주짜기	1988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95	바디장	1988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96	침선장	1988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97	황해도평산소놀이굿	1988	무형유산/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98	제와장	1988	무형유산/전통기술/건축
99	태평무	1988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춤
100	전통장	1989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01	제주민요	1989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102	옹기장	1990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03	살풀이춤	1990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춤
104	경기도도당굿	1990	무형유산/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105	소반장	1992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06	옥장	1996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07	금속활자장	1996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08	배첩장	1996	무형유산/전통기술/미술
109	완초장	1996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10	서울 새남굿	1996	무형유산/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111	사기장	1996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12	각자장	1996	무형유산/전통기술/미술
113	누비장	1996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14	목조각장	1996	무형유산/전통기술/미술
115	화각장	1996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16	윤도장	1996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17	사직대제	2000	무형유산/의례·의식/그 밖의 의식·의례
118	주철장	2001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19	칠장	2001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20	염장	2001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21	염색장	2001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22	화혜장	2004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23	한지장	2005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24	불화장	2006	무형유산/전통기술/미술
125	금박장	2006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26	석장	2007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연번	종목명	지정연도	분류
127	번와장	2008	무형유산/전통기술/건축
128	연등회	2012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축제
129	법성포단오제	2012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축제
130	궁중채화	2013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31	삼화사 수록재	2013	무형유산/의례·의식/종교의례
132	진관사 수록재	2013	무형유산/의례·의식/종교의례
133	아랫넛 수록재	2014	무형유산/의례·의식/종교의례
134	선자장	2015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35	아리랑	2015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136	제다	2016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식생활
137	씨름	2017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138	해녀	2017	무형유산/전통지식 /생산지식
139	김치 담그기	2017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식생활
140	제염	2018	무형유산/전통지식 /생산지식
141	온돌문화	2018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주생활
142	낙화장	2018	무형유산/전통기술/미술
143	장 담그기	2018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식생활
144	전통어로방식-어살	2019	무형유산/전통지식 /생산지식
145	불복장작법	2019	무형유산/의례·의식/종교의례
146	삼베짜기	2019	무형유산/전통기술/공예
147	사경장	2020	무형유산/전통기술/미술
148	활쏘기	2020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무예
149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2020	무형유산/전통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150	막걸리 빚기	2021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식생활
151	떡 만들기	2021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식생활
152	갯벌어로	2021	무형유산/전통지식 /생산지식
153	제주큰굿	2021	무형유산/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154	한복생활	2022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의생활
155	윷놀이	2022	무형유산/전통 놀이·무예/놀이
156	설과 대보름	2023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절기풍속
157	한식	2023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절기풍속
158	단오	2023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절기풍속
159	추석	2023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절기풍속
160	동지	2023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절기풍속
161	한글서예	2025	무형유산/전통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162	사찰음식	2025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그 밖의 생활관습

## 7.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종목 : 150개국 788개 종목<sup>68)</sup>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1	레오그 포노로고 공연 예술	2024	인도네시아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기술
2	워사나 의식과 관행	2024	보츠와나	긴급보호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의례, 축제
3	삼바의 서사시, 게일 라디오	2024	모리타니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	베타샤르, 전통 결혼 의식	2024	카자흐스탄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5	망웬그웨 댄스	2024	잠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	세브달린카, 전통적인 도시 민요	2024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	트와예프 그본텐 부족의 공연 예술	2024	튀니지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8	똘양궁	2024	태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9	트로포예의 크치미 춤	2024	알바니아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10	수크레 갈레라스의 생생한 사진	2024	콜롬비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11	차르다시 전통 춤	2024	헝가리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12	카노의 두르바르	2024	나이지리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13	벨로루시의 전통 종이 공예, 비치난카	2024	벨라루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14	아스투리아 사이다 문화	2024	스페인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15	대한민국의 장 담그기 문화	2024	대한민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16	일본의 누룩곰팡이를 이용한 사케 양조의 전통 지식과 기술	2024	일본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17	과테말라 산티아고 사카테페케스와 고의 거대 연 제작 기술	2024	과테말라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8) 유네스코 누리집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리스트(<https://ich.unesco.org/en/lists>)에서 추출하여 우리말로 번역한 자료. 인류무형문화유산 178종목은 제19차 무형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2024.12월) 결과를 반영한 것임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18	삼 산 ( S a m Mountain)의 바 추 아 쉬 여신 축제	2024	베트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19	포르투갈의 승마 예 술	2024	포르투갈	대표목록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0	멀기 푸데르, 에스토 니아 멀기마, 지역의 으 브리로 만든 전통 으 깐 감자 전통요리	2024	에스토니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1	노르웨이의 전통 의 상, 장인 정신 및 사 회적 관행	2024	노르웨이	대표목록	전통 기술
22	미얀마 전통 새해 아 타 텅얀 축제	2024	미얀마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23	코트디부아르 아티에 케 생산 관련 기술	2024	코트디부아르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4	세르 치세: 에티오피 아, 지부티, 소말리아-이사 소말리아-이사 공동 체의 구전 관습법	2024	지부티, 에티오피 아, 소말리아	대표목록	구전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25	타이프 장미와 관련 된 문화적 관습	2024	사우디 아라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6	케바야: 지식, 기술, 전통 및 관행	2024	브루나이, 다루살 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27	몽골 유목민의 이주 와 관련된 관행	2024	몽골	대표목록	구전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기술
28	한복: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의 전통 지 식, 기술 및 사회적 관행	2024	조선민주 주의인 민공화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9	나우루즈, 노브루즈, 노우루즈, 노우루즈, 나우루즈, 나우루즈, 누르즈, 노우루즈, 나 브루즈, 네브루즈, 노 우루즈, 나브루즈	2024	아프가니스탄, 아 제르바이잔, 인 도, 이란(이슬람 공화국),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르 기스탄, 몽골, 파키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터키에,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기술
30	포넬람봉라오(람봉라 오)	2024	라오 인민 민주 공화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31	수동 벨 올림	2024	이탈리아, 스페인	대표목록	구전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2	메소스포리티사 축제 (중간 파종기의 성모 마리아 축제), 고대 유적지의 성모 축일	2024	그리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33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수제 미나스 치즈를 만드는 전통 기술	2024	브라질	대표목록	구전전통 및 표현 전통기술
34	코바치차의 나이브 페인팅	2024	세르비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35	파리 아연 지방공과 장식공의 기술	2024	프랑스	대표목록	전통 기술
36	메쌍기의 지식과 기술	2024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대표목록	구전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37	놀이공원 문화	2024	벨기에, 프랑스	대표목록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8	페보드와 세터의 여름 농사: 외곽 지역 방목과 장인 식품 생산과 관련된 지식, 전통 및 관행	2024	노르웨이, 스웨덴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39	너그러움의 상징, 아랍 커피	2024	요르단,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0	팔레스타인의 나불시 비누 제조 전통	2024	팔레스타인	대표목록	전통 기술
41	말레이시아의 아침 식사 문화: 다민족 사회에서의 식사 경험	2024	말레이시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2	전통 백파이프(가이다/톨룸) 제작 및 연주	2024	마케도니아, 터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3	캄보디아의 전통 직물인 크라마와 관련된 풍습과 표현	2024	캄보디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44	헤나: 의식, 미적 및 사회적 관행	2024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모리타니,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수단,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5	카사바 빵 만들기와 소비에 대한 전통 지식과 관행	2024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46	셈세미야: 악기 제작 및 연주	2024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전통기술
47	아제르바이잔의 탄디르 장인정신과 빵 굽기	2024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48	춘절	2024	중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49	과라니아, 파라과이 영혼의 소리	2024	파라과이	대표목록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50	인토레	2024	르완다	대표목록	공연 예술
51	켄테 전통 직물의 장인 정신	2024	가나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52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및 인도네시아의 발라폰과 콜린탕과 관련된 화적 관행 및 표현	2024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인도네시아, 말리	대표목록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기술
53	알레포 가르 비누의 장인 정신	2024	시리아 아랍 공화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54	피산카, 우크라이나의 전통과 계란 공예	2024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기술
55	와트 타운 순례	2024	자메이카	대표목록	구전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56	셰익스피어 마스, 카리아쿠의 연례 카니발의 전통적 구성 요소	2024	그레나다	대표목록	구전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57	알제리 동부 지역 여성들의 의례복: '간두라'와 '멜레흐파' 제작 및 장식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2024	알제리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지식
58	응곤도, 사와족의 물 신탁 숭배와 관련된 문화적 전통	2024	카메룬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59	루밥/라밥 만들기와 연주의 예술	2024	아프가니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60	메흐레간의 의식	2024	이란, 타지키스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61	리족의 전통 직조 기술	2024	중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62	창춘절	2024	중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63	중국 목조 아치교 건설을 위한 전통 설계 및 관행	2024	중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64	평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적 대화를 위한 오만 청소년 범선 훈련 선 (Safinat Shabab Oman) 프로그램	2024	오만	모범사례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기술
65	슬로바키아 전통 공예 학교(U'UV)	2024	슬로바키아	모범사례	전통 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66	코브자와 훔 리라 전 통 보호 프로그램	2024	우크라이나	모범사례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67	말레이시아의 전통 공연, 메크 물롱	2023	말레이시아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68	시리아 전통 유리 불 기	2023	시리아 아랍 공 화국	긴급보호목록	전통 기술
69	올리브 재배에 관한 전통 지식, 방법 및 관행	2023	튀르키예	긴급보호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70	파라과이 공화국 피 리베바이 시의 '폰초 파라이 데 60 리스타 스' 제작을 위한 조상 의 전통 기술	2023	파라과이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 기술
71	잉고마 야 마피코	2023	모잠비크	긴급보호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 기술
72	시에도	2023	지부티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 기술
73	아틀라스와 아드라스 직물 생산의 전통 지 식과 기술	2023	타지키스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 기술
74	아클란 피냐 전통 베 틀 직조	2023	필리핀	대표목록	전통 기술
75	다카의 인력거와 인 력거 페인팅	2023	방글라데시	대표목록	전통 기술
76	말훈(Malhun), 대중 적인 시와 음악 예술	2023	모로코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 기술
77	발라반/메이의 장인정 신과 공연예술	2023	아제르바이잔, 터 키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 기술
78	사데/사다 축하 행사	2023	이란, 타지키스 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 기술
79	태국의 송크란, 태국 전통 새해 축제	2023	태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80	마다가스카르 중부고 원의 공연예술인 히 라가시	2023	마다가스카르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81	하리스 요리: 노하우, 기술 및 관행	2023	오만, 사우디아라 비아, 아랍에미리 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 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82	슈왈리드 축제	2023	에티오피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83	로테르담 여름 카니 발	2023	네덜란드(왕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84	매년 열리는 지역 축 제인 몰타 빌리지 페 스타	2023	몰타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85	진주조개 장식의 장 인정신	2023	아제르바이잔, 터 키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과 관습 전통기술
86	카리악과 뿌디 마르 티니크의 전통 목조 조선	2023	그레나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87	수단에서 열린 예언 자 무함마드 생일 축 하 행렬과 기념 행사	2023	수단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88	코트디부아르의 전통 허리띠 짜기 기술	2023	코트디부아르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89	알-무디프 건축의 전 통 공예 기술과 예술	2023	이라크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90	금속(금, 은, 구리)에 대한 조각과 관련된 예술, 기술 및 관행	2023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모리타 니, 모로코, 사우 디아라비아, 팔레 스타인, 수단, 튀 니지, 예멘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91	페루 전통 요리의 표 현인 세비체의 조리 및 소비와 관련된 관 행과 의미	2023	페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92	응우온 바문 공동체 의 통치 의례 및 관 련 표현	2023	카메룬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93	산 바르톨로메 축제 인 추틸로스 (Ch'utillos)와 포토시 문화의 만남인 산 이 그나시오 데 로올라 (San Ignacio de Loyola)	2023	볼리비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의례, 축제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94	마하드라(Mahadra), 전통 지식과 구전 표 현을 전수하는 공동 체 체계	2023	모리타니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95	수제 유리 생산에 대 한 지식, 기술 및 기 술	2023	체코, 핀란드, 프 랑스, 독일, 헝가 리, 스페인	대표목록	전통 기술
96	구자라트의 가르바	2023	인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의례, 축제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97	트랜스휴먼스, 지중해 와 알파스 이동로를 따라 여행하는 계절 별 이동방목	2023	알바니아, 안도 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프랑 스, 그리스, 이탈 리아, 룩셈부르 크, 루마니아, 스 페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의례, 축제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98	고산 목초지 시즌	2023	스위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99	규미리의 대장장이 전통	2023	아르메니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00	조산술: 지식, 기술 및 관행	2023	콜롬비아, 키프로 스, 독일, 키르기 스스탄, 룩셈부르 크, 나이지리아, 슬로베니아, 토고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 습
101	자무 웰니스 문화	2023	인도네시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 습 전통기술
102	라오스 공동체의 나 가 모티브 직조의 전 통 공예	2023	라오 인민 민주 공화국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103	산고 축제, 오요	2023	나이지리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의례, 축제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104	아할-테케 말 사유의 예술과 말 장식의 전 통	2023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105	전통 관개: 지식, 기술 및 조직	2023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왕국), 스위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06	이탈리아의 오페라 노래 연습	2023	이탈리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107	조명 예술: 테집/타지브/자르할코리/테집/나코술릭	2023	아제르바이잔, 이란(이슬람 공화국),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08	폴란드 전통춤 폴로네즈	2023	폴란드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109	이프타르 (에프타리, 이프토르 등)와 그 사회문화적 전통	2023	아제르바이잔, 이란,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110	엘레체크, 키르기스 여성 머리 장식: 전통 지식과 의식	2023	키르기스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11	리투아니아에서 소다이 짚 정원 만들기	2023	리투아니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112	준카누	2023	바하마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13	우즈베키스탄의 도예 예술	2023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14	볼레로: 정체성, 감정, 그리고 시적 노래	2023	쿠바, 멕시코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115	소나, 모래 위의 그림과 기하학적 도형	2023	앙골라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116	다브케, 팔레스타인의 전통 무용	2023	팔레스타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17	레바논의 상징적인 요리 관행인 알-마누세	2023	레바논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18	자비로운 도시 켈에서의 위탁 양육 기반 보호: 지역 사회 케어 모델	2023	벨기에	모범사례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119	카우카과의 성스러운 손진한 어린이들의 반도와 파란다 보호 프로그램: 지혜와 동체 협의회의 시작 과 전수의 핵심	2023	베네수엘라	모범사례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120	아밀라의 문화 및 생 태 바다거북 축제를 위한 ICH 보호 관행 프로그램	2023	파나마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121	스웨덴에 뿌리를 둔 음악 및 악기 제작 전통의 혁신적인 보 Nyckelharpa 네트워크	2023	스웨덴	모범사례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22	전통적인 아흘라트 석조물	2022	튀르키예	긴급보호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과 관습 전통기술
123	참죽의 도자기 제작 기술	2022	베트남	긴급보호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124	퀸차말리와 산타 크 루스 데 쿠카의 도자 기 기술	2022	칠레	긴급보호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과 관습 전통기술
125	우크라이나 보르시 요리 문화	2022	우크라이나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126	주블레타의 기술, 공 예 및 사용 방식	2022	알바니아	긴급보호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27	차(茶) 문화, 정체 성, 화대, 사회적 상호 작용의 상징	2022	아제르바이잔, 터 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 기술
128	리피차 말 번식(사육) 전통	2022	오스트리아, 보스 니아 헤르체고비 나, 크로아티아, 헝가리, 이탈리아, 루마니아, 슬 로바키아, 슬로베 니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129	평양랭면 풍습	2022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130	칼렐라 댄스	2022	잠비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131	이집트 성가족 순례 과 관련된 축제	2022	이집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132	사람들의 희망과 기 도가 담긴 의식무, 후 류오도리	2022	일본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133	펠레반리크 문화: 전 통 조르카나 게임, 스 포츠, 레슬링	2022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34	나스레딘 호자/몰라 네스레딘/몰라 에펜디 /아펜디/아펜디 코자 나시르 일화 전달	2022	아제르바이잔, 카 자흐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 탄, 투르크메니스 탄, 투르키예, 우 즈베키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135	하리사, 지식 기술, 요리 및 사회적 관행	2022	튀니지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136	알 탈리, 아랍에미리 트의 전통 자수 기술	2022	아랍에미리트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과 관습 전통기술
137	알헤다아, 낙타 무리 를 부르는 구전 전통	2022	오만, 사우디아라 비아, 아랍에미리 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138	쿠바의 라이트 럼 장 인의 지식	2022	쿠바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139	8월 15일 (Dekapentavgousto s) 그리스 북부의 두 고지대 지역에서 열 리는 축제: 블라스티 의 트라노스 코로스 와 시라코 축제	2022	그리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140	헝가리 전통 현악단	2022	헝가리	대표목록	공연 예술
141	대한민국의 탈춤	2022	대한민국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42	알-칸자르, 공예 기술 과 사회적 관행	2022	오만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143	피레네 산맥의 곰 축 제	2022	안도라, 프랑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144	요르단의 알만사프, 축제 연회와 그 사회 적·문화적 의미	2022	요르단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145	과테말라의 성주간	2022	과테말라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146	슬로베니아의 양봉, 삼의 방식	2022	슬로베니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47	독일의 현대무용의 실천	2022	독일	대표목록	공연 예술
148	어깨에 자수가 있는 전통 블라우스 알티차 예술.	2022	몰도바 공화국, 루마니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149	카울라니 커피콩 재배와 관련된 지식과 관행	2022	사우디 아라비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50	목재 래프팅	2022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라트비아, 폴란드, 스페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51	우드(Oud) 제작 및 연주	2022	이란, 시리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52	쿤 루보카토르, 캄보디아의 전통 무술	2022	캄보디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153	투르크멘식 바느질 예술	2022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54	얄다/첼라	2022	아프가니스탄, 이란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55	오르테케, 카자흐스탄의 전통 공연 예술: 춤, 인형극, 음악	2022	카자흐스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56	솔리보비차- 전통 매실주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관행 및 지식	2022	세르비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57	바게트 빵의 장인정신과 문화	2022	프랑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58	중국의 전통 차 문화	2022	중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159	시에라 네바다 데 산타 마르타의 네 원주민인 아르후아코, 칸쿠아모, 코기, 위와족의 전통 지식	2022	콜롬비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160	벨로루스의 밀집 짜기, 예술, 공예 및 기술	2022	벨라루스	대표목록	전통 기술
161	양잠 및 직조용 실크의 전통 생산	2022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슬람 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기술
162	성 트리폰 축제와 성 트리폰의 콜로(사슬 춤), 크로아티아 공화국에 거주하는 보카코토르스카(코토르만) 출신 크로아티아인들의 전통	2022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 기술
163	알제리의 인기 민요 라이(Raï)	2022	알제리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 기술
164	대추야자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전통과 관습	2022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모리타니,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수단,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기술
165	전통 공예 보호 전략: 민속 공예 전통의 전달자 프로그램	2022	체코	모범사례	전통 기술
166	토카티, 전통 게임과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	2022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이탈리아	모범사례	사회 관습, 의례, 축제
167	포르투갈 - 갈리시아 국경 무형유산: 폰테나스 온다스가 만든 보호 모델	2022	포르투갈, 스페인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기술
168	알 사두 교육 프로그램: 직조 기술에 대한 교육자 교육	2022	쿠웨이트	모범사례	전통 기술
169	소마 지역에서 확장형 통나무배의 건조와 이용	2021	에스토니아	긴급보호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기술
170	타이스 동티모르의 전통 직조 공예	2021	동티모르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171	전통 타악기인 '음불'과 관련된 문화적 관행 및 표현	2021	말리	긴급보호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72	미크로네시아 연방 캐롤라인 제도의 웨이파인딩과 카누 건조 기술	2021	미크로네시아(연방)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73	콜카타의 두르가 푸사	2021	인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74	불가리아 남서부 돌렌과 사트브차의 소코 다성부 가창	2021	불가리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175	이탈리아의 송로버섯 채취의 전통 지식과 관습	2021	이탈리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176	타리하 대축제	2021	볼리비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77	트부리다	2021	모로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78	송켓	2021	말레이시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179	아와훈(아과루나) 부족의 도자기 관련 가치와 지식, 구전 전통 및 관행	2021	페루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80	두타르의 제작 기술과 전통 음악 공연 예술	2021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81	베트남 타이족의 쏘에 춤 예술	2021	베트남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182	알-쿠두드 알-할라비아	2021	시리아 아랍 공화국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183	노라, 태국 남부의 무용극	2021	태국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84	나무르 죽마 시합	2021	벨기에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185	크리미아 타타르 인의 오르네트 장식과 관련 지식	2021	우크라이나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186	캄푸마이오르의 공동체 축제	2021	포르투갈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87	가물란	2021	인도네시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88	파나마 성체 축일의 춤과 표현	2021	파나마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89	아나, 몰타 전통 민요	2021	몰타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190	세레 요한을 향한 경배 및 헌신과 관련된 축제 주기	2021	베네수엘라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191	카우스티넨 피들 연주와 관련 관행 및 표현	2021	핀란드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적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92	터키 이슬람 예술의 전통 서예, 휘스니 하트	2021	튀르키예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기술
193	북유럽 클링커 보트 전통	2021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적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94	무티아	2021	세이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195	뎀바라 라타 칼라라를 만드는 전통 공예	2021	스리랑카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기술
196	알나우르의 전통 공예 기술과 예술	2021	이라크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197	이누이트 북춤과 노래	2021	덴마크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198	파시요, 노래와 시	2021	에콰도르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199	바크쉬 예술	2021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200	네덜란드의 코르소 문화, 꽃과 과일 퍼레이드	2021	네덜란드(왕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201	매사냥, 살아있는 인 류 유산	2021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네덜란드), 파키스탄,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시리아, 아랍 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02	콩고 롬바	2021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203	아랍어 캘리그래피: 지식, 기술 및 관행	2021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모리타니, 모로코,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수단,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04	팔레스타인의 자수 예술, 관행, 기술, 지식 및 의식	2021	팔레스타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05	팔락	2021	타지키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206	보카 해군 코토르 문화유산, 기억과 문화 정체성의 축제적 표현	2021	몬테네그로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207	마다가스카르 옹변 예술인 카바리 (Kabary)	2021	마다가스카르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208	성체 행렬을 위한 꽃 카펫 전통	2021	폴란드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09	피지리	2021	바레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210	시부 첸, 세네갈의 요 리 예술	2021	세네갈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11	주무 수프	2021	아이티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212	케냐의 전통 음식 홍보 및 전통 식문화 보호 성공 사례	2021	케냐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213	이란의 전통 서예 예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21	이란	모범사례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14	유목민 놀이들, 유산의 재발견과 다양성의 찬예	2021	키르기스스탄	모범사례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15	살아있는 전통 학교 (SLT)	2021	필리핀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16	아보사 무식, 조상의 음악적 소리 지식과 기술	2020	나미비아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17	푸투마요와 나리노 지방의 수지 도료 모전 파모파와 관련된 전통 식과 기술	2020	콜롬비아	긴급보호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18	상이 집트(사이드)의 수제 직조	2020	이집트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19	타이지첸(태극권)	2020	중국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220	로스 카바요스 델 비오(포도주 말)	2020	스페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21	연등회, 대한민국의 전통 축제	2020	대한민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22	즐라쿠사 도예 즐라쿠가 마을의 수독로 도예	2020	세르비아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23	나르바이라미, 전통적 석류 축제와 문화	2020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24	쿠프레스의 풀베기 시합 풍습	2020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25	손가락으로 튕겨서 연주하는 말라위의 침바브웨의 전통 악기의 음비라/산시의 주와 공예 예술	2020	말라위, 짐바브웨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226	블로운 글라스 비즈 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수공예 장식품	2020	체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27	기계식 시계 제작과 예술적 역학	2020	프랑스, 스위스	대표목록	전통 기술
228	케르케나 섬의 차르 피아 낚시	2020	튀니지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 습 전통기술
229	부디마 춤	2020	잠비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 습 전통기술
230	싱가포르의 호커 문 화, 다문화 도시 환경 에서의 공동체 식사 와 식문화	2020	싱가포르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31	성 타데우스 사도 수 도원 순례여행	2020	아르메니아, 이란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 습 전통기술
232	나무 양봉 문화	2020	벨라루스, 폴란드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 습 전통기술
233	낙타 경주, 낙타와 관 련된 사회적 관습과 축제 유산	2020	오만, 아랍에미리 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 습 전통기술
234	알 아플라즈, UAE의 전통관개수로 체계, 구전 전통, 건설, 유 지보수 그리고 공평 한 물의 분배에 관한 지식과 기술	2020	아랍에미리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 습 전통기술
235	일 프리라, 몰타의 납 작한 사워도우 빵 요 리법과 문화	2020	몰타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36	호른 연주자의 음악 예술, 가장 포퓰러 비 브라토, 장소의 공명, 감흥 등과 관련된 기 악 연주법	2020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 르크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237	전통 직조 공예, 알 사두	2020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과 관습 전통기술
238	글라스 비즈 공예	2020	프랑스, 이탈리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 습 전통기술
239	핀란드의 사우나 문 화	2020	핀란드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 습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240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의 전통적인 치능 전략 게임: 토기즈쿠말락/코구즈코르쿨/망갈라(괴취르메)	2020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41	세밀화 예술	2020	아제르바이잔, 이란,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과 관습 전통기술
242	차마메	2020	아르헨티나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43	쿠스쿠스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지식, 노하우 및 관습	2020	알제리, 모리타니, 모로코, 튀니지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44	파라과이 과라니 족의 전통 음료, 포아냐나 문화의 테레레 관습과 전통 지식	2020	파라과이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45	웅천/왕추안/왕강제, 인간과 바다의 속 가능한 관계를 축지위 한 의식과 관습	2020	중국, 말레이시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46	판툰	2020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247	일본 목조 건축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전통 기술, 기법 및 지식	2020	일본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과 관습 전통기술
248	유럽의 성당 작업장(Bauhütten)의 공예 기술과 관습, 노하우, 전수, 지식 개발 및 혁신	2020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모범사례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49	마르티니크 요레, 건설부터 항해 관행까지, 유산 보호 모델	2020	프랑스	모범사례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50	폴리포닉 캐러밴, 에 피루스 폴리포닉 래를 연구, 보호 및 홍보	2020	그리스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251	유라우스키 카라호드의 봄 의식	2019	벨라루스	긴급보호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52	키투 마카이 신사와 관련된 의식 및 관행	2019	케냐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253	세가 탐부르 차고스	2019	모리셔스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254	부클로그, 수바논 부 족의 추수감사 의식 체계	2019	필리핀	긴급보호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55	세페루 민속 춤과 관 련된 관습	2019	보츠와나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256	과그-히르 연극 공연	2019	나이지리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257	그나와	2019	모로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58	호호르에 담아 아이 락을 만드는 전통 기 술과 관련 풍습	2019	몽골	대표목록	전통 기술
259	첼레스티노 대사 기 념행사	2019	이탈리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60	페루 중남부 해안가 에서 연행하는 아타 호 데 네그리토스와 아타호 데 파이타스	2019	페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61	호라즘 댄스, 라즈기	2019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공연 예술
262	브뤼셀의 오메강 (Ommegang), 연례 역사적 행렬과 대중 축제	2019	벨기에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63	전통적인 터키의 활 쓰기	2019	터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64	알 마라의 다마스크 장미와 관련된 공예 와 관습	2019	시리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65	베트남 타이족, 농족, 타이족의 텐 의식	2019	베트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66	누아드 타이, 태국 전 통 마사지	2019	태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67	라파스 시의 산티시 마 트리니다드 델 세 뇨르 헤수스 델 그란 포데르 축제	2019	볼리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68	펜찰 실랏의 전통	2019	인도네시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69	세테스달의 전통 음 악과 춤의 연행 - 음 주 춤, 가창(스테브/ 스테브칭)	2019	노르웨이	대표목록	공연 예술
270	코시브 채색 도자기 의 전통	2019	우크라이나	대표목록	전통 기술
271	멘드리시오의 성주간 행렬	2019	스위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72	아일랜드 하프 연주	2019	아일랜드	대표목록	공연 예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273	푸에블라와 트락스칼라(멕시코), 탈라베라 데라레이나와 엘푸엔테델아르소비스포(스페인)의 장인정신의 탈라베라 도자기 제작 공정	2019	멕시코, 스페인	대표목록	전통 기술
274	겨울 축제, 포덴세 카니발	2019	포르투갈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75	카보베르데의 음악연습 모르나	2019	카보 베르데	대표목록	공연 예술
276	알피니즘	2019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대표목록	전통 기술
277	아르바인 순례자에게 베푸는 서비스와 환대	2019	이라크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278	드로타르스트보, 와이 어 공예와 예술	2019	슬로바키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279	투르크메니스탄의 전통 투르크멘 카펫 제작 예술	2019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기술
280	에티오피아의 주현절	2019	에티오피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의례,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기술
281	두타르 연주와 공예의 전통적 기술	2019	이란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의례,축제 전통기술
282	아크 칼팍 공예, 키르기스의 남성용 모자를 만들고 쓰는 전통 지식과 기술	2019	키르기스스탄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83	'사모아 고급 매트와 그 문화적 가치'	2019	사모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의례,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기술
284	실랏	2019	말레이시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285	비잔틴 성가	2019	키프로스, 그리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의례,축제
286	마라냥의 붐바-메우-보이 문화 복합체	2019	브라질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의례,축제 전통기술
287	아르메니아 문자 예술과 그 문화적 표현	2019	아르메니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의례,축제 전통기술
288	도미니카 바차타의 음악과 춤	2019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289	베네수엘라의 축복받은 아자수 전통 보호를 위한 생물문화 프로그램	2019	베네수엘라	모범사례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290	평화 구축을 위한 전통 공예 보호 전략	2019	콜롬비아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291	알리(코차리, 텐제레), 나히체반의 전통 군무	2018	아제르바이잔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292	투와트와 티디켈트 지역 포가라의 수량인(물 관리자)의 지식과 기술	2018	알제리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93	그림자 놀이	2018	시리아 아랍 공화국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전통기술
294	왓 스베이 안텃의 르콘 콜	2018	캄보디아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295	알 아라고즈, 이집트의 전통 손 인형극	2018	이집트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296	수리 자책(태양 관측), 인근의 지형지를 기준으로 일월성을 시를 관찰하는 전통 관습	2018	파키스탄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297	마사이족 남성의 3단계 통과의례: 엔키패타, 에우노토, 오르게세르	2018	케냐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98	그라스 지방의 향수 관련 기술 - 향초 재배, 천연 원료에 관한 지식과 가공, 조향 기법	2018	프랑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299	탐보라다 드림 연주 의식	2018	스페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00	혈링	2018	아일랜드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301	라이호신, 가면을 쓰고 가정을 한 신의 내방의식	2018	일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302	오즈렌 산의 이바 채집	2018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303	뫼노예, 기쁨의 춤	2018	말라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304	요르단의 아스-사메르	2018	요르단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305	말과 낙타 아르다	2018	오만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306	크라쿠프의 소프카(예수 탄생 장식물) 전통	2018	폴란드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307	블라우드루크/모드로티스크/캐페슈테시/모드로틀라치 유럽의 블록 방염, 남염과 쪽 빛 염색 공예	2018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308	루카다 나트야, 스리랑카의 전통 춤 인형극	2018	스리랑카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09	치다오바, 조지아의 레슬링	2018	조지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10	잠비아 중부주 렌제족의 무바 춤	2018	잠비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311	구슬레 반주로 가창하기	2018	세르비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12	슬로베니아의 보빈 레이스 공예	2018	슬로베니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313	눈사태 위험 관리	2018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314	콩고 문화의 의식과 기쁨의 표현	2018	파나마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315	콘, 태국의 가면 춤극	2018	태국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16	장의약육법- 중국 티베트족의 생명 건강 질병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식과 실천	2018	중국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317	부츨라우스키 페스트 (부츨라우 성모 성화 축제)	2018	벨라루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318	메지무르스카 포프카, 크로아티아 북서부 메지무르예 지역 민요	2018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319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자수 예술인 차칸 (Chakan)	2018	타지키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320	자메이카의 레게 음악	2018	자메이카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321	데데 고르쿠드/ 코르킥 아타/ 데데 코르쿠트의 유산: 서사 문화, 민담, 음악	2018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322	라로메리아(순례): 사포판의 성모상 '라제 바다(운반)'의식	2018	멕시코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23	카자흐스탄 말 사육자들의 전통적인 봄 축제 의례	2018	카자흐스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324	쿠바 중부의라스 팔란다스 축제	2018	쿠바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325	세즈난 여성들의 도예 기술	2018	튀니지	대표목록	전통 기술
326	돈당 사양	2018	말레이시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327	씨름, 대한민국의 전통 레슬링	2018	대한민국, 북한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328	크로노베르크 지역의 스토리텔링 예술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Land-of-Legends 프로그램	2018	스웨덴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329	휘파람 언어	2017	튀르키예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330	신성한 장소를 경배하는 몽골의 전통 관행	2017	몽골리아	긴급보호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331	타스키윈, 서부 하이아틀라스의 무술 춤	2017	모로코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32	알 아지, 찬양과 자부심, 용맹에 관한 시가 공연 예술	2017	아랍에미리트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333	콜롬비아-베네수엘라 일라노 노동요	2017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334	크가틀렝 구의 박가틀라 바 크가펠라 사람들이 연행하는 디코펠로 민속음악	2017	보츠와나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335	피자이올로, 나폴리피자 요리 기술	2017	이탈리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36	아식 놀이, 카자흐의 전통 놀이	2017	카자흐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337	실렛의 전통 예술인 시탈 파티 직조	2017	방글라데시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338	코롱고의 전통적인 '물 판관' 제도	2017	페루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339	알라시타 축제 중 라파스에서의 의식 여정	2017	볼리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40	돌마 제작 및 공유의 전통, 문화 정체성의 표지	2017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341	피니시, 남술라웨시의 범선 조선 기술	2017	인도네시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42	베트남 중부에서 연행되는 바이초이(Bài Chòi) 예술	2017	베트남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343	자울리(Zaouli), 코트디부아르 구로족 공동체의 대중 음악과 춤	2017	코트디부아르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344	로드리게스 섬의 세가 땅부르	2017	모리셔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345	쿰브 멜라	2017	인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346	노래와 춤의 쿠쉬트 탭디 의식	2017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47	베트남 푸토 성의 쓰안 가창	2017	베트남	대표목록	공연 예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348	알 카트 알 아시리, 사우디아라비아 아시르 지방 여성들의 전통적 벽 장식	2017	사우디 아라비아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349	바젤 카니발	2017	스위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의례, 축제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50	일리언 파이프 연주	2017	아일랜드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의례, 축제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51	풍차와 물레방아를 운영하는 밀러의 기술	2017	네덜란드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352	호레흐로니에의 다성 부 가창 음악	2017	슬로바키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의례, 축제 사회관습, 의례, 축제
353	콜로, 전통 민속 춤	2017	세르비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354	핀타오 모자 뜨기의 재료인 탈코, 크리네하, 핀타 섬유 제작 기술과 공예	2017	파나마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355	오르간 제작 기술과 음악	2017	독일	대표목록	공연 예술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356	쿠렌티의 가가호호 방문	2017	슬로베니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357	이스트레모스 점토 인형 공예	2017	포르투갈	대표목록	전통 기술
358	초견, 음악과 스토리텔링이 있는 승마 경기	2017	이란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의례, 축제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359	봄 축제, 흐드렐레즈	2017	마케도니아, 터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360	현악기 카만체(카만차)의 공예와 연주	2017	아제르바이잔, 이란	대표목록	공연 예술 전통기술
361	3월 1일 문화풍습	2017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362	코니츠 목각 공예	201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표목록	전통 기술
363	레벤티코	2017	그리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의례, 축제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364	은시마, 말라위의 전통 요리	2017	말라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및관 습 전통기술
365	콕보루(Kok boru), 전통 승마 경기	2017	키르기스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및관 습 전통기술
366	코차리, 전통 군무	2017	아르메니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367	라오 족의 켄 연주 음악	2017	라오 인민 민주 공화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68	퐁토	2017	쿠바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69	불가리아 치탈리슈테(지역사회 문화 센터): 무형문화유산의 활력을 보호하는 실무 경험	2017	불가리아	모범사례	/
370	마르길란 공예 개발 센터, 아틀라스와 아드라스 전통 기술 보호	2017	우즈베키스탄	모범사례	/
371	짜페이 당 병	2016	캄보디아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372	마디 볼 리라 음악과 춤	2016	우간다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73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의 코자크 노래	2016	우크라이나	긴급보호목록	공연 예술
374	비잘량이스의 흑색 도자기 제작 공정	2016	포르투갈	긴급보호목록	전통 기술
375	24절기, 중국에서 태 양의 연주운동을 관 찰하여 정한 시간에 관한 지식과 풍습	2016	중국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376	발렌시아 파야스 축제	2016	스페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77	아르군구 국제 뉘시 문화 축제	2016	나이지리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및관 습 전통기술
378	알메즈마르, 막대기로 북을 치고 춤을 추다	2016	사우디 아라비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79	치니 전통 공예	2016	튀르키예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380	일본의 장식 수레 축제, 야마, 호코, 야타 이 행사	2016	일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381	벨기에의 맥주 문화	2016	벨기에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및관 습 전통기술
382	세 영역을 관장하는 모신을 섬기는 비엠티 족의 신앙과 풍습	2016	베트남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및관 습
383	제주 해녀 문화	2016	대한민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및관 습
384	그랜빌 카니발	2016	프랑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85	카자흐스탄의 쿠레스	2016	카자흐스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및관 습
386	포헬라 보이샤크에 열리는 '몽골 쇼바자 트라' 축제	2016	방글라데시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387	차레리아, 멕시코의 마상 전통	2016	멕시코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88	키드르 엘리아스의 잔치와 그 서약	2016	이라크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및관 습 전통기술
389	도미니카 공화국의 메렝게 음악과 춤	2016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390	요가	2016	인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및관 습
391	가다 체계, 오로모 족 의 독자적 민주주의 사회 정치 체계	2016	에티오피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및관 습
392	팔로프 문화와 전통	2016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및관 습 전통기술
393	루마니아와 몰도바 공화국의 전통 벽걸 이 카펫 공예	2016	몰도바 공화국, 루마니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394	모리셔스의 민요, 기 트 가와이	2016	모리셔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및관 습
395	플랫 프레드를 만들 어 나누어 먹는 문화: 라바시, 카티르마, 추 프카, 유프카	2016	아제르바이잔, 이 란(이슬람 공화 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 르키에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및관 습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396	모모에리아, 그리스 서마케도니아 주 자니 지역 8개 마을에서 행해지는 축하 행사	2016	그리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397	쿠바의 롬바, 음악과 춤의 흥겨운 결합 그리고 관련된 풍습들	2016	쿠바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398	봉술, 타흐팁	2016	이집트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399	타지키스탄의 전통 음식인 오시와 그 사회적, 문화적 맥락	2016	타지키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00	엘 카야오 카니발, 축제를 통한 기억과 화적 정체성의 재현	2016	베네수엘라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401	협동 조합을 통해 공동 이익을 조직화하려는 구상과 실천	2016	독일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02	브베 와인 생산자 축제	2016	스위스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403	슬로바키아와 체코의 인형극	2016	체코, 슬로바키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04	슈코피아 로카 수난극	2016	슬로베니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05	조지아의 '세 가지 문자 체계'라는 살아있는 문화	2016	조지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06	코프리브시티차의 민속 축제: 유산 발표 및 전승을 위한 관행 시스템	2016	불가리아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407	로빈/로비노의 살아있는 문화를 보호하는 지역 사회 프로젝트: 바타나 생태 박물관	2016	크로아티아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408	오셀바 보트 - 전통적인 보트 제작을 위한 학습 과정을 대적 맥락에 맞게 구성	2016	노르웨이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09	지역 수공예 센터: 전통 수공예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2016	오스트리아	모범사례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
410	코다이 컨셉에 의한 민속 음악 유산 보호	2016	헝가리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411	바송고라, 반야빈디, 바투로 부족의 '쿠게레' 구전 전통	2015	우간다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412	새끼 낙타를 위한 달래기 의식	2015	몽골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413	카우벨 제작 기술	2015	포르투갈	긴급보호목록	전통 기술
414	그레이트 마그달레나 지역의 전통 발레나 토 음악	2015	콜롬비아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15	돌니 폴로크의 남성 이중창, 글라소에치코	2015	북마케도니아	긴급보호목록	공연 예술
416	세 가지 장르의 발리 전통춤	2015	인도네시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417	구라라에 소재한 시디 엘 하지 벨카셈의 연 자위야로 향하는 3레 성지순례, 스프아	2015	알제리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18	라흐치의 구리 공예	2015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419	페르니크 지방의 수로바 민속 축제	2015	불가리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420	즉흥의 예술, 아이티 시/아이티스	2015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421	고로글리의 서사시 예술	2015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422	시다마 부족의 새해 축제, 피체-참바랄라	2015	에티오피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423	콜카 계곡의 위티티 춤	2015	페루	대표목록	공연 예술,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424	김치 담그기 전통	2015	북한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425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전통적 회화 기법, 필레테 포르테노	2015	아르헨티나	대표목록	전통 기술
426	피레네 산맥의 하지 불 축제	2015	안도라, 프랑스, 스페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427	백파이프 문화	2015	슬로바키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전통기술
428	문화사회적 공간, 마 즐리스	2015	오만, 카타르, 사 우디아라비아, 아 랍에미리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429	전통 공연 예술, 알- 라즈파	2015	오만, 아랍에미리 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430	줄다리기	2015	캄보디아, 필리 핀, 대한민국, 베 트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431	오시투티 쇼마공고, 마물라 과일 축제	2015	나미비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432	루마니아의 청년의 춤	2015	루마니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433	쿠라과 재배 및 가공 과 관련된 전통 지식 및 기술	2015	베네수엘라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전통기술
434	콜롬비아 남태평양 지역과 에콰도르 에 스메랄다스 주의 마 림바 음악, 전통 찬트 와 춤	2015	콜롬비아, 에콰도 르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435	티노스 섬의 대리석 공예	2015	그리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436	빈 슈파니셰 호프라 이츨레의 고전 승마 술과 고등 마술	2015	오스트리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437	사우디아라비아의 춤, 북 연주, 시, 알라르 다 알나츠디아	2015	사우디 아라비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38	서부 케냐 이수하 및 이다호 공동체의 이 수쿠티 춤	2014	케냐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전통기술
439	우간다 중북구 랑고 의 남자아이 씻김 의 식	2014	우간다	긴급보호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40	마포요 구전전통 및 조상의 영토 내 상징 적 준거	2014	베네수엘라(볼리 바르 공화국)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 습
441	푸야이와 아야리치, 암파라 문화의 음악 과 춤	2014	볼리비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442	에브루, 터키의 마블링 예술	2014	터키	대표목록	전통 기술
443	알제리의 자네트 오아시스에서 연행되는 스베이바 의례와 의식	2014	알제리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44	여성용 실크 머리 스타일 카프, 케라가이 등의 제작 및 착용에 관한 전통 공예와 상징	2014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전통 기술
445	농악	2014	대한민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공연 예술
446	파텔레리아 지역 사회의 '비테 아드 알베렐로'(머리 훈련된 덩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전통 농업 관행	2014	이탈리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47	인도 편자브 지방 잔디알라 구루의 타테라 공동체에서 전승되는 전통 유기 공예	2014	인도	대표목록	전통 기술
448	카포에이라 서클	2014	브라질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49	조선 민요 아리랑	2014	북한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450	버로마 지역의 연기 사우나 전통	2014	에스토니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51	아르간, 아르간나무에 대한 풍습 및 기술	2014	모로코	대표목록	전통 기술
452	푸노의 칸델라리아 성모 축제	2014	페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53	몽골족의 사가이 쏘아 맞추기	2014	몽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54	치프로브치의 카펫 직조전통	2014	불가리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455	재치의 예술, 아스키야	2014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456	라바시, 아르메니아 문화 표현인 전통 빵 만들기와의 의미 및 모양	2014	아르메니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식, 축제
457	바일레 치노	2014	칠레	대표목록	공연 예술
458	왕실 북의 의식 춤	2014	부룬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식, 축제
459	즈미야네 자수	201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표목록	전통 기술
460	그르카: 과들루프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음악, 노래, 춤, 그리고 문화적 행위	2014	프랑스	대표목록	공연 예술
461	히오스 섬의 매스틱 재배법	2014	그리스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462	코파치카다, 피아네츠 지역 드람체 마을의 민속춤	2014	마케도니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63	카자흐족의 전통 예술, 돔브라 쿠이	2014	카자흐스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464	키르기스과 카자흐스탄 유르트(투르크족의 이동식 주거) 제작에 대한 전통 지식과 기술	2014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대표목록	전통 기술
465	초파(Tchopa), 말라위 남부 롬웨족의 제례무	2014	말라위	대표목록	공연 예술
466	알-자잘, 낭송되거나 노래되는 시	2014	레바논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467	와시, 일본 전통 수공예 체지술	2014	일본	대표목록	전통 기술
468	전통 모리셔스 세가	2014	모리셔스	대표목록	공연 예술
469	마르칼라에서 연행되는 '탈과 꼭두각시의 등장'	2014	말리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70	칸트 알렌테자누, 포르투갈 남부 알렌테주의 폴리포니 가창	2014	포르투갈	대표목록	공연 예술
471	응에-똌의 비와 잠민요	2014	베트남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472	니제르의 농담 관계의 풍습 및 표현	2014	니제르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73	슬라바, 가족 성인 수호성인의 날을 기념하는 날	2014	세르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74	오만 술탄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의 전통 공연예술, 알 아이알라	2014	오만, 아랍에미리트	대표목록	공연 예술
475	카리용 문화 보호: 보존, 전수, 교환 및 인식 제고	2014	벨기에	모범사례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476	팍 의식	2013	과테말라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477	몽골의 서예	2013	몽골	긴급보호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78	우간다 서부 바토로, 바도로, 바투구, 바타웬다, 바냐빈디 부족의 엠파코 전통	2013	우간다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479	초브칸, 가라바흐 지방의 전통 승마 경기	2013	아제르바이잔	긴급보호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80	케스와차카 다리의 연례 보수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그리고 의식	2013	페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481	파라 주 벨렝 시의 '시리우 지 나자레' 축제(나자레 성모의 햇불 축제)	2013	브라질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82	터키식 커피 문화와 전통	2013	터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483	시디 압델 카데르 벤 모하메드(시디 셰이크)의 영묘로 향하는 연례 순례	2013	알제리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84	오스트되인케르케의 송마 새우잡이	2013	벨기에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85	거대한 구조물을 어깨에 매고 행진하는 카톨릭 기념 축제	2013	이탈리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86	베트남 남부 지방의 던 까 타이 트 음악과 가장 예술	2013	베트남	대표목록	공연 예술
487	슈티프의 40인 성지 순교자 축일	2013	마케도니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88	산키르타나, 마니푸르의 의식 용 가무 및 북 연주	2013	인도	대표목록	공연 예술
489	중국 수판셈, 수판을 이용한 산술 지식 및 관습	2013	중국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490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 발견 기념 축제	2013	에티오피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91	남성 그룹 콜린다트, 크리스마스 풍습	2013	몰도바 공화국, 루마니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92	와쇼쿠, 특히 신년 축하를 위한 일본의 전통 식문화	2013	일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93	고대 조지아의 전통 크베브리 와인 양조법	2013	조지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94	몽골 게르의 전통 공예와 관련 관습	2013	몽골	대표목록	전통 기술
495	키르기스 서사시 3부작: 마나스, 세메테이, 세이테크	2013	키르기스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496	테르초바의 음악	2013	슬로바키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497	세네갈 세레르족의 점술 의식인 Xoooy	2013	세네갈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498	잠다니 직조의 전통 예술	2013	방글라데시	대표목록	전통 기술
499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2013	대한민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00	지중해식 식문화	2013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그리스, 이탈리아, 모로코, 포르투갈, 스페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01	7년마다 열리는 리무쟁의 성유물 전시 축제	2013	프랑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02	투아레그 족의 임자드에 관한 관습 및 지식- 알제리, 말리, 니제르	2013	알제리, 말리, 니제르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03	우크라이나 장식 민속 예술, 페트리키우 스키 로츠피스	2013	우크라이나	대표목록	전통 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504	과레나스와 과티레의 라 파란다 데 산 페드로(산 페드로 대축일 축제)	2013	베네수엘라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05	생물권 보호구역 내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방법론: 몬트세니의 경험	2013	스페인	모범사례	/
506	노케, 파누아 인들이 매듭치거나 치조한 다기등 수공예 가방	2012	인도네시아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기술
507	키르기스인의 전통 펠트 카펫 알라키이즈와 쉬르닥	2012	키르기스스탄	긴급보호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기술
508	비팔라, 우간다 부소가 왕국의 박나팔 음악과 춤	2012	우간다	긴급보호목록	공연 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509	보츠와나 크가틀렝구의 토기 제작 기술	2012	보츠와나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기술
510	나치의 덴가쿠, 나치의 불 축제에서 연행하는 종교적 공연 예술	2012	일본	대표목록	공연 예술
511	아리랑, 대한민국의 서정민요	2012	대한민국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512	카산에서 연행되는 마사데 아르데할의 칼리수안 의식	2012	이란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13	프레부, 헤시피 카니발의 공연 예술	2012	브라질	대표목록	공연 예술
514	호레주의 도예 기술	2012	루마니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515	이차페케네 피에스타, 산 이그나시오 데 목소스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	2012	볼리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16	머초 민속 예술, 전통 마을의 자수	2012	헝가리	대표목록	전통 기술
517	베네수엘라 성체축일의 춤추는 악마들	2012	베네수엘라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18	키브도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제	2012	콜롬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19	세프루의 체리 축제	2012	모로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20	메시르 마주누 축제	2012	터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21	틀렘센의 결혼 예복 전통과 관련된 의례와 공예 기술	2012	알제리	대표목록	전통 기술
522	앙트르 상브르 에 뫼즈의 행진	2012	벨기에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523	아제르바이잔의 목이 긴 전통 현악기 '타르'의 공예술 및 공연 예술	2012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공연 예술/ 전통 기술
524	페스트 노즈, 부르타뉴의 전통춤, 집단 연행을 바탕으로 한 축제모임	2012	프랑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25	크레모나의 전통 바이올린 제작 기술	2012	이탈리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526	세멘을라우펜, 오스트리아 임슈트의 카니발	2012	오스트리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27	에콰도르 토키야 밀짚모자의 전통 공예	2012	에콰도르	대표목록	전통 기술
528	푸토 성의 홍 왕조 송배 의식	2012	베트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29	아르메니아 서사시 <샤스나 트레르> 또는 <사순치 다비트>의 구송 연행	2012	아르메니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530	알 - 타 그 루 다 (Al-Taghrooda),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에 거주하는 베두인족의 전통 시가 낭송	2012	오만, 아랍에미리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531	크로아티아 남부 달마티아의 클라파 다성부 노래	2012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532	라다크의 독송 의식: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을 경유하는 라다크 트 지역, 참부와 카슈미르의 신성한 불경 독송	2012	인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533	코르도바의 파티오 축제	2012	스페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34	알 아지 문화 - 애가, 행진, 시	2012	오만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535	북건 인형극 배우들의 차세대를 위한 훈련 전략	2012	중국	모범사례	/
536	크락스크가크겏 막그 각스틀라와나 :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 토트나카족의 원주민 예술센터	2012	멕시코	모범사례	/
537	사만 춤	2011	인도네시아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538	알 사두 아랍에미리트의 전통 직조 기술	2011	아랍에미리트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539	말리의 지혜의 의례, 코레두가우의 비밀 결사	2011	말리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540	양과, 사회와 우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이 나웨네-나웨 족의 의식	2011	브라질	긴급보호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541	무어 서사시 테이딘	2011	모리타니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전통기술
542	허쩌 족의 이마칸 강창예술	2011	중국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543	에수바, 페루의 우아치파이레족이 아라콤부트어로 부르는 기도의 노래	2011	페루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544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렌즈 보트를 건조하고 항해하는 전통 기술	2011	이란(이슬람 화국)	공급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기술
545	나칼리, 이란의 극적인 스토리텔링	2011	이란(이슬람 화국)	공급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전통기술
546	림베의 민속 장가 연주 기예-순환호흡법	2011	몽골	긴급보호목록	공연 예술
547	크로아티아 동부의 베차라츠 가창과 연주	2011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548	니에모 콜로, 달마티아 내륙지역 무반주 원무	2011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549	케슈케크, 터키의 전통 의식 요리	2011	터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50	뢰번의 동강내기 모임 모임 흥습	2011	벨기에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51	미부의 하나타우에, 히로시마 현 미부의 모내기 의식	2011	일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52	사다 신노, 일본 시마네현 사다 신사의 신성한 춤	2011	일본	대표목록	공연 예술
553	중국의 그림자극 피잉시의 기예	2011	중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554	프랑스 전통 승마술	2011	프랑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55	줄타기	2011	대한민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556	택견, 대한민국의 전통무술	2011	대한민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557	한산의 모시짜기	2011	대한민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558	치아티스타 시 음송 대결	2011	키프로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559	파두(Fado), 포르투갈의 도시 대중가요	2011	포르투갈	대표목록	공연 예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560	체코 공화국 남동부 지방의 '황들의 기마행렬'	2011	체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61	코이요리티의 주님 성소 순례	2011	페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62	유루파리 재규어 사면의 전통 지식	2011	콜롬비아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563	마리아치, 현악기, 노래, 트럼펫	2011	멕시코	대표목록	공연 예술
564	알헤메시의 '마레 데 데우 데 라 살루트(건강의 성모 마리아) 축제	2011	스페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65	탄차즈 방식: 무형문화유산 전수를 위한 헝가리 모델	2011	헝가리	모범사례	-
566	판당고의 살아있는 박물관	2011	브라질	모범사례	-
567	무형유산 국가프로그램 프로젝트 모집	2011	브라질	모범사례	-
568	안달루시아 세비야주 모론 데 라 프론테라의 전통적 석회 제조 기술의 재활성화	2011	스페인	모범사례	-
569	'놀이다양성' 진흥 프로그램 : 플랑드르 지역의 전통 놀이 보호	2011	벨기에	모범사례	-
570	메시레푸	2010	중국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571	오이칸예 가창	2010	크로아티아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572	중국 정크선의 수밀 방벽 기술	2010	중국	긴급보호목록	전통 기술
573	중국의 목활자 인쇄술	2010	중국	긴급보호목록	전통 기술
574	차우 댄스	2010	인도	대표목록	공연 예술
575	라자스탄의 칼벨리아족의 민속 가무	2010	인도	대표목록	공연 예술
576	무 디 예 투 (Mudiyettu), 케랄라의 의식극과 무용극	2010	인도	대표목록	공연 예술
577	북부 크로아티아의 생강 쿠키 제빵 기술	2010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578	신스카 알카, 신 기사들의 마상 시합	2010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79	마요르카의 시빌 생가	2010	스페인	대표목록	공연 예술
580	플라멩코	2010	스페인	대표목록	공연 예술
581	인간 탑 쌓기	2010	스페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82	알바르아, 오만 도파트 계곡의 음악과 춤	2010	오만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83	제레극 예술 타지예	2010	이란	대표목록	공연 예술
584	팔레바니와 주르카네이 의식	2010	이란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585	호라산 지역의 바크쉬 음악	2010	이란	대표목록	공연 예술
586	파르스의 전통 카펫 직조 기술	2010	이란	대표목록	전통 기술
587	카산의 전통 카펫 직조 기술	2010	이란	대표목록	전통 기술
588	세마흐 알레비-벡타 시 의례	2010	터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89	전통적인 소흐베트 모임	2010	터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90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	2010	터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91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전통적인 아제르바이잔 카펫 직조 기술	2010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전통 기술
592	우아코나다, 미토지역의 의식 춤,	2010	페루	대표목록	공연 예술
593	가위춤	2010	페루	대표목록	공연 예술
594	에히터나흐의 호핑댄스 행렬	2010	룩셈부르크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95	인도네시아 앙클롱	2010	인도네시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전통 기술
596	몽골 전통축제 나담(Naadam)	2010	몽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97	몽골의 전통 예술 후미	2010	몽골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598	흘리네츠코 지역의 마들의 슈로브타이드 방문 행렬과 가면	2010	체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599	피레쿠아, 푸레페차족의 전통 노래	2010	멕시코	대표목록	공연 예술
600	파라치코스, 치아파데 코르소의 전통 1월 대축제	2010	멕시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01	멕시코 전통 요리-조상 전래의 지속적 공동체 문화, 미초아칸 패러다임	2010	멕시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02	크라켈링언과 토네켈스브란트, 헤라르츠베르헌에서 개최되는 겨울의 끝을 축하하는 빵과 불의 축제	2010	벨기에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03	하우텔 야르마크트, 신트 리번스 하우스의 연례 겨울 가죽 시장	2010	벨기에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04	쿠미오도리, 오키나와 전통 음악극	2010	일본	대표목록	공연 예술
605	유키 쓰무기, 견직물 직조 기술	2010	일본	대표목록	전통 기술
606	경극	2010	중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607	중국의 전통 의술인 침구술	2010	중국	대표목록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608	수타르티네, 리투아니아의 다성부 노래	2010	리투아니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609	아르메니아 석비인 하치카르의 십자가 예술, 상징, 공예 기술	2010	아르메니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610	푸트치푸우이(팔라브레로)에 의해 적용되는 와유족의 규범체계	2010	콜롬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11	프랑스의 미식 문화	2010	프랑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12	알랑공의 자수 레이스 공예술	2010	프랑스	대표목록	전통 기술
613	콩파노나주 : 지식과 정체성을 작업장에서 전수하는 장인 직업 훈련 네트워크	2010	프랑스	대표목록	전통 기술
614	푸동 사원과 속 사원의 종 축제	2010	베트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15	가곡,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	2010	대한민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616	대목장 대한민국의 전통 목조 건축	2010	대한민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617	산케 문, 산케족의 집단 어업 의례	2009	말리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618	칼리아디 차르의 의례(크리스마스 차르)	2009	벨라루스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 기술
619	까 쭈 가창	2009	베트남	긴급보호목록	공연 예술
620	몽골 툴리, 몽골 서사시	2009	몽골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 기술
621	비엘게, 몽골의 전통 민속 춤	2009	몽골	긴급보호목록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전통 기술
622	추르의 전통 음악	2009	몽골	긴급보호목록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23	미지켄다의 신성한 숲에 있는 카야족과 관련된 전통과 관습	2009	케냐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기술
624	수이티 문화 공간	2009	라트비아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기술
625	르 칸투 인 파지엘라, 코르시카의 세속 및 종교적 구송 전통	2009	프랑스	긴급보호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626	세토 펠로, 세토 민족의 폴리초니 가창 전통	2009	에스토니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627	네스키나르스트보, 과거에서 온 메시지: 가리 마을의 성 콘스탄틴과 헬레나 축일을 기념하는 하나기르 의식	2009	불가리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28	동주다그	2009	중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629	에스파냐 지중해 연안의 관계 수로법정: 무르시아 평야의 장로 평의회 및 발레시아 평야의 수자원 재산	2009	스페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30	카나리아 제도라 고메라 섬의 휘파람 연주, 실보 고메로	2009	스페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631	7년마다 거행하는 캄보디아 가바 성소 '카마 블로'의 지붕 개수 의식	2009	말리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32	도이너	2009	루마니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633	말로야	2009	프랑스	대표목록	공연 예술
634	시안 구유에	2009	중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635	모하치의 부소 축제: 봄맞이 가면 카니발 풍습	2009	헝가리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36	브뤼허의 '성혈의 행렬'	2009	벨기에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37	흑과 백 카니발	2009	콜롬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38	인도네시아 바틱	2009	인도네시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639	톨리만의 오토미-치치메카족의 기념장소 및 살아있는 전통: 신성한따오이 파수꾼 페냐 데 베르날'	2009	멕시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40	볼라도레 제례의식	2009	멕시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41	아시으클르크, 터키 읍유시인의 예술 전통	2009	터키	대표목록	공연 예술
642	카라괴즈	2009	터키	대표목록	공연 예술
643	칸돔베와 그 사회문화적 공간: 공동체 연행	2009	우루과이	대표목록	공연 예술
644	관호박닌(Quan Họ Bắc Ninh) 민요	2009	베트남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645	남사당놀이	2009	대한민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646	영산재	2009	대한민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47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2009	대한민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48	강강술래	2009	대한민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49	처용무	2009	대한민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공연 예술 전통 기술
650	이젤레 가면극	2009	나이지리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651	중국의 양잠과 비단 직조 공예	2009	중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652	난인	2009	중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653	난징 원진 문직 비단 직조 기술	2009	중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654	셴지 전통 제지술	2009	중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655	유예주	2009	중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656	거씨얼 서사시 전통	2009	중국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657	룽취안 청자의 전통 소성 기술	2009	중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658	레공 예술	2009	중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659	티베트 가극	2009	중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660	마나스	2009	중국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661	몽골족의 가창 예술, 후미	2009	중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662	화얼	2009	중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663	중국 조선족의 농악 무	2009	중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64	중국 서예	2009	중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665	중국 도장 전각 공예	2009	중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666	중국 지엔지 공예	2009	중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667	중국 전통 목가구조 건축 기술	2009	중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668	용선 축제	2009	중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69	마주 신앙과 풍습	2009	중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70	중국의 목판 인쇄술	2009	중국	대표목록	전통 기술
671	이스트라 음계를 이용한 이중창 및 이중 주	2009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672	두브로브니크의 수호 성인 성 블라이세 축제	2009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73	흐르바츠코 자고레 지방의 아동용 목재 장난감 제작 기술 전통	2009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674	고라니 지방 켈레(크랄리체, 여왕)의 봄 행렬	2009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75	흐바르 섬의 자 크리젠(십자가를 따라서) 행렬	2009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76	카스타브 지방 종지기들의 연례 카니발 가장 행렬	2009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77	크로아티아의 레이스 공예	2009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678	오뷔송 태피스트리	2009	프랑스	대표목록	전통 기술
679	프랑스 목가구조의 스크라이빙 전통	2009	프랑스	대표목록	전통 기술
680	아제르바이잔의 아시르크 예술	2009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공연 예술
681	레프카리티카, 레프카라의 레이스 공예	2009	키프로스	대표목록	전통 기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682	탱고	2009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83	포파얀의 부활절 행렬	2009	콜롬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84	가가쿠	2009	일본	대표목록	공연 예술
685	오지야 지지미와 에치고조후: 일본 니가타현 우오누마 지방의 모시 직조 기술	2009	일본	대표목록	전통 기술
686	오쿠노토와 아에노코토	2009	일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87	하야치네 카구라	2009	일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공연 예술
688	아키우의 다우에 오도리	2009	일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89	다이니치도 부가쿠	2009	일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90	다이모쿠타테	2009	일본	대표목록	공연 예술
691	아이누족의 전통춤	2009	일본	대표목록	공연 예술
692	이란의 음악, 라디프	2009	이란	대표목록	공연 예술
693	람만, 인도 가르왈 히말라야의 종교 축제 및 체레극	2009	인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694	카타 아술라	2009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공연 예술
695	맨든 헌장, 단편 푸가에서 선포	2009	말리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696	인도네시아 페칼롱간의 바틱 박물관과 공동 수행하는 초·중·고등학교, 직업학교, 기술전문학교 학생들에게 대한 바틱 무형문화유산 교육 및 훈련	2009	인도네시아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관습, 의례, 축제 전통기술
697	볼리비아, 칠레, 페루의 아이마라 공동체 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2009	볼리비아, 칠레, 페루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기술
698	전통 문화 센터 - 푸솔 교육 프로젝트 학교 박물관	2009	스페인	모범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기술
699	젤레데의 구전 유산	2008	베냉, 나이지리아, 토고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700	오루로 카니발	2008	볼리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01	쿵취	2008	중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702	아푼카하의 그보페, 타그바나 공동체의 가로 트럼펫 음악	2008	코트디부아르	대표목록	공연 예술
703	비아 메야 지역의 '성령형제단의 콩고스' 문화 공간	2008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04	사파라족의 구전 유산과 문화적 표현	2008	에콰도르, 페루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705	조지아인의 폴리포니가창	2008	조지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06	소쓰발라의 문화 공간	2008	기니	대표목록	공연 예술
707	쿠티야탐, 산스크리트어 연극	2008	인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08	오페라 데이 푸피 (Opera dei Pupi), 시칠리아 인형극장	2008	이탈리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09	노가쿠 극	2008	일본	대표목록	공연 예술
710	십자가 공예와 그 상징성	2008	리투아니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711	제마엘프나 광장 문화공간	2008	모로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12	이푸가오족의 후드후드 노래	2008	필리핀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713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2008	대한민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14	세메이스키의 문화공간과 구전 문화	2008	러시아 연방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715	엘체의 신비극	2008	스페인	대표목록	공연 예술
716	보이순 지역의 문화공간	2008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17	가리푸나족의 언어, 춤, 음악	2008	벨리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718	무감, 아레즈바이잔의 민속 음악	2008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공연 예술
719	뱅슈 카니발	2008	벨기에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20	대중 이야기꾼 메다흐의 기예	2008	터키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721	키누 문화 공간	2008	에스토니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22	칼라와야족의 안데스 세계관	2008	볼리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23	와장피 족의 구어 및 회화 표현	2008	브라질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724	바랑키야 카니발	2008	콜롬비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25	라 톱바 프란체사	2008	쿠바	대표목록	공연 예술
726	무어 타운의 마룬 유산	2008	자메이카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27	원주민 축제, 망자의 날	2008	멕시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28	캄보디아 왕실 춤극	2008	캄보디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29	구친과 그 음악	2008	중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730	베다 (찬송의) 전통	2008	인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731	와양 인형극	2008	인도네시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32	닌교 조루리 분라쿠 인형극	2008	일본	대표목록	공연 예술
733	아킨스의 예술, 키르기스 서사시 음송 시인	2008	키르기스스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734	모린후르의 전통 음악	2008	몽골	대표목록	공연 예술
735	판소리	2008	대한민국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736	라카라카, 통가의 춤과 이야기 노래	2008	통가	대표목록	공연 예술
737	바누아투 모래 그림	2008	바누아투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38	나낙(베트남 궁중음악)	2008	베트남	대표목록	공연 예술
739	베두인 족의 서사시 '알 힐랄리아'	2008	이집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740	이라크 마قام	2008	이라크	대표목록	공연 예술
741	사나의 노래	2008	예멘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742	자피마니리족의 목공예 지식	2008	마다가스카르	대표목록	전통 기술
743	중앙 아프리카 아카피그미족의 폴피포니가창	2008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744	발트 지역 국가들의 '노래와 춤의 축전'	2008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공연 예술
745	샤쉬마콤 음악	2008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46	두둑과 그 음악	2008	아르메니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47	비스트리차 바비, 쇼플루크 지역의 고대 폴피포니, 춤과 의식	2008	불가리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48	푸자라와 그 음악	2008	슬로바키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49	메블레빌리크 세마 의식	2008	터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50	컬루슈 의식	2008	루마니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51	바이아 로콘카보의 삼바 데 로다	2008	브라질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52	팔렌케 데 산 바실리오의 문화공간	2008	콜롬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53	코스타리카의 목동과 소달구지 전통	2008	코스타리카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식, 축제
754	코코로 춤극 전통	2008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755	바울의 노래	2008	방글라데시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756	스벵 톰, 크메르 그림자극	2008	캄보디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57	신장의 위구르족의 무카무	2008	중국	대표목록	공연 예술
758	람릴라, 라마야나의 전통연극	2008	인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 예술
759	엘 퀘렌세	2008	니카라과	대표목록	공연 예술
760	인도네시아 크리스 공예 기술	2008	인도네시아	대표목록	전통 기술
761	강릉 단오제	2008	대한민국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62	빔부자 치유 춤	2008	말라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63	라나오 호수 인근에 살고 있는 마라나오족의 서사시, 다랑겐	2008	필리핀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 예술
764	우르틴 두, 전통 민요창가	2008	중국, 몽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전통
765	공 문화의 공간	2008	베트남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66	고라라의 아헬릴	2008	알제리	대표목록	공연 예술
767	페트라와 와디 룬의 베두족 문화 공간	2008	요르단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연번	종목 명칭	등재연도	국가	종목유형	범주(분야)
768	팔레스타인 히카예	2008	팔레스타인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769	야랄과 데갈의 문화 공간	2008	말리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70	초피 팀빌라	2008	모잠비크	대표목록	공연 예술
771	우간다의 나무껍질 천 만들기	2008	우간다	대표목록	전통 기술
772	마키시 가면무도회	2008	잠비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73	구레 완쿨루	2008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74	칸쿠랑, 만딩 지방의 입문 의식	2008	감비아, 세네갈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75	라비날 아치 춤극	2008	과테말라	대표목록	공연 예술
776	올로호, 야쿠트 민족의 영웅 서사시	2008	러시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777	이파 점술	2008	나이지리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78	슬로바츠키 베르분크, 모병 댄스	2008	체코	대표목록	공연 예술
779	벨기에 및 프랑스 축제 퍼레이드에 쓰는 거인상- 거인과 용	2008	벨기에, 프랑스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80	알바니아 민속 아이소 폴리포니	2008	알바니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81	파툼 데 베르가, 베르가의 성체축일 축제	2008	스페인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82	드라메체의 북 연주 를 동반한 탈춤	2008	부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83	가부키 극	2008	일본	대표목록	공연 예술
784	칸투 아 테노레, 사르디니아의 목가	2008	이탈리아	대표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785	타킬레와 타킬레의 직물 공예	2008	페루	대표목록	전통 기술
786	막용, 말레이시아의 전통 고전극	2008	말레이시아	대표목록	공연 예술
787	탄탄의 무섬	2008	모로코	대표목록	사회 관습, 의례, 축제
788	음벤데 예루사레마 댄스	2008	짐바브웨	대표목록	공연 예술

## 8.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전통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 종목 현황<sup>69)</sup>

종 목	등재연도	국가	목록유형	SDG 목표
<b>놀 이 (14)</b>				
펠레반리크 문화: 전통 조르카나 게임, 스포츠, 레슬링	2022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3,4
토카티, 전통 게임과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	2022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이탈리아	모범사례	3,4,16,17
나무르 죽마 시합	2021	벨기에	대표목록	4,5,16
유목민 놀이들, 유산의 재발견과 다양성의 찬예	2021	키르기스스탄	모범사례	3,4,16,17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의 전통적인 지능 전략 게임: 토기즈쿠말락/코구즈 코르굴/망갈라(괴취르메)	2020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에	대표목록	4,16,17
헐링	2018	아일랜드	대표목록	3,5,16
씨름, 대한민국의 전통 레슬링	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표목록	3,4,16,17
초건, 음악과 스토리텔링이 있는 승마 경기	2017	이란	대표목록	3,15,16
콧보루(Kok boru), 전통 승마 경기	2017	키르기스스탄	대표목록	3,15,16
아식 놀이, 카자흐의 전통 놀이	2017	카자흐스탄	대표목록	4,12,10
줄다리기	2015	캄보디아, 필리핀, 대한민국, 베트남	대표목록	2,16,17
몽골족의 샤가이 쏘아 맞추기	2014	몽골	대표목록	4,8,16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전통 카라바흐 승마 게임인 초브칸	2013	아제르바이잔	긴급보호	3,15,16
‘놀이다양성’ 진흥 프로그램 : 플랑드르 지역의 전통 놀이 보호	2011	벨기에	모범사례	3,16
<b>축 제 (99)</b>				
미얀마 전통 새해 아타 텅안 축제	2024	미얀마	대표목록	2,3,4,5,16
창춘절	2024	중국	대표목록	2,4,5,8,11,15,16
메흐레간의 의식	2024	이란, 타지키스탄	대표목록	2,4,5,8,11,16,17

69) 이 표는 전통적 놀이를 포함한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 종목을 모두 정리한 자료이다.’

종 목	등재연도	국가	목록유형	SDG 목표
셰익스피어 마스크, 카리아쿠의 연례 카니발의 전통적 구성 요소	2024	그레나다	대표목록	4,16
춘절	2024	중국	대표목록	2,4,5,8,16
메소스포리티사 축제(중간 파종기의 성모 마리아 축제), 고대 유적지의 성모 축일	2024	그리스	대표목록	11,12,16
삼산(Sam Mountain)의 바 추아 쉬 여신 축제	2024	베트남	대표목록	4,5,12,16
나우루즈, 노브루즈, 노우루즈, 노우루즈, 나우루즈, 나우루즈, 누르즈, 노우루즈, 나브루즈, 네브루즈, 노우루즈, 나브루즈	2024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1,5,8,16,17
수단에서 열린 예언자 무함마드 생일 축하 행렬과 기념 행사	2023	수단	대표목록	16
로테르담 여름 카니발	2023	네덜란드	대표목록	16
준카누	2023	바하마	대표목록	4,5,12,16
산고 축제, 오요	2023	나이지리아	대표목록	16
사데/사다 축하 행사	2023	이란, 타지키스탄	대표목록	2,16,17
슈왈리드 축제	2023	에티오피아	대표목록	16
매년 열리는 지역 축제인 몰타 빌리지 페스타	2023	몰타	대표목록	5,16
태국의 송크란, 태국 전통 새해 축제	2023	태국	대표목록	16
성 트리폰 축제와 성 트리폰의 콜로(사슬 춤), 크로아티아 공화국에 거주하는 보카 코토르스카(코토르 만) 출신 크로아티아인들의 전통	2022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4,16
이집트 성가족 순례과 관련된 축제	2022	이집트	대표목록	5,10,16
나스레딘 일화 전승 전통 축제	2022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대표목록	3,4,10,17
피레네 산맥의 곰 축제	2022	안도라, 프랑스, 스페인	대표목록	5,16,17
요르단의 알만사프, 축제 연회와 그 사회적·문화적 의미	2022	요르단	대표목록	2, 16

종 목	등재연도	국가	목록유형	SDG 목표
8월 15일(Dekapentavgoustos) 그리스 북부의 두 고지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블라스티의 트라노스 코로스와 시라코 축제	2022	그리스	대표목록	16
과테말라의 성주간	2022	과테말라	대표목록	4,10,16
보카 해군 코토르 문화유산, 기억과 문화 정체성의 축제적 표현	2021	몬테네그로	대표목록	4,16
파나마 성체 축일의 춤과 표현	2021	파나마	대표목록	4,16
타리하 대축제	2021	볼리비아	대표목록	2,3,4,12,16
세레 요한을 향한 경배 및 헌신과 관련된 축제 주기	2021	베네수엘라	대표목록	3,4,16
캄푸마이오르의 공동체 축제	2021	포르투갈	대표목록	4,11,16
콜카타의 두르가 푸자	2021	인도	대표목록	3,8,16
연등회, 대한민국의 등 축제	2020	대한민국	대표목록	3,4,11,16
나르바이라미, 전통적 석류 축제와 문화	2020	아제르바이잔	대표목록	2,8,11,15,16
로스 카바요스 델 비오(포도주 말)	2020	스페인	대표목록	5,7,8,11,15,16
라파스 시의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델 세뇨르 헤수스 델 그란포데르 축제	2019	볼리비아	대표목록	5,8,16
첼레스티노 대사 기념행사	2019	이탈리아	대표목록	1,5,11,16
마라냥의 붐바-메우-보이 문화 복합체	2019	브라질	대표목록	4,5,11,16
에티오피아의 주현절	2019	에티오피아	대표목록	5,8,16
브뤼셀의 오메강(Ommegang), 연례역사적 행렬과 대중 축제	2019	벨기에	대표목록	5,11,16
겨울 축제, 포덴세 카니발	2019	포르투갈	대표목록	4,11,16
알 마라의 다마스크 장미와 관련된 공예와 관습	2019	시리아 아랍 공화국	대표목록	2,8,15
카자흐스탄 말 사용자들의 전통적인 봄 축제 의례	2018	카자흐스탄	대표목록	2,15,16
쿠바 증부의라스 파란다스 축제	2018	쿠바	대표목록	8,10,16
라로메리아(순례): 사포판의 성모상 '라제바다(운반)'의식	2018	멕시코	대표목록	8.11.16
부출라우스키 페스트(부출라우 성모 성화 축제)	2018	벨라루스	대표목록	4,11,16

종 목	등재연도	국가	목록유형	SDG 목표
콩고 문화의 의식과 기쁨의 표현	2018	파나마	대표목록	4,5,10,16
콤브 멜라	2017	인도	대표목록	5,10,11,16
바젤 카니발	2017	스위스	대표목록	4,5,8,10,11,16
3월 1일 문화풍습	2017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공화국, 루마니아	대표목록	5,16,17
봄 축제, 흐드렐레즈	2017	마케도니아, 터키	대표목록	2,15,16,17
일본의 장식 수레 축제, 야마, 호코, 야타이 행사	2016	일본	대표목록	4,5,11,12,16
발렌시아 파야스 축제	2016	스페인	대표목록	8,11,16
아르군구 국제 낚시 문화 축제	2016	나이지리아	대표목록	4,5,6,8,15,16
포헬라 보이샤크에 열리는 '몽골 쇼바자트라' 축제	2016	방글라데시	대표목록	4,8,16
모모에리아, 그리스 서마케도니아 주 코자니 지역 8개 마을에서 행해지는 새해 축하 행사	2016	그리스	대표목록	2,11,16
브베 와인 생산자 축제	2016	스위스	대표목록	5,8,16
그랜빌 카니발	2016	프랑스	대표목록	8,10,11,16
오시투티 쇼마공고, 마룰라 과일 축제	2015	나미비아	대표목록	2,5,16
페르니크 지방의 수로바 민속 축제	2015	불가리아	대표목록	1,5,11,16
피레네 산맥의 하지 불 축제	2015	안도라, 프랑스, 스페인	대표목록	5,16,17
시다마 부족의 새해 축제, 피체-참바랄라	2015	에티오피아	대표목록	5,10,15,16
슬라바, 가족 성인 수호성인의 날을 기념하는 날	2014	세르비아	대표목록	2,16
마르칼라에서 연행되는 '탈과 꼭두각시의 등장'	2014	말리	대표목록	4,15,16
농악	2014	대한민국	대표목록	2,16
푸노의 칸델라리아 성모 축제	2014	페루	대표목록	8,11,16
파라 주 벨렝 시의 '시리우 지 나자레' 축제(나자레 성모의 햇불 축제)	2013	브라질	대표목록	5,8,11,16
7년마다 열리는 리무쟁의 성유물 전시 축제	2013	프랑스	대표목록	11,16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 발견 기념 축제	2013	에티오피아	대표목록	11,16

종 목	등재연도	국가	목록유형	SDG 목표
과레나스와 과티레의 라 파란다 데 산 페드로(산 페드로 대축일 축제)	2013	베네수엘라	대표목록	10,11,16
거대한 구조물을 어깨에 매고 행진하는 카톨릭 기념 축제	2013	이탈리아	대표목록	5,8,11,16
슈티프의 40인 성지 순교자 축일	2013	마케도니아	대표목록	11,16
푸토 성의 흥 왕조 숭배 의식	2012	베트남	대표목록	2,11,16
세멘을라우펜, 오스트리아 임슈트의 카니발	2012	오스트리아	대표목록	4,11,16
코르도바의 파티오 축제	2012	스페인	대표목록	2,11,15,16
페스트 노즈, 브르타뉴의 전통춤 집단 연행을 바탕으로 한 축제모임	2012	프랑스	대표목록	4,5,8,11,16
메시르 마주누 축제	2012	터키	대표목록	3,5,11,16
세프루의 체리 축제	2012	모로코	대표목록	5,8,11,16
키브도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제	2012	콜롬비아	대표목록	4,10,11,16
베네수엘라 성체축일의 춤추는 악마들	2012	베네수엘라	대표목록	4,5,16
이차페케네 피에스타, 산 이그나시오 데 목소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	2012	볼리비아	대표목록	4,15,16
알헤메시의 '마레 데 데우 데 라 살루트(건강의 성모 마리아)' 축제	2011	스페인	대표목록	4,11,16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	2010	터키	대표목록	3,4,16
푸동 사원과 속 사원의 종 축제	2010	베트남	대표목록	2,4,16
크라켈링언과 토네켄스브란트, 헤라르츠베르헌에서 개최되는 겨울의 끝을 축하하는 빵과 불의 축제	2010	벨기에	대표목록	2,4,11,16
파라치코스, 치아파 데 코르소의 전통 1월 대축제	2010	멕시코	대표목록	4,8,11,16
몽골 전통축제 나담(Naadam)	2010	몽골	대표목록	3,4,8,15,16
에히터나흐의 호핑 댄스 행렬	2010	룩셈부르크	대표목록	11,16
용선 축제	2009	중국	대표목록	11,16
람만, 인도 가르왈 히말라야의 종교 축제 및 제례극	2009	인도	대표목록	4,15,16
두브로브니크의 수호성인 성 블라이세 축제	2009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4,15,16
네스키나르스트보, 과거에서 온 메시지: 불가리 마을의 성 콘스탄틴과 헬레나 축일을 기념하는 하나기르 의식	2009	불가리아	대표목록	3,11,16

종 목	등재연도	국가	목록유형	SDG 목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2009	대한민국	대표목록	2,8,14,16
흑과 백 카니발	2009	콜롬비아	대표목록	8,10,11,16
모하치의 부쇼 축제 : 봄맞이 가면 카니발 풍습	2009	헝가리	대표목록	8,11,16
파툼 데 베르가, 베르가의 성체축일 축제	2008	스페인	대표목록	4,8,11,16
오루로 카니발	2008	볼리비아	대표목록	8,11,16
강릉 단오제	2008	대한민국	대표목록	4,8,11,16
바이아 로콘카보의 삼바 데 로다	2008	브라질	대표목록	4,10,11,16
발트 지역 국가들의 '노래와 춤의 축전'	2008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대표목록	16, 17
원주민 축제, 망자의 날	2008	멕시코	대표목록	2,4,8,16
뱅슈 카니발	2008	벨기에	대표목록	4,11,16
<b>기 예 (4)</b>				
전통적인 터키의 활쏘기	2019	터키	대표목록	3,4,8,16
말과 낙타 아르다	2018	오만	대표목록	3,8,15,16
인간 탐 쌓기	2010	스페인	대표목록	11, 16
신스카 알카, 신 지역 기사들의 마상 시합	2010	크로아티아	대표목록	3,8,11,16
<b>무 예 (8)</b>				
쿤 루보카토르, 캄보디아의 전통 무술	2022	캄보디아	대표목록	4.3.16
실랏	2019	말레이시아	대표목록	3,4,5
펜착 실랏의 전통	2019	인도네시아	대표목록	3,4,5
치다오바, 조지아의 레슬링	2018	조지아	대표목록	3,4,16
타스키원, 서부 하이 아틀라스의 무술 춤	2017	모로코	긴급보호 목록	4,7,16
봉술, 타흐팁	2016	이집트	대표목록	3,4,16
택견, 대한민국의 전통무술	2011	대한민국	대표목록	3,4,16
팔레바니와 주르카네이 의식	2010	이란	대표목록	4,16

9.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서 양식

가. 영문



Representative List  
ICH-02 -Form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Deadline: 31 March 2026  
for possible inscription in 2027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form are available at:  
<https://ich.unesco.org/en/forms>*

**A. State Party or States Parties**

**B. Name of the element**

B.1. Name of the element in the languages and scripts of the community(ies) concerned

B.2. Name of the element in English

**C. Name of the communities, groups or individuals concerned**

## 1.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element

For Criterion R.1, States shall demonstrate that 'the element constitut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1.1.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element that can introduce it to readers who have never seen or experienced it.

Not to exceed 300 words

1.2. *Who are the bearers and practitioners of the element? Are there any specific roles, including gender-related ones or categories of persons with special responsibilities for the practice and transmission of the element? If so, who are they and what are their responsibilities?*

Not to exceed 100 words

1.3. *How are the knowledge and skills related to the element transmitted today?*

Not to exceed 100 words

1.4. *What social functions and cultural meanings does the element have nowadays for the communities concerned?*

Not to exceed 200 words

1.5. *Can the State Party or States Parties confirm that nothing in the element is in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Not to exceed 50 words

1.6. *Can the State Party or States Parties confirm that nothing in the element could be perceived as not compatible with the requirement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Not to exceed 50 words

1.7. *Can the State Party or States Parties confirm that nothing in the element could be perceived as not compatible with the requir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Not to exceed 50 words

1.8. *Are there customary practices governing access to the element? If yes, describe any specific measures that are in place to ensure their respect.*

Not to exceed 100 words

## 2. Contribution to visibility, awareness, dialogu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Criterion R.2, the States shall demonstrate that 'Inscription of the element will contribute to ensuring visibility and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o encouraging dialogue, thus reflecting cultural diversity worldwide and testifying to human creativity'. In addition, States are encouraged, with reference to Chapter VI of the Operational Directives, to recognize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iven its extensive nature, criterion R.2 will be assessed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nomination file as a whole including the answers provided in this section.

*2.1. Do communities concerned consider that the element contributes to the following?*

Ensuring visibility and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ncouraging dialogue

Reflecting cultural diversity and testifying to human creativity

*2.2. Do communities concerned consider that the element contributes to the following? (select only relevant options)*

Food security

Health care

Quality education

Gender equality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cluding climate change

Peace and social cohesion

Others (*please specify*):

*2.3. Provide explanations in support of the statement(s) made above, as appropriate.*

Not to exceed 200 words

*2.4. States are encouraged to submit audiovisual materials that convey the communities voice in support of the statements made above (optional).*

Materials (written, audiovisual or any other way) are submitted (referred to as 'R.2 materials')

## 3. Safeguarding measures

For Criterion R.3, States shall demonstrate that 'safeguarding measures are elaborated that may protect and promote the element'.

*What safeguarding measures are put in place to protect and promote the element?*

*Include in your answer:*

*🕒 the description of the safeguarding measures:*

- ⌚ *the communities' role in the planning of measures described;*
- ⌚ *the communities'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described.*

*Not to exceed 500 words*

--

#### 4.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nomination process and consent

*For Criterion R.4, States shall demonstrate that 'the element has been nominated following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group or, if applicable, individuals concerned and with their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4.1. Describe how the communities, groups or individuals concerned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all stages of the preparation of the nomination.*

*Not to exceed 300 words*

Consent (written, audiovisual or any other way) to the nomination of the element from the communities, groups or individuals concerned is attached in support to the description above (referred to as 'consent materials')

*4.2. Community organizations or representatives concerned*

Contact person for the communities: Title (Ms/Mr, etc.): Family name: Given name: Institution/position: Address: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Other relevant information:
Additional contact information for main community organizations or representativ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other bodies concerned with the element are attached in a separate annex, and their details can be published on the website of the Convention as part of the nomination

#### 5. Inventory

**For Criterion R.5, States shall demonstrate that the element is identified and included in an inventor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the territory(ies) of the submitting State(s) Party(ies) in conformity with Articles 11 and 12 of the Convention.**

*5.1. Name of the inventory(ies) in which the element is included*

--

*5.2. Name of the office(s), agency(ies), organization(s) or body(ie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and updating that (those) inventory(ies), both in the original language and in translation when the original language is not English or French*

--

5.3. *Reference number(s) and name(s) of the element in the relevant inventory(ies)*

--

5.4. *Date of the element's inclusion in the inventory(ies)*

--

Is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updating and periodicity of the inventory(ies),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NGOs concerned to the inventorying process, included in the periodic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Yes, the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periodic report. Specify in the box below the year in which that report was submitted

No, the information is not included in the periodic report. Provide information in the box below

*Not to exceed 200 words*

--

An extract of inventory(ies) in English or in French and in the original language, if different, is submitted

## 6. Checklist for audiovisual materials

*Confirm that the following audiovisual materials have been submitted:*

10 recent photographs in high definition submitted

Form ICH-07-photo is attached to grant rights for the 10 photographs submitted

A video (from 5 to 10 minutes) is submitted

Form ICH-07-video is attached to grant rights for the video submitted

R.2 materials (written, audiovisual or any other way) submitted (*optional - with reference to section 2.3: audiovisual materials should last no more than ten minutes*)

Form ICH-07-video is attached to grant rights for the R.2 materials submitted (*only if the materials are audiovisual*)

Consent materials (written, audiovisual or any other way) submitted (*with reference to section 4.1: audiovisual materials should last no more than ten minutes*)

Form ICH-07-video is attached to grant rights for the consent materials submitted (*only if the materials are audiovisual*)

## 7. Correspondence and signature

7.1. *Designated contact person*

Provide the contact details of a single person responsible for all correspondence concerning

*the nomination. For multinational nominations, provide complete contact information for one person designated by the States Parties as the main contact person for al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he nomination.*

Title (Ms/Mr, etc.):
Family name:
Given name:
Institution/position:
Address: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Other relevant information:

*7.2. Other contact persons (for multinational nomination only)*

*Provide below complete contact information for one person in each submitting State, other than the primary contact person identified above.*

Title (Ms/Mr, etc.):

Family name:

Given name:

Institution/position:

Address: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Other relevant information:

*7.3. Signature on behalf of the State Party or States Parties*

Name:

Title:

Date:

Signature:

*7.4. Name(s), title(s) and signature(s) of other official(s) (for multinational nominations only).*

--

나. 국 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공모 신청서 (2025)**

A. 신청국

B. 무형유산의 명칭

B.1. 무형유산의 해당국어 명칭

B.2. 무형유산의 영어명칭

C.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의 명칭

1. 무형유산에 대한 일반정보

기준 R.1에 대하여, 신청국들은 신청유산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정의<sup>70)</sup>에 부합하는지를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1.1. 신청유산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정도로 간략히 설명하시오

70)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 공동체, 단체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및 기능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도구, 물품,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

1.2. 신청유산의 보유자 및 연행자 또는 연행과 전승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1.3. 신청유산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오늘날 어떻게 전승되는지 기술하십시오

1.4. 신청유산이 오늘날 해당 공동체에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1.5. 신청유산이 현행 국제인권 관련 법규들과 충돌하는 문제는 없는지 기술하십시오

1.6. 신청유산이 공동체, 단체, 개인 간의 상호 존중이라는 요구사항과 충돌하는 요소는 없는지 기술하십시오

1.7. 신청유산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요구사항과 충돌하는 요소는 없는지 기술하십시오

1.8. 신청유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관행이 있는가, 있다면 그 관행을 존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기술하십시오

1.9. 신청유산에 대한 시청각 자료

- 해당 유산에 대한 최근의 고화질 사진 10매
- 사진의 사용 허가서(양식 ICH-07-photo)
- 비디오 영상제출
- 영상의 사용 허가서(양식 ICH-07-video)

## 2.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인지도, 대화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등재조건 R.2와 관련하여 신청국은 ‘신청유산의 등재로 인해 무형문화유산 전반의 가시성과 인지도가 제고되며 대화가 촉진되어 세계적인 문화다양성을 반영하고 인류의 창의성을 증명한다’는 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국은 운영지침 4장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과 지속가능발전이 상호의존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할 때, R.2 기준은 이번 섹션에서 제공하는 답변과 등재신청서 전반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심사된다.

관련 공동체는 신청유산이 다음 요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

- 식량안보
- 보건
- 교육
- 성평등
- 포용적 경제발전
-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 평화와 사회 응집력
- 기타(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상기 진술의 근거를 서술하십시오.

신청국은 상기 진술의 근거가 될 공동체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은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해당자료의 제출(서면, 시청각자료, 기타)

### 3. 보호조치

등재조건 R.3와 관련하여, 신청국은 ‘보호조치가 정교하여 동 유산을 보호, 증진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구체화되어 있음’ 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유산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운용중인 보호조치는 무엇이며, 해당 조치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을 서술하라.

### 4. 등재신청 과정에 공동체 참여 및 동의

등재조건 R.4와 관련하여 신청국은 ‘해당 유산의 등재신청이 공동체, 단체, 혹은 개인의 가능한 최대한의 참여와 자유롭고 사전에 인지된 동의에 의해 신청되었음’ 을 제시해야 한다.

4.1. 등재신청 과정에서 공동체, 단체, 개인의 참여한 방식 서술하시오.

<input type="checkbox"/> 위 서술 내용을 입증하는 공동체, 단체 또는 개인의 등재신청 동의서(서명, 시칭각자료, 또는 기타방식)를 첨부
--

4.2. 관련 공동체의 기구 또는 대표

<input type="checkbox"/> 신청유산과 관련 주요 공동체 기구 또는 대표자, NGO, 기타 기구의 연락처 정보를 첨부하고, 세부내용은 등재신청서의 일부로 협약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 5. 무형유산 목록

등재조건 R.5와 관련하여 신청국은 ‘협약 제11조 및 12조에 정의된 것처럼, 해당 유산은 제출 신청국이 자국의 영토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위해 만든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는 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5.1. 목록 명칭

--

5.2. 목록관리 및 갱신 담당 조직(해당국 언어와 영어 또는 불어로 기재)

--

### 5.3. 해당목록 내 해당 유산의 번호와 명칭

--

### 5.4. 해당 목록에 등재된 일자

목록의 주기적 갱신 그리고 목록 등재 과정에 관련 공동체, 단체, NGO의 참여에 관한 정보가 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서에 실려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포함되어 있다. 아래 박스에 해당보고서가 제출된 년도 명시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당 정보를 아래에 서술
2017
<input type="checkbox"/> 목록에서 발췌한 내용을 해당국언어와 영어 또는 불어로 제출함

## 6. 연락처와 서명

### 6.1. 담당자연락처

등재에 관련한 모든 연락을 책임지는 담당자의 세부 연락 정보를 기입한다. 공동등재 신청의 경우, 등재 관련 모든 연락에 책임질 당사국들이 ‘정 담당자’로 지정한 담당자의 세부정보를 기입한다.

호칭(Ms/Mr,etc): Mr 성: 이름: 기관/직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기타관련사항:
---

## 6.2. 기타 담당자연락처(공동등재 신청인 경우)

정 담당자연락처를 제외한 각 신청국별 연락담당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기입한다.

호칭(Ms/Mr,etc):
성:
이름:
기관/직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기타관련사항:

## 6.3. 신청국을 대표한 서명

이름:
타이틀:
날짜:
서명:

## 10. 참고문헌

### 가. 단행본 및 각종 간행물 등

- 김일권 (2024). 「한국 옷의 문화사와 옷관암각화의 천문사상」. 『옷문화 아카데미 교재』. K헤리티지재단 (舊 국제문화재전략센터).
- 노명우 (2019) 「호모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사계절
- 로제 카이와 지음. 이상률 옮김 (2014)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 이걸재. (2023). 옷놀이 강사용 교육교재. 공무문화관광재단, 전통옷놀이 보존회.
- 이이화. (1999). 「역사풍속기행」. 역사비평사
- 장장식. (2022). 「회화와 문헌에 나타난 옷놀이의 양상과 변화」. (‘한국민화’ 발표 논문). 한국민화학회
- 정형호. (2024). 「한국 전통 놀이의 역사와 특징, 그 변화」. 『옷문화 아카데미 교재』. 국제문화재전략센터.
- K-헤리티지재단. (2024). 「제1회 월드코리아컵 경기대회 개최(안)」, 「옷문화 경기 방법 및 규칙(안)」, 「옷문화 경기용 옷깔판 옷발규격(안)」. 동재단 내부문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3). 「유네스코뉴스(UNESCO News)」 vol.807.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2024).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기본문서 및 국내 무형유산 관련 법률」
- 이상호 (2024). 「전통놀이의 세계적 구조와 옷놀이」. 『옷문화 아카데미 교재』. K헤리티지재단 (舊 국제문화재전략센터).
- 이하우. (2024). 「옷관암각화의 성립에서 발전까지」. 『옷문화 아카데미 교재』. K헤리티지재단 (舊 국제문화재전략센터).

## 나. 언론보도

- 문화일보. (2013). “옷엔 고대 천문학 · 세계관 담겨있다”  
<https://v.daum.net/v/20130618143106530>
- 연합뉴스. (2008). “단원 풍속화 ‘고누’는 ‘옷놀이”  
<https://www.yna.co.kr/view/AKR20080707149300005>
- 중부매일. (2023). “국가 무형문화재 ‘옷놀이 이야기”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6749>
- 스포츠경향. (2025). “메가박스, 디즈니코리아 협업 ‘미키 마우스’  
테마 옷놀이 제품 출시”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501211910003>
- KBS. (2025). “ ‘돌솥비빔밥’ 중국 무형문화유산 지정 ‘과장’ …국가  
유산청 “선제적 조치 강구” <https://v.daum.net/v/20240919181551394>
- 경향신문. (2024). “[단독] 중국보다 늦게 김치, 한복 등 무형문화유산  
등재한 국가유산청” . <https://v.daum.net/v/20241009171649399>
- 서울신문. (2023). “옷놀이 · 활쏘기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지원 사업  
선정” . <https://v.daum.net/v/20230329050344575>
- 서울뉴스통신. (2025) “경기문화재단, 제4회 경기 옷놀이 한마당 대회 개최”  
대회 포스터.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44080>
- 노컷뉴스. (2024). “이해학 목사…옷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돼야” .  
<https://www.nocutnews.co.kr/news/6106248>
- KBS뉴스. (2022). “K문화 ‘옷놀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31132>
- 안동mbc. (2013). “창사 43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옷’ ” . 2013년 11  
월 15일 (금) 23:20~, 2013년 11월 22일 23:20~. [https://www.youtube.com/  
watch?v=XJBBC6oqv5c](https://www.youtube.com/watch?v=XJBBC6oqv5c)

## 다. 블로그 등 SNS

- 티스토리 ‘친절한 밤샘’ . (2025).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https://bam-saem.tistory.com/192>

## 라. 정부 및 유네스코 등 관련기관 누리집

### 정부 및 기관

-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index.do>
- 지속가능발전포털(환경부). <https://www.ncsd.go.kr/>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유네스코 등 관련 기관

- 유엔(UN). <https://www.un.org/>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UNESCO ICH). <https://ich.unesco.org/en/home>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unesco.or.kr/ich/>

### 일반 민간단체 등

- 경기문화재단. <https://www.ggcf.kr>
- 공주문화관광재단. <https://www.gongjuclf.or.kr/gongjuclf/main/view>
- 디지털공주문화대전. <https://gongju.grandculture.net/gongju/toc/GC01702572>
- 디지털울진문화대전. <https://uljin.grandculture.net/uljin/toc/GC01801742>
- 디지털순창문화대전. <https://sunchang.grandculture.net/sunchang/toc/GC05901703>
-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https://seogwipo.grandculture.net/seogwipo/index/GC04601778>
- K스피릿(<http://www.ikoreanspirit.com>-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국학과교수, 한국윙문화연구소장)





# 웃놀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전략 수립 기본연구

최종보고서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